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

도시환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21세기 한일 양국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일 양국이 경험한 침략의 기억과 수탈의 상흔은 새로운 한일관계 설정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은 바로 그러한 역사 갈등의 본질적 원인이자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한일 간 역사적 현안 과제가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로 남아 청산해야 할 문제들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1910년 한국강제병합에 대해 법적·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거나, 일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일병합조약이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병합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동북아역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지난 수년간에 걸친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일 간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해를 모색하는 중심축이 되어 공동연구와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의 재조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0년 5월 10일 214명으로 시작하여 65주년 광복절을 앞둔 7월 28일 1,139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이었습니다.

아울러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후속작업이자 남겨진 현안과제

로 2015년 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재단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지난 수년간 재검토한 ‘식민지’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적 정의’에 입각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한일강제병합 100년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연구서로서,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과정,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일본,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적 불법성, 역사인식과 남겨진 과제, 역사적 정의와 화해의 인식 등 총 5부로 구성되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중국·대만·미국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 책은 심도있는 검토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한일 간 역사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의 검토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남겨진 과제에 대해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 여러 각도에서 넓고 깊게 재조명한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산되고 한일 간 진정한 역사화해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주제에 대해 옥고를 집필해주신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기획에서 출간까지 애써주신 도시환 연구위원과 감수를 맡아주신 주진오 교수, 그리고 출판 관계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2013년 6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제1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과정

| | | |
|---|-----------|-----|
| 1. 근대 일본 초수 번벌의 한국 침략-법과 윤리의 실종 | 이태진 | 13 |
| 2. 근대 한일관계와 한국병합-대한제국 시기의 대일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 주진오 | 45 |
| 3. 러일전쟁과 한국병합-러시아라는 요인을 생각하다 | 와다 하루키 | 69 |
| 4. 한국주차군 참모장 오타니 기쿠조와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후의 한국 | 마쓰다 도시히코 | 91 |
| 5. 보호국의 유형 | 사사가와 노리가츠 | 115 |

제2부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일본

| | | | |
|---|----------------------------|-----|-----|
| 1. '동아시아 대란'과 식민주의 | 아라이 신이치 | 143 | |
| 2. '황민화 정책'의 본질을 생각한다 - '황국신민 서사'를 둘러싸고 | 미즈노 나오키 | 163 | |
| 3.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 실태와 한국인의 대응 | 장세윤 | 179 | |
| 4.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과 '만·한 불가분'론 | -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책안을 중심으로 | 쉬용 | 209 |
| 5. 식민지 체제와 <군중>-일제시기 대만인 <군중>의 역사 사회학적 고찰 | 리칭지 | 225 | |

제3부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적 불법성

| | | |
|---|----------|-----|
| 1. 식민지주의 범죄화에 관하여-한일강제병합의 교훈 | 무사코지 킨히테 | 257 |
| 2. 동아시아에서의 역사 청산 | 도츠카 에츠로 | 271 |
| 3.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 도시환 | 291 |
| 4.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병합의 불법성 여부와 '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 이근관 | 329 |

제4부 역사인식과 남겨진 과제

| | | |
|-------------------------|-----------|-----|
| 1.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재일한국인 | 변영호 | 351 |
| 2.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미래를 위한 선택 | 차하순 | 369 |
| 3.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대화공간 | 부평 | 387 |
| 4. 한일협정과 남겨진 과제 | 이종원 | 423 |
| 5. 침략행위 : 미국의 하와이 점령 | 에드워드 존 솔츠 | 445 |



제5부 역사적 정의와 화해의 인식

| | |
|---------------------------|-----|
| 1. '한국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 455 |
| 2.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한국 측 서명자 명단 | 461 |
| 3.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일본 측 서명자 명단 | 481 |

부록

| | |
|--|-----|
| 1. 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 | 501 |
| 2.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 22일) | 503 |
| 3.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 | 504 |
| 4. 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1907년 7월 24일) | 505 |
| 5. 한일강제병합조약(1910년 8월 22일) | 506 |
|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65년 6월 22일) | 508 |
|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 6월 22일) | 511 |

| | |
|------|-----|
| 찾아보기 | 515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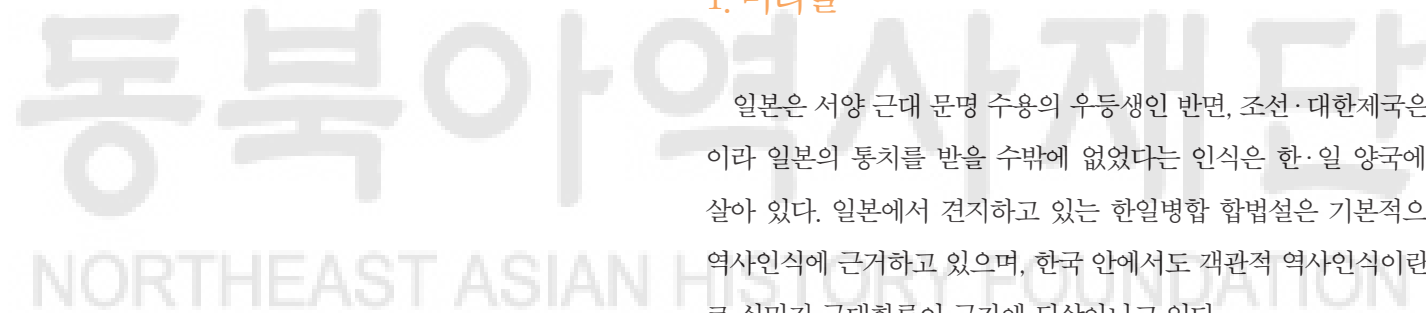
제1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과정

근대 일본 초슈 번벌의 한국 침략 - 법과 윤리의 실증 | 이태진
근대 한일관계와 한국병합 - 대한제국 시기의 대일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 주진오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 러시아라는 요인을 생각하다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한국주차군 참모장 오타니 기쿠조와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후의 한국 |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彦]
보호국의 유형 | 사사가와 노리가츠[笹川紀勝]

근대 일본 초슈 번벌의 한국 침략

- 법과 윤리의 실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태진



1. 머리말

일본은 서양 근대 문명 수용의 우등생인 반면, 조선·대한제국은 열등생이라 일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은 한·일 양국에 아직도 살아 있다. 일본에서 견지하고 있는 한일병합 합법설은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 안에서도 객관적 역사인식이란 미명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근자에 되살아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서양 문명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보다 앞서갔다. 또한 조선이 뒤늦게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조선 문명 낙후설은 조선의 개화가 어디까지나 일본인 또는 일본 정부의 알선으로 시작된 것이라 하여 조선인의 개화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 국제관계인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조차 일본 시혜의 산물이라 하였고, 청일전쟁도 문명이 야만을 쫓기 위한 전쟁이라고 선전하였다. 일본이 이 전쟁과 동시에 조선 정부에 요구한 「내정개혁」은 엄연한 내정간섭인데도 야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거로 미화되었다. 이런 문명

차등론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과 반인륜적 행위를 가리는 덮개 기능을 하였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지적과 비판이 없다면 한일병합 합법설은 극복되기 어렵다.

일본이 서양 문명 수용에서 앞섰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제국주의 일반론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즉,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이며, 일본이 굳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근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출범 초기부터 「정한론(征韓論)」이란 이름으로 조선 침략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었다. 메이지유신 찬양론자도 메이지유신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의 국권 탈취를 통해서 비로소 구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는 근대 이전부터 있어온 일본 특유의 무사사회가 지난 대외 침략주의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국주의와는 무관하다. 일본이 서양 열강들과 달리 지금껏 피해 국가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2. 전근대적 침략주의 「정한론」의 실체

1600년의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가문을 지지하던 서군(西軍)이 패하면서 동군(東軍)의 총사령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시대가 열렸다. 서군의 총사령관은 히로시마[廣島] 일대에 본거를 둔 모오리 데리모토[毛利輝元]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제1인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막부의 통치체제 구성에서 200여를 헤아리는

다이묘[大名]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도쿠가와씨 일족은 신관(親藩), 동군 편에 선 다이묘들은 후다이(譜代), 서군 편에 속했던 다이묘들은 도자마(外様)로 구분하였다. 쇼군(將軍)은 신관과 후다이를 중심으로 막부 정치를 이끌면서 징벌 차원에서 도자마에게는 막부 정치에 관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군의 총수이던 모오리씨는 본거인 히로시마 일대에서 벽지인 하기[萩]로 쫓겨났다. 다카고쿠(石高) 130만 석의 경제 기반도 37만 석으로 축소 당하였다. 이것이 도쿠가와 시대 초슈(長州)번의 출발이었다. 같은 서군에 속했던 사쓰마(薩摩)의 시마즈(島津)씨는 다카고쿠 73석에 본거지 가고시마를 유지하여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도자마 번들의 정치적 소외는 적개심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았다. 250여 년이 지난 뒤 1853년 페리 제독의 '쿠로후네[黑船]'의 도래로 정치적 동요가 일어났을 때, 초슈·사쓰마·토사(土佐) 등 도자마 세력이 도쿠가와 막부 타도에 앞장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막부 말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에도(江戸) 만에 도착한 페리 제독의 개국 요청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막부 지도부(幕閣)의 '무대책'이 일반론으로 되어 있었다. 즉, 막부 지도부는 페리 제독의 함대가 도착하여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을 때 준비가 전혀 없어서 스스로 도자마를 포함한 모든 다이묘들에게 의견을 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헌은 막부가 처음으로 '도쿠가와'의 私에서 벗어나 '천하의 公'을 물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최근 페리 제독의 내항(來航)과 개국 요청에 대한 막부의 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서 이전의 평가가 반(反)막부의 입장에서 가해진 역사 왜곡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막부 지도부는 1842년부터 네덜란드에게 매년 「오란다 別段風說書」를 제공받아 서양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1850년 페리 함대가 미국 노포크를 출발하여 홍콩-상하이-오키나와를 거쳐 에도 만에 이르는 일정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 막부 지도

부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체제유지 차원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조약 체결에 능동적으로 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함대가 도착하였을 때 우라카[浦賀]에 영접단을 내보낼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것이 새로 밝혀졌다.¹

다 알듯이 초슈번을 중심으로 한 막부 타도세력은 ‘존왕양이(尊王攘夷)’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존왕’은 천황 받들기, ‘양이’는 서양 오랑캐 배격을 각각 뜻한다. 서양 오랑캐를 배격한다는 것은 일종의 쇄국으로 서양 기계문명 수용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주의는 새로운 침입자에 대한 국력 결속이란 명분이 붙을 수 있는 것이지만, 초기에는 반막부세력의 막부 타도 명분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반막부세력은 당초 서양과 국교를 맺는 것은 천황가의 권위에 대한 오욕으로 간주하여 ‘양이’에 나섰고, 이 세력이 ‘개화’로 돌아선 것은 외국군과 싸워 본 뒤였다. 즉, 1864년에 초슈 세력이 시모노세키[下關]에서 4국 함대에 포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난 뒤였다. ‘양이’ 차원에서 서양 함대를 공격하였지만 엄청난 힘의 차이를 느끼고 힘겨루기를 일단 정지시킨 뒤 상대방의 기술 습득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던 것이다. 쇼부[勝負]의 무사정신에서 패배는 할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방향 전환이었다. 이처럼 메이지유신은 서양 문명에 대한 심도있는 음미에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 군사적 열등을 만회하려는 무사사회 특유의 판단에 따라 착수된 것이었다.

메이지유신의 주도세력으로 알려진 초슈번 출신 무사들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의 문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요시다 쇼인이 쇼카촌 주쿠[松下村塾]란 소규모 학교를 열어 1856년(安政 3) 8월~1858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가르친 20대 문인들이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중심 세력을 이룬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대한제국에 대해 침략 정책을 주도

한 인물들도 대부분 그 문인들이거나 이에 동조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이란 조선 침략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문인들에 의해 강제된 「한국병합」은 정한(征韓)의 실현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메이지 정부의 한국 국권 탈취가 정한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음의 일화로도 입증된다. 첫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천황의 특사로서 서울에 와서 직접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강제한 뒤, 귀국 길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굳이 하기[萩]의 ‘은사’ 요시다 쇼인 묘 앞으로 사람을 보내 ‘협약체결의 보고’를 올리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² 그리고 제3대 통감으로 「한국병합」 실행의 총책을 맡은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한국병합은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것으로 3인의 무장(小早川隆景, 加藤清正, 小西行長)이 생존하였다면 기뻐했을 것이라”고 하였다.³

최근, 스다 츠토무[須田努] 씨는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등장과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배경으로 일본 ‘근세인’의 조선관을 살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서민 대중의 연예물인 조루리[淨琉璃: 반주가 있는 인형극]와 가부키[歌舞伎] 내용 가운데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삼한정벌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출병(임진왜란) 등을 소재로 한 것들에는 일본의 무위(武威)가 조선을 압도하는 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연예물을 통해 ‘근세인’들은 ‘약한 조선’을 멸시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도쿠가와 시대 일본인들에게 조선은 국왕조차 일본군 앞에서 목숨을 빌어 구하는 비굴한 나라로 인식되었으며,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은 이런 민중들의 의식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파악하였

1 井上勝生(2006), 『幕末・維新』 시리즈 일본근현대사①, 岩波新書.

2 吉野誠(2002), 『吉田松陰征韓論』, 明石書店, 53쪽.

3 吉岡吉田(2009), 『「韓國併合」100년과 日本』, 新日本出版社, 69쪽.

다.⁴ 조루리와 가부키에 나타나는 조선 멸시관은 ‘조선출병’에서 돌아온 무사들의 무용담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무용담은 타국에 대한 제압을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쾌감과 흥미를 자극하여 상호 재생산의 관계가 되었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성립 기반이 이런 것이라면, 그 문인들이 실현한 ‘정한(征韓)’은 결코 근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조루리와 가부키는 도요토미 군 무위의 증거로 교토(京都)에 있는 귀무덤(耳塚)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귀무덤은 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권력을 상징하려고 당대 최대 규모로 지었던 호코지(方廣寺) 바로 앞에 출병의 무위를 과시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열면서 이 대찰을 파괴하여 호코지는 폐사지가 되고 귀무덤만 남아 민중 연예물의 소재가 되었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는 18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서거 300주년을 기념하여 그 폐사지에 도요쿠니(豊國) 신사를 세우고 각지에 그 분사를 두어 도요토미 숭배를 국가적으로 조장하였다. 이 사실은 초슈 세력의 「한국병합」에 이른 대한정책(對韓政策)이 처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출병’이 보였던 무위의 재현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증거 중 하나다.

4 須田努(2010), 「征韓論への系譜」, 安田常壽, 趙景達 編, 『近代日本のなかの「韓國併合」』, 東京堂出版. 스다 츠토무는 요시다 쇼인의 草奔崛起論이 나온 安政 5년(1858)에 문인들이 쇼카준주크를 떠나는, 학통의 아이덴티티가 붕괴하는 시기로 간주하면서 문인들에게서는 조선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스승의 영향은 아래 초슈 출신 관료, 군부 인사들의 한국 침략 정책이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3. 왕비 살해라는 반인륜 행위

1895년 10월 8일의 명성황후 시해는 한국근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시해 사건의 주범이 일본인들이라는 것은 사건 당시에 이미 드러나 일본 정부는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입지가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현장의 총 지휘는 조선주재 공사로 새로 부임한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로 알려졌지만 그가 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는 최근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에는 조선왕실의 친러 정책이 원인이었다는 설명이 가장 유력하였다. 그러나 이를 깊이 천착한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왔다. 최문형 교수는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청일전쟁 중에 일본이 기도했던 보호국화 정책을 왕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좌절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살해가 감행되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주동한 인물은 미우라 공사의 전임자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라고 밝혔다.⁵

그런데 2009년 2월 재일교포 사학자 김문자 씨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⁶ 필자는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일본 군부의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당시 대본영(大本營)의 현역 총수인 참모차장이 육군 감군(監軍)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과 함께 주관한 사건으로 규명하였다. 대본영은 천황의 출진(出陣)을 위해 전시에 설립하는 기구로서 참모총장은 정청대총독(征清大總督) 쇼히도(彰仁) 친왕이었고,

5 최문형 외(1992), 『명성황후 殺害事件』, 민음사; 최문형(2001),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을 밝힌다-선전포고 없는 일본의 對러 개전-』, 지식산업사; 이민원(2002),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국학자료원도 친러정책을 원인으로 들었다.

6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 東京 高文研, 2009. 2.

군인으로는 육군중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1848~1899) 참모차장으로
서 최고위였다. 이 연구가 밝힌 사건의 배경과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본 군부는 1887년에 제1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 아래 30만 양병을 목
표로 제2차 징병령을 시행하였다. 100만으로 일컫는 청국군과 대결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이후 7년간 국가 예산의 60~70%를 군사비에 배
정하여 군비확장에 매진한 끝에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때 일본 대본영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는 1880년대 한반도에 시설된 전신
선⁷을 장악하여 통신 수단 확보에서 우위를 점하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나자 청국이 진압을 명목으로 조선 정부에 청병
(講兵)을 강요하여 '동시 출병'의 기회⁸가 오자 일본은 8,000여 명의 병력
[大島 여단]을 인천을 통해 서울로 진입시켰다.

일본 육군 참모부는 7월 23일 0시 30분에 1개 대대 병력을 경복궁에 투
입하여 왕을 궁 안에 감금하다시피 하고 궁 바로 앞에 있는 전신총국을 장
악하였다. 일본군은 즉각 남쪽으로 내려가 7월 25일에 성환과 풍도의 청
군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였다. 통신 수단을 장악한 일본군은 승승
장구 끝에 7개월 만에 전쟁을 끝냈다.

전쟁이 끝난 뒤가 문제였다. 1895년 4월 17일에 조인된 시모노세키[下
關] 조약에서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배상금 3억 엔을 받고, 요동반도와 타
이완을 할양받게 되었다. 그러나 6일 뒤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
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서양 열강들을 상대로 실현해야 할 조약개정의 과
제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간섭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요동반도
획득은 만주 진출의 교두보이자 한반도에 대한 청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7 西路電線(의주~서울), 1885년 시설. 南路電線(서울~부산), 1887년 시설. 한
국 체신부 전기통신공사 편(1885), 『韓國 電氣通信 100년史 : 1885~1985』
上·下, 참조.

8 1885년 텐진조약[天津條約]에서 청일 양국이 약속한 사항이었다.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었다. 이를 반환하는 것은 이 기회의 상실일 뿐만 아
니라 전쟁의 가장 큰 목표였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동시에 가져
오는 것이었다. 전쟁을 수행한 군부로서는 물리칠 수 없는 일이었다.

초수 군벌의 최고 실력자인 감군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육군 대신 대리
로서 5월 12일자로 조선 국내 전신선조의 수비와 거류민 보호를 위해 한
반도에 1개 대대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는 군부의 의견을 외무대신에게 전
달하였다. 5월 26일에 열린 어전회의는 요동 '방기(放棄)'를 결정하면서 군
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어전회의의 결정은 6월 29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조선 국왕에게 전달되었다. 조선 군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이 무렵 본국으로 일시 귀국 중이던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7월 1일자로 조선에 300만 엔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
서(意見書)」를 제출하였다. 기본적으로 조선 영토에 시설된 전신선은 조선
소유이므로 일본군이 이를 사용한 데 대한 사례 표시가 필요하다는 뜻으
로 그는 300만 엔 기부금 제공을 제안하였다. 사례금으로 왕실과 정부에
각각 50만 엔씩 제공하는 한편 200만 엔은 경인선 철도 부설에 사용하도
록 하여, 이를 매개로 일본이 계속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방안이
었다.

한편, 일본 외무성 측은 군부의 주장을 외교적으로 처리하고자 조선 외
부대신(金允植) 명의로 된 「주병의뢰서(駐兵依頼書)」를 등장시켜 이에 대한
「주병승낙서(駐兵承諾書)」를 발부하고 일본군 주둔을 기정사실화하는 술
책을 써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조선 국왕은 일본공사관 측에 현재
6,000명 이상 남아 있는 일본군이 조만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
하였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구상한 기부금 안에 대해서도 조선 왕실은 받
을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을 보냈다. 7월 11일 외무성은 기부금 안을 낸 이
노우에 가오루 공사를 교체하고 육군 중장 출신의 미우라 고로를 후임으
로 발령하였다. 천황이 군부의 의견을 따른 것을 의미하는 인사 조치였다.

대본영의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에게 왕비 살해의 사명을 주었다. 그것은 일본군의 주둔을 강하게 거부하는 조선 군주를 위협하여 굴복시키려는 음모였다. 거사에 대원군을 동원하여 함께 입궐하고 그가 왕비를 살해한 것처럼 꾸몄다. 왕비 피살이라는 비상사태 속에 친일 정권을 세워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음모도 이에 개재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본래 일본인이 주체란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완료하도록 짜여 있었지만, 대원군 동원부터 시간이 지체되어 아침 5시 30분~6시 사이에 왕비 살해의 본무를 끝냈다.

김문자 씨는 가와카미 소로쿠 참모차장과 미우라 고로 공사의 지시 아래 ‘장사패’ 50여 명과 일본군 수비대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장교 8인의 명단을 밝힐 정도로 군부 주도를 명확하게 실증하였다.⁹ 그리고 왕비에게 최초의 일도(一刀)를 가하여 치명상을 입힌 자도 미야모토 다케타로[宮本竹太郎] 육군 소위인 것을 밝혔다.¹⁰ 대본영은 사건 후 8명의 장교들을 히로시마 군법회의에 회부하였지만 해당 장교들에게 합구령을 내려 사실 자체를 은폐하였다.

이후 중범에 해당하는 신문기자나 외교관 측에서 수기를 통해 왕비에게 첫 칼을 내리친 사람이 자신이라는 언설을 늘어놓은 것도 모두 연막용

9 시해사건 후 군법회의 회부 8인(전원 무죄 석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국 공사관부 무관 겸 조선국 군부 고문 쿠스노세 유키히코[楠瀬幸彦], 육군포병 중좌, 36세 (2) 후비(後備)보병독립 제18대대장 바야바라 츠토모토[馬玉原務本] 육군보병 소좌, 47세 (3) 후비보병독립 제18대대 중대장 이시모리[石森吉猶] 육군보병 대위, 37세 (4) 같은 대대 중대장 타카마츠 테츠타로[高松鐵太郎] 육군보병 대위, 41세 (5) 같은 대대 중대장 코이토 유키부미[鯉登行文] 육군보병 대위, 34세 (6) 같은 대대 제3중대 마쿠 마사스케[馬來政輔] 예비육군보병대위, 47세 (7) 같은 대대 제2중대 무라이 우소[村井右宗] 예비육군보병대위, 46세 (8) 같은 대대 제1중대 후지토 요조[藤戸与三] 후비 육군보병대위, 46세 등이다.

10 미야모토 소위는 후비보병독립 제18대대장 바야바라 츠토모토의 부하로서 바야바라 츠토모토 소좌에게 직접 명령을 받고 행동하였다.

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후에는 대본영이 살해의 주범이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대한 과제였다. 일본 군부가 한반도 지배를 목적으로 조선 군주를 위협하고자 왕비를 살해하였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사건이다. 이 반인륜적 행위의 정신적 기반으로 현재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초슈번 출신들이 공유하고 있던 정한론밖에 없다. 가와카미 소로쿠는 본래 사쓰마번 출신이었지만 메이지유신 초기 육군 창설 과정에서 이미 초슈번 출신 군벌과 행보를 같이 하여 동류가 된 인물이었다.¹¹

11 가와카미 소로쿠는 1866년에 처음 군인의 길로 들어서 1871년에 최초의 육군 상비군이면서 근위사단의 기원이기도 한 어친병대(御親兵隊) 중위가 되었다. 1876년에는 소좌로 승진하여 근위 대대장이 되었고 이어서 육군 요직인 참모국으로 영진하였다. 1877년에 세이난 전쟁[西南戰爭]이 일어났을 때, 그는 참모본부를 대표하여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군에 대한 정벌(征討)의 칙명을 전하기 위해 구마모토[熊本] 성으로 가서 보병 제13연대를 지휘하여, 형제·동향의 우인(友人)들을 상대로 싸웠다. 1884년에는 육군 경(陸軍卿) 오야마 이와오[大山巖]를 따라 미우라 고로, 가쓰라 타로[桂太郎] 등과 함께 유럽으로 가서 각국의 병제나 군비를 시찰하고 이듬해 돌아와 소장으로 승진, 참모본부 차장이 되어 육군 수뇌의 한 사람이 되었다. 유럽 여행을 함께 한 위의 3인 중, 오야마 이와오는 가와카미 소로쿠와 마찬가지로 사쓰마 출신이면서 서남전쟁에서는 신정부군에 충성을 맹세하여 초슈 세력의 노선을 따랐으며, 미우라 고로와 가쓰라 타로 등은 본래 초슈 출신이었다. 1887년에는 다시 초슈 출신의 노기마레스케[乃木希典]를 따라 1년 반 독일에 유학하여 군사사상을 공부하고 귀국 후 참모본부의 조례를 개정하였다. 1889~1898년까지 참모차장에 취임하여 황실 참모총장 아래서 참모본부 독립과 강화를 주도하면서 청일전쟁에 대비한 군비강화에 노력하였다. 참모본부가 육군성과 맞먹는 기구로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노력의 성과였으며, 청일전쟁에서 세운 공로로 1895년 8월 5일에 자작(子爵)이 되고 1898년 1월에 참모총장에 취임하였다(『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上).

4. 국권 탈취의 무법시대

1) 한반도 진출 초기의 '은전한' 조약들

조약 체결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청일전쟁 이전과 이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전에는 어떤 조약이든지 법적 요건을 다 갖추려는 일종의 준법 태도를 보였다. 이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조약을 통해 새로 갖게 된 관계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두려는 태도였다.¹²

〈표 2〉에서 보듯이, 일본은 청일전쟁 전까지 조선과 주요한 조약 4개를 체결하였다. 첫 국교 수립 조약인 「조일수호조규」는 전권위임, 비준 등에 관한 요건을 쌍방이 모두 갖추었다. 1882년 7월 17일 「제물포조약」은 임오군란으로 일본인 교관이 피살되고, 일본공사관이 불에 탄 사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본 측에서 비준을 넘어 조선 국왕에게 사죄 국서까지 요구하였다.¹³ 조선 정부는 일본 측이 입은 피해를 부정할 수 없었으므로 국서에 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¹⁴ 일본에 보낸 문건들에 의하면, ‘임오년 8월’ 일자로 예조판서(이회정)가 외무경(井上馨)에게 일본 측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를 표하는 공한이 보내졌다

12 笹川紀勝(2010), 「征韓論に對應する國際法體系の問題」(『法學論叢』 82-4,5 合併)는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일본 측에서 정한론을 실현하는 국제법 체계의 모색으로 이미 보호국론이 外務權小丞 宮本小一에 의해 제시된 것을 밝혔다.

13 제물포조약 제6조에 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14 일본공사관 주재 무관인 육군보병 대위 미즈노 카츠요시[水野勝義]의 보고는 “불을 궁당(空堂)에 지르고 사가와 아키다[佐川晁]이 석탄유(石炭油)를 가져와 여기에 붓고 말[簾]을 거두어 여기에 던져 화염이 병풍으로 옮겨 붙으니 이에 무리가 결사적으로 고향을 지르면서 나왔다”고 하였다. 김정명(金正明, 1986), 『朝鮮駐劄軍歷史-일한외교사료집성 별책 1』, 巖南堂書店, 解題 3면. 이에 따르면 공사관 방화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스스로 놓은 것이었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일본 측 접수 일자 메이지 15년 10월 20일, 記録局 접수).¹⁵ 일본 측은 이를 사죄장에 해당하는 국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일본황제의 답신(조선 측에서는 ‘來書’라고 표현하였다)을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를 통해 조선 정부에 보냈다. 조선 정부는 다시 양국이 협력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뜻의 국서를 8월 7일(음력)자로 수신사(조병호)와 종사관(이조연) 편에 보냈다. 이러한 국서 왕래는 비준서를 능가하는 사실 인증 문서였다.

〈표 1〉 일본 메이지 정부의 長州 출신 총리대신 및 재임 중 주요 사건 일람표

| 순서(代) | 총리대신의 이름 | 기간 | 한국 관련 주요 사건 |
|-------|----------|-------------------|---|
| 1 | 伊藤博文(1차) | 1885. 12~1888. 4 | 텐진조약(1885. 4) 제2차 징병제 시행(1887) |
| 3 | 山縣有朋(1차) | 1889. 12~1891. 5 | 군비증강, 방곡령 손해배상 |
| 5 | 伊藤博文(2차) | 1892. 8~1896. 9 | 조선반도 출병(1895. 6), 경복궁 침입사건(1894. 7), 청일전쟁, 을미개혁(1895. 2), 下關條約(1895. 4), 명성왕후 시해사건(1895. 10) |
| 7 | 伊藤博文(3차) | 1898. 1~1898. 6 | 독립협회 반정부 시위 러일전쟁을 위한 군비증강 |
| 9 | 山縣有朋(2차) | 1898. 11~1900. 10 | 타이완 식민체제 완료, 의화단사건 출병, 러일전쟁 준비 |
| 10 | 伊藤博文(4차) | 1900. 10~1901. 6 | 小村路線 등 한국 재진출 계획 수립, 러일전쟁 준비 |
| 11 | 桂太郎(1차) | 1901. 6~1906. 1 | 러일전쟁 개전(1904. 2), 한일의정서, 제1·2차 한일협약 요구, 통감부 설치, 이토 히로부미 통감 부임(1906. 1~1909. 5), 고종황제 강제 퇴위, 한일협약으로 내정권 박탈 |
| 13 | 桂太郎(2차) | 1908. 7~1911. 8 | 寺內正毅, 3대 통감으로 한국강제병합을(1910. 8) 주도하고 초대 총독에 부임 |
| 16 | 寺內正毅(1차) | 1916. 10~1918. 9 |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1918. 1) 선언에 따른 고종황제 독살 준비 협의 |

15 관련 문건은 필자가 일본 외교사료관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다.

〈표 2〉 근대 한일 간에 이루어진 조약의 비준 유무 일람표

| 연월일 | 조약 명칭 | 비준유무 (한/일) | 연월일 | 조약 명칭 | 비준유무 (한/일) |
|-------------|----------|---------------|----------|----------|---------------|
| 1876. 2 | 조일수호조규 | ○/○ | 1904. 2 | 한일의정서 | ×/× |
| 1882. 8. 30 | 제물포조약 | 國書(2회)/國書 | 1904. 8 | 제1차 한일협약 | ×/× |
| 1882. 8. 30 | 수호조규속약 | ○/○ | 1905. 11 | 제2차 한일협약 | ×/× |
| 1885. 1 | 한성조약 | 國書(2회)/? | 1907. 7 | 제3차 한일협약 | ×/× |
| 1894. 7. 25 | 대일본대조선동맹 | ×/× | 1910. 8 | 한일병합조약 | ×/○ |
| 1894. 8. 20 | 잡정합동조관 | ×/× | | | |

일본 정부는 「제물포조약」에 붙여 「한일수호조규속약」을 함께 처리하였다. 개항지(원산, 부산, 인천)의 왕래 이정(里程)을 50리에서 100리로 늘리고 외교관의 내지유력(內地遊歷)을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속약」을 이때 함께 처리하였는데, 이 조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준 절차를 밟았다.

1885년 1월의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에서 일본공사관이 불타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조약이었다. 이번에는 조선 측에서 공사관 화재가 조선인들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스스로 방화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한때 일본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공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¹⁶ 일본은 이런 수세를 타개하기 위해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를 전권대사(全權大使)로 파견하였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배상금 액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제물포조약」 때처럼 국서로 사의(謝意) 표명하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대하였다.¹⁷ 공사관이 불타고 사람이 다친 것은 창졸 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미리 헤아리지[逆料] 못한 점

16 이태진(2000), 「1884년 갑신정변의 허위성」,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174~175쪽.

17 갑신정변으로 조선 측에서 일본 측에 보낸 문건들도 모두 필자가 일본 외교 사료관에서 확인하였다.

을 인정하되, 국서는 일본천황이 전권대사를 먼저 보내온 것을 중하게 평가하여 이에 대한 답으로 보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국서 1〉로 칭함). 그리고 조선 측의 전권대신(좌의정 김홍집)을 임명하는 것도 국왕이 영의정(심순택)에게 내린 유지(諭旨)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여 국왕이 직접 나서는 것을 피하였다. 협상이 타결된 뒤에 동경에 사절(예조참판 서상우와 병조참판 목인택)을 보내면서 다시 국서를 보냈는데, 이는 사죄가 아니라 ‘징비(懲毖)의 뜻’을 보이는[展] 것이라고 하였다(〈국서 2〉로 칭함). 그러나 두 가지 국서는 모두 고본(稿本)으로 국왕의 어새가 직접 날인되지 않았다. 「한성조약」과 관련한 조선 측의 문건에서 날인이 된 것은 朝鮮督辦交涉通商事宜(김윤식)가 일본 외무경(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보낸 조회서(照會書)가 유일하다. 이 문건에만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之印」이라고 새겨진 관인이 사용되었다. 이 조회문은 예조참판과 병조참판에게 「國書」(〈국서 2〉) 전달의 임무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다. 이 「國書」가 나온 경위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인지 유지, 〈국서 1〉 등도 함께 보냈지만 모두 고본으로 국왕의 어새가 날인되지 않았다. 문건의 이런 상태는 곧 일본 측이 요구한 사의(謝意) 수준을 최저화시키려는 의도였다.

「한성조약」에서도 조약 내용에 대한 두 나라 군주의 의사는 분명하게 표시되었다. 일본 전권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는 첫 협상 자리(1885. 1. 7 양력)에 조선 측 전권대신(좌의정 김홍집)이 위임장(諭旨)에 근거하여 영의정이 발부한 것을 잇고 회담장에 오자 이를 가져올 때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 엄밀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다만, 조선 수신사(修信使)가 동경으로 가서 비준서에 해당하는 〈국서 2〉를 올린 뒤에 일본황제가 상응하는 비준서를 발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황제가 전권위임의 행위로 전권대신을 보내어 협상을 요구한 것이 곧 이 조약의 출발점이란 것을 조선 측의 두 국서가 다 같이 강조한 사실에 유의하면, 협상 결과에 대한 조선 군주의 비준서(〈국서 2〉)를 일본천황이 받는 것으로 일본 측이 비

준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최소한 이후에 일본황제가 「한성조약」의 내용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2) 청일전쟁에서 달라진 일본의 조약 체결 자세

- 국왕을 배제한 약식조약 등장

앞에서 살폈듯이 「한성조약」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서 형식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1894년 7월에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킨 당일인 7월 25일자로 조선 정부에 대해 「大朝鮮國大日本兩國盟約」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는 일본군이 청병(淸兵)을 격퇴하는 데 양국이 “공수(攻守)를 상호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조약으로, 그 유효기간은 청국과의 화약(和約)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였다. 조선 측의 외무대신 김윤식과 일본 측의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나란히 기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벌인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조약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조선의 군주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일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894년 7월 23일 새벽에 한반도에 시설된 전신선을 장악하기 위해 군주가 있는 경복궁을 침입한 뒤 그날 아침부터 내정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뒤에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측은 내정개혁을 추진할 주체로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내놓았지만, 조선의 관리들이 이를 기피하여 7월 말에서야 겨우 위원 10여 인을 채울 수 있었다. 일본은 개혁의 우선 과제로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의 분리 원칙을 내세워 군주권을 무력화시키고, 부중의 대표 기구로 내각을 세워 국정 주도권을 옮기고자 하였다. 이런 계획은 8월 20일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조선국대

일본양국맹약」이 이루어진 7월 25일 당시 조약에 관한 권한은 군주에게 있었는데도, 이 조약에는 군주의 의사가 표시될 기회를 전혀 두지 않았다. 국권 관련 조약에서 군주가 배제된 최초의 약식 조약이었다.

일본은 내각 구성에 관한 군주의 조칙이 나온 8월 20일자로 다시 외부 대신 김윤식과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 명의로 「暫定合同條款」을 처리하였다. 조선의 내정개혁에 양국이 동의한다는 것, 철도시설과 전신선 관리 등에 대해서는 시기를 보아 조관(條款)을 가급적 빨리 세운다는 것, 전라도 지역에 1개의 통상항을 연다는 것 등을 규정하면서 “7월 23일 왕궁 근방에서 일어난 양국 병원(兵員)의 우연한 충돌사건은 피차 모두 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다(제5조).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사건도 국제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 일본 정부는 이 조약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강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 조선 독립자주의 과업을 성취하는 문제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暫定合同條款」은 조선의 왕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조선 군주 측이 근시직(近侍職)의 보좌를 견지하면서 러시아·미국의 힘을 빌려 일본의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¹⁸ 특히 전신선 관리를 위한 일본 군부의 병력 잔류 문제를 놓고 일어난 대립이 왕비 살해의 참극으로 이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청일전쟁을 통해 도모했던 일본의 목표는 저지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暫定合同條款」도 군주의 개입을 배제한 부당한 침략 조약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표 1〉에서 보듯이 이 전쟁은 초슈의 대표적 정치인인 이토 히로부미 제2차 내각 아래서 진행된 초슈 세력이 자행한 정한론(征韓論) 실현의 제1차 시도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잠정합동조관」 이후 조선 군주와의 마찰

18 홍문기(2004), 「甲午改革 이후 秘書機關의 변천과 君主權」, 서울대 碩士論文, 26쪽.

을 해결하기 위해 10월 15일자로 조선문제에 정통한 초슈 출신 이노우에 가오루(당시 내부대신)가 특명전권공사로 투입된 것도 이 전쟁의 성격을 드러낸 한 국면이었다. 이 전쟁은 초슈 출신의 민간 정치인으로 짝을 이루었던 거물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 천황 대본영의 군부 총수, 감군(監軍), 육군대신 등을 모두 장악한 초슈 군벌이 마침내 정한론 실현으로써 조선 보호국화란 목표 달성을 위해 한반도로 발맞추어 나아갔던 전쟁이었다.

3) 10년 뒤, 러일전쟁에서 다시 등장한 파행 약식 조약들

1895년 10월 8일의 조선왕비 살해사건 국제적 공지에 몰린 일본은 타이완에 대한 식민지배체제 구축에 열중하여 한국에 대한 간여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군부는 러시아와의 결전을 위해 임시 특별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예산 가운데 거액을 군비 증강에 투입하였다. 조선 반도를 거쳐 요동반도로 진출해야 한다는 「정한론」에 뿌리를 둔 팽창주의 강박 관념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¹⁹

1900년 청국에서 의화단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8개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파병 기회를 얻었다. 1년 전 일본은 오랜 기간의 숙제였던 「조약 개정」에도 성공하여 국제적 입지가 크게 상승한 것을 배경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내는 행운을 얻었다. 일본군에게 내려진 엄정한 규율생활은 국제법 이행의 모범국이란 이미지를 남기는 데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外飾)에 불과하다는 것이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대로 드러

¹⁹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는 일본 초슈 세력이 정한론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한 러시아 위협론이 조작된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日露戰爭と韓國併合』前掲 安田常壽, 趙景達 編, 『近代日本のなかの「韓國併合」』; 和田春樹(2009, 2010), 『日露戰爭-起源と開戦』上「下」, 岩波書店.

났다.

일본 정부는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1904년 2월 8일에 인천항과 뤼순(旅順)항의 러시아 군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이어 2월 10일에 「선전(宣傳)의 조칙(詔勅)」을 내렸다. 한국에는 한국임시파견대가 들어와 서울에 주둔하였는데, 1개 사단 규모인 이 병력은 전시 편제의 제1군 가운데서도 제일 앞서 동원된 것이었다. 곧 한국주차군(韓國駐紮軍)으로 이름을 바꾼 이 부대는 서울에 장기 주둔하면서 국권 관련 조약을 강제하는 무력적 배경을 이루었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대한제국에 강요한 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 (1) 1904. 2. 23. 한일의정서
- (2) 1904. 8. 22. 제1차 한일협약
- (3) 1905. 11. 17(18). 제2차 한일협약
- (4) 1907. 7. 24. 제3차 한일협약
- (5) 1910. 8. 29. 한일병합조약

위 조약들이 가지는 형식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지적이 있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조약들은 대한제국의 국권에 저촉되는 사항을 다룬 것이면 서도 대부분 약식조약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비준서가 발부된 것이 없었다(표 2 참조). 조약 체결을 강요한 일본 측도 천황의 비준서를 갖춘 것은 최종의 「한일병합조약」 하나뿐이다. 일본 측은 (1)~(4)의 조약에서 내각이 「대한정책(對韓政策)」의 차원에서 조약안을 준비하여 어전회의를 통해 천황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기명 날인'을 받아낸 것에 대한 천황의 비준 절차는 특별히 구하지 않았다. 이런 처결방식은 침략행위에 대한 국가원수의 재가를 받는 것에 지나지 않

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양국 원수의 비준이 없는 조약으로 국권이 이양된다는 것은 국제조약 역사상 유례가 없다. 마지막 「한일병합조약」에서 후술하듯이, 정식조약의 요건을 다 갖추고자 하였지만 한국황제가 비준서에 해당하는 ‘칙유’에 이름자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초슈 세력은 청일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러일전쟁 때 도 국가 권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다. 다 알듯이 메이지 시대의 실질적인 정치지배자는 천황 전제정치에의 고문인 원로그룹이었다. 이들이 천황에게 총리대신을 추천하는 주체였다. 러일 전쟁 당시 원로그룹은 이토 히로부미(재임기간 : 1889~1909), 아마가타 아리토모(재임기간 : 1891~1922), 이노우에 가오루(재임기간 : 1904~1915) 등 3인의 초슈 출신이 중심을 이루었고 사쓰마 출신인 마쓰카다 마사요시[松方正義, 재임기간 : 1896~1924]가 더 있었다. 마쓰카다 마사요시는 재정 전문가로서 초슈 출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은 아니었다.²⁰ 당시 내각의 총리대신은 군인 출신으로 아마가타 아리토모의 지원 아래 독일 군사학을 공부하고 육군 참모부의 독립을 추진했던 가쓰라 타로였다.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타케 역시 아마가타 아리토모 계열로 육군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대본영의 전쟁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제1차 가쓰라 내각(1901. 6~1906. 1)은 하버드 법대 출신으로 청일전쟁 때부터 강성 개진론자로 나서 아마가타 아리토모, 가쓰라 타로 등과 지우(知友) 관계를 가지게 된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를 기용하였다. 이런 인적 구성 관계로 볼 때, 러일전쟁은 초슈 세력이 두 번째로 시도하는 정한론 실천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 세력이 주도하는 이런 팽창정책에서 법적 요건은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였다.

20 원로로는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 재임기간 : 1889~1900], 사이고 쓰구미치(?~1902) 등 사쓰마 출신이 더 있었지만 모두 러일전쟁 전에 사망하였다. 러일전쟁 중의 총리대신 가쓰라 타로는 1911~1913년 간에 원로가 되었다.

초슈 세력의 조약 강제에서는 문서 변조 행위가 반복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은 각서에 불과한 것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Agreement’란 단어를 임의적으로 제목에 넣어 약식조약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의 경우도 원문에는 비어 있는 제목 난에 ‘Convention’이란 단어를 넣어 정식 조약처럼 보이게 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것이 영국·미국 정부에 전달된 뒤, 이 나라 정부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묵인 받은 「제2차 영일동맹」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각각 성립시켰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 측은 역지를 부리던 중에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스스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한국 측의 손으로 작성하고 철해야 할 한국어 본의 조약문이 일본공사관 측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남았다.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만 해도 조약문은 각기 외교업무에 담당하는 양측 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였다. 즉 한국은 ‘대한국외부(大韓國外部)’, 일본은 ‘재한국일본공사관(在韓國日本公使館)’이란 글자가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였고, 각기 서로 다른 끈으로 문건들을 철하여 교환하였다. 한국 측은 황색, 일본 측은 청색의 끈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제2차 한일협약」에서 일본어 본은 「한일의정서」 때와 같은 용지와 끈을 사용했지만, 한국어 본은 기관명이 인쇄되지 않은 적색 선 패지에, 일본 측에서 사용한 청색 끈을 사용해 묶었다. 이것은 일본공사관 측이 한국어 본까지 직접 챙겼다는 명백한 증거다.

일본 측의 문서 변조 행위는 1907년 7월의 「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 후, 내정권을 장악하는 가운데서도 자행되었다. 1907년 6월에 고종황제가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에 「제2차 한일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자 통감부의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7월 20일에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고종황제뿐만 아니라 황태자(순종)조차 양위에 응하지 않자 蕙(親)王을 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

로 책봉하여 일본으로 데려가는 압박을 가하여 마침내 11월 18일에 순종이 즉위하게 만들었다. 통감부는 이날 순종이 태묘에서 읽을 서고문(誓告文)에 손수 서명(李堧)을 쓸 난 세 곳을 마련해두었다. 이날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2개월간 61건의 중요 문건의 황제 결재 난에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필체로 황제의 이름자[堧] 서명이 가해졌다. 법령은 모두 대한제국의 정부 조직, 재판소 구성, 감옥제도 등을 통감부의 관할, 감시 아래로 편입시키는 것들이었다. 통감부 관리들은 순종황제가 서고문에 써넣은 이름자를 친서제도의 서명으로 간주하고 제멋대로 대리 서명을 하고 61건의 법령을 황제 모르게 처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초슈 세력 주도하의 대한제국 국권 탈취 현장은 무법지대, 바로 그것이었다.

4) 순종황제, 「한일병합조약」에 서명 거부

최종 「한일병합조약」은 초슈 출신으로 육군 대신이던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1910년 7월에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병합준비위원회’²¹가 미리 준비한 문건들을 한국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하나씩 내놓으면서 실행되었다. 이때 테라우치 마사타케는 이완용에게 이번에도 이전처럼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약문을 낭독할 수도 있지만, 양국의 영원한 우의와 안녕을 위해 모든 요건을 갖추고자 하니 협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21 1910년 6월에 설치되었다. 외무성 정무국장 쿠라치 테츠키치[倉知鐵吉], 통감부 참사관 겸 외무부장 고마즈 미도리[小松綠], 내각 서기관장 시바타 카몬[柴田家門](의장 역할), 법제국장관 야스히로 반이치로[安廣伴一郎], 칙식국(拓植局) 부총재(副總裁)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大藏次官 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법제국서기관 에기 타스쿠[江木翼]가 참가하고, 통감부에서는 통감부 관방회계과장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서기관 나카야마 세이타로[中山成太郎]가 출석하였다. 海野壽福(1998), 『韓國併合始末關係資料』, 不二出版, 3~4쪽.

곧 위의 준비위원회가 정식조약을 갖추는 데 필요한 문건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에 협력해 달라는 뜻이었다.

8월 22일, 총리대신 이완용과 신임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기이한 요식행위가 치루어졌다.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건네준 「통치권 양여에 관한 조칙 안」을 내각 총리대신인 이완용이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통감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²² 이는 순종황제가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만나 통치권을 양여하는 조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전권위원 위임장에 해당하는 조칙이었다. 이완용이 들고 온 이 조칙 문안을 앞에 놓고 순종황제는 2시간 이상 침묵하다가 국새(大韓國璽)를 찍고 그 위에 이름자 서명을 하였다.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그로서는 긴 시간의 침묵 외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었다.

이완용은 그 전권위임장을 받아 통감의 관저로 가서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내놓은 조약문 4통(한국어 본, 일본어 본 각 2통)에 직함과 성명을 쓰고 날인하였다. 이때 테라우치 마사타케는 두 나라 황제가 신민들에게 병합을 알린다는 조칙을 미리 준비하여 함께 반포한다는 내용의 「각서(覺書)」도 내놓았다. 이 조약은 반포와 동시에 한 나라가 없어져 비준 절차를 따로 밟을 시간이 없으므로 병합을 알리는 조칙의 반포로써 비준에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건이었다. 이 조칙은 일주일 뒤인 29일에 반포되었는데, 여기에도 앞의 조칙과 마찬가지로 8월 29일자로 한국 내각 총리대신이 통감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요식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반포된 두 나라 황제의 조칙에 대한 결재 형태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황제의 것은 “짐 추밀고문의 지순(諮詢)을 거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재가(裁可)하여 이에 이를 공포한다”고 밝히고 「천황어새(天皇

22 奎章閣圖書 17853 『統別往復案』一, 詔勅 隆熙 원년~4년.

御璽)를 날인한 뒤 그 위에 메이지 천황의 이름자(睦仁 : 무츠히토)를 친서한 것이 선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황제의 조칙은 '칙유(勅諭)'라고 명칭이 바뀐 상태에서 전권위임의 조칙에 사용했던 국새「대한국새(大韓國璽)」가 아니라「칙명지보(勅命之寶)」라고 새긴 어새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어야 할 황제의 이름자 서명의 친서(親署)가 빠져 있었다.

「勅命之寶」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면서 행정업무 결재용으로 새로 만든 어새였다. 이 어새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킬 때 통감부 측에서 빼앗았고, 그 후 통감이 내정까지 감독하는 체제가 구축되면서 통감부가 이를 장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종황제의 병합 공포 조칙인 '칙유(勅諭)'에 이 어새가 날인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순종황제의 뜻과 무관했다.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운명하기 전에 걸을 지키고 있던 조정구(趙鼎九)에게 양국(讓國)의 조칙은 모두 “강린(強隣 : 일본을 뜻함)과 역신(逆臣)의 무리가 제멋대로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유조(遺詔)를 구술로 남겼다. 이 유언의 내용은 위 '칙유'의 상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유조는 약 2개월여 뒤 샌프란시스코의 한인회에서 발행하던 『新韓民報』에 보도되었다.

「한일병합조약」의 경우도 조약문에 강제의 물증이 남았다. 한·일 양국어 본이 모두 똑같은 용지에 똑같은 필체로 작성되고 역시 같은 끈으로 묶여 있다. 조약이 한쪽 의사로 강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세계 조약사상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없다.

5. 최후의 가격 - 고종황제 독살

이토 히로부미는 초슈 세력의 대표적인 민간 정치인으로서 이른바 초

슈 번벌 관료세력을 형성하여 조선·대한제국의 국권 탈취를 주도하였다. 서구 열강을 의식하여 초슈 군벌의 공격적인 대한정책(對韓政策)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지만 그 또한 궁극적으로 한반도 점령을 목표로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종황제 강제 퇴위(1907. 7) 이후 날로 치성하는 한국 의병들의 저항 기세를 꺾는 데 실패하여 1909년 6월 초에 통감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추밀원 의장 자격으로 러시아 대장대신(大藏大臣)인 코코체프와 모종의 밀약을 맺기 위해 휘순(旗順), 다렌(大連)을 거쳐 26일 아침 하얼빈(哈爾濱)에 도착하였다가 역 앞에서 대한의군(大韓義軍) 참모총장 안중근의 특과대에 의해 저격당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사건의 배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외무성 산하의 관계 지역 총영사관, 한국 주차군 사령부의 헌병대, 통감부의 경시청, 관동도독부의 육군참모부 등이 나서 밀정을 투입하여 배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주와 러시아령 연해주의 한국 항일 독립운동 조직의 실황에 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였다. 그 정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배일의 근원'이 경성의 한국황제라는 것이었다.²³

한국황제는 1907년 7월 강제 퇴위를 당한 직후부터 이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에게 지원금을 보내고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황제가 지원금을 내려 거사가 추진되었다는 탐문이 보고되었다. 외무성에 수집된 정보를 판독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정책을 수립하는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중심으로 한 육군 수뇌부, 곧 초슈 군벌의 핵심이었다. 일본 정부는 1910년 3월 26일에 안중근을 극형에 처한 뒤 바로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나서 한국 병합을 단행하는 순

23 이태진(2009),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高宗皇帝」,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미래』, 안중근·하얼빈 학회, 동북아역사재단.

서를 밟았다. 초슈의 군부 지도자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이미 한국병합에 동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육군 대신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한국 통감부의 통감을 겸하고 한일강제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주관하였고,²⁴ 강제병합 후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이 되었다. 그는 조선에 헌병을 앞세운 군사적 통치체제를 구축하여 조선총독부의 지배 체제는 곧 '정한(征韓)'을 실현한 군사 점령 통치체제였다.

한일병합은 제2차 가쓰라 내각(1908. 7~1911. 8) 아래서 강제되었다. 초슈 세력은 이토 히로부미 사거 후,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를 세운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와 협력관계로 초슈의 실세를 유지하였다. 이 집단은 이른바 초슈 번벌 관료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 집단이었다. 제2차 사이온지 내각(1911. 8~1912. 12)²⁵에 이어 초슈 군벌의 지원을 받는 제3차 가쓰라 내각(1912. 12~1913. 2)이 다시 들어섰다. 그러나 제3차 가쓰라 내각은 입헌 호헌운동의 도전을 받아 53일 만에 물러났다. 뒤를 이어 제1차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 내각(1913. 2~1914. 3)이 들어서 호헌운동의 새로운 정치 기운이 돌았지만, 독일·영국으로부터의 병기 구입 뇌물 사건이 일어나 이 내각도 1년여 만에 끝났다. 야마모토 곤베에는 사쓰마 해군 출신의 정치가로서 초슈 군벌과 동질적이지는 않았지만 가쓰라 타로와 협력관계를 적절히 유지해 온 인물이었다. 야마모토 곤베에 실각 후, 원로회의에서 가장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후배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바로 천거하고 싶었지만 같은 초슈 계의 가쓰라 내각이 무너진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선택으로 오쿠마 시게노부[大隅重信]를 추천하였다. 초슈 출신의 원로 이노우

24 위와 같음.

25 제1차 사이온지 내각은 1906년 1월부터 1908년 7월까지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한 고종황제 강제 퇴위 등이 이 기간에 일어났다.

에 가오루와 합의한 것이었다. 자유민권운동가로서 명성을 누리고 헌정당(憲政黨)을 세운 오쿠마 시게노부는 제3차 이토 내각에 이어 내각 총리대신(1898. 6~1898. 11)이 되었지만, 초슈 세력의 우세 속에 얼마 후 고령으로 은퇴하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미 정당 기반을 상실했으면서도 아직 민중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를 새로운 협력자 관계로 선택하고 제2차 오쿠마 내각을 출범시켰던 것이다.²⁶

오쿠마 내각은 출범 초기에 제1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일본은 개전 한 달 뒤인 1914년 8월에 독일에 선전포고하여 적도 이북의 남양제도(南洋諸島)를 점령하는 한편, 독일 조차지인 중국의 칭다오(靑島)를 점령하고 중국에 21개조를 요구하였다. 초슈 세력이 한반도에 이어 중국으로 진출하는 꿈을 실현하고자²⁷ 오쿠마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오쿠마 내각은 2년 이상 장수하였지만, 21개조 실현문제, 육군증사(陸軍増師) 문제,²⁸ 정우회(政友會) 세력 타파 문제, 러시아와의 제휴 강화 문제 등 여러 사안에 얽히다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인도 아래 1916년 10월에 총사퇴하였다.²⁹ 여기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천거하는 방안을 실현시켰다. 이는 전시 중에 초슈 군벌의 중심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즈음 입헌정우회 출신으로 정우회(政友會)를 결성하여 내각의 대외 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던 하라 다카시[原敬]의 도전³⁰이 만만치 않았기

26 카와다 미노루[川田 稔](1998), 『原敬과 山縣有朋』, 中公新書 1445, 4~6쪽.

27 荒井信一(2007), 「對華21か條問題の予備的考察」, 제7차 「한국병합」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28 한반도 주둔군을 1개사단에서 2개 사단으로 늘리는 문제.

29 川田 稔(1998), 앞의 책, 54쪽.

30 川田 稔(1998), 위의 책은 하라 다카시의 의회 정당정치와 국제주의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번벌 과두정치의 팽창주의와 대립 전개한 것을 심도있게 논하였다. 하라 다카시는 이토 히로부미, 사이온지 긴모치의 입헌정우회 출

때문에 대열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1916년 10월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각(組閣)의 임무를 받아 일본으로 떠나고 초슈 군벌 후배인 한국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후임 총독이 되었다. 조선은 여전히 초슈 세력이 장악한 상태였다. 초슈 군벌의 가쓰라 타로는 1913년, 이노우에 가오루는 1915년에 각각 사거하였으므로 1916년 당시, 초슈 군벌의 중심은 아마가타 아리토모와 데라우치 마사타케 두 사람이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총리대신이 되었지만 재임 중의 국제관계는 일본제국, 특히 초슈 세력의 전통적인 대외 팽창주의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일로협약」(제4차)은 효력을 상실하여 일본은 사실상 유력한 동맹국을 잃었다. 더욱이 시베리아출병(1918. 8)으로 소비에트·러시아 정부와 대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도 알력이 커졌다. 특히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와 소비에트 정부가 공표한 제4차 일로협약 비밀협정 내용, 즉 중국 진토로 뺏아가려는 일본의 세력 확대 기도는 중국을 둘러싼 미국·영국과의 국제적 긴장을 조성하여 일본에 대한 경계가 강해지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대전(大戰)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져 들고 있었다.³¹

이런 가운데 1918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은 상원 연두 연설에서 14개조를 발표하여 약소 민족의 민족자결주의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한국을 강제병합하여 식민지로 통치해 온 초슈 군벌 세력에게는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발표가

신이지만 관료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의회주의자로서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등 대외정책에서도 일본의 국제적 안정 확보에 역점을 두었던 자유민주적 정치가였다.

31 川田 稔(1998), 위의 책, 4쪽.

나온 직후인 1월 13일에 동경에 체류하던 영친왕(英親王)을 6년 만에 고국으로 보냈다. 윌슨 대통령의 선언은 1915년 1월부터 '평화의 방책'에 관한 연구로 시작된 것이었으므로 총리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 통치의 실질적인 주관자로서 프로젝트의 진행을 살피면서 미리 대책을 세웠을 것이 틀림없다.³² 영친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호적 처우는 8월 고종황제 생일 때에도 그를 귀국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일본 황족 출신인 마사코[方子] 여왕과의 약혼이 발표되었다.³³ 인질인 영친왕에 대한 이러한 과격적 대우는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고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에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돈독한 것이라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이런 책략을 썼던 것이다.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9년 전 육군대신으로 '하얼빈 사건'에 대한 배후 정담 보고들을 총괄하면서 그는 고종황제가 해외 독립운동 세력을 직접 양성하면서 항일 투쟁을 고취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심지어 하얼빈 거사 자체가 황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고까지 받았던 그였다.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대통령의 과격적 선언 앞에 '덕수궁(德壽宮)의 이태왕(李太王 : 고종황제)'이 조용히 있을 리 만무하다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만약 그가 움직인다면 이미 국제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일본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빚어지리라는 판단은 쉽게 나올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후배인 조선총독 하세가

32 이태진(2009), 「고종황제의 毒殺과 일본 정부 首腦部」, 『歷史學報』 204집, 436~437쪽.

33 일본 정부는 11월 28일에 헌법의 「황실전범(皇室典範)」에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영친왕과의 결혼을 성사시켰다. 결혼일은 1919년 1월 25일로 예정되었다.

와 요시미치에게 중대한 밀명을 내렸다. ‘이태왕’에게 1905년 11월의 보호조약이 유효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독살하라는 것이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리대신이 하세가 요시미치 총독에게 고종황제 독살을 지시하였다는 언급은 1919년 현재 일본 궁내청의 제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 장관이던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의 일기에 남아 있다(1919. 10. 26~11. 3).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 제10주년 제(祭)에 참석한 조선의 송병준(宋秉駿)이 당시 살해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이왕직(李王職)의 장관(長官) 민병석(閔丙奭)과 찬시(贊侍) 윤덕영(尹德榮) 등이 자신에게 전한 말이라고 한 것을 구라토미 유자부부가 궁내청의 조선 관계자들에게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황족으로 영친왕의 세자빈이 되어 조선 왕실에 가장 가까이 와 있던 마사코[方子, 이방자] 여사가 쓴 수기에도 독살 사실을 적고 있다.³⁴ 마사코 여사는 처음엔 총독부가 발표한 대로 뇌일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지만 곧 총독부 관리의 지시에 따라 독살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본 황실과 조선 왕실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전하는 사실에 대한 전언과 증언은 진실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구라토미 유자부로의 일기 내용은 미확인의 ‘소문[風說]’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나와 있지만,³⁵ 마사코 여사에게

34 李方子(1973), 『すげた歲月』, 明暉園, 62~65쪽. 이방자 여사는 같은 내용을 다른 여러 수기에서도 반복해서 쓰고 있다. 2009년 4월 23~24일,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차 ‘한국병합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학술회의에서 필자가 앞 「고종황제의 毒殺과 일본 정부 首腦部」를 발표한 뒤, 이 발표를 들은 최영호(崔永浩) 교수가 회의 후 논평을 통해 李方子 여사의 수기에 동일한 언급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35 李昇燁(2009), 『李太王(高宗) 毒殺說의 檢討』, 『二十世紀 研究』 제10號, 京都大學 文學部. 이승엽 씨는 본인의 발표문에 대해 세부적인 검증으로 반론을 폈지만 李方子 여사의 證言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한 것이다. 그의 비판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 논문으로 일단 대신하고자 한다.

독살 확신을 준 사람이 구라토미 유자부로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독살설을 부정하는 반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영친왕-마사코 결혼의 고문이었던 구라토미 유자부로는 1922년 마사코 여사가 왕세자빈으로 서울(京城)에 올 때 수행원으로 함께 왔다.³⁶ 1895년 10월 8일의 왕비 살해 사건에 비추어 본다면 고종황제 독살은 초슈 군벌이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것은 주권 수호를 위해 일본에 가장 저항적이었던 대한제국 황제에 대한 최후의 가격이었다.

6. 맺음말

이 글은 1856년 요시다 쇼인이 하기[萩]에 소규모 학교를 열어 초슈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면서 「정한론」을 가르친 이래 1910년 한일강제병합을 거쳐 1919년 1월에 고종황제가 독살될 때까지 63년간에 걸친 메이지 일본의 한국 침략사를 초슈 번벌세력의 ‘정한’의 실현이란 각도에서 정리해 본 것이다. 지금까지 근대한국사와 근대한일관계사는 개화, 곧 서양 근대 문명 수용의 성취 정도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밝혀진 침략의 주체나 침략의 실상은 가려져 있는 상태였다. 이 정리가 그 베일을 걷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솔직히 그간 국내 학계는 일본근대사에 대한 숙지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침략 주체에 대한 파악을 심도있

36 이태진(2009), 앞의 글, 440쪽. 구라토미 유자부로는 호헌파(護憲派) 계열의 인물로 초슈 번벌과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는 1913년 제1차 야마모토[山本] 내각에 법제국 장관이 되고, 이듬해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勅選)되어 1915년 이후 궁내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920년에는 추밀원 고문관, 1925년에는 동 부의장을 거쳐 1926년에 의장이 되고, 1934년 중일전쟁 중에 추밀원 의장을 사임하고 향리로 돌아가 노년을 보냈다. 그의 이런 경력은 초슈 세력의 군국주의적 성향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게 살피지 못한 상황이었다. 굳이 말하면, 가장 중요한 국면을 빠트린 상태에서 침략사를 논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었다.

조슈 번벌세력, 구체적으로 번벌 관료세력과 번벌 군부세력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추진된 일본의 한국 침략사는 한마디로 목적적이요, 침략적이요, 반인륜적이었다. 필자는 지금까지 조약 강제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범한 조약의 형식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절대 무효의 뜻으로 한일병합 불성립론을 펴왔다. 이번 고찰을 통해서는 근대 일본의 한국 침략 역사는 법적 시비를 넘어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부각되었다. 스승에게 전수받은 사상이 아무리 숭고한 것이고 신성한 천황의 나라 권위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웃 나라의 왕과 왕비를 살해하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인륜의 문제다. 무사사회의 전통이 저지른 과오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광기의 역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연한 역사의 진실은 자성으로만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8년 전인 1992년에 고종시대 공문서 더미에서 순종황제의 친서가 위조된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된 필자의 한일병합 불법성에 관한 연구가 이 글에서 일본인의 반인륜적 행위를 거론하기에 이른 것은 필자의 학문 여정에서도 비극적 사건이다. 인륜 문제는 역사학자가 들어서지 말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종착점에서 드러난 이 참담한 역사의 진실은 일본인들보다도 한국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왜 이런 일까지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가에 대한 민족적 수치심이 밀려들기 때문이다(2010. 7. 4).

근대 한일관계와 한국병합 -대한제국 시기의 대일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수 주진오

1. 머리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식민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가졌지만 유독 한일 간에는 깊은 골이 메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에 한국이 다른 구미 열강의 식민지를 경험했어도 그 나라와 이렇게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아직까지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은 흔히 고대부터 한반도에서 고급문화가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교적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문명의 땅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단지 군사적으로 우월하게 되었다고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수탈한 일본에 대해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그런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근대 문명개화론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나라였으므로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 일본은 선망과 수용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 대부분을 보면 일본사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일본 위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독립시켰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후 러일전쟁까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이 독립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독립국이었다. 청과의 관계에서 속방으로 규정되었고 자주권 침해가 심각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과의 쌍무적 관계였을 뿐이다.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이 청의 속방에서 벗어난 독립국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일본의 의도는 조선의 진정한 주권 수립이 아니라 청으로부터 분리시켜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에 다름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모노세키[下關] 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의 주권을 유린하였고 그 강도는 청보다 더욱 심각하였다. 그나마 삼국간섭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조선의 왕비까지 시해하는 만행을 벌였던 것이다.¹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전개되었던 독립협회와 황실주도의 근대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는 필연이었고 열강 가운데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에 합방된 것일 뿐이라고 서술한다.²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대한제국이 스스로 근대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귀결이었는가?

한국 식민지화는 메이지유신 이후 줄기차게 전개되었던 일본의 침략야

욕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진행하면서 조선을 보호국화 또는 식민지화하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그것은 단지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재야의 자유민권운동 세력도 마찬가지였으며 민중들도 열심히 호응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화폐인물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자 영웅이지만, 한국근대사에서는 누구보다 한국 침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역설을 한일 양국민이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일본이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미 잘 알려졌던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정부와 지식인들은 그러한 일본의 야욕에서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지금, 근대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서 한일강제병합이 나타난 과정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일본의 한국침략사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대한제국 시기에 전개되었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는 오늘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족간의 대립과 열강의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여 역사적 성찰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이다.

- 1 주진오(2010), 「청일전쟁의 ‘조선독립론’ 비판」, 『한일역사의 쟁점 2』, (조광·손승철 편), 경인문화사.
- 2 이러한 역사인식을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답습하여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를 표방하며 한국 역사학계에 대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대한제국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고종황제 역사청문회』(푸른역사, 2005) 참조. 뉴라이트 세력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비판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서해문집, 2008) 참조.

2. 아관파천 직후의 국제정세와 대일관계

1896년 2월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은 한국에서 일본세력이 급속하게 몰락하게 된 사건이었다. 당시 만주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러시아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고종(高宗)의 보호 요구를

베베르 공사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었다. 아직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무력충돌만은 피하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관파천이란 사건은 한국 국왕이 스스로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한 것이었기에 러시아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러시아는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외세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문제는 여전히 러시아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권을 요구하는 미국과 프랑스에 대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영국인 브라운을 재정고문으로 위촉하였다.

이때 러시아 측은 조선 정부가 일본의 이권요구에 대해서만은 거절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완전한 군대 철수문제까지는 개입하지 않았다. 베베르-고무라[小村壽太郎] 각서가 그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민영환(閔泳煥)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파견하여 제시한 차관 제공과 러시아 군대의 왕궁경비 등을 골자로 하는 보호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 또는 내용의 극소화를 지향하였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베베르-고무라 각서를 인정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공동행동을 약속함으로써 일본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로바노프-아마가타[山縣有朋] 의정서다.³

그런데 1895년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러시아와 미국에 접근했던 왕실 측근세력들로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세력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춘생문(春生門) 사건과 아관파천의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중심이 되어 아관파

3 주진오(1987),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의 구조와 전개」, 『학림』 8,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72~73쪽.

천 이후 신 정부 내에서 개혁세력의 집단화를 추구한 것이 독립협회 창립으로 나타났다. 독립협회의 핵심세력은 서재필(徐載弼), 안경수(安卿壽), 이완용(李完用)이었고 윤치호(尹致昊)는 나중에 합류하였다.

당시 이들이 표방했던 독립이란, 청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미 독립주권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은 일본이 생성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아관파천 이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당시 정부의 재정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일본 신문에서 러시아 상인 브리너가 압록강 연안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문제를 가지고 “반러시아 감정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반러시아 감정은 한국인이나 한국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그 계약 체결에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 고종이 아관파천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한국인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데 왜 자기들의 국왕을 보호해주는 나라를 미워하겠는가? 오히려 일본의 영토적 야욕에 의혹을 품고 있을 뿐”⁴이라고 반박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의병에 의해 살해된 일본인들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독립신문』은 허가 없이 내지에 들어간 자에 대한 배상 요구는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은 일본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었고 을미사변으로 민중의 악감정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1897년 일본 예산에 대해서도 군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군사력으로도 자체방위는 충분하니 학문과 상업에 힘쓰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4 「논설」, 『독립신문』(1896. 11. 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켜준 은인이라고 하면서 “몇 사람들이 자기 정부의 뜻을 잘 몰랐거나 일을 할 줄 몰라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며 일본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삼가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통상만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관파천 후에도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대신, 이들의 주둔은 “의병들이 이유 없이 외국인을 살해하고 나라를 소란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독립협회 세력들은 일본의 정책이 직접적인 주권침해로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일본과의 교류는 확대될 수 있으며, 일본 정부의 정책은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⁵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보호 요구를 소극적인 태도로 거절하고, 특히 일본의 차관을 변제하고 개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차관을 거절한 것은 한국 내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민영환은 귀국 후, 러시아는 한국을 도울 의사가 없다고 고종에게 진언하고 환궁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일본공사관 측과 내응하고 있었다. 독립협회 회장 안경수도 일본공사에게 한국 정부 내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었고, 이완용도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고종은 경운궁(慶運宮)으로 환궁을 단행하였으며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3. 러시아의 적극진출정책과 독립협회의 대립

1897년에 이르러 러시아의 만주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

⁵ 주진오(1987), 앞의 글, 91~92쪽.

따라 차선책으로 한국진출방침이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차관 제공 같은 경제적 방식이 아니라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을 파견하여 정치·군사적 억압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영국은 러시아의 대한 진출방침을 한만동시진출정책으로 받아들여 견제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국내에서 열렬한 팽창론자로 알려졌던 스페이어가 주한공사로 부임하면서 러시아의 한국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선 다른 열강들이 요구하고 있던 개항장의 추가지정을 반대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요청한 바 있던 군사교관의 증파를 통보하고 고빙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⁶

이러한 러시아의 변화를 독립협회는 심각한 주권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열강 간의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중립 국가를 구상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이었다. 『독립신문』은 추가개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군사교관의 증파는 반대하였다. 특히 군사교관 증파 원인으로 러시아가 제기한 한국군대의 증강 자체를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요구하지만 않으면 차지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군사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나라 안의 동학이나 의병 같은 토비들이나 평정시킬 수 있으면 넉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편파 외교로 이로 말미암아 있을지도 모를 다른 열강에 의한 정부 전복 위험이 언급되고 있었다.⁷ 여기서 다른 열강이란 일본을 의미하였다.

독립협회의 초대 위원장이자 2대 회장이었던 이완용은 외부대신으로서 군사교관의 고빙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해임되자, 『독립신문』은 “나라 권리를 외국에게 빼가지 않으려고

⁶ Synn, Seung-kwon,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 : 1876~1904*, 육법사, 250쪽.

⁷ 「논설」, 『독립신문』(1897. 5. 25).

애쓰다가 미움을 받아 갈린 용기 있는 대신”으로 칭송하였다.⁸ 당시 이완용이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했던 배후에는 가토 마사오[加藤増雄] 일본공사가 있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군사교관 증파는 로바노프-아마가타 의정서 위반이라는 이유로 항의하자 러시아 정부는 계약체결 연기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는데, 가토 마사오가 이를 이완용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⁹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킨 것은 일본 측이 고의적으로 로바노프-아마가타 의정서를 왜곡해서 발표한 사건이었다.¹⁰ 이를 통해 러시아가 조선에 차관을 제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교관만 증파하려는 러시아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의 불신감이 고조되었다. 그에 따라 정동구락부 세력, 즉 독립협회 주도세력들이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일본과 영국 측에 가담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위기의식이 높아진 러시아는 적극적인 간섭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세력균형의 파괴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영국은 극동함대를 제물포에 정박시켜 무력시위를 하였고 브라운 재정고문의 해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일본은 이에 호응하여 대한해협을 봉쇄하고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감시하였으며,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영국에게 넘겨주는 대신 영국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지원하도록 추진하였다.¹¹ 이는 뒤에 영일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 대한 독립협회의 태도도 달라졌다. “청일

8 「논설」, 『독립신문』(1897. 11. 11).

9 「京城騷擾善後策に關する件」, 『日本外交文書』 31-2, 452쪽.

10 李玟源(1994), 「俄館播遷 前後의 韓露關係 : 1895~18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33~136쪽.

11 吉田和起(1966), 「日英同盟と朝鮮侵略」, 『日本史研究』 84, 12~13쪽.

전쟁 후에 한국에서 행악을 일삼았던 것은 일본인 가운데 무식한 평민들이었지 일본 정부나 지식인들의 의사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일본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옹호하였던 것이다.¹² 또한 일본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청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열강과는 다르다고 평가하였다.¹³ 여기서 다른 열강이란 러시아를 의미한다.

독립협회가 가장 반발한 사건은 러시아가 부산 절영도(絶影島)에 석탄기지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이것을 러시아가 한국 영토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받아들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심지어 1898년 2월에 열렸던 독립협회 토론회에서는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한국이 러시아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¹⁴ 또한 135명의 회원이 연명한 가운데 안경수를 대표로 러시아의 압력을 비판하고 절영도 석탄기지를 불허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정부가 일본에게 허가한 석탄기지의 전례에 따라 허가했을 뿐이라고 회답하자 이번에는 일본의 석탄기지도 환수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¹⁵ 그러나 일본 석탄기지의 회수문제에 대해서 독립협회 지도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¹⁶ 러시아가 절영도 조차를 취소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¹⁷

절영도를 러시아가 조차하는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2 “Editorial Notes”, *The Independent*(1897. 8. 9).

13 「외국통신」, 『독립신문』(1898. 2. 3).

14 『尹致昊日記』(1898. 2. 13).

15 『大韓季年史(上)』, 177~178쪽.

16 『尹致昊日記』(1898. 3. 3).

17 鄭喬는 일본도 석탄기지를 회수해 왔다고 하였으나(『大韓季年史(上)』, 183쪽) 일본은 1899년에도 借地料를 대한제국에 납부하고 있다(『舊韓末外交文書-日案(4)』, 353쪽).

그에 못지않게 일본이 받을 타격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부산의 상권과 토지점유에서 다른 열강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산 앞에 있는 절영도에 러시아 기지가 설립된다는 것은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이었다. 더욱이 그곳은 대한해협(대동해협)의 관문이라 할 수 있어 일본해군의 작전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팔지 말 것을 지시하고, 브라운을 통해 이곳이 조계지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였다.¹⁸

일본인들이 독립협회의 반러운동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구체적 기록은 없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독립협회의 주요 인사들이 피신할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일본공사가 윤치호에게 사람을 보내 스페이어가 독립협회의 지도자들을 해칠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을 통해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¹⁹ 그리고 독립협회 지도부가 기획한 만민공동회에서도 일본인들이 세운 경성학당 학생들이 연사로 등장하고 있었다. 일본 입장에서 독립협회의 반러운동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을 것이다.

사실 대한제국이 러시아에 절영도 석탄기지를 허가한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영토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인천에 일본의 석탄기지를 허가한 선례도 있었다. 오히려 당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반러시아 운동은 일본을 견제할 절호의 기회를 가로막았다. 지나친 공포의식이 결과적으로 국민여론과 정책결정을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은 “이전 정부사람들이 편벽되게 일본을

18 「露國絶影島石炭庫用地に關し報告の件」等, 『日本外交文書』 31-1, 190~198쪽.

19 『尹致昊日記』(1898. 3. 9).

민어 일본의 권리가 너무 성하므로 아라사가 판을 뒤집어 친일정부가 무너졌는데 또 근일에 편벽되이 아라사만 친하게 지내려”한다고 하여 정부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

…… 각국을 사귀는데 팔방미인의 자태와 …… 편벽되이 행하지 말고 동편서편에 연합하여 화친하고 서로 제어하는 세를 엮은 즉 이는 보호중립에 가까우니라 중립으로 독립에 이르는 정치가에게 용이한 수단이다.……²⁰

라고 하여 세력균형에 바탕을 둔 중립 외교를 제시하였다.

결국 고종은 이러한 각계각층의 성원과 일본공사의 자문에 따라 러시아의 지원을 거절하는 회답을 보냈다. 여기에서도 일본공사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 황실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고종에게 러시아의 지원을 거절할 것을 권고하고, 나아가 러시아 공사관에 보낼 회답공문까지 작성해주고 있었다.²¹

러시아는 일본에게 재정고문을 넘겨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는 한편 러시아가 만주를, 일본이 한국을 차지한다는 한만교환론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로젠-니시[西] 협정을 통해, 비록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우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우위만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국에 침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1898년 4월 이후 한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외세는 러시아

20 「논설」, 『독립신문』(1898. 1. 20).

21 「排露熱發興并に露國士官顧問官等撤還の件」, 『日本外交文書』 31-1, 165~70쪽.

가 아니라 다시 일본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서 경제적·외교적 우위를 확보함에 따라, 무리한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여 열강 및 한국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침략정책을 집행하였다. 바로 시장 확보, 이권침탈, 문화적 침투 등의 방법이었다. 더욱이 이제는 영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자가 되어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할 수 있었다.

4. 독립협회의 개혁운동과 일본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철수로 “한국은 이제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로젠-니시 협정을 “러시아와 일본이 함께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내정개혁운동에 돌입하였다. 이때에도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인 모스로부터 양도받은 경인철도부설권과 1898년 8월에 침탈한 경부철도부설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를 “대한독립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였다. 『독립신문』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경성학당에서 한 강연을 논설로 실기도 하였다.²² 독립협회가 일본이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켜주었다는 논리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더 나아가 독립협회 회원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위해 열린 시사에 참석하여 그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다.²³ 독립문이 그려진 은제 찻잔 한 벌을 선물하기도 했다.²⁴

22 「논설」, 『독립신문』(1898. 8. 31).

23 그 시들은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編(1981), 『伊藤博文關係文書』 9卷, 塙書房에 실려 있다.

24 『大韓季年史(上)』, 183쪽.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일본은 “한국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심은 없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다. 영국이 일본으로부터 웨이하이웨이(威海衛)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대신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것은 영국이 일본의 한국 독립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하였다. 한성에 있는 일본군대에 대해서도 “그들은 한국인들이 이유 없이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쳤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와 있는 것”이라 옹호하고, 오히려 “다행한 일은 그들이 없었다면 동학과 의병이 벌써 경성을 범했을 것이요, 경성 안에서 무슨 요란한 일이 있었을지 모를 일”이라고 하였다. 또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양국가들이 힘을 합해 러시아를 막으려는 것이지 한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대동합방론을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²⁵ 『매일신문』에는 “하루 빨리 일한 양국이 협력하여 대동합방이라 정족지세로 순치보거하면 아세아 일편이 능히 동장철벽을 이룰지니 아름답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논설이 자주 실리고 있었다.²⁶ 광무협회의 대한신보사에서는 새로 내기로 한 『신국민』이라는 잡지에 「대한지전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공모하면서 당선자에게 상품으로 『대동합방론』을 준다는 광고를 내고 있었다.²⁷ 이는 훗날 계몽운동 시기에 나타나는 인종경쟁론에 입각한 동양평화론, 일본맹주론의 선구가 되는 것이다.²⁸

안경수는 쿠데타를 준비하였다가 음모가 탄로나자 일본공사관의 비호로 피신한 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같이 쿠데타 세력은 실패 후 일본을 도피처로 삼았고 일본이 이들을 보호하는 형식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25 『독립신문』(1898. 6. 7).

26 『매일신문』(1898. 9. 23, 11. 3).

27 『매일신문』(1898. 6. 23).

28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일본에 있었던 박영효(朴泳孝)는 만민공동회를 폭력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내는 한편 자신의 측근들을 귀국시켜 배후에서 선동하였다. 결국 고종이 군대를 동원하여 민회를 강제해산시켰을 때도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일본인과 미국인의 집에 피신하였다.²⁹ 이후 일본공사의 중재로 타협이 시도되었으며 고영근(高永根) 등은 일본에 망명하였다.³⁰

아관파천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는 개화파들의 숫자는 급증하였다. 망명 초기만 하더라도 갑오개혁기의 불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유길준(兪吉濬), 조희연(趙羲淵) 등과 박영효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다. 그런데 1896년 말부터 이들은 갑자기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들의 동향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박영효 일파는 1898년 국내에서 독립협회가 반러시아 운동과 정치구조 개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고 고무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구성도 박영효가 정계복귀를 하는 데 유리하게 되어간다고 기대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신문들도 박영효의 귀국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³¹

박영효의 핵심 측근세력들은 이때 귀국하여 니현(泥峴)의 일본인 거류지에 잠복해 있으면서 민회와 접촉하였다. 이들은 당시 민회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해 독립협회의 사정을 살펴본 뒤 일차적으로 박영효의 귀국일시를 알아보기 위해 귀국한 것이었다. 이들은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한편으로는 국내 사정을 수시로 일본에 있는 박영효에게 알려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³² 그러나 지원을 기대하였던 일본이 오히려 현실인정 노선을 취하면서 박영효-안경수 등의 귀국을 가로막자, 그들의 계획은 결정적으로 방해를 받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협

29 『尹致昊日記』(1899. 2. 1).

30 『大韓季年史(下)』 19~22쪽.

31 『독립신문』(1898. 4. 7); 『매일신문』(1898. 6. 20).

32 『高宗實錄』 40, 光武 4년 2월 9일.

회도 해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위협을 느낀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이미 로젠-니시 협정으로 한국에서의 우위를 인정받고 자신들의 침략정책을 차분히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무정부상태가 계속되어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나아가 독립협회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제2의 아관파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것은 일본의 계획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거류지로 독립협회 회원들이 피신하여 “민회파 모의의 본진”을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한 피난지로서 근신하고 숨어 있으면 모르되 어떠한 운동의 근거지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퇴거시키겠다”고 경고하였다. 한편으로는 고종에게 독립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고, 고종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군대에게 보호요청을 하겠다는 것을 수락하고 있었다. 일본은 양측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모두 환심을 얻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협회에게 일본은 한국이 닮아야 할 모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의원을 설립하지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함은 고금 사기와 구미 각국정형을 보면 알 것이다. …… 서양개화를 모방하기 전에도 일본은 우리보다 백배나 문명한 사람들인데 서양을 배우기 시작하여 30년 동안 놀랍게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메이지 23년에서야 국회를 시작하고, 상하의원을 설치하기 전에 구미 각국에 파견하여 깊이 연구를 하였다”³³고 부정하였다.

한편 독립협회의 자유무역론은 당시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방을 의미하였다. 특히 미곡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며 특권상업체제의 해체를 주장했다. 국내의 곡가 상승이나 상권침탈

33 「하의원은 급치 않다」, 『독립신문』(1898. 4. 7).

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독립신문』에서는 외국산 상품이 가격 면에서 저렴하므로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며, 그 때문에 국내 수공업자들이 몰락한다 하여도 그보다 많은 숫자의 소비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³⁴ 결국 독립협회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의 세계체제, 즉 세계자본주의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단지 경제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국권수호의 방안이라고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개방경제론 또는 국제분업론적인 시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가 한일 간의 통상확대를 논할 당시, 그 무역구조는 한국이 농산물과 광산물 등 원료를 수출하고 일본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익이 되는 이유는 “일본에서 공업화가 진전되면 원료생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므로 원료를 조달하고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³⁵ 아울러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없으니 농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무역이나 공업을 조선인이 직접 할 생각은 아직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김옥균을 암살하여 독립협회 측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던 홍종우(洪鐘宇)는 일본군대의 철수, 일본화폐의 유통금지, 미국수출의 금지 등을 촉구하였다.³⁷ 그러나 독립신문에서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특히 일본화폐의 유통금지에 대해서 “한국화폐의 실질가치가 미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었다.³⁸

34 「논설」, 『독립신문』(1898. 6. 9); “New Treaty Ports”, *The Independent* (1898. 6. 7, 6. 9), 참조.

35 “Editorial”, *The Independent*(1896. 10. 9).

36 「논설」, 『독립신문』(1897. 6. 1).

37 「논설」, 『독립신문』(1898. 3. 22); “Local Items”, *The Independent*(1898. 4. 12).

38 「논설」, 『독립신문』(1898. 4. 4).

5. 독립협회 해산 이후 대한제국의 대일관계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고종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유일한 도전세력으로 남아 있는 박영효, 유길준 등 망명자들을 소환하는 일이었다. 일본도 이들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와 이로 말미암은 고종의 반일감정을 우려하여 이들을 귀국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결국 국제적 관례를 들어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안경수, 권형진이 사면을 전제로 귀국했다가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들을 비호함으로써 고종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장차 친일정권을 다시 세울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종은 점차로 근왕세력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행태를 보였다.³⁹

대한제국은 대외적으로 자주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국방력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고종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줄 외세를 찾았다. 대부분의 대신들은 각국 공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각국 공사관은 반대급부로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였다. 고관들과 각국 공사관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하여 러일전쟁 이전까지 권력의 부침은 대단히 심했다. 그 가운데 러시아 및 일본 측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세력들 간의 대립이 가장 심각하였다. 친러파들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친일파들은 일본인 고문관의 초빙을 추진하였다.⁴⁰

이때 고종은 중국에서 벌어진 의화단사건을 목격하고 대한제국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열강이 공동출병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39 서영희(2003),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62~63쪽.

40 森山茂徳(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 出版會, 117쪽.

갖게 되었다. 실제로 러시아는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1900년 7월에 한반도 분할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다. 이미 일본 측에서 1896년 3월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러시아가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한만교환론을 내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였다.⁴¹

한편, 러시아는 1900년 12월 열강 공동 보장하의 중립화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에서 러시아에게 만주에 대한 중립화까지 요구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의 대외경과를 대표하는 동아동문회에서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었다.⁴² 러시아는 1902년에도 다시 한국의 영세 중립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와 미국의 무관심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1903년부터 러시아의 전진정책이 추진되어 만주침략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압력이 나타났다.

고종은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 신중하게 대응하였다.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길 바라면서도 이권 개입이나 조차 요구 등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용암포에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가옥을 짓고 있는 러시아인을 철수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군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현되기도 전에 러일전쟁의 위기가 닥쳐왔다. 고종은 전시 중립국이 되기 위해 외교적으로 다양하게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나아가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제국이 러시아를 지지하여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친서를 러시아 측에 보내 비밀동맹을 추진하였다. 결국 고종은 중립화 시도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여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³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에 맞서 고종이 당시에 선택할 수

41 서영희(2003), 앞의 책, 128쪽.

42 森山茂徳(1987), 앞의 책.

43 서영희(2003), 앞의 책, 134~135쪽.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일본은 이미 1900년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대한제국의 보호국화 정책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1901년 외무대신에 취임한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는 러시아와의 결전을 결심하고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1903년에 들어서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고 내정개혁과 군사적 원조에서 일본이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확립하였다. 만주를 독점하고 한국도 분할지배하려는 러시아와 전면 승부를 도발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대신 북위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만들고 러시아의 만주독점을 승인하라는 러시아와 전면적으로 대립하였다. 당시 일본의 강경론은 외무성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이민을 장려하여 1903~1904년 사이에 재한 일본인의 수가 무려 46% 증가하였다.⁴⁴

당시 고종의 목표는 러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식민지화를 기도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의존하여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언제 다시 침략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분할점령에 합의할 것을 경계하였다. 그런데 동아동문회를 비롯한 대외경과들은 대한제국의 관료들에게 한일국방동맹안을 권하였다. 이때 그들이 제시한 반대급부는 제일 망명자들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었다. 대외경과들의 지도자였던 고노에 아츠마로[近衛篤磨]가 주장한 ‘조선부액론(朝鮮扶腋論)’은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일본군을 상주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병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당시 고종은 일본에 측근세력들을 파견하여 정세를 탐지하는 한편 열강 공동보증하

44 서영희(2003), 위의 책, 152~153쪽.

의 한국 중립화안을 추진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이를 일축하였다. 오히려 망명자 추방을 전제로 한일공수동맹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뿐이었다.

러일전쟁의 발발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열강의 군대가 속속 서울로 들어오자 고종은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독자적인 군비확장을 추진하였다. 1903년 고종은 징병제를 발표하고 해군 창설을 추진하였으며 원수부에서 상병(商兵)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실제로 추진되지는 못했다.⁴⁵

1904년 1월에는 전시 중립화 선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이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일본은 동맹을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는 동맹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중립국화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여전히 한일동맹조약을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의 주권은 유린당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은 겨우 고종이 외국 공사관으로 파천하거나 지방으로 도피하는 것 정도였다. 러시아도 전쟁이 선포되자 곧 러시아 파블로프 공사가 철수하여 그동안 끝까지 대한제국 황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이는 과거 청일전쟁 당시 위안스카이를 연상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결국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한일동맹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맹이 아닌 일방적 보호국화였다.

45 송병기(1976), 「광무개혁연구」, 『사학지』 10.

6. 맺음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로 몰아간 것은 일본의 침략야욕이었다. 이미 식민지화가 기정사실화된 현실에서 대한제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었다. 하나는 특정 국가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그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인데, 당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나 일본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이 어느 일방과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일방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필경 러일 간의 전쟁으로 비화하고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경우 식민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독립협회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고 역사는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또 다른 하나는 중립국화하는 방안이었다. 중립국화 방식은 영세(永世) 중립국화에서 전시(戰時) 중립국화까지 다양하며, 중립보증의 형식도 특정 국가의 조약을 맺는 방법, 열강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방법 등 다양하였다. 그런데 독립국이라는 전제에서 성립되는 전시중립국화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은 러시아·일본 양국의 침입으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전시 중립국화라는 것 자체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따라서 영세 중립화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다. 중립화는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양국은 자신들이 약세일 때는 들고 나왔다가 우위에 있을 때에는 중립화론을 폐기하였다.

독립협회는 대체로 대한제국이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중립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러시아의 압력이 너무 강하다는 판단하에 반러, 친영·미·일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본인

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 세력을 다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는 단지 일본에 대한 우호감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만주문제에 전념하려는 입장이었던 러시아에게 한국문제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는 일방적으로 반러시아 입장만 취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시 한국인들에게 지나친 공포의식(恐露意識)의 고취와 일본에 대한 우호의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일본 측에 의존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일본이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도 러시아의 외압에 대응하고, 독립협회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일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고종을 대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권을 중심으로 구심력을 발휘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독립협회를 비롯한 지식인, 개명관료들은 오히려 일본 관료·지식인들이 일본을 위해 생산한 논리에 빠져 황제권을 약화시키거나 뒤엎으려는 생각과 행동을 많이 보였다.⁴⁶

하지만 대한제국의 국권상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존재는 바로 고종이었다. 그는 독립협회 세력을 비롯한 망명자 세력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포괄하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 양성을 위급한 시기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확고한 외교 노선으로 일본의 침략의지를 막아내지도 못했다. 위기에 빠지면 또다시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것이나 생각하는 모습은 황제로서의 자질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은 일국의 황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의 일부였다. 그것을 가지고 고종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료들이 친일화되어서 좌절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 그리고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고종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고종을 무능한 군주로 폄하하고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종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쓴 개명군주로 추앙하려는 시도에도 문제가 있다. 고종이 져야 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은 올바른 역사적 성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6 주진오·도면희·조재곤(2003), 「한국근대 정치사와 왕권」, 『역사와 현실』 50호, 한국역사연구회.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 러시아라는 요인을 생각하다

도쿄대학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한일병합은 일본이 여러 해 동안 치른 조선 침략의 결과였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조선 침략, 조선 지배가 마치 조선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것처럼 말하는 옹호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2009~2011년까지 NHK가 러일전쟁 3년간을 다룬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TV드라마로 방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옹호론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¹ 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조선통치가 병합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이토 유키오[伊藤之雄] 씨의 연구²도 주목을 받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바 료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은 러시아제국의 침략성을 강조한다. “러시아가 연해주, 만주를 제압하려 하고 있으며, 그 여세를 몰아 이미 조선까지 세력을 뻗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1 中塚明(2009), 『司馬遼太郎の歴史観』 高文研; 中村政則(2009), 『「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岩波書店.

2 伊藤之雄(2009), 『伊藤博文』, 講談社.

이에 일본은 “조선을 영유하는 것보다 조선을 여타 강국에 빼앗길 경우 일본의 방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 러시아의 침략성에 대해서는 갖은 말로 강조하여 “일이 냉각되어 버린 후 세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러시아의 태도에는 변호할 만한 곳이 전혀 없다. 러시아는 일본을 의식적으로 죽음으로 몰아세웠다. 일본을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신세로 만들었다. 사력을 다해 고양이를 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⁴ 이런 생각은 러일전쟁 전 일본인의 생각으로 오랫동안 계승되어 왔다. 외무성이 후에 정리한 『고무라 [小村] 외교사』나 육군대학교의 강의록인 다니 히사오[谷寿夫]의 『기밀일러 전사(機密日露戰史)』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⁵

실제로 러시아제국은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 나는 러시아 자료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上·下⁶는 그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입각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2. 러일전쟁의 기원

1900년 의화단의 반란이 일어나 열강이 톈진[天津], 베이징[北京] 방면에 연합군을 파견했을 때, 러시아는 만주의 철도건설 파괴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군대를 파견했다. 그리하여 1900년 9월에는 만주 전역이

3 司馬遼太郎(1969), 『坂の上の雲』 1, 文藝春秋, 240쪽.

4 司馬遼太郎(1969), 『坂の上の雲』 2, 260~261쪽.

5 外務省 編(1966), 『小村外交史』 復刻, 原書房; 谷寿夫(1966), 『機密日露戰史』, 原書房.

6 岩波書店(2009~2010).

러시아군 17만 3000명의 제압 아래에 들어갔다.

그런데 곧 점령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 번 도 망쳤던 평토펜[奉天]의 장군과 휘순[旅順]의 사령관 알렉세예프 사이에 접촉이 시작되어 11월 9일 비밀협정이 가조인되었다. 이 협정으로 만주에는 청국군을 주둔케 하지 말고 러시아군이 주둔할 것, 평토펜 장군 휘하에 러시아인 코미사르를 둘 것 등이 정해졌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러시아가 만주 지배를 일상화하려 한다며 국제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다.

러시아가 만주를 전면적으로 점령하자 일본은 마침내 만한교환론(滿韓交換論)을 정면으로 들고 나왔다.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공사 등이 조선 왕비 시해라는 폭거를 저지르고 그 결과 고종의 아관파천이라는 강렬한 반격을 받아 궁지에 몰린 일본은 그 후 수년 동안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눈다는 자세로 세력 만회를 기도해왔다. 드디어 1900년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만주를 제압한다면 한국은 전부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해도 상관이 없겠다 생각했고, 민간 여론은 일제히 러시아의 만주 점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군부도 이에 동조했다.

이때 고종황제는 한국은 중립국이기를 희망한다는 노선을 처음으로 표명하며 일본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1900년 8월 조병식(趙秉式)이 공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주일 러시아공사 이즈볼스키는 고종의 안을 강력히 지지했고, 그의 설득으로 러시아 외상 람스도르프와 황제도 이 안을 지지하였다. 서울의 파블로프 공사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동조했다. 1901년 1월 이즈볼스키가 정식으로 이를 일본 정부에 제의하자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외상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주청국공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했다. 고무라 주타로의 의견은 이미 단순한 만한교환론이 아니라, 한국을 확보하는 일은 러시아의 만주지배를 견제하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조선을 둘러싼 러일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러일의 대립이 보편

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1년 만주에서 철군하면서 러시아와 청국의 교섭이 있었으나 일본은 러시아의 요구를 강하게 반대하며 청국이 그 협상을 거부하도록 손을 썼다. 일본의 국내 여론은 격앙되었고 일본이 러시아에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확산되었다. 결국 러시아는 러청교섭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해 일본에서는 가쓰라 타로[桂太郎] 내각이 탄생했고 고무라 주타로가 외무대신에 취임하면서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첫 시책이 1902년의 영일동맹 체결이었다. 충격을 받은 러시아는 같은 해 4월 8일(3월 26일) 만주로부터의 철군협정을 청국과 체결했다. 이때 러시아는 철군의 대가를 청국에 요구했으나, 일본과 영국의 개입으로 청국은 타협을 저지당했다. 결국 러시아는 철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1903년 들어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다. 조선 전역을 지배하려는 일본을 러시아가 승인할 수 없었고, 이 점에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러시아가 취해야 할 길을 제안한 것은 그때까지 청국주제 무관이었던 보각의 의견서였다. 이는 1903년 5월 8일(4월 25일)에 황제에게 제출되었다. 의견서에서 보각은 러시아는 일본과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협정에 도달할 기회를 놓쳤다고 단언하고, '극동에서의 전쟁 방지는 제1급의 국가적 대사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이를 달성하는 제일의 수단은 양보정책을 중지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양보정책이 위험한 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을 때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국과 열강에 대해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1902년 3월 26일의 조약에 따라 만주에서 철군했지만, 러시아는 더 이

상 누구에게도 스스로가 확보한 장소를 양보할 생각이 없으며 이 같은 결의를 무기로써 지킬 각오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 이 각오는 실제여야 하므로 이를 즉각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때 커다란 희생이 불가피하나 결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전쟁을 회피할 가능성이 그 제일의 결과여야 한다. 극동에서 러시아의 전투준비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진다면 아무도 전쟁을 결단할 수 없을 것이다.⁷

베조브라조프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극동정책을 일원화하는 극동태수제(極東太守制)와 황제가 의장이 되는 극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극동병력을 강화하며 뤼순-압록강-블라디보스토크라는 방위선을 구축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황제에게 제출하였다. 황제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8월 12일에 극동태수제를 설치, 알렉세예프를 태수에 임명했다. 그러나 극동병력 강화에 소극적인 육군 대신 크로포트킨의 경질을 거부하여 병력 강화는 끝내 추진되지 않았다. 즉, 러시아 측은 일본의 개전 의도를 단념시킬 정도의 극동병력화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 측은 1903년 6월 23일의 어전회의에서 대러방침을 결정했다. 우선 그 전날인 6월 22일, 참모총장 오야마 이와오[大山巖]가 '조선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를 황제와 정부에 제출하였다. 오야마 이와오의 의견서는 "우리 일본제국이 조선반도를 우리 독립의 보장 지역으로 하는 것은 개국 이래 변함없는 국시"라고 시작하여 "러시아 세력이 갑자기 동점(東漸)하여 …… 만주의 실권을 장악했고, 그 팽창의 신속함은 실로 예상 밖의 일이다", "제국이 만약 이를 방관하여 러시아가 하는 그대로 방관한다면 조선반도가 그들의 영유로 되는 것은 채 3, 4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

⁷ K. Vogak, Znachenie dogovora 26 marta 1902 goda v razvitii man'-chzhurnogo voprosa, RGIA, F. 560, Op. 28, D. 213, L. pp.135~141.

다”라고 단정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곧 유일한 보장 지역을 잃게 된다. …… 우리 제국신민이 두렵게 여기고 우려할 일이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현황 인식과 제안을 했다.

우리 제국은 지금 반드시 러시아와 교섭하여 신속히 조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이를 교섭한다면 반드시 병력에 호소하지 않고도 쉽게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불행히 개전한다 해도 그들의 군비는 지금도 여전히 결점이 있다. …… 피아(彼我)의 병력이 아직 균형을 잃지 않아 오히려 대항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시기라 할 수 있다.⁸

또 6월 23일 어전회의에서는 고무라 주타로 외상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의견서에서는 ‘제국의 방위와 경제활동’이라는 2대 정강(政綱)을 대륙에 착안한 포인트로 한국과 중국 복건(福建)을 들었는데, 중점은 한국에 있었다. 우선 “한국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대륙에서 일본제국의 수도부를 향해 돌출한 모양으로, 반도의 끝은 쓰시마(對馬)와 불과 일의대수(一衣帶水) 거리다. 만일 여타 강국이 이 반도를 전부 차지하게 된다면 제국의 안전은 항상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것은 마땅히 일본제국 전래의 정책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사정은 이와 크게 달라 러시아는 이미 …… 뤼순(旅順), 다롄(大連)을 조차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만주 점령을 계속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 국경을 향해 제반 시설의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만일 이를 그대로 간과한다

8 參謀本部 編(1977), 『明治三十七八年秘密日露戰史』 제1권, 巖南堂書店, 47~50쪽.

면 만주의 러시아 지반은 절대적으로 공고한 것이 되고 말며, 아울러 그 여파는 곧 바로 한반도에 미쳐 한성의 궁정 및 정부는 그 위압하에 놓이고 오로지 그들의 운명이 이에 달렸다고 할 수 있으니 …… 결국 제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의 만주지배로 인해 일본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한국지배가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야마 이와오의 의견서와 같은 내용이었다. 그래서 “제국을 위해 생각하건데 지금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시국을 해결하는 것이 지극히 긴요한 일이며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지금을 헛되이 보낸다면 장래에 다시 똑같은 기회를 만날 수 없어 그 원통함이 만세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⁹ 협상의 배후로 전쟁을 생각할 수 있고 현재가 해결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야 한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 의미다. 이 점에서는 고무라 주타로 의견서도 모든 주전론(主戰論)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러일협상이 시작되는데, 이 협상에서 기본적인 대립점은 일본이 한국에서 ‘우세한 이익’을 갖는 것과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승인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무제한의 지배권을 갖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데 있었다. 이는 ‘한국 영토의 일부분 일지라도 일본의 군사 목적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조항에 나타나 있다. 일본 측은 결국 이 조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러시아 측도 이 조항을 물리지 않았다. 이 협상에서 러시아는 스스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것을 조약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9 小村寿太郎, 「對露交渉ニ関スル件」, 『日本外交文書』 제36권, 제1책, 1~3쪽.

이렇게 하여 러일협상은 결렬될 것이 뻔해졌다. 1904년 2월 6일, 일본은 러시아 정부에 협상 단절과 국교 단절을 통고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류(保留)한다고 선언했다.

3. 조선전쟁으로서의 러일전쟁

러일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은 1904년 2월 6일 일본해군이 진해만과 마산포의 전신국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¹⁰ 일본군은 2월 8일 저녁 무렵부터 인천에 상륙하여 이튿날에는 한성에 진주했다. 이는 전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 행위이며 조선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군이 상륙 중이던 2월 8일 심야에 일본해군은 휘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작전은 대한제국 황제에게 저항이 아무 소용없음을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황제는 2월 9일 대일 선전(宣戰)의 칙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천황도 2월 10일 저녁에 다음과 같은 선전의 조칙을 내렸다.

일본제국이 한국의 보전을 중시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한국은 몇 세기에 걸쳐 관계를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한국의 존망은 일본제국의 안전보장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청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여러 나라를 향하여 몇 번이나 실시해온 선언에 반해 아직도 만주를 점령하고 있으며, 만주에서 가진 러시아의 권력을 착실히 강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이 땅을 영유하려고 한다.

10 海軍軍令部, 『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極秘), 제1부 10卷, 2, 5, 6, 23, 25~26쪽.

가령 만주가 러시아령이 되어 버리면 우리나라가 한국의 보전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짐은 이러한 사태에 처하여 어떻게든 타협하면서 시대의 경과를 해결하고 오래도록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관리를 보내 러시아와 협의케 하여 반년 동안 교섭을 거듭해왔다. …… 러시아는 이 시점이 되어도 일본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한국의 안전은 바야흐로 위협에 처하여 일본제국의 국익은 위협받게 되었다.

사태는 이미 여기까지 악화된 것이다. 일본제국은 평화적인 교섭에 의해 장래의 안전보장을 얻으려고 했으나 지금 군사에 의해 이것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짐은 그대들 국민이 충실하고 용감한 것을 믿으며 신속히 영구적인 평화를 회복하고 일본제국의 영광을 확고히 할 것을 기대한다.¹¹

여기서는 ‘한국의 안전’ 또는 ‘안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존망’까지 더하면 4번이다. 한국에 침입하여 점령한 일본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고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조서에는 일본이 교섭 중에 러시아 측의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교섭을 중단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예고도 없이 우리 함대에 공격을 가하여 이에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와 있다.¹²

러시아 정부는 2월 22일 각국 정부에 통첩을 보내 일본이 한국에 행한 수많은 ‘폭력행위(acts of violence)’를 환기시켰다. 한국의 독립은 각국이 승인해온 바이며 한국황제는 1월에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국제법의 규칙을 위반해’ 러시아와의 적대 행위 개시 이전에 중립선언을 한 한국에 상륙했고,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이전에 인

11 『東京朝日新聞』(1904. 2. 11).

12 Pravitel' stvennyi vestnik(Jan. 28, 1904), p.1.

천항에서 러시아군함을 공격했으며 다른 항구에서 러시아 상선을 나포했다. 일본공사는 한국황제에게 한국은 이후 일본의 행정하에 놓인다고 선언했다.¹³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이 점점 더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은 2월 23일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보호하에 놓인다고 약속하는 한일의정서에 조인시켰다. 이는 첫 번째 항복문서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군의 점령은 평양으로 확대되어 3월에는 점령군이 한국주차군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그 규모는 2개 사단이었다.¹⁴

본격적인 러일전쟁은 1904년 5월부터 만주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1년 이상 계속되어 이듬해 5월 동해 해전에서 일본이 완승을 거뒀고, 8월의 포츠머스강화조약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군의 한국 군사점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러일전쟁은 조선전쟁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10월 4일(9월 21일), 국방위원회 의장 니콜라이 대공, 재무 대신 코코프초프, 육군 대신 레지게르, 해군 대신 빌리료프, 외무차관 오블렌스키가 참석한 협의회에서 위테의 보고를 들으면서 포츠머스 조약의 애매한 점을 매듭짓는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참모총장 파리프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포츠머스 조약에 러일군의 만주 철군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조선의 철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테가 대답하기를, “일본이 만주의 군대를 조차지와 조선으로 철수시킨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본인은 조선으로 철수한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고무라 주타로가 “조선에 어느 정도의 군대를 주둔시키느냐는 문제를 일본이 결정하는데 러시아가 간섭하는 것은 인정할 수

13 *Novoe vremia*(Feb. 21(11), 1904), p.2; 『日本外交文書』 37권, 제1책, 460~462쪽.

14 海野福寿(2000), 『韓国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118쪽.

없다고 명언”했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¹⁵

러시아 측 역시 러일전쟁이 끝났음에도 일본의 조선 점령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사실 9월 상순에 한국주차군은 후비 제2사단과 후비보병 제16여단, 총 병력 19,768명이었는데, 이들이 귀국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새로 제13사단, 제15사단이 편입을 명령받고 조선으로 이동하여 11월에 병력규모는 19,559명이었다.¹⁶

4.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과 러시아요인

일본은 이미 봉천회전의 결과 육전의 잠정적 승리를 확신하고 1905년 4월 8일, 한국보호권 확립을 위해 보호조약 체결을 각의에서 결정했다.¹⁷ 그리고 그 방침을 갖고 8월 9일부터 포츠머스강화회의에 임했던 것이다. 강화회의의 초두에서 고무라 주타로는 12개 항목의 강화조건을 선언했다. 제1항은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상의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일본이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도·보호 및 감독을 조치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였다. 이에 대해 위테는 12일 회답서를 제출했다. 그 제1항목에서 한국 처분의 자유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했으나, 훈령에 따라 “전술한 일본국의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황제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인접한 러시아 영토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유보를 덧붙였다.¹⁸

15 Krasnyi arkhiv(1924), Vol. 7, pp.14~15.

16 海野福寿(2000), 앞의 책, 191~192쪽.

17 『日本外交文書』, 제38권, 제1책, 519쪽.

18 『日本外交文書』, 제37·38권, 별책 「日露戦争V」, 400, 404~405쪽.

이에 대해 고무라 주타로는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황제의 주권을 운운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해주기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무릇 한국의 주권은 지금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주권의 일부가 일본에게 위양되어 한국은 외교상 일본의 승낙이 없으면 타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결국 위테는 고무라 주타로의 주장에 밀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일본에 일임했다. 러시아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마지막 주장으로 향후 조치로서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한국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는 취지를 조약에 넣고 제안했다.¹⁹ 고무라 주타로는 그 한마디를 회의록에 기록해두는 것을 제안하고 다음 문장을 넣는 것을 위테가 수용하도록 했다. “일본군 전권위원은 일본이 장래 한국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일 경우 한국 정부와 합의 후 이를 취할 것을 여기에 서명한다.”²⁰ 위테는 이것으로 조선의 독립을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고무라 주타로의 입장에서 일본군이 점령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주권을 빼앗는 협정에 한국 정부를 조인시켜 온 이상 이 같은 문장을 남기는 일은 전혀 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무라 주타로는 강화체결 후 러시아가 한국황제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였다. 9월 15일 고무라 주타로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회담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러시아가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완전한 자유행동권을 인정할 것도 본래 그들은 …… 이면에서 음모적 행동을 하는 일이 예사여서 …… 위의 화근은 절대로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관계를 인수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루스벨트는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승

인했다. 고무라 주타로는 거듭 “만일 한국이 조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부득이 일방적으로 보호권 설정을 선고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²¹ 그러자 루스벨트는 그것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²² 고무라 주타로는 이때 포츠머스 조약 회의록의 단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고무라 주타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강화 후 러시아공사가 서울에 돌아와 고종과 결탁하여 청일전쟁 후의 3국간섭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미우라 고로 공사가 왕비 시해 후 뒤처리를 위해 서울에 파견왔을 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와 같은 사태는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이다. 이는 고무라 주타로 개인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입장이었다. 평화 회복 후 러시아공사의 서울 착임을 인정해야 할지 말지를 문의해온 주한 영국공사에게 하야시 곤스케[林權介] 공사는 9월 15일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국의 궁중 및 다수의 대관 등은 원래 두 강국 사이에서 교묘하게 음모를 계획하고 조종과 절충을 …… 유일한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 일본과 적대의 지위에 있는 한 강국 대표자의 내임(來任)을 바라는 것은 그들 고유의 의견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일본의 이해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의 진실한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견지에서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할 것이다.”²³

러시아 정부는 전술한 10월 4일 협의회에서 조선의 지위 문제에 관련된 일본과의 관계문제를 수없이 논의했다. 위테는 “어쨌든 조선의 주권은 조약에 의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열국이 조선에 공사를 보낸다면 우리도 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오볼렌스키 외무차관도 외상인 램

19 위의 책, 410~411쪽.

20 위의 책, 411~412쪽.

21 위의 책, 제38권, 제1책, 520~521쪽.

22 『小村外交史』, 612~613쪽; 海野福寿(2000), 앞의 책, 187쪽.

23 『小村外交史』, 521~522쪽.

스도르프를 대변해 “러시아 정부는 이 국가의 독립을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조치를 지금껏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테는 “조선의 독립은 러일조약에 의해 파괴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²⁴ 협의회 결론 중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선의 독립은 조약에 의해 부정되지 않았으며 종래와 마찬가지로 제국정부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열국의 견해는 외무성이 관계하는 교섭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규모에 대한 의무를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정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남우수리 지방에 충분한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²⁵

람스도르프는 이 협의회 결론에 입각해 각국 주재 공사에게 러시아 정부는 “극동에서 러시아 정책의 기초에 있는 조선의 독립 원칙을 어기는 일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통지했다.²⁶ 개전 전의 러일교섭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개전 시 일본의 대조선정책을 엄히 비난했던 램스도르프가 의상에 유입된 것은 일본 측에게 모종의 긴장을 주었다.

10월 27일 일본 정부는 고무라 주타로의 제안을 바탕으로 각의 결정을 하여 보호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다음의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약을 체결하는 데 도저히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에게 보호권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를 통고하고, 열국에는 제국정부가 부득이 상기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를 설명한다.”²⁷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한국점령이라는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포츠머스 조약의 회의록에 포함시킨 문제의 한마디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가세하여 강권적인 방법으로 11월 17일 ‘보호조약’, 즉 제2차 한일협약을 조인시켰다.

고종은 끝까지 저항했다. 고종은 11월 26일 주러공사 이범진을 통해 친서를 러시아 정부에 전달했다. 친서에서 고종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하야시 곤스케 공사,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장군, 이토 히로부미 공작은 나에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을 인정하는 조약에 조인케 할 목적으로 일본인 병사들과 경찰관을 대동하고 심야에 궁전에 침입했다. 나와 대신들은 그들의 협박에 저항했다. 그러자 일본인은 나의 거실에 난입하여 내 옥새(玉爾)와 외무대신의 도장을 빼앗았다. 일본인은 그들이 작성한 문서에 옥새를 찍은 후 나에게 서명하도록 다시 요구했으나, 나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거절했다.” 이 친서를 건네받은 러시아외무성은 재외공관에 그 내용을 알려 “한국황제는 조인을 계속 거부하며 일본이 행한 폭력과 조선국가의 독립을 보증하고 있는 국제법의 기본법률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통지했다.²⁸

러시아 정부는 이 ‘보호조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나라는 ‘보호조약’을 인정해 서울에서 외교사절을 철수했다. 1906년 초에는 한국의 주러공사관도 폐쇄되었다. 램스도르프는 러시아 정부가 공사 이범진에게 특별 원조금을 주고 러시아 체재를 허락하도록 조치했다.²⁹

1906년 초 페테르부르크에 고종의 밀사 현상건이 도착해 새롭게 고종

24 Krasnyi arkhiv, Vol. 7, p.14.

25 Krasnyi arkhiv, p.25.

26 Boris D. Pak(2004), Rossiia i Koreia, Moscow, p.377.

27 『日本外交文書』 제38권, 제1책, 527쪽.

28 Boris D. Pak(2004), p.381.

29 Boris D. Pak(2004), p.383.

의 친서 2통을 건넸다.³⁰ 러시아 정부가 프란손을 서울주재 영사에 임명하고 신임장을 전달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옥신각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프란손은 1월 28일(15일)자 장문의 의견서에서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는 것을 피하려면 이집트나 불가리아, 튀니지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반독립’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의 협약을 체결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란손이 일본 정부에 신임장을 전달하게 되자, 니콜라이 황제는 프란손 앞으로 보낸 훈령에 덧붙여 고종에게 ‘조선을 도와 줄 수 없다’고 전하라 지시했다.³¹

1906년 5월 11일(4월 28일) 람스도르프 외상이 경질되고, 당일 이즈볼스키가 후임에 임명되었다. 그는 1901년에 고종의 한국중립국 구상을 지지한 주일공사였으나 이때는 일본과 화해하여 동방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었다. 이즈볼스키 외상은 서울로 향하는 프란손 영사에게 내린 훈령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조선은 ‘고민스런 장소’이므로 러시아가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³²

새 외상 밑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었다. 영러교섭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 1907년 1월부터 러일협상의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2월 18일 이즈볼스키 외상으로부터 안문(案文)이 나오자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 공사는 일본에 “한국에서 평온한 상태를 확립하려면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명하고, 러시아로부터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³³ 그러나 3월 3일 원로회의 결정에서 한국 조항은 “여러 관계에서 향후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기로 약

속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나타났다.³⁴ 일본안을 받은 이즈볼스키는 3월 11일 모토노 이치로 공사와 회담하며 ‘향후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었다. 모토노 이치로는 일본이 병합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일본 측의 생각을 분명히 표명케 하여 몽골 문제에서 보상받을 심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³⁵ 모토노 이치로도 이때는 애매한 표현으로 회피했다.

이 교섭의 과정을 듣게 된 서울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3월 30일, “한국문제 때문에 다시 분의(紛議)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며 한국문제를 명기하고 러시아와 합의하도록 요구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요즘 상황은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기염이 드세 끊임 없이 구미인의 눈치를 살피는 시기”라며 깊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³⁶ 이토 히로부미는 생각 깊은 곳에서 포츠머스 조약은 한국문제에 대해 ‘러일 양국 간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남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러일전쟁의 큰 안목’인 한국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야시 다다스[林董] 외상은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취하는 ‘지도보호 및 감독의 조치’를 인정했고, 프란손의 신임장 문제에서도 러시아외상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임을 승인했다. 따라서 ‘향후의 발전’에 대해 러시아와 상세하게 협정을 맺는 일은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했다.³⁷ 이토 히로부미가 걱정했던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이즈볼스키 외상의 등장과 함께 달라졌는데, 하야시 다다스가 새로운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30 Boris D. Pak(2004), p.384.

31 Boris D. Pak(2004), pp.386~387.

32 Boris D. Pak(2004), p.392.

33 『日本外交文書』 제40권, 제1책, 105쪽.

34 위의 책, 109쪽.

35 위의 책, 116쪽.

36 위의 책, 118쪽.

37 위의 책, 155~156쪽; 小川原宏幸(2010), 『伊藤博文の韓国併合構想と朝鮮社会』, 岩波書店, 136~139쪽.

4월이 되자 이즈볼스키는 병합에 관해 보장을 해도 좋으나, 그때 일본으로부터도 몽골에 관해 “상당한 보장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회답했다.³⁸ 이 점을 놓고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러시아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맺은 조약과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는 “정사(政事)상 이해가 공통되는 관계임을 인정하고” 그 관계가 “점점 더 발전함에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비밀협약에 포함시켰다.³⁹ 이에 따라 7월 30일 남북 만주에서 미치는 세력 범위를 규정하고, 한국과 내몽골에서 각각의 특수이익을 존중한다는 러일협상을 조인했다. 6월에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에 고종이 특사를 파견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한국황제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인다.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아낸 일본은 고종에게 강경하게 나왔다.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고 통감이 내정의 지휘권을 장악하는 제3차 한일협약을 7월 24일에 조인시켰던 것이다. 협약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조잡했는데, 이는 일본이 점령군의 힘을 믿고 강행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그 후 한국군대를 해산시켰다.

그런데 일본은 1910년 7월 6일의 각의결정에서 한국 병합을 위한 방침을 결정했다. 각의에서 가쓰라 타로 수상이 내놓은 ‘한국병합의 방침’은 우선 ‘병합의 방법’으로 2개 안을 제시했다. 즉,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뜻에 따르는 형식으로 병합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다. 만일 이 방법에 따라 실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에게 병합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병합을 조약에 따라 할 것인가, 선언에 따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1905년과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국 점령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

38 위의 책, 129쪽.

39 위의 책, 174쪽.

다는 생각이다. 이어 ‘병합의 선포’로서 ‘어느 방법을 불문하고 병합을 실행할 때에는 조칙으로써 병합을 선포한다’고 했다. 일본의 의사나 결정을 표명할 때는 천황의 조서(詔書)에 의해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에 대한 선언’을 한다. ‘여러 외국에 대해서는 병합 후 일본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개요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⁴⁰

1910년 제2차 러일협상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러시아 개입은 병합의 방침을 결정지었다. 1910년 1월 러시아 외상이 가능성을 시사하자, 일본은 3월에 제2차 협약안을 작성한 후 4월, 모토노 이치로 대사가 러시아 측에 타진했다. 이때 이즈볼스키는 한국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한국의 현 상황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협상의 미래에 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며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가 합병될 때의 예를 들어, “만일 한국의 사태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일을 감행한다면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 크게 분개할 것임을 우려한다”고 했다. 1908년 10월에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병합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받았던 것이다.

모토노 이치로 쪽은 짐짓 허세를 부렸다. 그는 “한일합병은 조만간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 일이 실험상 체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즈볼스키는 “그럴 일은 없겠으나 ‘러시아의 여론’을 자극하여 본인이 대신직을 잃는다든가, ‘친일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⁴¹ 이즈볼스키의 발언은 좀 과장된 것이었으나 한일병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러일 협조가 한층 진전되어 가는 가운데 나온 러시아외상의 말은 일본

40 위의 책, 396~397쪽.

41 『公爵桂太郎伝』(1791), 坤卷, 459~462쪽.

정부의 병합 방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보호국을 병합하는 경우 새로운 조약을 이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는 1783년 8월 4일(7월 24일) 그루지야와 보호국조약을 체결했는데, 1801년 1월 30일(18일) 황제의 조서(詔書)로 그루지야를 병합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1895년 마다가스카르의 메리나 왕국을 군사 점령하고 10월 1일 보호령화 승인 문서에 왕국대표자에게 서명토록 하여 보호령으로 삼았는데, 1996년 6월 20일 의회에서 병합을 결의하고 8월 6일에 병합을 선언했다.⁴² 1905년과 1909년의 단계에서도 통고나 선언으로 보호국화 하고 또 병합하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왔던 일본 정부가 계속된 군사점령 속에서 조약에 의해 병합한다는 방식으로 나왔다. 한국 내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상이 결정적으로 심화되는 단계에서 포츠머스 조약 회의록의 단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1910년 7월 통감으로 한국에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병합조약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했다. 그의 보고인 ‘한국병합시말’에 의하면 그가 8월 16일에 이완용(李完用) 총리대신에게 병합조약을 독촉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합병이라는 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 예는 적지 않다. 간혹 위압으로 단행하거나 선언서를 공포하고 협약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한은 종래의 관계를 회고 …… 그와 같은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심히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번 시국의 해결은 화충협동(和衷協同=화협)으로 실행하여 …… 추호도 격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 형식은 합의적인 조약으

42 川田順造 編(2000), 『아프리카史』, 山川出版社, 190쪽.

로 상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⁴³

이렇게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천황에게 통치권을 양여하는 조약에 한국 황제가 응하도록 요구했다. 한일병합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지휘하고 있는 통감이 지시하고, 제시한 문안에 대해 통감이 작성한 전권위 임장을 받아 전권이 된 한국총리대신이 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이 말하는 바는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제1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넘겨준다고 기재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제2조)고 하는 것이었다. 8월 29일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이 발표한 ‘유고(諭告)’에 있는 바와 같이, ‘대일본국 천황 폐하는 조선의 안녕을 보장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 한국 군주의 희망에 응하여 한국을 병합한다’는 내용이 기만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다.⁴⁴

이와 같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형식을 만든 이유는 첫째, 정신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기세를 꺾고 둘째, 러시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병합은 한국 스스로의 결정이며 한국의 반영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8월 29일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한국병합조서’였는데, 8월 30일자 관보 호외의 머리기사와 일반신문의 지면 중앙에 어명어새(御名御璽)와 대신들의 연명이 들어간 조서로 공개하였다.⁴⁵ 이 조서는 한국을 ‘제국의 보호하에 두고’, 갖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한국의 현 체제는 아직도 치안 유지가 완전하지 않아’, ‘현 체제에

43 寺内正毅, 「韓国併合始末」; 海野福寿 編(1998), 『韓国併合始末關係資料』, 不二出版, 12~13쪽.

44 『東京朝日新聞』(1910.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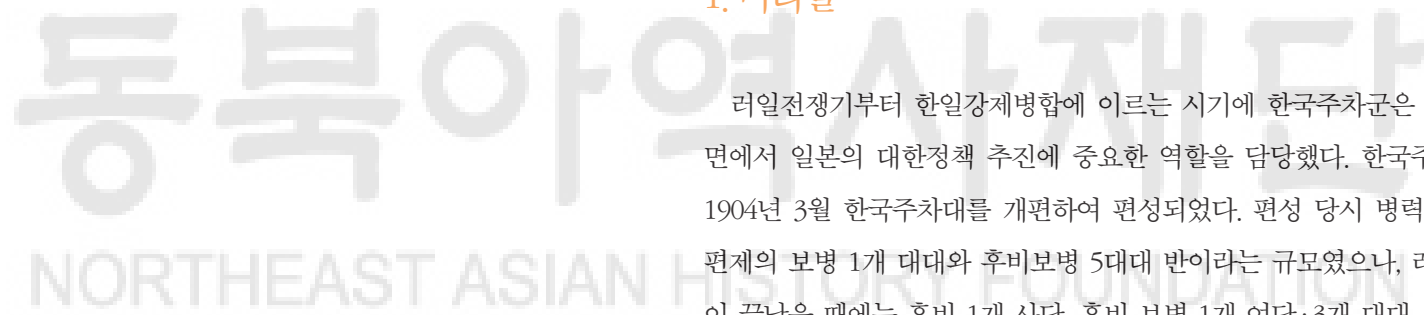
45 호외, 『官報』(1910. 8. 30); 『東京朝日新聞』(1910. 8. 30).

혁신을 가하는 일이 불가피함'이 확실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짐은 한국의 황제폐하와 함께 이 사태를 감안하여 한국 전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고 이로써 시대적 흐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생각해, 이에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기로 했다.” 이 선언으로 대한제국은 이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일병합은 1904년 2월부터 계속된 일본군의 한국 점령 결과로 강압에 의해 실현된 것이었다.

한국주차군 참모장 오타니 기쿠조와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후의 한국

국제일본문화연구소 센터 준교수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彦]



1. 머리말

러일전쟁기부터 한일강제병합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주차군은 여러 국면에서 일본의 대한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주차군은 1904년 3월 한국주차대를 개편하여 편성되었다. 편성 당시 병력은 평시 편제의 보병 1개 대대와 후비보병 5대대 반이러는 규모였으나, 러일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후비 1개 사단, 후비 보병 1개 여단·3개 대대, 국민 보병 2개 대대로 확장되었다.¹

또 주차군 사령부 예하에 한국주차 헌병대 12분대가 설치되어 한국 내의 56개소에 분견소를 두고 있었다. 조선식민지화 과정에서 주차군·헌병이 한 역할로는 종래 러일전쟁기에 군율·군사경찰·군정을 통해 군사적

¹ 조선주차군 사령부 편(1914), 『조선주차군 역사』(김정명 편(1967), 『일한의 교차료집성』 별책一, 巖南堂書店) 43쪽. 또 한국주차군, 식민지 시기의 조선주차군, 조선군에 대한 선행연구는 우선 박정호(朴廷鎬)의 「근대 일본의 치안 유지 정책과 국가방위정책의 틈새에서-조선군을 중심으로」(『本郷법정기요』 제14호, 2005년)를 참조 바람.

지배를 추진한 점과 군용지 명목으로 광대한 토지를 수용한 점, 을사보호조약(제2차 한일협약)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위협·압력을 가한 점, 나아가 의병투쟁에 대한 진압활동을 전담한 점 등이 논점이 되어 왔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러일전쟁 때부터 전후 한국주차군 활동을 주차군 참모장 오타니 기쿠조[大谷喜久藏] 소장(1855~1923) 관련 자료를 통해 그려내는 데 있다.² 오타니 기쿠조는 초기 육군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러일전쟁기에 전쟁 지도의 일단을 담당한 중견장교로서 대두한 세대이며, 한국 체재 시절의 자료에서도 오타니 기쿠조가 적극적으로 주차군의 작전지도와 조선통치 구상 책정에 관여하는 입장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오타니 기쿠조가 주차군 참모장을 맡은 것은 1905년 4월~1906년 6월까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러일강화(1905. 9), 을사보호조약 체결(1905. 11), 한국통감부의 개청(開廳, 1906. 2)과 같은 사건이 집중했던 한일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한다.

또 이 시기 본격화한 일본의 조선보호국화 정책은 조선 현지 기관이 아직 그리 큰 규모의 관료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정치지도자의 개인적인 구상에 좌우되는 측면이 컸다. 러일전쟁 후 한일관계사 연구가 최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정책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오타니 기쿠조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안도 요시오[安藤良夫](1993), 『육군대장 오타니 기쿠조의 연보』 사가판(私家版), 1855년에 오바마번[小浜藩]에서 한학자인 번의 무사(藩士) 오타니 쇼토쿠[大谷正徳]의 아들로 태어났다. 1875년 육군사관학교[旧制] 제2기생으로 입학, 1878년 同校 보병과를 졸업했다. 1894년 청일전쟁 때는 제2군에 배속되어 출정하여 1900~1902년 육군 도야마[戸山] 교장이 되었다(1903~1904년에도 재임). 러일전쟁 중에는 한국주차군 병참감(1904년 3~4월), 제2군병참감(동년 4~8월) 보병 제8여단장(동년 8월~1905년 4월)을 역임 후, 한국주차군 참모장이 되었다. 한국주차군 참모장을 역임한 후에는 오야마[小山] 교장에 복귀(1906), 교육총감부 본부장(1908~1909), 제5사단장(1909~1915)이 되었다. 만년에는 아오시마[靑島]수비군사령관(1915~1917),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사령관(1918~1919)으로 이름을 남겼다(1920년 예비역 편입, 1923년 몰).

는 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정책을 추진한 중요 세력 중 하나인 주한일본군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 때문에 개인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글에서는 일기를 포함한 오타니 기쿠조의 개인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당시 한일관계 정세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군의 대응에 관해 새로운 지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식민지 주둔군의 기능으로 (1)대외방위 (2)치안유지 (3)제국 확장의 3가지를 들 수 있다.³ 이 글에서는 주로 (2), (3)의 측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단, 보호국에서 주둔군의 치안유지는 동시에 제국확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반드시 엄밀히 구별할 수는 없다). (1)에 대해서도 북관작전(북한 작전)과 같이 군사적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는 있으나, 지면이 제한되어 별도의 원고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하 제1장에서는 한국주차군의 러일전쟁 후 조선지배 구상을, 제2장에서는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후 주차군의 동향을 오타니 기쿠조 자료를 근거로 살펴본다.

2. 러일전쟁 후 조선 지배체제의 모색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2월,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고, 한국주차군은 이를 빌미로 조선을 군사 점령하에 두었다. 또 오타니 기쿠조가 주차군 참모장에 취임한 1905년 4월 일본 정부는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주차군의 대한(對韓)방침은 한국보호국화를 염두

3 秋田茂(2003), 『イギリス帝国と東アジア国際秩序』, 名古屋大学出版会, 35~36쪽.

에 두며 러일전쟁 중 군사 지배라는 기득권을 전후에도 계속 강화하는 데 주목적을 두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오타니 기쿠조가 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군율’ 개정문제와 한국통감무관론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군율 개정문제

러일전쟁 중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행한 군용지나 철도부설지를 위한 토지수용이나 노동력 징용에 대해 각지에서 주민의 소요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주차군 사령관은 1904년 7월 ‘군율’을 주요 철도·전선선 연선에 대해 공포하고, 11월에는 한국 전역으로 시행 범위를 넓혔다. 그 내용은 군용 전선·철도의 보호를 각 부락이 책임지도록 하고 가해자·은닉자는 사형에 처하는 한편, 밀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었다. 190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군율로 처형된 조선인은 총 257명에 달했다(사형 35명 포함).

군율에 대해서는 이미 적잖은 선행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로서 오타니 기쿠조 중심으로 주차군이 ‘군율’을 개정해 러일전쟁 후 군사 지배를 계속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삼으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으며 본국 육군성과 약간의 의견차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타니 기쿠조는 러일 강화에 대한 정보를 이미 1905년 6월경에 파악하고 강화조약의 조건에 한국보호국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오타니 기쿠조 일기』 1905년 6월 11일, 8월 15일, 안도 요시오[安藤良夫] 씨 소장. 이하 『일기』라 약기함). 그리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도 기간에 군율에 준거한 헌병 지배를 유지하려 했다. 주차군이 9월 1일에 회의를 열고 ‘당분간은 애매한 가운데 현상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자(『일기』 9월 1일), 오타니 기쿠조는 강화조약 체결 후인 같은 달 16일, 본국 참모본부에

장문의 의견서 ‘평화극복 후 한국에서의 군사적 사법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⁴

러일강화 후라고 해도 일본군의 한국주치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일의정서(제4조)에서 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을 위해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정했으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제국은 유사시 적용할 군사적 시설을 평시 한국 내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러일전쟁 때 군기누설의 예방과 교통기관의 보호는 군율로 시행해 왔으나, 강화 후 군율을 폐지하자 ‘한국 인민이 제국의 군사적 시설에 대해 어떤 형태로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 매우 경계를 요한다’.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상, ‘우리의 군사적 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처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다. 즉 ‘군율과 동일한 준엄한 법령으로 이를 위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러일전쟁 후에도 계속 한국주차군의 주둔이 필요하며, 조선인이 군사시설 등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시 중의 군율과 동등한 군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논한 것이다. 오타니 기쿠조의 의견서는 그 후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주한공사에게도 제출되어 동의를 얻었다.⁵ 따라서 조선 현지에서는 오타니 기쿠조의 군율 개정 존속 의견을 축으로 한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나가오카 가이시 참모차장 앞으로 보낸 오타니 기쿠조부임 제2784호-1 ‘전후 한국시정 및 군사법 처벌 율령에 관한 건’, 1905년 10월 5일(대본영육군부관 관 『副臨寫서류첩 메이지 38년 10월』, 방위성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6040741100).

5 桂太郎臨時外相宛林公使電報, 1905년 9월 29일(『韓國施政一件』, 『外務省記錄』 5-2-6-7, 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그러면 본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오타니 기쿠조는 육군사관학교(구제도의 동기이기도 한 나가오카 가이시 참모차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군율 개정을 본국에 자문했다. 9월 29일, 나가오카 가이시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배의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한국의 반일의병운동을 잠시 방치하여 '한국의 현재 실력으로는 하찮은 폭도조차도 진압할 힘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⁶ 또 10월 15일에는 군율을 대신할 '율령'의 구체안(전 11조)을 제의했다.⁷ 그 내용에 따르면 '제국 및 한국의 법규'에 비추어 주요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군인에 대한 폭행 등 - 조병에게 '폭행을 하는 자'(제1조), 조병을 '모만(侮慢) 하는 자'(제2조), '육군 소속 관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제8조).
- 군사기밀 누설 - '비밀을 요하는 도서 및 무기 탄약의 제조' 등에 관한 기밀 누설(제3조).
- 군 관련 시설의 파괴 등 - '군용 공창(工廠), 선박 및 군수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와 전투에 내놓은 가옥·전선 등의 훼손이나 재료를 훔치는 자(제4조), '집적한 무기, 탄약, 군량, 진영구(陣營具), 피복' 등의 훼손이나 소각(消却), 군용마필(軍用馬匹) 살상·절취자(제5조), 군사상의 통신교통과 관련된 범행자(제7조).
- 일본 법규에 대한 위반 - '제국군기보호법 제국요새지대법(帝國要塞地帶法) 및 방어영조물(防禦營造物)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는 자(제6조),

6 長岡外史參謀本部次長宛大谷喜久藏書簡, 1905년 9월 29일(長岡外史文書研究会編, 『長岡外史關係文書 書簡·書類篇』, 吉川弘文館, 1989년, 73쪽. 以下, 同書は, 『長岡文書』と略記する).

7 長岡宛大谷, 위의 책, 「戦後韓国施政並軍事犯処罰律令關する件」.

제 1~10조 이외에 '제국법규에서 처벌하고 있는 소행으로써 직접 육군성 관아군대 및 소속 군인 군속'을 해치는 자(제11조).

- 범행자의 은닉 및 도주 방조(제10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래 군율이 군용 전선·철도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율령'의 범위는 군인·군시설 전반·군기밀의 보호로 대폭 그 대상을 확대한 점, 또 군기보호법 등 일본 본국의 법률 적용을 명확하게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참모본부로부터 오타니 기쿠조의 제의를 회부받은 육군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월 17일 육군성 측에서는 오타니 기쿠조의 의견에 반대하여, 을사보호조약 체결까지의 과도기에는 새로운 군령을 내리지 않고 종래의 군령(군율)을 존속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⁸ 같은 날 오타니 기쿠조는 나가오카 가이시로부터 이 같은 정보를 전보로 전달받았다(『일기』 1905년 10월 19일).

그래서 오타니 기쿠조는 반론을 시도하며 만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도기'가 짧지 않다면 '오랫동안 군율을 존속시키고 또 이를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냈다.⁹ 이에 대해 육군성은 새로운 군율에 '제국의 법규에 비추어 처분하는 규정을 두는 일은 마땅찮은 일'이라 하여 각하했다. 나아가 '율령'이라는 명칭은 '법률 제63호로부터 기인하는 대만에서의 율령과 동명이물(同名異物)'이며, '다른 오해를 초래해 물의를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

8 岡宛石本新六陸軍次官, 副臨 제2945호 제3 「回答」, 1905년 10월 17일(前掲「[戦後韓国施政並軍事犯処罰律令關する件]」所収).

9 陸軍 「韓国駐劄軍軍令發布ニ關スル件」, 1905년 10월 26일(大本營陸軍副官管 『副臨号書類綴 明治 38년 10월』, 防衛庁防衛図書館所蔵, 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6040741000).

다고 말했다.¹⁰ 대만을 영유한 후 무관인 대만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하여 ‘율령’ 공포권을 부여한 법률 제63호는 제국의회에 있어 의회의 입법협찬권을 침해하여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테면 오타니 기쿠조의 군율개정안이 군기보호법이나 요새지대법(要塞地帶法)과 같은 일본법의 적용도 시야에 넣고 있었던 점, 더 나아가 ‘율령’이라는 새 명칭이 무관총독의 전제적 입법권을 인정한 대만 통치체제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육군성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전후의 군확계획을 갖고 있던 육군성 본성으로서는 조선의 군율문제 때문에 본국 의회나 정당으로부터 육군의 독주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불씨를 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본심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군율을 ‘율령’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세운 오타니 기쿠조는 그의 뇌리에 육군성이 주장하듯 대만 통치체제를 그리고 있었던 것일까. 오타니 기쿠조의 관련 자료에서 직접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가오카 가이시 앞으로 보낸 서신에는 러일전쟁 후 한국 경영은 ‘문무양립(文武兩立)’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한 대만과 유사한 방법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적혀 있다.¹¹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군율개정안이 대만 통치를 상기시킨다는 육군성의 우려는 의외로 오타니 기쿠조의 본심을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율령 문제는 당분간 결말이 나지 않아’(『일기』 1905년 12월 21일), 1906년 2월 한국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자연스레 육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¹²게 되어 주차군의 손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 후 군율은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 의해 1906년 8월에 완화되었고, 같은 해 11월 이후 실행

10 長岡宛大谷電報, 1905년 10월 26일, 앞의 자료 수록.

11 長岡宛大谷書簡, 1905년 9월 29일(『長岡文書』, 74쪽).

12 注(9)資料に添付された付せんのみ。

정지 상태가 되었다.

2) 무관통감 설치 문제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일본 정부의 대표로서 통감이 설치되었다. 12월 20일, 칙령 제267호·통감부 이사청관제가 공포되었는데, 제4조에서 통감이 한국수비군 사령관에 대해 병력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이 육군에서 문제가 되었다. 문관인 통감에게 병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군 통수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의 정군관계(政軍關係)나 육군의 대륙구상과 관련지어 논해졌으나, 한국주차군의 동향을 내재적으로 파헤친 연구는 없었다. 그럼 오타니 기쿠조를 축으로 이 점을 검토해 보자.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특파대사에 임명된 이토 히로부미방한을 앞두고 오타니 기쿠조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주차군 사령관과 의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각서를 작성했다. ‘한국 경영에 관한 소감 적요’라는 제목의 이 각서에서는 대한정책의 실행체제로 ‘오늘날과 같은 문무양립은 만사가 더딘 불리함’이 많아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고 언급되었다(여기서 말하는 ‘문무양립’이란 주한공사관(駐韓公使館)과 주차군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¹³ 신설된 한국통감을 무관으로 하라는 속내가 분명하다. 오타니 기쿠조는 무관총독제를 취했던 대만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고, 하세가와 요시미치도 동의하여 ‘극력 무관론을 주장’했다.¹⁴

이토 히로부미 대사가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오타니 기쿠조·하세가와

13 長岡宛大谷書簡, 1905년 11월 18일, 別紙(『長岡文書』, 75쪽). 林公使は文官統監を主張していた(『日記』 1905년 11월 22일).

14 長岡宛大谷書簡, 1905년 11월 22일(『長岡文書』, 85쪽).

요시미치는 이토 히로부미도 무관총독에 찬성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통감 취임을 권했다는 경위가 있었기 때문이다(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이를 고사하고 前 대만총독인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대장을 밀었다).¹⁵ 오타니 기쿠조는 나가오카 가이시 참모차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도 ‘이토 히로부미 후작은 무관을 통감으로 한다는 데 거의 결의’한 듯하며, 대만총독과 민정장관의 예를 들면서 ‘통감에 배속된 민정관의 배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⁶

정세가 급변한 것은 12월 하순이었다. 오타니 기쿠조는 같은 달 21일자 일기에 “무관통감설은 원로각원회의(元老閣員會議)에서 타파된 것이나 같다”고 기록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 임명된 것도 바로 이 날이었다. 그 후 육군 측은 통감의 병권을 둘러싸고 동요했다. 28일에는 ‘통감부관계 제4조 개정 전의(證議)의 취지’가 나가오카 가이시 참모차장으로부터 전보로 전달되었다(『일기』 12월 28일). 여기서 말하는 제4조 개정안이란, 병력 사용에 있어 한국수비군 사령관과 협의한다는 문언을 넣은 수정안을 가리키는 것이라 여겨진다.¹⁷ 주차군 측에서도 통감의 병력 사용권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12월 30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육군대신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주차군 사령관이 통감에 예속된 것인가’하고 항의했다.¹⁸ 오타니 기쿠조도 이듬해 연초에 ‘참모총장 오야마 이와오[大山巖]에게 통감부 조례에 관한 의견을 독촉하는 전보’를 보냈다(『일기』 1906년 1월 4일).

15 위와 같음. 이토가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통감직을 권했다는 정보는 오타니도 파악하고 있었다.

16 長岡宛大谷書簡, 1905년 11월 26일(『長岡文書』, 86쪽).

17 山本四郎(1976), 「韓国統監府設置と統帥權問題」(『日本歴史』 제336호)12, 16쪽.

18 寺内宛長谷川書簡, 1905년 12월 30일(『寺内正毅關係文書』 38-14, 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藏).

그러나 결국 통감부관계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06년 1월 14일 천황이 육군대신과 참모총장에게 칙명을 내림으로써 해결되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칙명이 내려진 이상 이의 없다고 저항을 거뒀으나, 오타니 기쿠조는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타니 기쿠조는 “이번 통감부 조례에 의하면 향후 군에서 해야 할 업무는 거의 없다. 내 성격상 볼 일이 없는 땅에서 그날그날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은 건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사임을 원했다.¹⁹ 또 2월에는 이 문제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前 참모총장·오야마 이와오 참모총장과 협의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3.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앞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때로는 본국의 수뇌들보다 적극적으로 대한 지배구상을 주장했던 오타니 기쿠조의 모습에서 현지군의 이해(利害)를 가장 중요시했던 발상이 곳곳에서 보였다. 조선인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군율개정 문제에서도 ‘한국 정부가 율령을 공포한다는 통고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는 입장이었다.²⁰ 하지만 오타니 기쿠조의 조선인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한국 정부·조선인사회를 안중에 두지 않는 듯이 보이면서도 실은 매우 빈번하게 조선인과 접촉하며 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그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던 면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오타니 기쿠조의 그러한 조선인과의 접촉 태도, 그 기반에

19 以上は, 寺内宛長谷川書簡, 1906년 1월 25일(前掲『寺内正毅關係文書』 38-16), 山本, 前掲論文, 14쪽 참조.

20 前掲, 長岡參謀次長宛大谷電報, 1905년 10월 26일(注(10)資料).

있던 조선(인)관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런 조선인과의 접촉·조선사회의 동정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달한 을사보호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오타니 기쿠조의 조선·조선인관

오타니 기쿠조의 조선·조선인관의 근거에는 조선인 정계인사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었으며, 그는 일본 측이 이들에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타니 기쿠조는 1905년 7월 북관작전과 더불어 주차군 사령관을 북부로 이동시키는 안을 참모본부가 내렸을 때, 조선은 ‘괴물의 집’이라며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지 모른다고 반대했다.²¹ 또 같은 해 11월 오타니 기쿠조가 나가오카 가이시 참모차장에게 보낸 의견서 ‘한국경영에 관한 소감 적요’(전술)에서는 조선인을 ‘시의심(猜疑心)이 많고 거의 선천적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중상을 획책하는 잡배’라고 기술하고, ‘지금껏 우리가 대한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것 때문에 저해를 받은 선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오타니 기쿠조 주차군 참모장에게 조선인은 언제 어떠한 반일모략을 획책할지 모르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오타니 기쿠조의 조선인에 대한 관심은 증대했다. 오타니 기쿠조 일기 중 1906년 1월분 말미에는 53명에 이르는 조선인 요인의 인명록이 첨부되어 있다(〈표 1〉). 친일·반일을 불문하고 오타니 기쿠조는 자신이 특히 주목했던 조선인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정리했는데, 이는 1906년 초에 작성한 리스트인 듯하며 오타니 기쿠조와 개인적으로 접촉이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일기 본문의 정보도 참고하며 바탕으로 이 〈표 1〉의 조선인을

21 長岡宛大谷書簡, 1905년 7월 4일, 『長岡文書』, 68쪽.

몇몇 그룹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정부의 고관, 특히 고종황제 주변에 있던 궁중 관계자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 있던 반일적 인물은 궁중 관계자((12)~(14), (33)~(35), (37), (38), (42)~(53)), 오타니 기쿠조는 특히 외국에 나갔거나 외국 공사관과 접촉하는 등 외교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가오카 가이시 앞으로 보낸 서신에도 하세가와 요시미치 주차군 사령관이 황제 측근인 이용익(李容翊) 때문에 주한 일본공사와의 이간책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전하는 등²² 을사보호조약 체결 직후 가장 중요한 경계대상은 조선인 궁중 관계자였다(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

이 계열의 조선인으로 특히 오타니 기쿠조가 경계한 사람은 현영운(玄瑛運)이었다. 현영운은 통역 등에 종사한 기술관료로서 1900년 이후 3번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면서 한국 황실의 대일외교 창구 역할을 하여 러일전쟁 중에 부부가 함께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²³ 그러나 1904년 6월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궁정고문으로 초빙하는 공작에 실패한 일로 조선 정부 내에서 배척 당해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으로 쫓겨났다. 조선으로 귀국한 후에도 1905년 9월 당시 농상공부 서리대신(署理大臣)이었던 현영운은 ‘러당[露黨]의 혐의’를 받아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²⁴ 오타니 기쿠조 일기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9월 12일 가토 마스오 농상공부 고문으로부터 하세가와 요시미치 주차군 사령관에게 문의가 와서 하세가와 요

22 長岡宛大谷書簡, 1905년 7월 4일, 위의 책.

23 森山茂徳(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東京大学出版会) 121~123, 142쪽; 鈴木修(2000), 「1904년玄瑛運의伊藤博文招聘について」, 『中央大学アジア史学研究』 제24호.

24 韓国駐劄憲兵隊, 「韓官人ノ経歴一般」(1909년 3월. 国史編纂委員会, 『駐韓日本公使館記録』 제36권, 1994년, 所収). 同資料によれば, 玄は, 許祚(前掲表1(28))·李容泰(同前(6))ら義兵将とも交わりがあったという.

시미치는 고종에게 알현을 청했다. 오타니 기쿠조의 정보에 의하면 고종은 현영운의 사형을 피하고 싶어 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고종 알현은 26일에 이루어져 ‘현영운을 3년간 경성 밖으로 추방하고 그의 아내는 현병대장의 치안에 방해가 되므로 경성 밖에 우거토록 명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동안 오타니 기쿠조는 현영운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나가오카 가이시 참모차장에게 전보와 서신으로 사정을 전하고, 또 우사가와 가즈마사[宇佐川一正] 육군성 군무국장에게도 현영운의 구인(拘引)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²⁵

이 밖에 오타니 기쿠조 일기는 황실과 정부의 재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궁중의 부중(府中)에 대한 징구(徵求)는 실로 무겁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다(『일기』 1905년 7월 13일).

둘째, 의병장도 주요 관심대상으로 <표 1>에서는 8명이나 된다((4)~(6), (8), (28)~(30), (53)). 오타니 기쿠조가 한국주차군 참모장일 때 아직 (후기) 의병투쟁이 본격화하지 않았으나, 일기에는 몇몇 단편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05년 9월 강원도 춘천에서 의병이 봉기했을 때 경무 고문과 춘천부 경무보좌관으로부터 주차군에게 원조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이 요청에 대해 오타니 기쿠조는 ‘군방침을 개시(概示)하며 함부로 원조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²⁶ 그가 말한 ‘군방침’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제2장 1절에서 본 러일전쟁 후에도 계속적인 군사지배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군이 반일운동을 방치해 둔다는 방침(9월 29일

25 以上, 『日記』 9월 2일, 20일, 26일, および, 長岡宛大谷書簡, 1905년 9월 29일(앞의 책, 『長岡外史関係文書』, 73쪽).
26 『日記』 1905년 9월 23일.その他, 大谷日記には, 前参政沈相勲が忠清北道丹陽で義兵に投じたとか全州において義兵が蜂起した等の情報も書き留められている(前者は, 1905년 10월 13일, 14일, 後者は 11월 26일).

자, 나가오카 가이시 앞으로 보낸 의견서)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한 달 후 오타니 기쿠조가 나가오카 가이시에게 보낸 문서에서도 의병 봉기에 대해 ‘전부터 내신(內申)해 두고 있는데 취지에 따라 훗날의 지반을 만들기 위해’ 보병 1개 중대의 후원으로 헌병 30명을 파견한다고 적고 있다.²⁷ 반일운동의 진압을 주차군이 군사 지배를 계속하는 구실로 삼는다는 방침은 의병대책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친일로 지목된 조선인과의 접촉도 엿볼 수 있다. <표 1>에서는 우사가와 가즈사마 육군성 군무국장(1896~1898년 경성 공사관부 무관)이나 노즈 시즈타케[野津鎮武] 군부고문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인물을 몇 명 볼 수 있다(전자는 (1), (2), (3), (12), (36), 후자는 (18)). 주차군과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들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본군에 협력해 이름이 오른 사람도 있다((16), (26)). 일본군에게 협력한 친일파로 특히 유명한 것은 일진회였으며, 오타니 기쿠조와 일진회의 관계도 돈독했던 모양이었다.²⁸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타니 기쿠조 개인 자료에 일진회원의 이름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아니다.²⁹

27 長岡宛大谷 「[諸処に出没する義兵剿蕩方]」(10월 29일, 大本營陸軍參謀, 앞의 책, 『謀臨書類綴 明治三八年一月起十二月二至』 所収,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6040400700).
28 일진회가 1909년 12월에 이른바 「합방」청원서를 황제·한국내각·통감에게 제출하기 직전, 이 회의 중심인물인 송병준은 오타니 기쿠조의 교토 자택에 가겠다고 연락했다. 이 건에 대해 長岡외사(육군군무국장)에게 의논한 오타니 기쿠조는 ‘원래 송과 소생의 사교상의 관계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새삼 오지 말라고 전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으며’ 운운이 적혀 있다(長岡 앞으로 보낸 오타니 기쿠조 서신, 1909년 12월 13일, 『長岡문서』, 86~87쪽).
29 <표 1>에서는 (36) 이용한 뿐이며, 일기에서도 일진회원인 박우용에게 함경북도 수조관(収租官)에 취임을 의뢰했다는 기사가 있을 뿐이다(『일기』 1905년 10월 9일).

〈표 1〉 『오타니 기쿠조 일기』에 수록된 조선인 인명록

| | 성명 | 일기의 주요 기술내용 |
|------|--------------|---------------------------------|
| (1) | 姜雲燮 | 일본유학 경험자, 宇佐川의 소개 |
| (2) | 李用茂 | 일본유학 경험자, 宇佐川의 소개 |
| (3) | 韓南洙 | 일본유학 경험자, 宇佐川의 소개 |
| (4) | 車晟龍 | 의병장 |
| (5) | 柳麟錫 | 의병장 |
| (6) | 李容泰 | 의병장, 前 내부대신 |
| (7) | 金宗漢 | 前 대신 |
| (8) | 元用八(本名-元用常) | 의병장 |
| (9) | 李祐寅 | 전직 법무대신 |
| (10) | 李祥憲 | 일본거주, 재산가 |
| (11) | 崔在學 | 정치결사(만민회) |
| (12) | 李政秀 | 宇佐川의 소개 |
| (13) | 李太俊 | 황실로부터 2만 엔을 수령해 러시아에 가다 |
| (14) | 禹範鎭 | 전직 관리로서 内勅을 받들어 경성에 불랑배를 모으다 |
| (15) | 젠고근(별명-리츄레즈) | 현영운의 조카, 사포대를 지휘 |
| (16) | 千象河 | 러일전쟁시 일본군의 상륙을 원조 |
| (17) | 李允在 | 이용익의 조카, 러시아군과 내통 |
| (18) | 徐熙淳 | 과거 헌병대에서 사용, 후에 경무청에 취임, 野津의 소개 |
| (19) | 朴有豊 | 전직 원수부 부관, 러시아군에 투항 |
| (20) | 金道一 | 북부 조선에서 러시아군과 내통 |
| (21) | 韓圭錫 | 북부 조선에서 러시아군과 내통 |
| (22) | 金仁洙 | 元參領, 북부 조선에서 러시아군을 위해 사포대를 지휘 |
| (23) | 柳應斗 | 학자, 고관 |
| (24) | 李鐘健 | 경리원경, 시종무관장 |
| (25) | 金思默 | 경무사(警務使) |
| (26) | 李永極 | 군에 의한 성징감리(城津監理), 충성군수에 임명되다 |
| (27) | 李元榮 | 이하영의 부하, 이영극의 후임으로 성진감리 |
| (28) | 許祿 | 한학자, 헌병대가 구금 |
| (29) | 許薰 | 허치(許祿)[(28)]의 제자 |
| (30) | 許燦 | 허치(許祿)[(28)]의 제자, 의병을 모으다 |
| (31) | 高永喜 | 전직 학부협변, 황해도 관찰사 |
| (32) | 李起鉉 | 영일동맹 파기를 위해 운동, 도영(渡英) |
| (33) | 李容善 | 전기 협변, 평양관찰사 |

| | | |
|------|-----------|---|
| (34) | 姜錫鎬 | 내관 |
| (35) | 李圭終 | 강석호[(34)]의 양자, 내관 |
| (36) | 李容漢 | 宇佐川의 소개, 일진회 |
| (37) | 尹 圭 | 전직 진영대 대대장, 공사관 무관 관사이 출입, 이번의 조약체결 때 대신 암살을 기도 |
| (38) | 李載現 | 황제의 혈연자 |
| (39) | 李寅榮 | 프랑스 공사관에 출입, 러시아대위 뭇소프의 은밀한 알현을 주선하다 |
| (40) | 孫秉熙 | 일본에서 귀국, 천리교주[마마] |
| (41) | 韓永源 | 전직 일본공사관 근무, 개성부윤 |
| (42) | 劉濟南 | 의화군[의화군. 이맹] 추종자 |
| (43) | 黃鐵 | 의화군 추종자 |
| (44) | 韓應履 | 의화군 추종자 |
| (45) | 閔哲勳 | 독일공사, 몰래 귀국해 알현 |
| (46) | 閔炯植 | 大垣某[大垣丈夫?]와 관계, 궁중 잡배의 수령 |
| (47) | 河相驥 | 전직 농상공국장, 민형식[(46)]의 일파 |
| (48) | 洪在鳳 | 민형식[(46)]의 부하로서 궁중의 잡배 |
| (49) | 沈厚澤 | 궁중의 전파감당, 민형식[(46)]의 일파로 독일 공사관에 출입 |
| (50) | 金祥鉉 | 심후택[(49)]과 동일한 잡배로서 프랑스 공사관에 출입 |
| (51) | 白時鏞 | 김상현[(50)]과 동일한 잡배 |
| (52) | 趙南舛[趙南昇?] | 황실의 잡배 |
| (53) | 閔宗植 | 황제의 조칙을 받은 충청도의 의병 |

출전 : 『오타니 기쿠조 일기』 1906년 1월의 문장 말미에 첨부된 인명 리스트를 가지고 작성.
 주 : 배열은 원자료와 같다. [] 안은 松田의 註記

2)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1905년 10월 27일,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의 실행계획이 결정되어 그 날 재가되었다. 여기에는 하야시 곤스케 주한공사에게 필요한 원조를 해주도록 하세가와 요시미치 한국주차군 사령관에게 명령한 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차군은 이 명령을 받고 이토 히로부미 특과대사의 한성 도착(11월 9일)을 앞두고 일본 헌병에게 을사보호조약 체결 반대의 포고문을 게시

한 혐의자 여러 명을 체포토록 하거나 각 대신의 기타 동정을 감시하도록 했다.³⁰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한 후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조약의 형식이나 체결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이 조약을 무효로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³¹ 다만,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한국의 국가대표에게 가한 협박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적인 주차군 관계자 자료가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³² 여기서는 오타니 기쿠조의 일기에 있는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주목해야 할 논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1월 9일에 입경(入京)한 이토 히로부미 특파대사는 10일 고종황제에게 친서를 봉정하고 15일 고종을 은밀히 알현(謁見)해 조약에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16일에는 한국의 각 대신을 숙소로 초청해 조약에 대해 설명했다. 주차군도 이토 히로부미를 원호(援護)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 사령관은 16일에 한국군부대신을 불러 '자기 권내(權內)에서 부득이할 경우 병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개인적으로 주의를 주며 동 대신에게 힘을 다해

30 이상은 아마가타 아리토모 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하세가와 요시미치, 謀臨 제7347호 제1 「보호조약체결 보고」 1905년 11월 18일(대본영육군참모, 앞의 책, 『謀臨 서류철 明治 38년 1월 起12월에 이름』 수록. 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C06040402700) 및 『일기』 11월 3일에 의함.

31 일본·한국 등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전개된 「舊조약 불법·합법 논쟁」에 대해서는 강성근(康成銀), 『1905년 한국보호조약과 식민지 지배 책임』(선인, 2008년) 제1장 참조.

32 일본군 관계자의 회고로서 종래에 흔히 인용되어 온 자료로는 니시요츠즈 지 기미타카(西四辻公堯) 『한말 외교비화』(사가관, 1930)이 있는데, 西四辻(보병대위)는 보호 조약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2차 사료라고 해야 할 것이다(윤노 후쿠슈[海野福壽](2000), 『한국병합사의 연구』, 岩波서점, 237~238쪽). 또 주차군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의 보고서 '보호조약체결보고'(註(30) 자료)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다.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같은 날 '헌병대장은 일반의 단속 및 내부, 군부, 법무 대신을 보호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사단장에게 시위운동'을 명했다(『일기』 11월 16일).

이튿날인 17일, 한국의 전 대신들이 일본공사관에 소집되었고, 그대로 입궐해 경운궁(慶雲宮)에서 어전회의를 열었다. 밤이 되어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대동하고 입궐하여 대신들과 교섭 끝에 심야에(18일) 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17일 오타니 기쿠조 일기의 기술 내용을 인용해 둔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하야시 공사는 한국 대관(大官)들을 공사관으로 초대해 협의를 거듭했고(석상(席上)(a) 이완용 학부는 이미 오늘 더 논의할 여지가 없고 요컨대 단지 결단만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하야시 공사가 속히 시인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 원주), 오후 4시에 입궐하여 황제를 알현하려 했으나 환후 중이므로 궁궐 내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이 다 함께 배알하여 의견과 더불어 회의 경과를 아뢰는 데 2시간 남짓이 걸렸다. (b) 황제로부터 다시 타협하라는 칙명을 받들어 의석으로 돌아왔으나 상황이 매우 비경(悲境)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대사는 사령관을 대동하고 입각, 대신들의 의견을 각기 구하고 반복하여 설명하며 (c) 사령관 또는 각 대신에게 주의를 주거나 혹은 헌병대장을 불러들여 위협적으로 훈령을 내리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마침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외교권을 한국에 환부해야 할 조항을 조약문 중에 삽입하여 재가 조인을 마치기에 이르렀다. 시각은 오전 1시였다(밀줄 - 인용자).

오타니 기쿠조가 조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확증은 지금으로는 얻을 수 없으므로 이는 하야시 곤스케나 하세가와 요시미치로부터 들은 것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기술이 주차군의 고

위급 장교의 증언으로서 무게를 갖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기술에서는 우선 이완용 학부대신이 17일 오전 하야시 공사-한국대신회의에서 이미 조약 체결에 전향적이었다고 판단했던 점이 확인된다((a)).³³ 또 협의에 동석한 하세가와 요시미치 주차군 사령관이 '주의를 주거나', '위협적으로 훈령을 내리거나' 하는 등, 협의하는 자리에서 굳이 행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오타니 기쿠조 일기에서 방증을 얻을 수 있었다((c)).

또한 오타니 기쿠조 일기는 고종황제의 의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경운궁에서 열린 어전회의에서 고종이 대신에게 내린 지시를 둘러싸고, 조약 체결에 대해 고종이 '협상 타협'을 지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견해와 고종의 협상지시는 사후에 일본 측에 의한 왜곡이라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³⁴ 이와 관련해 여기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선 황제의 협상지시설에 대한 비판에 재고의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일기에는 한국의 대신들이 어전회의에서 '황제로부터 다시 타협하라는 칙

33 지금껏 이완용의 을사보호조약 찬성 발언으로는 17일의 이토-한국대신회담 내용이 잘 알려져 있으나, 그보다 앞선 17일의 하야시-한국대신회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토-한국대신회담까지 한국대신이 조약을 거부하기로 합의했었다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이태진, 「1904~1910년, 한국국권침탈조약의 절차상 불법성」, 사사가와 노리카츠·이태진 편저(2008), 『한국병합과 현대-국제공동연구 역사와 국제법에 입각한 재검토』, 明石書店, 128쪽), 적어도 일본 측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4 전자의 협상지시설을 취하는 것으로는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제2차 한일협약조인과 대한제국황제고종」(『靑丘 학술논집』 제24집, 2004년 4월), 海野福寿, 「제2차 한일협약 과 5대신 상소」(同前, 제25집, 2005년 3월), 협상지시설 비판에 대해서는 이태진, 『1905년 「보호조약」에서의 고종황제 협상지시설에 대한 비판」(첫 출판 2005년. 笹川·이태진 편, 앞의 책, 『한국병합과 현대』에 일본어 번역판 수록. 이하의 인용은 일본어 번역판의 쪽 수), 강성은, 앞의 책, 제2장.

명을 받들어'라고 쓰여 있다((b)). 협상지시설에 대한 반론의 핵심은 고종의 지시가 '대외적으로 협약의 합법성을 과시하기 위해 사후에 앞뒤를 짜맞춘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³⁵ 하지만 오타니 기쿠조의 일기는 개인의 비망록적인 기록이며, 또 사후에 쓰인 것이 아니다. 물론 일본 측 자료인 오타니 기쿠조의 일기만 가지고 고종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이 기술에서는 적어도 조약 체결 당사자 내지는 그와 가까운 입장의 일본인 측이 고종이 '타협'을 대신들에게 명했다는 인식을 조약체결 협상시점에 이미 갖고 있었다고 해석된다(물론 고종의 협약 지시에 대해 사후에 '많은 사실의 왜곡과 과장이 더해져'³⁶ 유포되었을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협상지시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고종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도 오타니 기쿠조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이 11월 21일, 노즈 시즈타케 군부고문에게 행한 요구에 포함되어 있다.

황제와 각 대신들 사이 의견의 융화가 부족하여 쉽게 배알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양자 사이를 융화시켜 다시 믿음을 갖게 하길 바란다. 황제는 일절 대신 등을 신인(信認)하지 않고 무당의 말을 믿고, 또 어떤 점쟁이가 천궁(遷宮)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아뢰으로써 진심으로 천이가 있을 지도 모르니 가능하면 군대 혹은 헌병들로 하여금 충분히 주의를 주길 바란다.

오타니 기쿠조는 한국 황실의 동향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어전회의에서 가령 '타협'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고종은 신하가 추진한 조약 체결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35 강성은, 위의 책, 96쪽.

36 이태진, 앞의 책, 『1905년 「보호조약」에서 고종황제 협상지시설에 대한 비판』, 216쪽.

고 봐야 할 것이다. 고종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나 그 진의는 실제로 체결된 을사보호조약과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이 점에서 협약지시절에서와 같이 고종황제가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주도적 역할'³⁷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떻든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후 고종이 조약에 반대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본 주차군은 궁중세력의 동향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일기에 의하면 이토 히로부미의 은밀한 알현에 배석한 예식원경(禮式院卿) 박용화(朴鏞和)의 조약 반대 미동이나, 주한 프랑스 공사관 통역 이인영(李寅榮)(앞의 표1(39))의 낭설 유포·국제평화회의에 대한 운동 준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느라 오타니 기쿠조는 분주했다(『일기』 11월 23일, 12월 3일, 10일, 21일, 29일). 또 12월 6일 오타니 기쿠조는 와타나베 우오니(渡辺魚二) 주차군 참모를 궁중에 파견하여 이근명(李根命)·심상훈(沈相薰) 등이 새 조약에 반대하여 상주(上奏)를 하는 것은 한일 간의 친선을 저해하므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 폐하는 숙고 후 적당한 유시(諭示)'를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오타니 기쿠조 주차군 참모장의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러일전쟁과 종전 직후 한국주차군의 동향을 고찰했다.

오타니 기쿠조는 러일전쟁 이후를 내다보며 군율개정 문제 및 무관총독 설치 문제에 관여했다. 비록, 실현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거기서 엿볼

³⁷ 이태진, 위의 책, 『1905년 「보호조약」에서 고종황제 협상지시절에 대한 비판』, 216쪽.

수 있는 것은 러일전쟁 후의 과도기는 군율을 개정·강화하여 군의 주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국보호국화 이후에는 무관총독에 의한 일원적인 지휘체통을 실현하고자 한 주차군의 조선지배 구상이다.

또 러일전쟁 후 일본의 한국 지배를 결정짓게 된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에 있어 한국의 대신들에게 협박을 포함한 주차군의 측면 지원과 고종황제 주변의 동향에 대해 약간의 문제제기를 겸한 자료를 소개했다. 그와 동시에 조약 체결 전후에 주차군이 고종황제와 그 주변 세력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상황도 간파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현지군은 본국의 군사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 구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군율강화 문제 및 무관총독론을 둘러싸고 당시의 한국주차군도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 그와 동시에 주차군은 그러한 군사력에 대한 신봉과는 다소 다른 첩보기관적 혹은 정치경찰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를테면, 한국 황실을 둘러싼 오타니 기쿠조의 관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주차군은 반일적 정치관계자들의 동향에 대해 매우 자세히 정보를 수집해 대처하려고 한 측면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주차군의 복합적인 성격이 식민지 시기를 포함한 그 후의 조선주둔 일본군에게 어떠한 형태로 계승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도 향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³⁸

³⁸ 보주(補註) : 이 논문을 2010년 8월에 학술회의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에서 발표한 후 2012년 6월에 한국주차군의 북관작전에 대한 분석 등을 보완해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최 심포지엄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에서 발표했다. 이 글은 「韓國駐劄軍參謀長 大谷喜久藏와 韓國-大谷關係資料를 中心으로」(정병욱·板垣竜太 編 (2013),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라는 제목으로 공간되었다.

보호국의 유형

국제기독교대학 명예교수 사사가와 노리가츠[笹川紀勝]

1. 머리말

일본에서는 보호국에 유형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 유형의 출처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 특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언어적으로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의 『대한화사전』에 의하면 ‘보호’란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리고 법학적인 용어로는 휘턴[惠頓, 헤돈]의 『만국공법』 한역본 마틴[丁緯良, 정위량] 역, 1864년에 나와 있다(제3권 제2장 제12절). ‘보호’라는 말에 해당되는 영어는 protection과 protectorate이며, protectorate가 번역된 말로 ‘보호자’는 있으나 ‘보호국’은 없다.

정부 관련문서에는 ‘보호’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만국공법>의 영향을 받았던 미야모토 고이치로[宮本小一郎]의 ‘조선론’(1869, 페이지2)이 가장 빠른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기술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885년(페이지18) 6월 14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이 청나라에게 “조선을 청나라와 일본 공동 보호하에 두고 싶다”고 제안한 청일 ‘공동보호설’이 최초라고 한다.¹ 1894(페이지27)년 8월 17일의 각료회의에서 있었던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외상의 네 가지 제안 중에 ‘보호국’이라

1 山辺健太郎(1977/1966), 『日韓併合小史』, 岩波新書, 587, 75~78쪽.

는 말이 나온다. 즉 ‘〔갑안〕조선의 자주독립 방안, 〔을안〕일본에 의한 보호국화, 〔병안〕청일양국에 의한 조선의 공동담보, 〔정안〕영세중립국화’²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의 보호국화를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1901년(메이지34) 6월에 출범한 가쓰라 타로[桂太郎] 내각의 ‘정강’에서였다.³

보호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의미에서 유형화와 관련된 논의가 등장한 것은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보호국론』(와세다대학 출판부, 1906년)에서였다. 아리가 나가오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전년도인 1905년(메이지38)에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에 따라 한국을 그중의 하나인 ‘제2종 보호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보호국의 유형론」(『국제법잡지』 제5권, 4호, 1906. 12)는 서평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며 아리가 나가오를 비판하고, 그 유형 중 하나인 ‘을중진정보호국’으로 한국을 규정하였다. 제2차 한일협약의 성립으로 그 후 한국의 구체적인 위상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었기 때문에 유형론에서 한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두 사람의 중대한 관심사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 사이에 불거진 논쟁을 정리한 다나카 신이치[田中慎一]는 다치 사쿠타로를 두고, ‘아리가 나가오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수준이 높으며 아리가 나가오의 반론은 다치 사쿠타로의 비판에 상응하는 반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하였다.⁴ 이 평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후세에 맡기고자 한다. 그리고 다나카 신이치

2 海野福寿(1995), 『韓国併合』, 岩波新書, 388, 125~126쪽.

3 海野福寿(1995), 위의 책, 125쪽; 海野福寿(2000), 『韓国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88쪽 참조.

4 다나카 신이치[田中慎一](1976), 「보호국문제」,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기요,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160쪽. 그리고 쓰쓰이 와카미즈[筒井若水] 편집대표(1998/2002) 『국제법사전』, 유희카쿠, 313쪽은 「보호국·피보호국」 항목의 참고문헌으로 다치 사쿠타로, 『시국국제법론』, 일본평론사, 1934년과 함께 다나카 신이치의 논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나카 신이치의 분석은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이 논쟁의 보호국론상 대립에서 다치 사쿠타로의 우위성’은 ‘다치 사쿠타로가 실제 조선식민지화정책으로 외교정책 입안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 학문 이외의 현실적, 정치적 입장에 그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학문 이외의 요인이 아리가 나가오의 학문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상을 초래하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의 대립축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분명히 아리가 나가오는 보호국론의 서문에서 ‘학술상의 저서’로의 성격을 지키고 ‘경솔하게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자숙하겠다고 하고 있다.⁵ 그 대립축에 해당하는 것을 운노 후쿠쥬[海野福壽]는 다치 사쿠타로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다치 사쿠타로는 ‘아리가 나가오 설의 독립 - 보호의 이율배반적인 규정’에서는 “일본의 조선식민지화정책의 방침을 구축하고 앞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하는 조선식민지화의 수행을 국제법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다치 사쿠타로는 독립국인지 여부가 ‘외교권이 완전한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은 이미 “국제법 술어 의의에서 독립국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하였다’. 아리가 나가오와의 논쟁에서는 ‘학문적인 의미에서 다치 사쿠타로가 우위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⁶

그러나 대립축이라고 한다면 조선식민지화정책 수행에 관여하던 다치 사쿠타로는 특정방향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 상대인 아리가 나가오가 여러 개의 정책의 선택지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경계심을 가졌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히라이시 나오아키[平石直昭]⁷

5 有賀, 「序」, 『保護国論』, 3~4쪽.

6 海野福寿(1995), 「韓国保護条約について」, 海野福寿 編, 『日韓協約と韓国併合』, 明石書店, 327쪽.

7 平石直昭(2005), 「韓国保護国論の諸相-獨立と併合の間-戸水寛人, 竹腰三叉,

가 도미즈 히론도(戸水寛人)나 다케코시 산사(竹越三叉)에 비해 '아리가 나가오는 보호관계를 병합과 독립이라는 양의적인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혹은, 아리가 나가오는 '근대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독립 담당 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지적한 것도 다치 사쿠타로식 국제법학의 도그마 관철과는 다른, 아리마 나가오의 과학으로서 국제법학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서술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견해에 의하면 아리가 나가오는 틀림없이 제2종 한국보호국화가 진전되는 상황변화에 한일병합이든 한국독립이든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는 애매한 '관망'⁸의 자세를 취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리가 나가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규명해도 좋을 듯 하다.

이렇게 되면 같은 보호국론을 논하더라도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 관점의 차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메이지 초기 외무성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겠다. 이번에는 작년 이 회의에서 했던 발표를 바탕으로 만든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다(「정한론까지의 국제법체계의 문제 - 『교린지의』의 세계질서와 『모일』의 외무성보고 -」, 메이지대학 『법률논총』 제82권 제2·3합병호(2010. 2)와 「정한론에 대응하는 국제법체계의 문제 - 외교관지령·태정관 결정부터 제1보호국론까지 -」 동 제4·5합병호(2010. 3)이다).

둘째,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가 주로 이용한 프랑스와 독일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의 특징을 지적하겠다.

셋째,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수행에 대한 저항을 안중근을 통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有賀長雄を中心に, 宮嶋博史·金容徳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Ⅱ』, 慶応義塾大学出版会, 337~338쪽.

8 平石直昭(2005), 위의 책, 338쪽.

2. 메이지 초기 외무성내 논의

-미야모토 고이치로의 '반독립국'에 기초한 '조선론'

1) 미야모토 고이치로는 막신(幕臣)이었는데 유신 이후 메이지 정부 외무성에 출사하였다. 그는 외무성이 개국을 포함해 조선에 대한 대책을 결정할 때 '조선론'을 제기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 논의에는 『만국공법』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조선론'의 요점부터 살펴보자.

- i) 북일 간의 역사인식은 서로 다르다. '내가 조선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논할 것이다' 혹은 조선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ii) 만국공법에서는 '독립국과 반독립국'의 구별이 있으며 '조선은 반독립국'에 해당된다. 외국교제는 그 구별에 따라 달라진다.
- iii) 조선의 위상은 '문화도'에 따라 독립국과 동등하지 않으며 '삼사등강(三四等降)'한 것이다. 조선의 사신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쓰시마까지 허용하기로 하나 일본에서는 종래의 부산을 넘어 조선내국, 특히 수도까지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통행통상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 iv) 조선과의 교제는 '무익'하지만 '이대로 둔다면' 러시아에 '잠식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일본에게 손실의 극치'이기 때문에 '조선을 돕는 것은 조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병력도 돈도 곡물도 부족하여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선을 병탄할 정도의 힘은 없다'. 지금은 '중책'을 택하여 '소장의 변(蘇張의 弁)'(전국시대 달변가로 합중연횡을 제창한 사람의 변)을 펼치고 아예 군대를 파견하여 세계의 대세를 제시해 준다. 또 '일본과 새로 맹약을 거듭 맺고 형제의 나라가 되어 합중연

방하며 이미 일본에서 체결한 조약을 이용하여 다른 조약을 맺지 않고 서양과 통신교제를 열 것을 권유'한다. '조선왕은 좌식의 객'으로 간주하여, '외무는 일본에서 관리를 보내어 맡게 하되 수십 년 동안 두 나라를 이어주려면 그러한 조선의 사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코멘트)

- ① 미야모토 고이치로는 조선과의 교제에 이익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명목으로 일본이 조선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제안한다. 그래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발상은 조선의 '과우'를 무마시키는 편법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 ② 개국을 요구하며 사실이 조선에 가는 목적은 '새로 맹약을 거듭 맺고 형제의 나라가 되어 합중연방'을 만들기 위함이다. 분명히 '합중연방'은 외교권의 박탈로 그치는 것이지 '병탄'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이 일본의 설득에 응하지 않고 개국하지 않으면 종래와 같이 '사절 왕래'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야모토 고이치로의 '합중연방'은 '병탄'과 '사절 왕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에 대한 정책으로 세 가지 단계를 상정하였다. 즉 장래에 '병탄'정책도 있을 수 있다. '사절 왕래'정책은 현실적이다. '합중연방'은 그러한 둘 사이의 '중등'정책이다. 따라서 이 3단계론은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정책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안이면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제기하였다.

2) 미야모토 고이치로와 『만국공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까지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의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구막부의 외국부교[奉行]는 '예전부터 휘턴, 필리폴 등의 저서를 가지고 있었다'.⁹ 그중 유명한 것이 『만국공법』이며 앞서 기술한 휘턴(혜돈, 미국인 Henry Wheaton)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36)¹⁰의 한역본이다. 이 번역본은 막부 말기에 일본에 수입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게이오 원년, 한문훈독기호가 붙은 가이세이쇼[開成所]번판(1868)인 『만국공법』 경도(京都)승실관 존판, 동치(同治) 3년이 출판되었다. 동치 3년이란 중국의 연호로 1864년에 해당되니 4년 후가 된다. 그리고 '京都'는 중국의 수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미야모토 고이치로가 참조할 수 있었던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시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가 가이세이쇼판을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이세이쇼판을 이용하여 미야모토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후대이기 때문에 미야모토 고이치로가 '조선론'을 썼을 당시에 참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휘턴의 두 가지 『만국공법』을 수시로 참조하였다.¹¹ 하나는 휘턴의 『만국공법여관』, 마틴[丁緯良] 역, 다카타니 류슈[高谷竜洲] 주,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열(閱), 세이비고[濟美龔] 장판, 메이지 9년 5월, 기타바타케 모헤에[北島茂兵衛] 출판(1876), 또

9 尾佐竹猛(1943), 『明治維新』 上권, 白揚社, 128쪽(『尾佐竹猛著作集』 제16권, ゆまに書房, 2005, 150쪽) 참조.
 10 Wheaton, H.(1866/1836),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 James Brown Scott, et al. eds.(1964), *The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11 이 문헌들은 모두 국회도서관의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에 있다.

하나는 마틴의 번역과는 상관없이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의 직접 번역본인 휘턴의 『만국공법』, 사법성 장관, 오쓰키 세쓰조[大築拙藏] 역, 1882년 6월(페이지15), 이렇게 두 권이다.

ii) 미야모토 고이치로가 ‘조선론’에서 키워드의 하나로 삼은 것은 ‘반독립국’이었다. 휘턴에서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은 ‘반주지국(半主之國)’이다. 이처럼 미야모토 고이치로의 용어는 휘턴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 아니다. 미야모토 고이치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반독립국’이라는 말을 썼을 터인데 이 두 가지 말의 내용은 같다.

그런데 휘턴은 『만국공법』 제1편 제2장의 표제를 ‘방국자치자주지권(邦國自治自主之權)’이라고 붙였다. 영문¹²으로는 Nations and Sovereign States이다. 따라서 번역자인 마틴[丁緯良]은 해설적인 표제를 붙였다. 즉 국가의 주권을 ‘자치’와 ‘자주’ 두 가지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안에서 이루어지는’(行於內) 주권과 ‘밖에서 이루어지는’(行於外) 주권이다.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¹³은 ‘각국의 법도’¹⁴에 의해 행사되므로 ‘자치’를 나타낸다. 그에 비해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¹⁵은 ‘본국은 자주이므로 타국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 각국의 평전과 교제는 모두 이 권리에 의거한다’, 대외적인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이라고 한다.¹⁶ 이 정의에 따라 휘턴은 대외적 주권에 대해 ‘자주지국’과 ‘반주지국’을 구별하고 있다.¹⁷ 그러므로 ‘자주지국’¹⁸이란 ‘스스로(나라)를 잘 다스려 타국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 즉 자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법에 대해 논하자면 자주 국가는 그 국세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평행’¹⁹이다. ‘평행’이란 자주 국가가 서로 ‘평행’관계에 있다는 것이므로 ‘독립’이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반주지국’²⁰이란 ‘타국에 의존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를 반주지국이라 칭한다’. 단, ‘그 전권은 전연(全然)한 자주(自主)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의 3국이 빈 회의를 통해 폴란드의 ‘크라쿠프시’를 하나의 국가, ‘자주자립국의(중립)국가’로 만들어 타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로 정한 것이고 다른 예는 영국의 보호를 받는 이오니아 제도의 합병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자주권은 ‘상거원(相去遠)’이다. 전자는 3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자주자립한 ‘전연자주(全然自主)’라 할 수 있다.²¹ 따라서 대외적 주권의 일정 부분에 대해 타국에게 ‘종속되어 있는(dependent)’²² 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단순히 ‘보호’되고 있다고 주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휘턴의 영문은 분명히 크라쿠프시를 completely sovereign²³이라 표현하고 있다.

iii) ‘반주지국’과 ‘보호국’에 대하여 ‘반주지국’이라 하는 것과 ‘보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휘턴은 ‘보호’가 맹약의 하나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약(保約)’이라 칭해진다고 하였다.²⁴ 그리고 보호는 ‘그 나라의 주권을 보호함으로써 타국의 침해를 면함을 허락’하는 것이다. 보호의

12 Wheaton, H.(1866/1836), p.25.

13 Wheaton, H.(1866/1836), p.27.

14 惠頓, 『万國公法』 제1권 제2장 제5절.

15 Wheaton, H.(1866/1836).

16 惠頓, 앞의 책.

17 惠頓, 위의 책, 제1권 제2장 제12절~제13절.

18 惠頓, 위의 책, 제1권 제2장 제12절.

19 惠頓, 위의 책.

20 惠頓, 위의 책, 제1권 제2장 제13절.

21 惠頓, 위의 책.

22 Wheaton, p.45.

23 위의 책, p.46.

24 惠頓, 앞의 책, 제3권 제2장 제12절.

대상으로는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 경계를 변경하지 말 것, 법도를 바꾸지 말 것, 주권을 제한하지 말 것, 왕위계승이 있다.

그런데 휘턴의 영문²⁵에 의하면 ‘자주지국’이란 a sovereign state, 즉 주권국이고, ‘반주지국’이란 semi-sovereign states로 반주권국이다. 그리고 휘턴이 제1권 제2장 제13절에서 폴란드의 크라쿠프를 ‘반주지국’의 ‘보호’라고 칭한 경우 ‘보호’는 protection이다. 그리고 제3권 제2장 제12절에서 ‘맹약’의 하나라는 의미로 ‘보호’를 말할 때는 영문²⁶으로 treaties of guaranty나 convention of guaranty, 즉 ‘보호조약’이나 ‘보호협약’을 말하는데 휘턴은 둘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휘턴의 번역에서는 ‘보호자’라는 단어가 있고 ‘보호’를 받는 나라가 추정된다. 휘턴의 영문에서는 반주권국 혹은 종속국은 protectorate,²⁷ 즉 오늘날의 번역으로 ‘보호국’이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크라쿠프시는 앞서 기술한 대로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는 있으나 완전한 주권국이다. 그러나 몰다비아, 왈라키아, 세르비아공국은 오스만투르크 정부 종주권하에 있고 러시아의 보호국(protectorate)이며, 모나코공국은 프랑스의 보호국이고 달마티아의 폴리자공화국은 오스트리아의 보호국이다. 이와 같이 보호국이란 ‘반주지국’과 동의어이다.

3) 정리해보자.

첫째, 미야모토 고이치로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을 때의 법적인 틀 구상을 휘턴에게서 얻었다.

둘째, ‘합중연방’ 정책은 결코 조선과 일본의 대등하고 진실한 우호관계

25 Wheaton, H.(1866/1836), p.45.

26 위의 책, p.296.

27 위의 책, p.47.

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이용당하는 자가 이용하는 자에게 찬동하여 ‘합중연방’으로 들어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미야모토 고이치로가 합중연방의 조약을 체결할 때 ‘조선에서 양해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바다.

셋째, 조약에 의해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는 법적 틀의 구상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한국보호조약, 을사조약)의 원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²⁸ 보호국에 관한 미야모토 고이치로의 논리를 보면 ‘양해’에 기초한 보호국론과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양해’를 무시하는 정한론 이후, 특히 다치 사쿠타로의 보호국론과는 구별되므로, 이후 전자를 제1기 보호국론이라 하고 후자를 제2기 보호국론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를 같은 서열로 이해해도 되는지는 하나의 과제다.

3.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가 주로 이용한 프랑스와 독일학자의 연구 –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의 특징

1) 유형론을 둘러싸고 논쟁한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는 둘 다 프랑스와 독일학자의 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나카 신이치가 이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아리가 나가오나 다치 사쿠타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나 독일학자들의 연구동향을 통해 아리가 나가오와 다치 사쿠타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28 제홍일(2007), 「메이지초기의 조선정책과 강화도조약-宮本小一를 중심으로」, 『삿포로가쿠인대학 인문학회 기요』 제81호, 52쪽에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여러 조건이 “실제로 거의 정비되는 것은 러일전쟁 후의 제2차협약부터 한일병합기”라는 설명 참조.

는 그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리가 나가오나 다치 사쿠타로가 인용한 문헌은 많으나 필자는 특히 다음 문헌에 주목하였다.

2) Heilborn, Paul(1891), Das völkerrechtliche Protektorat.

Despagnet, Franz(1896), Essai sur les protectorats, étude de droit international.

Gairal, François(1896?), Le protectorat international, La protection-sauvegarde, le protectorat de droit des gens, le protectorat colonial.

Engelhardt, Ed.(1896), Les protectorats anciens et modernes.

이 문헌들의 저자의 이름을 보면 Despagnet를 ‘데파네’(아리가 나가오), ‘데파니에’(다치 사쿠타로), Gairal는 ‘가이랄’(아리가 나가오, 다치 사쿠타로), Engelhardt는 ‘엔게랄드’(아리가 나가오), ‘엔겔하르트’(다치 사쿠타로) 등 다양하게 불린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부르겠다. Despagnet는 ‘데스파니에’, Gairal은 ‘게랄’, Engelhardt는 ‘온제라르트’.

하일볼른, 데스파니에, 게랄, 온제라르트 연구의 전체적인 특징은 다른 논문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게랄과 아리가 나가오를 비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리가 나가오의 <보호국론> 구성은 게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다나카 신이치는 하지 않았다.

i) 게랄은 제1부에서 ‘단순보호, 즉 소브가르드’(protection simple ou sauvegarde)를 설명하였다. “그것은 약국이 강국의 보호 아래에 스스로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은총으로서 그 보호(protection)를 간청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혹은 자신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든지, 혹은 그

절실한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급국가에게 피보호국(protégé)의 정치적 지도나 그 주권에 대해 간섭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날 소브가르드의 이념은 여전히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요소로 보호관계(protectorat)의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도의 매우 이질적인 것이 첨가되어 있다. 그것은 보호자가 피보호국을 고도로 지도하는 것이며 때로는 피보호국을 대신할 정도로 종속국의 외교에 간섭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게랄은 약국과 강국 사이의 조약관계라는 틀을 감안하면서 ‘단순보호(protection simple = sauvegarde)’와 ‘현대적 보호관계(protectorat moderne)’를 구별하였다. 이처럼 ‘단순보호’와 ‘보호관계’, 즉 protection simple과 protectorat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³⁰ 분명히 이 구별은 ‘외교’ 세계에서 약국에 대한 강국의 권력행사 이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을 유지하는 데에 단순보호의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리가 나가오가 ‘보위적 보호국(護衛的保護國, protection de sauvegarde) 혹은 단순보호국³¹’이라고 할 때 그것은 sauvegarde와 protection simple에 대응된다. 게랄의 단순보호·소브가르드는 아리가 나가오의 제1종 보호국 유형과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ii) 게랄은 제2부에서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le protectorat du droit des gens)’를 ‘고유하게 일컬어진다’라고 표현하였다. 그것은 ‘봉건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한편이 다른 편에게 종속되고 하급국가(inférieur)를 방위하고 지도하는 항시적인 의무를 상급국가(supérieur)에

29 Gairal, François(1896), Le protectorat international, La protection-sauvegarde, le protectorat de droit des gens, le protectorat colonial, p.32.

30 Gairal, François(1896), p.301.

31 有賀, 앞의 책, 2쪽.

게 부여하는 두 국가 간의 상황'이다. 그리고 '상급국가 권력의 이익을 위해 허용되는 지도나 후견의 권력이 뒷받침하는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는 단순보호와 전혀 연관이 없다. 단순보호에서 피보호국은 원리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protectorat)는 이미 존재하지 않은 보호국(protectorat)의 권리를 점유(occupation)하는 것과는 분명히 명확하게 다르다'.³²

게탈은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에 관한 이 같은 정의에 따라 그 피보호국은 "명목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주권국(Etat mi-souverain)'을 구성한다"³³고 하였다. 따라서 단순보호의 경우 피보호국이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도 하였다.³⁴ '반주권국'이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게탈이 '반주권국', 즉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에 있는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protectorat proprement dit, 즉 '고유하게 일컬어지는'('본래의'/'진정한') 보호관계는 '반주권국'이라 할 수 있으며, 약국은 '독립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큰 축소와 '그 국제적인 인격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깊은 수정을 받는다. '약국에 대한 강국의 고도의 지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써 하급국가는 이미 문명의 혜택을 향유하고 또 반대로 빼앗기기도 하며 그 보호자를 통해 그것을 서서히 획득하여야 한다'.³⁵

이렇게 되면, 게탈은 반주권국, 즉 피보호국에 본질적으로 어떤 자율적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탈의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에 상응하는 아리가 다가오는 '국제보호국'이라는 '제2종 보호국'³⁶의 경우에도 이러한 자율적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iii) 게탈은 마지막 제3부에 '식민지적 보호관계'(le protectorat colonial)라는 표제를 붙였다. 게탈에 의하면, 이는 단순보호와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와 구별해 새로 만든 것이다.³⁷ '식민지적 보호관계'에서 보호받는 나라(Etat protégé)는 존재하지 않는다.³⁸ 존재하는 것은 '미개지역에 대한 문명강국의 팽창활동과 비호활동'뿐이다. 그것은 '보호관계의 권리의 선점(occupation à titre de protectorat)'과 '행정적 보호관계(protectorat administratif)'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자주 사용되고 있는 '보호관계(protectorat)'가 용어로서 사용된 것뿐이다. 즉, '보호관계 권리의 선점'을 위해서는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무주물(res nullius)'로서 다른 강국을 물리치는 것이 결정적이다.³⁹ '보호관계의 권리의 선점'이란 '정치적 통일이라는 형태를 이루지 않고 비문명지역에서 완전한 주권을 획득하는 배타적인 능력을 유보하면서 몇 가지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기만 하는 문명국의 상황'이다. 그리고 '행정적 보호관계'란 '주권적 강국의 권위와 일치할 정도로 미개지역의 제도 유지를 효과적(effective)으로 하는 통치(régime)'를 말한다.⁴⁰ 따라서 게탈에게 '행정적 보호관계'는 보호국이 아니라 '통치'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호국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 셈이다. 저서 제목의 부제를 '보호-

32 有賀, 위의 책, p.109.

33 有賀, 위의 책, pp.301~302.

34 有賀, 위의 책, p.109.

35 有賀, 위의 책, pp.62~63.

36 有賀, 위의 책, p.62~63.

37 有賀, 위의 책, p.269.

38 有賀, 위의 책, p.303.

39 有賀, p.269.

40 有賀, 위의 책, pp.294~295.

소브가르트',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 '식민지적 보호관계'라고 붙인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게랄의 '행정적 보호관계'는 국가 간의 것이라기보다 그 행정적 실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아리가 나가오가 '행정상 보호국'이라는 '제3종 보호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게랄의 '행정적 보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⁴¹ 이 점에서 두 사람 간에 부합하는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리가 나가오가 이 유형을 독일에서 배운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으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게랄의 '보호관계 권리의 선점'은 아리가 나가오의 '식민적 보호국'이라는 '제4종 보호국'에 해당한다. 아리가 나가오가 비문명국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에 해당하는 번죽이 군생하는 지역은 사실상 종래의 주권이 있고 통일시켜야 할 국민이 있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국가의 외형이 없는 지역이다.⁴² 그래서 이 지역은 무주지로 간주되어 '점령'당할 수 있다. 국제법상의 보호설정이 필요하다.

3) 아리가 나가오가 게랄의 유형론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나카 신이치는 그와 관련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토작업에 학문적인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도 게랄과 온제라르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할 수 있다.

i) 온제라르트에게서는 게랄과 같은 유형론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온제라르트는 다수의 보호관계(protectorat) 사례를 공간적·

41 有賀, 위의 책, p.181.

42 有賀, 위의 책, p.182.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법이론적인 특징을 가지는 연역을 시도하였다. 그는 법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요구되고 자유의사로 받아들여진 후견과 같은 결합(union)의 분야를 원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심명제라고 하였다.⁴³ 그래서 그 법이론만으로 보호관계의 조약을 보면 역사적 사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데스파니에는 합의를 중시하며 낙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게랄이나 하일볼른에도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온제라르트는 법의 논리와 현실에서 법의 기능을 구별하고자 하고 현실의 억압을 다양하게 지적하였다. 참고로 그는 프랑스 전권공사로서 비스마르크가 주재한 1884~1885년의 베를린회의(아프리카 분할과 관련해 제국주의 강국 간의 이해를 조정함)에 참석하여 그 경과를 프랑스의 국제법 잡지에 보고한 바 있다.

ii) 온제라르트는 강국이 약국을 보호관계로 종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종속을 강조하더라도 약국의 자율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가 사는 시대의 보호관계가 고대 로마와는 다르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보호에는 고대 로마의 전통이 살아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서의 첫 페이지에 키케로의 '의무론' 한 구절을 서문으로 삼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원로원은 여러 왕, 여러 인민, 여러 민족의 항구이며 피난소였다. 따라서 그러한 보호(patrocinium)는 세계에 대한(로마의) 지배권(imperium) 이상으로 진실하게 요구되었다." 온제라르트는 보호관계에서 그 나라의 자율성과 자발적 의지가 전개될 여지를 늘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자발성이라는 관점은 게랄도 지니고 있었다. 보호관계에서 강국은 약국의 이러한 의지가 작용하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의지

43 Engelhardt, Protectorats, p.182.

는 때로 폭동으로 나타난다.

iii) 다치 사쿠타로는 오직 국제법에 나타난 국가 외교권의 무계약 상태야말로 주권·독립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반주권국도 아리가 나가오의 제2종 보호국도 법학적 이해라는 면에서는 결여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라이시 나오아키가 아리가 나가오에 대해 지적한 바와 같이, 보호관계에는 자발성이라는 관점이 숨겨져 있다는 고려는 다치 사쿠타로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다치 사쿠타로를 아리가 나가오보다도 이론적으로 높이 평가한 다나카 신이치에게서도 그러한 고려를 볼 수 없다. 다치 사쿠타로뿐만 아니라 운노 후쿠슈에게도 이러한 관점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06년(페이지 39) 7월 2일,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통감으로서 황제를 은밀히 알현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 한국황실의 존엄을 유지하고 강령을 보장하는 '한일의정서'에 의해 주어진 일본 정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그중 하나로 황제가 유생인 김승문(金升文, 한자불분명)이라는 잡배를 궁중에 들이고 있는 사태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황제는 추천한 자가 있어 “나는 오래된 습관으로 유럽 중 인재를 골라 자리를 주고 이야기를 듣는 예가 있다. 충분히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관헌에서 그 이상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⁴⁴

이토 히로부미는 유생의 '반일적인 언동을 싫어'(운노 후쿠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조약이 있어도 한국 측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다. 유생에게 궁중의 자리를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유생에게 자리를 주는 일은 황제 입장에서 법적

으로 정당성이 있으며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 따른 일본 정부의 의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 일을 문제시할거면 한국 국내의 법질서와 통감의 권한에 대해 신중하게 비교검토하는 것이 학문적·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통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색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운노 후쿠슈에 의하면 이는 '황제의 위배'⁴⁵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제라르트, 게랄, 아리가 나가오가 제시한 보호관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을 이토 히로부미에게서는 볼 수 없고, 보호관계의 구축이 일본 측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있다. 필자의 관심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미야모토 고이치로의 관점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치 사쿠타로가 말하는 보호국론의 특징(즉, 제2기 보호국론의 특징)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보호관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 결여는 곧 피보호국 측에서 호된 공격을 받는다. 이를 안중근을 통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4. 한일병합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국면의 분석 - 안중근의 재판에 비추어

1) 보호국의 유형을 연구하다 보니, 거기에는 약국인 피보호국이 강국의 보호라는 것을 '양해'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피보호국의 존재가 걸린 물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제라르트는 오랫동안 있었던 그러

44 海野福寿 編集·解説(2004), 『外交史料 韓国併合 上』, 不二出版, 379~380쪽.

45 海野福寿 編集·解説(2004), 위의 책.

한 인류의 물음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약국의 자율성이나 자발성을 강국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강국이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사례 중 하나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2)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관동도독부지방법원 고등법원검찰관인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의 심문을 받았다. 그 심문 중에 여러 가지 논점이 나왔다. 이 글의 관심사인 보호국과 관련해서는 제6회 심문조서가 중요하다.⁴⁶ 세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용한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타가나 표기를 히라가나로, 구자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체로 고쳤음을 말해 두고자 한다.

i) 동양평화와 한국의 독립에 관하여

검찰관이 청일전쟁이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일본이 선언했다고 하자 안중근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답 그렇습니다.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 한일협약도 한국의 독립을 꾀하기 위한 선언이었음은 알고 있는가?

답 그런 선언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한일협약을 선언한 것은 안다고

46 市川正明(1979), 『安重根と日韓關係史』, 原書房, 332~334쪽.

하면서도 그렇게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즉,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해도 한국이 그대로 믿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안중근은 일본이 그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검찰관이 “일본이 멋대로 말한다 해도 국제협약에 가입한 열강이 이를 묵시할 리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안중근이 그건 안다고 하니 다시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답 그렇다면 일본이 동양평화를 주창해서 한국을 멸망시킨다든가 병탄하든지 하려 해도 열강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대는 알고 있는가?

답 저는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는 야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열강들이 묵시하고 있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답 그것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열강들의 감시체제를 부정하였다. 실제로 그러한 법체제는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 해도 삼국간섭처럼 실제로 열강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뿐이지 감시체제가 조약이행을 보장한다는 것을 안중근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더 이상 안중근을 추궁할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이 일본의 선언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안중근의 주장은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ii) 보호와 자력에 의한 자위에 대하여

문답을 몇 개 생략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보도록 하자.

문 그렇다면 한국은 자력으로 청나라 혹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만약에 타국이 한국을 점령하는 일이 생기면 일본이 매우 불이익을 보는 지위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문 한국이 자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하에 장래 조선을 자주독립문명국으로 만듦으로써 일본자국의 안전을 피할 필요가 있어 통감제도까지 만들어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가?

답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 한국인도 어려서 부모와 헤어진 경우에는 후견인이 나서서 어린이를 보호할 것이다.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은 독립자위를 할 수 없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기 때문에 일본이 후견인이 되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충분히 그 뜻을 양해하고 있다면 통감제도도 오래 지속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에 반하여 한국이 후견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 오랫동안 통감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점은 알고 있는가?

답 일본은 맞다고 하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통감정치를 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무능함을 탓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답 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야심이 있든 없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동양평화라는 것을 안중에 두고 이토 히로부미 씨의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심문의 문답은 불꽃 튀는 것이었다. 여기에 안중근의 지극히 본질적인 주장이 나타나 있다. 안중근은 일본의 보호와 통감제도가 한국국민의 존재를 좌우하는 과제라고 보고 이토 히로부미를 증오하고 살해하였음에 틀림없다. 앞서 소개한 심문조서를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검찰관은 한국이 자력으로 청나라와 러시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며 통감제도의 존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안중근은 그것은 일본의 입장이라면서 ‘한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불필요하게 하는 동양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어서 그를 증오한다고 하였다.

iii) 보호와 정부의 죄에 대하여

문 독립자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상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생각하는데 어떤가?

답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조약을 건의하였다고 해서 박영효와 같은 인물을 제주도 유배보내고 지금 이완용 …… 과 같이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자를 내각에 두어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죄이기 때문에 정부의 근본부터 타파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독립자위할 수 없으면 일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검찰관의 말에 안중근은 혀를 찼을 것이다. 그러나 안중근은 흥미로운 대답을 하였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대답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가 독립자위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검찰관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중근은 객관적인 자세로 검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독립자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밖에 없다고 답하였다. 독립자위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반드시 보호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만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검찰관이 말하는 보호의 논리에 말려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심문은 문답의 상관관계로 성립된다. 따라서 검찰관은 자신의 물음만으로 문답을 할 수 없다. 안중근의 대답 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검찰관도 질문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보호국의 유형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바로 피보호국의 자율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2010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동시에 안중근이 처형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이 해를 맞이하며 필자는 이 둘을 아우르는 주제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보편적인 물음임을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논하였다.

메이지유신 직후부터 한일병합까지의 기간에 한정하더라도 외교의 실천적 장면에서 일본은 이웃 나라의 말을 그다지 경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시하였다.

그리고 보호국의 유형에 관해 서구 국제법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으로 사고하여 이웃 나라의 주장을 수용하는 이론들을 충분히 논하고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러한 실천적 학문의 대가가 이토 히로부미의 살해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강압적인 재판 상황 속에서 이루어

져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안중근의 말을 100년이 지난 뒤에야 듣는 사태가 벌어졌다. 잘 듣는 것에서부터 희망은 생길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부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일본

'동아시아 대란'과 식민주의의 | 아라이 신이치[荒井信-]
'황민화 정책'의 본질을 생각한다 - '황국신민 서사'를 둘러싸고
|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 실태와 한국인의 대응 | 장세윤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과 '만·한 불가분'론
-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책안을 중심으로 | 쉬용[徐勇]

식민지 체제와 <군중> - 일제시기 대만인 <군중>의 역사 사회학적 고찰
| 리청지[李承機]

‘동아시아 대란’과 식민지주의

이바라키대학 명예교수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1. 머리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은 취임하자마자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창했다. 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냉전체제의 극복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을 제창하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냉전체제 극복과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취임 후 처음 가진 외국특파원 대상의 한 강연에서 한·중·일 3국의 공통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그 첫걸음으로 역사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언급한 역사 공동연구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발생하는 역사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정부 간 프로젝트로 한일(1기, 2기 2001~2010), 중일(2006~2010) 양국 간에 이루어져 왔다. 양쪽 모두 작년 말 연구회 활동이 끝나 현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지금은 공동 연구의 계속 여부가 당면 문제가 되었는데, 필자의 감각으로는 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해 한국 측의 분위기는 오히려 비판적이다. 적극적인 쟁점조차 찾지 못하고 격렬한 역사분쟁의 완충장치로 이용당하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을 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는가? 중국과 비교해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명확해지는 듯하다. 일본은 중국과도 특히 전후사(戰後史)의 이해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했다. 당초에 비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현대사의 최대 문제인 침략에 대해서 일본 측 좌장을 맡은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는 “우리는 침략전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임했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 2010. 3. 1자), 중국 측 좌장 부평[步平]도 일본의 중국 전쟁이 침략전쟁이었다는 사실이 공동연구의 전제였음을 지적했다. 공동연구는 외교당국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일본의 외무관료도 조약으로 명문화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다.¹

그런데 한일 양국의 경우에는 식민지 지배 책임이 조약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65년 양국 간 국교가 회복되었을 때 1910년 한일 병합에 이르기까지 조약과 협정이 무효(null and void)로 규정되었지만, 그 머리말에 already라는 말이 덧붙여져 이상해졌다(기본조약 제2조). 한국은 조약체결 시점에서 이미 무효였다고 해석했고, 일본은 대한민국의 성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이제는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기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그것을 유보한 상태에서 조인한 경우는 세계의 조약사(條約史)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은 “(구 조약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로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다”고

1 1972년 중일공동성명은 “일본 측은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18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에서도 ‘공동성명에 제시된 제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인 1995년에 1965년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수상이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병합조약 등은 쌍방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체결되어 민족의 존엄과 민족 자결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1995. 11)라고 천명하여 애써 사태를 수습한 경위가 있다.

한일 양국의 역사 공동연구의 전제가 1965년 조약의 모호한 규정에 머무는 한 연구전제인 식민지 책임에 관한 대립은 해소될 수 없다. 지금도 일본의 외무관료는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일 양국의 역사 화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의 동아시아공동체도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이 아닐까?

2. 동양평화론과 한국의 독립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정책이 양국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급속히 좁혀 ‘한류 붐’이 일었던 것이 기억에 새롭다. 개방정책의 중심이 된 지명관 교수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한국의 모든 세력의 공통된 논리는 동양평화론”이라고 주장하고, 가장 먼저 최익현을 거명했다. 수천 명의 제자를 둔 유학자 최익현은 보호국화에 반대하는 의병운동 확대에 큰 역할을 했으나 결국 일본에 붙잡혀 유배지인 쓰시마[對馬島]에서 숨을 거뒀다. 현재 쓰시마에는 현지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세운 순국비가 세워져 그의 ‘애국애민(愛國愛民)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최익현은 서양의 침략을 독자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우므로 한국·일

본·청국 3국의 협력과 상호의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이 침략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정책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현재 강대(強大)하다 하더라도 결국 멸망할 것이며, 서양이 초래한 '동양의 화(禍)'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양평화론의 입장에서 일본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한 인물이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해 처형된 안중근을 일본에서는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한일 양국에서 연구와 자료 발굴이 진행되어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외친 인물로 평가받게 되었다.

안중근은 처형될 때까지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는데, 일본칸트학회 회장인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교수는 칸트의 평화론('영구평화를 위해서', 1795)과 안중근의 평화론의 공통점으로 ① 인간 사회와 정치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냉정하고 엄격한 현실감각, ② 식민지주의와 식민지배에 대한 엄중한 비판, ③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인간 육성이 불가결하다는 교육철학, ④ 무력으로는 참된 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함, ⑤ 평화론의 배경인 그리스도교의 신의 섭리라는 존재를 들고 있다.²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에도 같은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평화와 떨어질 수 없는 원칙으로 미국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이 내세웠던 민족자결주의를 스스로의 행동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3·1운동은 강화조약에 의해 전후의 평화질서가 현실화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민족자결을 포함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행동으로 시종일관 자각되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서도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

2 勝村誠(2009), 「安重根と植民地支配について-日韓國際平和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明らかになったこと」, 『歴史地理教育』 12월호.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평화가 그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조선의 독립이 필요한 단계다'(강덕상 번역)라고 주장하며 평화와 독립(민족자결)의 불가분 관계를 역설하고 있었다. 또 이때 『일본에 통고하는 서(書)』에서는 “옛적에 병합의 기세를 우리가 저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독립의 기세를 일본이 다시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들의 행동은 실로 세계의 새로운 기운에 맞춰 시대의 새로운 정세에 따라 생존과 발전과 영광을 누리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뿐이며, 결코 배타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강덕상 번역)라고 주장하여, 한국의 독립이 세계사의 전환에 부합하며 또한 그것을 촉진하는 행동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3·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베르사유강화회의였다. 회의의 기본 방향은 침략전쟁의 위법화와 민족자결이었지만, 한국의 참여를 거부하고 민족자결을 동유럽국가로 한정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빼앗은 산둥(山東)반도에 대한 독일의 권익을 같은 참전국인 중국에 반환하지 않고 일본에 주었다. 이에 격분한 중국에서 항일구국의 5·4운동이 일어나 중국 정부에 강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와 새로운 평화질서구축은 워싱턴회의(1921~1922)로 미뤄졌다. 회의 결과 일본은 산둥반도의 권익을 중국에 반환하는 등 열국과의 협조정책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영국과 미국 등 대국 본위의 평화였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워싱턴회의 직전인 1921년 11월 11일, 상하이(上海)에 민중단체 대표 118명 및 각계 인사 300여 명이 모여 중국 전국국민외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외적인 주장으로 『국외 선언』이 공표되었다.

“동아시아 평화를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은 일본이 폭력으로 한국을 병탄한 데 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논하면 물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 전체의 이해(利害)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은 조선을 점유하고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을 엿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만몽(滿蒙)을 침략하는 데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인이 말하는 대륙정책은 실로 한국이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장래 동아시아 대란의 근원은 반드시 조선이 초점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우방이 조선독립안을 제출해서 승인하고, 동아시아에 하나의 완충국을 마련해 이 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로 중국 국민 전체가 워싱턴회의에 희망하는 것이다”(가사하라 토쿠시[笠原十九司] 번역).

조선의 독립이야말로 ‘동아시아 대란’을 끊는 열쇠라는 주장이다. 일본의 민주주의 언론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는 바였다. 전후에 수상이 된 『동양경제신보』 주필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은 조선의 독립-식민지주의의 청산이 동아시아 평화의 전제임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³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치의 전환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기본으로 영속적인 동아시아 평화가 구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위법적인 전쟁과 식민지배의 명확한 청산이 없는 안정된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해에 필자가 동아시아공동체에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3 3·1운동: 「그들(조선인)은 그들의 독립 자치를 얻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여기에 있다.」(『동양경제신보』 1919년 5월 5일자 사설 「선인(鮮人) 폭동에 대한 이해」 독일의 권익이었던 칭다오[靑島]의 점령: 「(칭다오 영유는) 과연 극동 평화의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익 없이 도리어 무대를 험악하게 만들 해(害)가 있음을 두려워한다」 (1914년 11월 15일자 동양경제신보 사설 「칭다오는 결코 영유해서는 안 된다」). 워싱턴 회의: “만약 우리나라(일본)가 지나(支那, 중국) 또는 시베리아를 우리 세력권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포기한다면, 만주·대만·조선·가라후토[樺太; 사할린] 등도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1921년 7월 30일, 8월 6일·7일자 동지 사설) ‘대일본주의의 환상’.

3. 침략 확대의 메커니즘과 조선 지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생성기에 동아시아 민중 차원에서 조선의 식민지배를 ‘초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대란’이 예측되었는데, 역사는 이 우려가 정당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동아시아 대란’ 즉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발단은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중국 침략이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을 적대시한 관동(關東)군 참모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등의 모략을 바탕으로 선양(瀋陽) 부근에서 발생한 철도폭파 사건(1931. 9. 18)을 계기로 발동된 만주점령계획이 만주사변이었다.

이시하라 간지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4개월 전에 쓴 수기 『만몽문제사건(滿蒙問題私見)』에서 “만몽 문제의 해결은 목하 제일의 급선무”라며 일본이 만몽을 영유하는 것의 의의가 대소련 전략상, 중국대륙 제압의 중요성에 있다고 했다. 그 이외에 “조선의 통치는 만몽을 우리 세력하에 들으로써 비로소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몽의 영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타가키 세이시로 참모도 같은 해 5월의 강연 『만몽 문제에 대해서』에서 “결국 만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조선의 통치를 기하기 어렵다는 점은 조선에 거주하는 유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라고 말했다.⁴

중국 지역에서는 3·1운동에 호응해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확산되었는데 그 최대 거점이 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이었다. 1920년경부터 독립운동은 조선 국내의 운동과 시베리아지방의 조선인 무장투쟁과 연동하면서 발전했다. 국경을 사이에 두는 형태로 항일무

4 栗屋憲太郎 編(1985), 『ドキュメント昭和史 ② 満州事変と二・二六』, 平凡社, 60~66쪽.

장투쟁이 이루어졌으며, 만주사변 전야에는 간도 정세가 조선 통치의 안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만몽의 확보라는 목적 자체까지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다.

조선에 배치된 일본 육군·조선군 사령관은 “목하 간도의 공산당 세력은 청소년 학생 및 농민 사이에 이미 상당히 침윤(浸潤)했고, 또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도 차차 확고해지고 있다. 그 활동력을 점차 증대해 나가기 위해 지나(支那) 중원의 정세변화에 따라 혹은 중·러 교섭 정세와 관련해서 이것을 만주 전역의 교란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간도 정세에 대한 위기감을 고백하고 있다.⁵

철도폭파 사건을 계기로 관동군이 동북지방 전역에 출동했을 때 정부는 초기에 비확대 방침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방침을 일찍이 후퇴시킨 것은 군의 명령을 무시한 조선군의 월경 출병 때문이었다. 조선군의 출병은 관동군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이었지만,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사령관은 관동군이 요청하는 출병 이외에 ‘또한 간도 방면도 상황이 위협하여 극력(極力) 점령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참모총장, 육군 대신에게 상세히 의견을 피력했다.⁶

조선군은 독자적인 만주점령계획을 세워 모략(謀略)을 가다듬고 있었다. ‘대략 10월경에’ 간도지방에서 철도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핑계로 국경을 넘어 출병하여, 조선과 국경을 맞대는 백두산 이북의 간도지방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⁷ 관동군의 모략은 류타오후(柳條湖)사건으로 선수를 쳤기 때문에 불발로 그쳤지만, 조선군의 전쟁계획은 식민지 지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모험의 성격이 강했다.

조선군 참모로서 만주점령계획을 추진한 사람은 군참모인 간다 마사네(神田正種) 중좌였다. “조선군에 와서 조선의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조선인의 배일(排日) 분위기는 어린아이까지도 투철해서 시골 쪽에 가면 일본인 혼자 여행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한다. 이것도 만주의 배일이 전염됐기 때문이며, 만주사변은 조선군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경이었다. 식민지 지배의 동요(動搖)가 군에 의한 침략 확대를 유발해 나갔던 메커니즘은 명백하다.⁸

그리고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침략 확대가 중국의 민족적 저항과 미국 등 연합국의 억지정책에 의해 저해되려 했을 때 침략의 성과에 대한 포기가 식민제국의 붕괴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있었고, 영국·미국·네덜란드에 대한 개전(開戰) 결의라는 새로운 군사적 모험으로 비약시켜 나간다.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시 직전의 미일교섭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일본군이 철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미일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다. 개전 직전인 1941년 11월 5일 최고회의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수상은 미국의 철병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생각하건대 철병은 퇴각이다. 100만 대군을 출정시켜 수십만의 전사자 유가족,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수백만의 재화(국가 예산)를 낭비했다. 이렇게 된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결실을 맺어야 한다. 만약 일중조약에 나와 있는 주둔을 중지하면 철병 이튿날부터 사변 전의 지나(중국)보다 악화된다. 만주·조선·대만을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⁹

5 조선헌병대사령부, ‘간도사건에 관한 관찰 및 의견’ 8월 29일자.

6 林銑十郎(1996), 『滿州事件日誌』, みずが書房, 10쪽.

7 芳井研一(2000), 『環日本海地域社会の変容-「滿蒙」·「間島」と「裏日本」』, 青木書店, 233~234쪽; 神田正種, 『鴨綠江』(林銑十郎(1996), 앞의 책, 書付録), 176~177쪽.

8 花谷正, 『滿州事変はこうして計画された』; 栗屋憲太郎 편(1985), 앞의 책, 書所収.

9 제7차 「御前會議質疑応答の概要」, 日本國際政治学会, 『太平洋戦争への道』 별권, 자료편(1988년, 朝日新聞社), 566쪽.

중국 철병을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체제 붕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황은 개전 조칙(詔勅)에서 개전 이유에 대해 ‘자존자위(自存自衛)’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존자위’에는 식민제국으로서의 존재와 식민지 지배의 방어가 걸려 있었다.

제국 일본의 이러한 침략 확대 메커니즘은 종속되어 있는 민족들 간에 내셔널리즘이 고양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어떻게 식민주의가 침략주의와 결부되어 세계평화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어 갔는지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다.

4. 식민주의의 수렁

‘식민주의’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은 일본이 전쟁 목적으로 자존자위 이외에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내세운 데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반(反)영미의식을 강조하고 동남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을 반영해 점령정책에 협력시킴으로써 자원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였다. 또 일본이 동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지도권(패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전쟁 목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1943년 4월 신임 외상으로 취임한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는 중국을 비롯해 ‘공영권’ 국가의 내셔널리즘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자발적으로 일본의 전쟁에 협력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보편적인 전쟁 목적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외무성에 전쟁목적연구회를 설치했다. 연구회는 “종래의 지도적 이념이 극도로 강조된 공영권사상은 반성을 요한다”고 주장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전쟁 목적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이해 11월 5일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회의에서 발표된 대동아공

동선언에서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은 자취를 감추고, 자주독립과 전통의 상호존중, 호혜적 경제발전, 인종차별 철폐, 문화교류, 자원개방 등의 보편적 이념이 새로운 전쟁목적으로 강조되었다.

대동아회의는 전쟁협력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했지만 시게미쓰 마모루가 생각한 ‘동맹국’에는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참석자는 점령지역의 괴뢰정권이나 친일협력세력의 대표뿐이었다. 본디 시게미쓰 마모루가 새로운 전쟁목적으로 보편적인 이념을 필요로 했던 것은 일본의 패전을 내다보고 전후 강화회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도 일본의 전쟁목적이 아시아 민족의 마음에 호소하지는 못했다.¹⁰

마크 피티(Mark R. Peatti, 매사추세츠대학)는 전시에 일본제국이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그저 희미한 빛에 불과한 민족적 열망조차도 엄격하게 진압했다. 그것은 식민지제국 중에서도 가장 권위주의적인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反)식민지해방이라는 요란스러운 이데올로기를 지지했다”며 일본의 ‘동아시아 민족해방’이라는 이념의 기만성을 지적했다.¹¹

한편으로 민족해방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도 조선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다는 모순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다. 일본은 1943년 1월에 버마(미얀마)를 독립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검토 과정에서 버마의 독립이 ‘우리 세력 아래에 있는 여타 민족의 독립 운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대본영정부 연락회의 설명자료)와 ‘독립이라는 문구가 조선의 독

10 波多野澄雄(1996), 『太平洋戦争とアジア外交』, 東京大学出版会, 161~172쪽; 安田利枝(1990), 「大東亜會議と大東亜共同宣言をめぐって」, 『法学研究』 63권 2호, 慶応義塾大学, 369~422쪽.

11 マーク・ピーティ(浜口裕子訳)(1993), 「日中戦争・太平洋戦争期の日本の植民地帝国」, 細谷千博他 編, 『太平洋戦争』, 東京大学出版会, 393~415쪽.

립 문제에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어떤가(해군) 하는 등의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었다.¹²

일본은 싱가포르전에서 포로가 된 인도병에게 '인도 국민군'을 창설하도록 하고, 망명 중인 독일에서 잠수함을 타고 도착한 국민회의파 지도자인 수바스 찬드라 보스(Subhas Chandra Bose)를 수반으로 하는 자유인도임시정부를 수립시켰다(1943. 10. 21).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이 정부를 승인했다. 11월 5일 개최한 대동아회의 석상에서 도조 히데키 수상은 일본해군이 1942년 이래 점령하고 있던 인도양 동부의 안다만·니코발제도를 점유 영토가 없는 이 정부에 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것은 외무성 조약국이 다음과 같은 국제법상의 의견(6. 11)을 제시한 결과였다.

'정부를 승인하는 이상 영토와 인민을 주권의 객체로 하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혀 국가를 소유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 승인을 내주는 일은 법리상 설명할 수 없는 바'다. '만약 정부의 근거가 없는 정부를 승인하면, 이론상 여러 망명 정권 혹은 충칭(重慶)의 조선 독립정부 등과 같은 존재에 역으로 근거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견해였다.

그래서 조약국은 즉각적으로 자유인도임시정부를 승인하기보다 우선 안다만제도를 그 영토로 하고 국가, 정부로서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갖추도록 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진언했다. 이때 외무성이 '충칭의 조선 독립 정부'를 예로 들면서 일본이 영토를 소유하지 않는 인도임시정부를 인정하면 3·1운동의 결과로 상하이(이후 충칭)에 수립된 '대한임시정부'도 망명 정권으로서 정통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이 지극히 흥미롭다. 이것은 식민주의를 전제로 하는 원칙상의 민족해방론이 오히려 침략 확대와 결부된 좋은 예일 것이다.¹³

12 波多野澄雄(1996), 앞의 책, 106~107쪽.

일본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한 것일까? 1942년 11월, 그때까지 식민지를 의미하는 '외지(外地)'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조선과 대만이 내무성의 관할로 들어가면서 '내지(内地)'로 여겨졌다. 탈(脫)식민지화한 것처럼 겉모양을 꾸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배의 내용도 '조선인은 참된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철저한 동화정책,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슬로건으로 하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향했다. 이는 민족성의 말살이며 최악의 식민주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쟁 말기에는 식민지행정에 정통한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 유자와 타키오[湯澤多喜男]조차 '내선일체, 내지일체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극단적인 차별의식을 품고, 앵글로색슨식의 식민정책에 빠져, 때로 그 하는 바는 앵글로색슨보다도 심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실상을 폭로하고 있었다.¹⁴ 조선이나 대만으로 관점을 옮겨 보면 '대동아민족의 해방'은 최악의 식민주의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스스로 빠진 식민주주의의 수렁이 일본의 움직임을 제약하였고, 결국에는 꿈쩍할 수 없게 된 일본이 식민주주의의 시비(是非)를 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리가 없었다.

5. 연합국의 대일정책과 조선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4개월 전인 1941년 8월, 독·소 개전 직

13 波多野澄雄(1996), 위의 책, 180~181쪽.

14 「朝鮮及び台湾人の政治的処遇に関する湯澤樞密顧問官口述要旨」(1944. 12. 16); 浅野豊美, 「日本帝国最後の再編- 「アジア諸民族の解放」と台湾・朝鮮統治」,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 研究シリーズ 35, 『戦間期のアジア太平洋地域-国際関係とその展開』, 247~296쪽.

후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이 대서양상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양 정상은 독일과 그 동맹국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더 나은 세계의 미래'를 위한 기초로서 대서양헌장을 발표했다. 헌장은 후에 연합국선언에 도입되어 연합국 공통의 전쟁목적이 되었다.

제1항에서는 우선 영토 불확대의 원칙을 내걸었으며, 다음으로 인민의 통치형태 선택의 자유(제2항)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표명된 관련 인민의 동의를 따르지 않는 영토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제3항)고 협의하여 민족자결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게다가 이해 10월에는 독일이 점령지에서 자행한 잔학행위에 주목하고, '이들 범죄의 처벌은 이제야말로 주요 전쟁 목적의 하나로 손꼽혀야 한다'라는 영미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위법적인 전쟁을 벌였지만 처벌도 주요 전쟁목적이 되었던 것이다.

1943년 11월 27일에 공표된 미국, 영국, 중화민국에 의한 '카이로선언'은 일본과 전쟁을 치르는 연합국의 전쟁 목적을 밝히고 있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또한 이를 처벌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치르려는 것이다. 위의 동맹국은 자국을 위한 하등의 이득을 원하지 않는다. 또 영토확장을 위한 하등의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침략 책임과 처벌, 영토 불확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언의 후반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탈취'·'점령'한 태평양제도의 박탈, 만주·대만 및 부속도서의 중국 반환, 조선의 처리(후술)로 되어 있으며 끝으로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요구했다.

선언에 의해 민족자결주의가 전쟁의 중요 쟁점으로 자리잡았으며 전후에는 국제연합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카이로선언에는 연합국의 전쟁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대 독일전 종료 이전 알타 회담(1945. 2)의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은 파시즘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각국의 질서회복과 경제재건 과정을 서술하면서 대서양헌장 제2항(모든 인민의 통치유형 선택의 자유), 제3항(침략국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주권과 자치권의 회복)을 직접 인용했다.

물론 카이로회담과 알타회담의 배경이 되는 국제정치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민족자결의 원칙 적용에서 유럽과 아시아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새로운 전쟁 목적을 내세운 대동아선언도 사실은 대서양헌장을 의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인 이념을 적당히 포함시킨 것이다. 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연합국이 제기한 민족자결의 원칙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국 측에도 식민지주의의 시시비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1941년 9월 대서양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처칠 수상은 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인도와 버마를 헌장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 식민지주의를 견지하는 결의를 보였다.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에서 독립 시기와 관련해 '머지않아(in due course)'라는 불투명한 표현으로 기록하였다. 이 선언에서 조선과 관련된 조항의 기초는 미국무성의 관여 없이 대통령 측근인 해리 홉킨스(Harry Hopkins)가 구술한 것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의 초안은 '(조선의 독립은) 일본의 몰락 이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였다. 여기에 루스벨트가 가필해 문제의 부분을 '적당한 시기에(at the proper moment)'라고 바꾸고, 마지막에 처칠이 '머지않아(in due course)'라는 표현으로 고쳤다.¹⁵

In due course는 적당한 진행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의미지만 적당한 진행과정이란 신탁통치를 뜻하며, 조선은 20~30년의 신탁통치 이후에 독립시킨다는 의미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과정이 당

15 藤城和美(1992), 『朝鮮分割-日本とアメリカ』, 法律文化社, 198쪽.

시 즉각적인 독립을 열망하고 이를 확신하고 있던 조선인들의 기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필리핀 통치경험에 견주어 조선 문제를 생각한 루스벨트는 조선의 역사와 조선인의 자치능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¹⁶ 처칠의 가필도 식민지주의적 질서에 대한 그의 고집을 말해 준다.

이미 조선인들은 자국을 제쳐놓고 대국 간의 거래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통절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러일전쟁 종결 직전에 이루어진 미국의 필리핀 통치와 일본의 조선 선점을 서로 인정한 미일 간의 비밀약속, 가쓰라태프트협정이 그 대표적인 예다. 가쓰라태프트 협정은 1925년 미국역사가 데넛 타일러(Dennett Tyler)가 발견할 때까지 비밀에 부쳐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미조선위원회 의장(이승만)이 트루먼(Harry shippe Truman) 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1945. 5. 15)가 남아 있다. 당시 UN 창설 회의가 열리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승만의 편지는 ‘카이로선언에 반하는 알타비밀협정’이 밝혀진 점부터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선이 비밀외교에 희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05년 조선을 일본에 매도한 최초의 비밀협정은 그 후 20년간이나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알타협정은 UN회의 진행 중에 바로 현지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우리는 각하에게 개입을 호소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3000만 인민의 새로운 노예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¹⁷라고 써 있다.

16 神谷不二 편(1976), 『ローズベルト・スターリン会談(1945. 2. 8)』, 『朝鮮問題戦後資料 제1권』,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62~164쪽.

17 ‘재미조선인위원회 의장이 트루먼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 1945년 5월 15일, 샌프란시스코’ Foreign Relations of U.S.; Diplomatic Papers(이하 F.R.) 1945, vol.VI, p.1028.

알타에서 맺은 소련의 대일참전에 관한 비밀협정에는 조선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 점에 관한 한 ‘카이로선언에 반하는 알타비밀협정’은 문서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한 조선의 신탁통치에 관한 수뇌 간의 약속은 구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의 참전을 규정한 알타협정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 과거의 비밀협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UN회의에 민족대표 파견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 편지를 받은 국무성은 이승만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연합국의 전후 처리에 대해 조선인 일반이 가지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말해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무렵, 대통령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해리 홉킨스는 5월 28일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과의 회담에서 조선의 신탁통치 기간에 대해 25년이 될 지도 모르고 더 짧아질 지도 모르지만, 확실하게 5년이나 10년은 될 것이라고 말해 조선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 국내에 신탁통치 방침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해방 후인 1945년 10월 20일 국무성 극동부장 빈센트의 강연 보도를 통해서였다.¹⁸ 미국이 ‘헌장’이나 ‘선언’에서 민족자결의 원칙을 강조해 놓고 실제로는 즉각적인 독립에 찬물을 끼얹은 신탁통치안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셈이다. 배신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전후 처리 문제와 조선

연합국이 ‘민족자결’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전후 처리에서 식민지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점은 식민지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18 이경민(1996), 『조선현대사의 기로』, 헤이본사, 228쪽.

전후에 남겼다. 전후 아시아에 복귀한 구(舊) 중주국, 프랑스·네덜란드는 격렬한 독립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구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하도록 강요 받았다. 인도·파키스탄에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영국의 경우에도 영국에 이양을 결의하도록 만든 것은 1946년 2월, 뭍베이(뭍바이)에서 수병의 반란으로 발생한 격렬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탈(脫) 식민지화가 포츠담선언 수락에 따라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 ‘탈식민지화’는 패전으로 갑자기 초래된 공백으로 인식되었고, 8·15를 해방으로 자각한 재일한국인들의 움직임은 불쾌하게 느끼는 것 외에 국민의 자의식에 심각한 영향은 초래하지 않아 제국 의식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을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삼국인’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치안상 골칫거리이자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고, ‘점령군이 조선인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자유와 평등을 조선인이 누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데 결사적이었다.’¹⁹ 점령군도 결국 일본 정부의 태도에 동조하였고 대다수 일본 국민의 의식도 이를 용인했다. 그 결과, ‘동화정책의 역사가 긴 구(舊) 제국의 피지배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제국의식’이 잔존하게 되었고, 오늘에도 그 잔상이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⁰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는 식민지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회였지만, 당사국인 대한민국·조선인민공화국의 참여는 인정받지 못했다. 당초 연합국 측은 한국도 당연히 강화조약 체결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의 반대로 조인국에서 제외되었

19 점령군의 재일조선인정책의 변천에 관해서는 이하 참조. 小沢有作(1973), 『在日朝鮮人教育論 歴史編』, 亜紀書房, 177~225쪽.

20 Nish, Ian(1980), ‘Regaining Confidence : Japan after the Loss of Empir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15, No.1.

다. 요시다 시게루가 반대한 이유는 “일본 국내의 조선인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다. 그들이 평화조약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국내의 조선인은 재산과 손해 배상에 대한 연합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행사할 것이다.

일본에는 조선인이 100만 명 가까이 있으므로 일본은 터무니없는 액수의 청구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등이었다.²¹ 전자는 ‘반공(反共)’을 키워드로 하는 냉전의 논리이며, 후자는 아시아 전략기지로써 일본경제의 부흥과 강화를 촉진하는 미국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리를 추구한 주장이었다.

그 결과, 강화조약에서는 조선의 독립 승인과 영토권의 포기가 규정되는 데 그치고, ‘과거의 청산’은 한일회담에 맡겨졌다. ‘탈식민지화’를 위한 국내적 조치로서 강화 발표와 함께 재일 조선인·대만인의 일본 국적이 일방적으로 박탈되었다.²² ‘과거 청산’이 유보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냉전의 영향이었다. 한일회담은 1965년에 타결되었지만 여기에도 냉전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과거 청산’은 애매모호해져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다툼이 있다.

조선의 남북통일 움직임이 현재화되고 있고,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교회복이 일정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일본 측의 문제로 ‘과

21 『아사히신문』 2000년 8월 22일자. 요시다 시게루는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간절한 부탁으로 1912년부터 1916년까지 중국 국경의 안동(단동)영사를 맡았다. 그 같은 경력을 갖춘 외교관이 변방에서 4년이나 머무른 것은 이례적이다. 존 다위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 근무를 통해서 “그는 조선인의 논의를 선호한다, 경쟁심이 왕성하다, 화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등의 단순화된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서술하고 있다(ジョン・ダワー, 大窪憲二訳(1991), 『吉田茂とその時代(上)』, 中公文庫, 68~69쪽).

22 荒井(2000), 「日韓對話の試み 歴史における合法論, 不法論を考える」, 『世界』 11월호 수록.

거 청산'이 제국의식의 잔존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황민화 정책’의 본질을 생각한다

- ‘황국신민 서사’를 둘러싸고

교토대학 교수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머리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황민화 정책’ 시기에 행해진 각종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 지원병·징병 제도, 노동자의 강제 연행·강제 노동, 일본어 상용과 신사 참배 강요, 창씨개명,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식민지배에 관한 역사적 기억 대부분이 ‘황민화 정책’ 시기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실시된 정책의 전체상이 해명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자 동원 등에 관해서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해온 전시(戰時) 강제 동원 조사 활동에 의하여 상세한 실태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 글은 ‘황민화 정책’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황국신민 서사’를 다루되, 특히 그 보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조선인의 대응을 밝히고자 한다. ‘황국신민 서사’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¹에서 다른 적이

1 水野直樹(2011), 「皇民化政策の虚像と実像-「皇国臣民の誓詞」についての一考察」, 国立歴史民俗博物館 편, 『「韓国併合」100년을問う』, 岩波書店.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논하기로 하며 ‘황국신민 서사’의 보급 과정, 1939년에 건립된 ‘황국신민 서사의 기둥[皇國臣民誓詞之柱]’ 등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명하고자 한다.²

2. ‘황국신민 서사’ 제정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개시 후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였다. 그 첫 번째가 ‘황국신민 서사’를 제정하여 널리 조선인들에게 제창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서사’는 9월 하순 경성에서 열린 ‘전선 중견 청년 대회’에서 제창된 ‘맹세’ 3개조를 기초로 하여 학무국 사회과가 원안을 만들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일부를 수정하여 10월 2일 학무국장 통첩 형식으로 각 도지사 와 학교장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이 학무국장 통첩의 본문은 ‘서사’ 제정의 법적 근거를 언급하지 않고 ‘서사’를 필요로 하는 시국 인식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서사’의 문장이나 제창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첩에 첨부된 별지에 정해져 있었다.³

‘서사’는 초등학교(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 등) 아동용 ‘(1)’과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용 ‘(2)’가 있었다.

● ‘황국신민 서사(1)’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는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훌륭한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황국신민 서사(2)’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는 힘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하련다.

‘서사’의 문장은 어디까지나 제창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형태로 쓰여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전전(戰前) 일본 교육의 기본이던 ‘교육 칙어’와 달랐다.

애당초 학무국장 통첩으로 이러한 ‘서사’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학교의 아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리 및 교원 그리고 일반 사회인까지 ‘서사’를 제창하게 할 권한이 학무국장에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사’를 제정하고 자발성의 명분을 취하면서 강제로 제창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제창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학무국 스스로가 ‘서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조선어신문 『매일신보』는 10월 5일 ‘서사’ 제정을 전하는 기사를 게재한 후 다음날부터 제호 아래에 ‘서사’의 문장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6~13일까지 ‘서사’에는 ‘총독부학무국’으로 적혀 있고 학무국이 제정 보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14일에는 ‘총독부학무국’의 문자가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서사’만 내걸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자발

2 이 글은 2010년 8월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대폭 고쳐 쓴 것이다.
3 학무국장 통첩이 교육 관계 예규집에 수록된 것은 1942년에 간행된 학무국 학무과 편(1942), 『現行朝鮮教育法規』(조선행정학회, 236~239쪽)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제창해야 하는 ‘서사’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학무국이 제정한 사실을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이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매일신보』가 당초 ‘황국신민 서사’가 아닌 ‘국민 서사’라고 명명했다는 사실이다. 6일자에 ‘맹세’라고만 쓰여 있던 것이 7일부터 ‘국민 서사’로 변경되어 19일까지 계속된 후(18일 게재 없음), 20일부터 ‘황국신민 서사’라는 제목이 되었다(모든 문장은 일본어).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총독부 측에서 ‘서사’를 어떻게 조선인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가에 대하여 망설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덧붙여 『경성일보』는 10월 6일부터 제호 아래에 ‘황국신민 서사’로 게재되고 있지만, 학무국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3. ‘서사’의 보급과 신체 훈련

‘서사’가 제정된 후 학교의 조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서사’를 제창하게 되었다. ‘서사’의 문장을 상기시키기 위해 카드에 인쇄하여 배포하거나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서사’ 필름을 상영하기도 했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휘호한 글씨를 부록으로 구독자에게 배포하였고, 각종 잡지에도 책머리에 ‘서사’ 게재가 의무화되었다.

1938년 9월에 총독부가 개최한 시국대책 조사회의 『자문 방안 참고서(생활 쇄신에 관한 건)』(조선총독부 작성)에는 ‘황국신민 서사 보급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⁴

4 朝鮮總督府(1938),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生活ノ刷新ニ關スル件)』, 20쪽.

● 보급 상황

1. 관공서 및 각종 단체에 제창하게 하도록 통첩
2. 일반에 배포하는 이외에도 게시 및 상시 휴대하게 함
3. 학교, 관아에서 크게 써서 게시하게 함
4. 관공서, 은행, 각종 단체 모임 때 제창
5. 학동과 가족이 함께 기상, 취침 때 제창
6. 학교 직원, 아동이 가미다나(일본 신을 모시는 선반)에 배례하고 제창

● 감상

1. 지도자의 지침이 되어 국민정신의 확립에 효과적
2. 輕佻 詭激한 행동 방지
3. 생업 보국의 취지 철저에 효과 나타남
4. 보국 정신을 견고하게 함
5. 엄숙 경건한 감격을 얻음
6. 각자 황국신민된 각오를 깊게 함

여기에 기록된 대로 총독부당국은 일상 생활의 다양한 장소에서 ‘서사’를 제창하게 하여 그 보급을 도모하면서 제창 방법에 관해서도 통첩을 내놓았다.

처음 제정할 때 학무국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선인에게도 ‘서사’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조선어로 번역하여 조선어로 제창하는 것도 도모했다. 경성 라디오 방송국의 제2방송(조선어)은 1937년 10월 12일부터 오후 9시 30분과 10시 30분에 ‘서사’를 방송하기로 했는데, 먼저 학무국 직원이 일본어로 제창한 후 시학관 장응진(張膺震)이 조선어로 번역했다고 한다.⁵ 라디오 방송 이외의 경우에도 번역되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학무국이 중시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것을 볼 때, 라

디오 방송 외에도 '서사'가 조선어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서사'는 일본어로 제창해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강해졌다. 1938년 1월 8일 학무국 사회교육과는 '서사'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이해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조선어로 낭독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어'(일본어)로 낭독하라는 통첩을 내렸다.⁶

'서사'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일본어 텍스트에 한글로 음을 붙인 '서사 카드'를 낳게 되었다.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소리로 '서사'를 제창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내용은 몰라도 여러 번 제창한다면 그 정신을 체득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사고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강원도에서의 '서사' 보급 상황에 대하여 1938년 4월 12일 『매일신보』는 "그 지방 농촌에서는 아직도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에 이르고 참된 보급은 국어만으로는 철저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도당국은 잠정적인 조치로 향후 '서사'에 언문(한글)으로 국어 발음의 '후리가나'를 붙여 보다 쉽게 낭송하게 하는 등 전 도민에 대하여 보급의 철저를 기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서사'는 일본어로 제창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하여 학무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총독부 직원 와쿠 마사시[和久正志]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⁷

"황국신민 서사는 지금까지 누차 말한 일본정신의 정수, 대일본제국 신민으로서 가져야 할 각오를 가장 간단명료하고 진지하게 나타낸 글이다. …… 이것의 제창은 국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모두 국어로 낭독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서사의 진정한 정신은 국어로 낭독하는 것에 익숙해짐에 따라 틀림없이 한층 더 명료하고 강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국어로 낭독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겠지만 이 같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는 사람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서사'의 제창 방법에 관해 나타난 또 한 가지 의견은 입으로만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38년 8월 『경성일보』에 연재된 좌담회 기사 '애국 조선을 말하는 좌담회'에서 경성일보 사 사장 대구치 스케이치(田口彌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⁸

"지금의 지원병 제도와 관련해서 전날 저희 회사 소학교신문 주최로 어린이회를 부민관에서 열었는데 그때 저도 갔습니다. 황국신민 서사를 창화(唱和)할 때는 어떤 태도일까 봤더니 대개 한 사람이 입으로 '하나 황국신민은'이라고 하면 그에 이어서 말하는 것뿐으로, 마치 스님이 경문을 읊는 것 같아 감흥이 없어 '서사'가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좌담회보다 앞서 1938년 6월 18일 학무국장은 각 도지사와 학교장에게 '서사 제창 또는 낭송에 대해서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의 보급에 노력하는 동시에 서사를 단순히 암송함에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잘 파악하여 서사 제정의 취지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시하는 통첩을 보냈다고 전해진다.⁹ '서사'를 말로만 읊거나 암송하는 것으로는 그 정신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당국자가 생각한 것이다. 원래 '서사'제정을 전했던 학무국장 통첩의 별지 『'황국신민 서사' 服膺 방법』에는 '장중 엄숙하게 열성을 가지고 고창(高唱)시킬 것'이라고 제창 방법을 지도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 강조되게 된 것이다.

5 『京城日報』(1937. 10. 15) 朝刊; 『每日申報』(1937. 10. 16)

6 『每日申報』(1938. 1. 9) 이 통첩은 신문 기사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7 和久正志(1940), 「通俗時局講演資料(五)」, 『朝鮮行政』 제19권 제2호, 147쪽.

8 『京城日報』(1938. 8. 25) 조간. 좌담회에는 학무국장 시오바라 도키사부로[塩原時三郎], 외무부장 마츠자와 타츠오[松沢龍雄] 등 총독부 관계자를 비롯해 조선군, 경성제국대학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9 『每日申報』(1938. 6. 19) 이 통첩에 대해서도 원문은 미확인이다.

‘서사’의 제작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바로 당국이 생도·학생들의 신체를 규율하는 것 자체였다. 이러한 ‘서사’와 신체 규율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 ‘황국신민 서사의 기둥(皇國臣民誓詞之柱)’이다.

4. ‘황국신민 서사의 기둥’ 건립

1938년 5월 18일에 열린 제16회 조선교육회 대의원회에서 경기도 대표가 ‘조선신궁에 황국신민의 서사탑 봉헌에 관한 건’을 제안하였다. 1940년에 황기 2600년을 맞이하는 것에 맞춰 조선신궁 경내에 서사탑을 건설하고 경비는 아동·생도·학생 등에게 거두는 것이 제안의 취지였다. 함경남도 대표는 이에 찬성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서사 정서(淨書)를 납장(納藏)하는 것을 덧붙여 이 제안이 가결되었다. 대의원회는 비용을 10만 엔 정도로 하고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결의했다.¹⁰

이 결의 후 기부금 모집과 서사탑의 설계·도안 작성 등이 진행됐다. 이듬해 2월까지 조각가 아사쿠라 후미오(朝倉文夫)의 설계 및 도안이 확정되고, ‘서사’ 정서도 완료했다고 한다. 3월부터 조선신궁 돌계단 왼쪽에서 공사가 시작되어 11월 3일 준공했다.¹¹

‘서사의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에 화강암을 붙인 높이 16.7m, 가로폭

25.5m, 세로폭 10.2m의 거대한 탑으로 푯대에 미나미 지로 휘호인 ‘皇國臣民誓詞之柱’ 글씨를 새기고 전면에는 ‘궁성(일본천황 궁궐)’과 ‘조선 아악(기미가요(일본 국가) 연주)’의 조각, 좌우에 ‘서사’ 1과 2, 배면에는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조선교육회장이 쓴 ‘皇國臣民誓詞之柱記’를 새긴 돌이 붙여졌다. 아악 조각 뒤편에 실(室)이 있어 서사 정서 140만여 장을 수납했다. 공사비 총액은 10만 엔, 기부한 사람 총계 141만 2,200여 명이었다.¹² 학생들 1인당 7전 정도를 모은 셈이다. 이 기부가 강제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준공식이 열린 11월 24일부터 4일 후, 학무국은 ‘황국신민 서사의 기둥 앞에서 거조(擧措)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냈다. ‘서사의 기둥’ 앞에서는 ‘그 거조가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할 것’, 단체의 경우에는 ‘기둥 정면에 있는 궁성 조각을 통해 궁성에 대해 최경례를 할 것’, 그리고 ‘황국신민 서사 제작’·‘창가「바다를 가면」 합창’을 지시한 통첩이다.¹³ ‘서사의 기둥’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규율하기 위한 통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신궁 경내에 ‘서사의 기둥’이 건립된 후 비슷한 것이 조선 각지에 세워졌다. 이미 1938년 12월에 경북 영주군 이산면에서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입소에 합격한 조선인 청년이 합격을 기념하여 동면 주재소 앞에 ‘황국신민의 서사탑’을 세웠다고 보도되었다.¹⁴ 이것은 교육회에 의한 ‘서사의 기둥’ 건립 계획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 ‘서사의 기둥’ 건립 이듬해에는 각지에서 ‘서사탑’이나 ‘서사의 기둥’을 세우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기원 2600년’에 해당하는 해였기 때문이다. ‘기원 2600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활동은 일본 ‘내지’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황국신민 서사’에 관한 것이었다.

10 「第16回朝鮮教育會代議員會(昭和13年度)」, 『文教の朝鮮』 제155호, 1938년 7월, 85쪽. ‘서사의 기둥’의 발안자는 학무국장 시오바라 도키사부로였다고 한다. 시오바라 도키사부로 재임 중의 업적에 대해 “지원병 제도, 황국신민 서사탑, 반도인 창씨, 입학시험 폐지, 정군(국민정신총동원연맹) 이사, 청년단 개편, 의무 교육제 등등 대충 생각나는 히트만으로도 이 정도”라고 되어 있다(「塩原学務局長を送る」, 『内鮮一体』 제2권, 제4호, 1941년 4월, 3쪽).

11 「皇國臣民誓詞之柱竣工諸行事, 昭和14年度朝鮮教育會總會諸行事」, 『文教の朝鮮』 제173호, 1940년 1월, 66~67쪽.

12 위와 같음. 『朝鮮と建築』 제19권, 제1호, 1940년 1월, 권두 도판.

13 『文教の朝鮮』 제176호, 1940년 4월, 81쪽, 66~67쪽.

14 『毎日新報』(1938. 12. 19).

국립공문서관 소장 '기원 2600년 축전 기록' 제10권은 식민지를 포함하여 일본 각지에서 열린 기원 2600년 기념 행사 및 기념물을 기록한 자료인데 거기에는 조선에서의 '황국신민 서사'에 관한 건조물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에서 지어진 건조물로는 신사(神社)·신사(神祠)와 공회당이 많았지만 학교에서는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동상 83건,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 동상 72건, 봉안전(천황 사진, 교육칙어를 보관하는 건물) 67건, 국기 게양대 55건에 이어 '서사탑과 기타 교육탑' 35건으로 되어 있다.¹⁵ 학교 이외에도 형무소, 읍면, 교육회 등에 의해 '서사탑'이 세워진 곳도 있다. 또 한 이 기록에 게재되지 않은 '서사 기둥'과 '서사탑' 건립을 전하는 신문 기사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서사'를 새긴 비석이 발견된 것을 전하는 뉴스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봐도 꽤 많은 '서사비'가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궁 경내에 세워진 '서사의 기둥'과 마찬가지로 각지의 '서사비' 앞에서 항국시민 서사 제창이 강제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학무국의 통첩에 지시된 것과 같이 서사의 제창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을 정하고 '거조', 즉 신체의 규율을 강화하게 된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서사'는 식민지 주민을 그 문장과 언어만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주민의 신체를 규율하는 역할도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황민화 정책'에서 중시되는 것이었다.

5. 저항의 양상

'서사'의 제정, 보급은 조선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일본어를

15 ゆまに書房復刻版(2002), 『紀元二千六百年祝典記録』 제19권, 468쪽.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로 제창하게 하는 것은 폭력 일뿐이었다.

그런 방식이 통치정책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당시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한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¹⁶

구호라 해야 좋을지 표어라 해야 좋을지, 어쨌든 감탄부호를 열 개 정도나 포함한 위세 좋은 짧은 말이 경성시에 범람하고 있다. 물론 지나사변(중일전쟁) 이후의 현상으로 바로 슬로건 시대다.

…… 일본 정신을 고양하라.

내선 일체, 선만 일여(鮮滿一如).

陋習 타파, 虛禮 폐지. ……

대충 이런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심각함을 환기시키는 구호가 차라리 골계(滑稽)화되거나 사람에게 싫은 느낌을 줄 우려가 없는가 생각하는 것은 필자뿐일까? 슬로건은 침묵한 채 시각에 호소하려는 문자뿐만이 아니다. '황국신민 서사' 같은 것은 더욱 더 철저히 이것을 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로건의 발성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만일 그 구호가 지도자의 독선적인 취향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없는 의자를 향해 절규하는 연설처럼 완전한 난센스와 다름 없다. 하물며 민중에게 함께 절규하게 하는 것은 장기 건설을 필요로 하는 시절에 목을 쉬게 하거나 배를 주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이야기다.

일본인에게도 이러한 비판을 받은 '서사'에 대하여 많은 조선인이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서사'에 대한 저항관련 기록은 이미 발표한 줄고에 썼는데, 여기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6 原口京太(1939), 「スロガン時代を打診する」, 『朝鮮及滿洲』 제374호, 50~51쪽. 原口京太는 『朝鮮及滿洲』, 『朝鮮行政』 등에 기고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 일본인 언론인으로 보인다.

강원도 고성 초등학교 훈도 천성환은 민족문학연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고 검거되었는데 경찰에 압수된 일기에 “우리 조선사람에게는 ‘서사’ ‘황국신민 서사’는 필요 없다. 왜 강제적으로 교육을 하느냐(1938. 4. 4)”고 썼다.¹⁷

대구 사범학교 졸업 후 국민학교 훈도가 되었던 조선인은 “담당 6학년 아동 70여 명에게 누설한 말 중에 자신이 훈도가 된 것은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으로 황국신민 서사를 낭독해도 마음속으로는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잃지 말 것, 조선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됐다.¹⁸

서사를 제창하고 있는 마을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천자문을 읽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검거된 사례도 있다.¹⁹

또한 조선 독립을 주장했다고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김영배 (경기도 안성군 거주, 25세, 농업)는 경찰의 심문에서 경찰의 시국좌담회에서의 서사 제창에 반감을 품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²⁰

질문 그대는 좌담회에 참석했을 때 황궁 요배, 황국신민 서사를 제창하였는가?

답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질문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17 昭和 15年 1월 11일 京高特秘 第58号 京畿道警察部長「秘密結社民族文学研究会等檢挙送局ニ関スル件」京城地方法院検事局思想係『昭和 15年 思想ニ関する情報』(韓国国史編纂委員会所蔵, 大檢文書).

18 高等法院検事局 編(1943), 『朝鮮刑事政策資料』昭和 17年版, 29쪽.

19 高等法院検事局思想部『大東亞戦争勃發後ニ於ケル特殊犯罪調-保安法違反事件及内地ニ於ケル各種言論事犯-』42쪽.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되었다.

20 金永培에 대한 安城警察署聴取書(1939. 7. 25)(国史編纂委員会 編・発行『韓民族独立運動史資料集66』2006년, 394쪽).

답 경찰관이 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였습니다.

질문 그대는 자진해서 할 생각은 없었느냐?

답 별로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마지못해 했다는 것이냐?

답 그렇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찰이 하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니깐 함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사’를 직접 비판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며, 실제로 상당수의 조선인이 그런 혐의로 검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의 방법과는 달리 ‘서사’의 문장 일부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저항의 의사를 드러낸 사람도 있었다.

1938년 봄에 회령상업학교에 입학한 윤석린은 회상기에서 동급생한테 ‘우리들 황국신민은’을 ‘그들 황국신민은’으로 바꾸어 제창하고 있다고 듣고 그것을 모방하기로 했는데, 조선 남자 학생들이 다 그와 같이 제창하게 됐다고 밝혔다.²¹

또한 경성제국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나카지마 후미오(中島文雄)는 전후의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²²

(서사의 제창)은 대학에서는 전원이 모이는 의식 때 정도이니 그렇지도 않았지만, 대학 예과와 전문학교 이하에서는 매일 하게 되었다. …… 매일 하게 된 학교의 교사에게 물어보면 정말 뻔한 대답을 넘어서 ‘큰 소리로 하고 있

21 尹麟錫(2005), 『蒼き豆満江の流れ』東洋書院, 134쪽. 윤석린의 회상과 같이 조선인 대부분이 “우리들 황국신민은”을 “그들의 ……”로 대체하여 제창했다는 이야기는 조선 小野田시멘트 회사의 전무였던 안도 토요로쿠도 쓰고 있다. 安藤豊祿(1984), 『韓国わが心の故里』, 原書房, 87쪽.

22 中島文雄(1989), 『英語の時代を生きて』, 研究社出版, 46쪽.

습니다'라고 한다. 한국 학생들은 어떠하냐고 묻자 그들은 '우리들은 망국(亡國)신민이다. 충성으로써 한국에 봉사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황국신민화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 의식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서사'를 제창하고 있는 중에는 '우리들'을 '그들', '황국신민'을 '망국 신민', '군국'을 '한국'으로 대체해도 거의 발각되지 않고 죄를 추궁 당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황국신민 서사'는 당국자의 의도에 반해 형해화(形骸化)되었고 오히려 조선인에게 저항의 단서를 주었다.

한 반발을 품고 있었다. 또 처벌받지 않도록 일부 문구를 다른 말로 대체해 저항의 의사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서사'는 조선인의 황민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정반대의 작용을 일으켰다. 그 점에서 '서사'는 형해화되고 황민화 정책은 공동화(空洞化)된 것이다. 총독부 당국자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와 황민화 정책의 폭력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6. 맺음말

'황국신민 서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특히 '황민화 정책' 시기의 지배 정책이 극히 폭력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제창하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통첩을 받고 제창을 의무화하고 또 일본어로 읽는 것, '뱃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까지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서사의 기둥' 앞에서의 몸짓을 통제하여 신체를 규율하는 기능도 갖게 된 것이 '서사'였다.

일본 '내지'와 조선의 일본인 학교 등에서는 '서사'가 아닌 '교육 칙어'가 몸과 정신을 규율하는 역할을 했지만 조선인 학교 및 단체와, 마을 등에서는 '서사'가 '황민화 정책' 시기의 신체·정신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총독부 당국은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사'를 제창하게 된 조선인 측에서 반드시 당국의 의도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서사'를 제창하는 것 자체에 저항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말로는 '서사'를 제창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 실태와 한국인의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세운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0년 8월은 ‘한일병합조약’ 조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폐멸하고 강점한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년이 되는 시점이다. 한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학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전국역사학대회¹의 대주제를 ‘식민주의와 식민책임’으로 정하여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반영하였다.¹ 또 2010년 각종 학회와 관련 단체들의 학술대회나 계기행사도 붓물을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주요 계기를 맞아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민간단체들과 함께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 실행위원회’를 결성하여 구(舊) 시대, 제국주의의 산물인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한·일의 평화공존과 밝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또 2010년 5월 10일에는 한·일 양국의 지식인 214명이 일본의 ‘한국강점’이 부당하다는 공동선언을 하는 등 신기원을 열기도

1 이에 대해서는 대회의 기초발제인 鄭在貞(2010), 「‘韓國併合’ 100년과 식민주의의 극복」, 『식민주의와 식민책임』,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자료집을 참조.

하였다.²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강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³

한편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 일본의 일부 우익인사들은 일본의 한국 강점을 완전히 합법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이른바 ‘합법·유효·정당론’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심지어 니시오 간지는 “나쁜 일을 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일본은 좋은 일도 했다라는 것과 같은 고식적(姑息的)인 말투를 그만두자. 우리들은 아무 것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⁵라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한일관계를 객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 위원회에 참여한 일본 측 한 연구자는 한일 공동역사연구가 불필요하다며 한국 측 연구자와 한국사 전반에 대한 비판과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연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국일보』, 2010년 5월 11일자 참조. 한국언론들은 대서특필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아시히신문[朝日新聞] 등이 간단히 보도하였을 뿐이다.
- 3 대표적으로 윤노 후쿠쥬[海野福壽], 정재정 옮김(2008), 『韓國併合史 研究』, 論衡 참조.
- 4 정재정, 「日本帝國의 ‘韓國強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병합사 연구』; 윤노 후쿠쥬[海野福壽](2008), 정재정 옮김, 위의 책, 529쪽.
- 5 西尾幹二(1999), 『國民の歴史』, 東京: 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720쪽; 정재정, 「일본제국의 ‘한국강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병합사 연구』, 529쪽에서 재인용.
- 6 쓰쿠바대학[筑波大學]의 후루다 히로시[古田博司] 교수는 우익계 잡지 『正論』, 2010년 4월호에 논문을 투고하여 이러한 논리를 폈다. 그는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09년 12월 29일자 ‘正論’에 칼럼, 「국가정통성에 고민하는 한국[國家正統性確立に悩む韓國]」을 기고하여 한국과 한국사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적이 있다.

2. 식민지 ‘조선’사회를 보는 눈

일본이 지배한 식민지 ‘조선’사회를 평가하는 논의는 최근 다양하고 폭넓은 방향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최대 한국사연구단체인 한국사연구회에서 2008년에 발간한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하)』의 ‘근대 2편’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21년 전인 1987년에 나온 제2판과 비교해볼 때 훨씬 다양한 주제를 서술하고 있다.⁷

재미한인 학자인 신기욱(愼基旭)은 한국학자들의 근대사 관련 연구성과를 대체로 편협한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치부하여 평가절하하는 한편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근대성이라는 3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사를 연구하자고 제안하였다. 신기욱 등은 소위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식민지시기 한국에 대한 탈민족주의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⁸ 신기욱의 이러한 주장은 김진균(金晉均)·정근식(鄭根植) 등의 주장과 함께⁹ 1990년대에 새로운 연구시각을 제기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었다.¹⁰ 한편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영국으로 건너간 소장학자 마이클 신(Michael Shin)은 한국사 연구자들의 국제적 안목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사의 외연(外延)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 7 한국사연구회 편(1987), 『제2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근대사회〉; 한국사연구회 편(2008),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하)-제3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근대 2〉의 필자와 주제 참조.
- 8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1999),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v. Asia Center; 都冕會 옮김(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
- 9 金晉均·鄭根植 編(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구울전력』, 문화과학사.
- 10 張圭植(2008), 「근대 문명의 확산과 대중문화의 출현」,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하)』, 248~249쪽.
- 11 Michael Shin(2006), “Korean History in the US : The Past Decade and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한국근대의 식민지 기원설을 주장하는 외국학자들의 연구성과는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었다.¹² 그동안 식민지시기 연구에서 일상생활의 영역은 민족이나 계급, 국가 등의 거대담론과 정치체제나 경제구조 중심의 연구경향에 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식민지시기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를 다룬 연구성과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¹³ 신용하 등의 식민지근대화론 비판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¹⁴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동남아 여러 나라와 비교해볼 때 식민주의로부터의 지속적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유산의 급속한 파괴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소득불균형을 야기한 식민지 대지주제와 같은 식민지 유산을 떨쳐버리고, 독립

Prospects for the Future”, 『21세기 한국의 進路摸索(Korean Studies for the Next Hundred Years : REFLECTION & VISION)』, 서울대학교 규장각 주최 국제학술회의.

- 12 대표적으로 DENNIS L. McNAMARA(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1945*, Cambridge·NewYork·Port Chester·Melbourne·Sydne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ter J. Eckert(1991), *OFFSPRING OF EMPIRE : The Koch'ang Kims and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and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朱益鍾 譯(2008), 『帝國의 후예 -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기원, 1876~1945』, 푸른역사 등을 들 수 있다.
- 13 장규식, 「근대 문명의 확산과 대중문화의 출현」,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하)』, 지식산업사, 248쪽.
- 14 慎鏞廈(1998),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문학과 지성사; 慎鏞廈(2007),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문학과지성사; 慎鏞廈(2009),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省察』, 나남; 金喜坤(2007),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울, 421~436쪽; 崔由利(2007), 「일제 식민지 통치의 실상」,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울, 30~55쪽; 鄭泰憲 외(2009),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金承台(2010),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통치 이데올로기」, 『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 동북아역사재단.

후에 급진적으로 실시한 토지개혁과 같은 과감한 개혁조치가 오히려 소득의 증대와 균등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¹⁵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성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윤해동(尹海東)의 경우 ‘식민지 공공성’ 영역을 강조하며 침략과 저항의 영역만이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의 생활과 식민지 공공영역(公共領域)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¹⁶ 박태균(朴泰均) 역시 근대주의와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공개념(公概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⁷ 박찬승(朴贊勝)은 2010년 7월 30일 ‘강제병합 100년’ 관련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와 경제를 보는 학계의 시각을 크게 식민지수탈론, 식민지근대화론, 비판적 식민지근대성론, 탈근대주의적식민지근대성론 등 네 부류로 나누었다. 그는 이 네 가지 시각의 논리, 의의와 문제점 등을 정리한 뒤 결론적으로 ‘식민지 이중사회론’을 제기하였다.¹⁸ 다수의 일본인들이 이주한 결과 식민지 조선사회는 점차 ‘이중사회(dual society)’로 변모해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사회 형성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 일상생활상의 분리, 즉 거주지·교육·의료 등의 차별에 의해 점차 심화되었다고 한다. 식민지 ‘조선’사회는 민족문제와 계급문제가 복

- 15 Won-ik Kim(2009.8), “Rethinking Colonialism and the Origin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39, No.3, pp.382~399.
- 16 尹海東(2003), 『식민지의 회색지대-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역사비평사; 윤해동 편(2010), 『식민지 공공성-은유와 실체의 거리』, 책과함께.
- 17 朴泰均(Park Tae-Gyun)(2008), 「근대의 代案으로서의 公概念 “The Perception of ‘public’ / ‘common’ as an alternative to Modernity”」, 『이념과 제도의 교류 :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The Flow of Ideas and Institutions : Korea in the World and the World in Korea)』, 서울대학교 규장각 주최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발표문(10. 16~17개최), 257~265쪽.
- 18 박찬승,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과 쟁점」, 『강제병합 100년, 한일과거사 극복의 과제와 전망』(민족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10년 7월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 38~52쪽.

잡하게 얽혀있는 ‘중층적(重層的) 이중사회’로 변모해갔다는 것이다.¹⁹

일본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통치와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가 나왔다.²⁰ 그러나 일본연구자들의 한국근대사 연구 성과는 최근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²¹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는 한일 양국의 교과서 서술에서 일상생활 서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최근 한국교과서는 그러한 흐름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²² 또 그는 “과연 일본의 식민지배는 조선을 잘 살게 했나?” 라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조선으로부터의 자금유출액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여 주목을 끌었다.²³ 일부 일본

인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서술로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의 식민지 ‘조선’ 지배 실태

1)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 개관

일반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를 개관할 때 1910년대는 폭압적 ‘무단통치(武斷統治)’와 식민지 지배체제의 형성기로 특징지어진다. 이른바 무단통치 시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토지조사사업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는 구래 한국을 일본제국의 일부인 ‘조선’이란 지역으로 재편하는 등 식민지 지배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토지측량 등의 단순한 경제수탈정책이 아니었다.

1920년대는 잘 알려진 대로 소위 ‘문화정치’와 탄압·수탈의 심화로 규정할 수 있다. 총독부는 통치방식을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겉으로 강압을 완화한 척 했지만, 사실은 민족분열을 유도하고 경제수탈을 강화하려는 ‘민족분열통치’의 한 방법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는 세계대공황 피해의 전가(轉嫁)와 전시체제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는 전시 총동원체제의 강화와 한민족 말살정책 추진기로 분류할 수 있다.

まりのための20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옮김, 49~58쪽·51쪽.

24 이에 대해서는 신용하와 李榮勳,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하(1982), 『토지조사사업 연구』, 지식산업사 참조.

19 박찬승, 위의 논문, 50~52쪽.

20 일부 연구성과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君島和彦(1987), 「朝鮮における戦争動員体制の展開過程」, 『日本ファシズムと東アジア』, 藤原彰·野澤豊編, 東京: 高麗書林; 駒込武(1996),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治』, 東京: 岩波書店; 淺野豊美·松田利彦 共編(2004),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 東京: 信山社; 淺野豊美(2008), 『帝國日本の植民地法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佐野通夫(2006), 『日本植民地教育の展開と朝鮮民衆の對應』, 東京: 社會評論社; 蘭信三(2008), 『日本帝國をめぐる人口移動の國際社會學』, 東京: 不二出版; 요시노 마코토[吉野誠](2010), 「日本에서의 ‘韓國併合’史 연구(日本における‘韓國併合’史の研究)」, 『강제병합 100년, 韓日過去史 극복의 과제와 전망』(민족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서울 프레스 센터, 20~37쪽.

21 카사야 겐이치[糟谷憲一](2006), 「일본에서의 한국근대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의 進路摸索(Korean Studies for the Next Hundred Years: REFLECTION & VISION)』, 서울대학교 규장각주최 국제학술회의. 역시 이 학술회의 자료집에 기무라 칸[木村幹], 「지역연구와 ‘외국연구’로서의 한국연구 - 정치학 연구를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22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근대의 ‘일상생활’ 서술분석」,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23 다나카 히로시[田中宏]·이타가키 류타[坂垣龍太](2007), 「식민지배는 조선을 잘 살게 했나?」,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日韓新たな始

일본의 한국 지배와 수탈의 기본성격은 명확하다. 즉, 식량 및 원료와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 상품 판매시장, 과잉인구의 배출지, 그리고 1930년대 이후의 경우 잉여자본 투기지와 군수공업 기지로 이용하며 대륙침략의 교두보와 일본 방위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제강점 말기에 한국인들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는 인적 수탈을 대규모로 강행하였다는 점이다. 총독부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이듬해 7월 ‘국민징용법’을, 1939년에 ‘노무동원계획’을 발표하여 한국인 노동자를 일본 등지의 탄광·광산노동·토목 공사 등 매우 위험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중요 산업 부문에 배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인의 강제연행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39~1945년까지 72만 5천여 명을 강제연행하였다. 또 1938년 8월부터 ‘육군 특별지원병령’, 1944년부터 ‘징병령’을 실시하였다. 1953년 5월 일본 후생성(厚生省)이 조사한 바로는 약 22만 5천여 명의 한국인이 군인이나 군속으로 동원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추정된다.²⁵

징용·징병·학병·근로정신대·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정확한 숫자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65년 한일협정 때 한국 정부는 103만 2,684명에 대한 청구권 자금으로 총 3억 6400만 달러의 배상을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대 400여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피해자 숫자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²⁶

근래 한국인의 인권유린이나 탄압, 일제의 강제연행이나 동원, ‘위안부’

25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朴慶植(1973),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東京: 青木書店; 韓永愚(1997), 『다시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金運泰(1998), 『일본 제국주의 한국통치』, 박영사 등에 의거하였다.

26 張世胤, 「일제의 대한제국 ‘합병’ 부당성-황제 서명도 없는 그들만의 조약」, 『국민일보』, 2005년 2월 7일자, 8쪽.

등의 징발에 상당수의 한국인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심선언이나 자기비판 등의 형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추후 이들을 추적하여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긴급(緊要)하다. 일제의 한국강제병합이 끼친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은 매우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남북 분단 문제다.

2) 일본의 지배정책 및 통치에 대한 여러 견해

1910년대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 교육정책 수립의 실무자였던 구마모토 시게키치(隅本繁吉)는 류큐(琉球)나 타이완(臺灣)과 달리 조선인의 철저한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차선책으로 ‘조선민족의 순량화(順良化)’를 주장하였다. 그는 한민족 동화의 개념을 “일본민족의 언어·풍속·습관 등을 채용·모방하고, 더 나아가 일본민족의 충군애국의 정신을 체득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²⁷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이러한 동화불가능론의 논리도 변화하여 다양한 식민지 동화정책이 추진되었고, 식민지 ‘조선’의 조선인들은 국어(=일본어) 상용은 물론 ‘창씨개명’까지 강요받기에 이르렀다.

식민지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이자 우두머리인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친임관(親任官)으로 육·해군 대장 가운데 선임되었으며, 일본 천황에만 직속하는 존재로서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일본 헌법에 직접 속박되지 않는 총독은 조선 주차(駐紮) 육해군에 대한 통솔권, 본국의 법률에 대신하는 제령(制令, 총독의 명령)을 발할 권한, 행정일반에 대한 정무통

27 東京 韓國文化研究院(1974), 「(秘)教化意見書」, 『韓』 vol 3, no 10.(10), 123쪽; 金承台(2010), 「일제의 식민지배와 식민통치 이데올로기」, 『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 동북아역사재단, 204쪽에서 재인용.

리권(政務統理權), 사법부를 포함한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을 가졌다. 이는 내각 수상조차 미치지 못하는 권한으로 '소천황(小天皇)'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다. 실제로 역대 총독들은 수상 후보급의 유력자가 임명되었고, 총독을 거쳐 일본 정부의 수상을 지낸 자도 3명이나 되었다.²⁸

물론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막강한 권한에 대해 일본 본국 정부의 견제와 지원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조선총독부 당국은 '조선특수사정론'을 내세우며 대체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특히 1918년 9월 성립한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은 조선총독의 입법·행정·사법에 걸친 '종합적 행정권'을 부정하면서 일본의 제도·법률·관습 등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는 소위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 방침을 조선총독부 수뇌부 인사 총교체에 의한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무단총독' 아래에서 독자성이 강한 관료의식을 기르고 있던 '불박이[生え抜き]' 총독부 관료들은 '조선특수사정론'을 내세우며 하라 다카시내각의 일방적인 통치정책에 반대하고 식민지 현실을 직시한 통치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도나 법률의 개정을 주로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른바 그들의 '식민지개혁'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흐름의 대립 가운데 이루어진 절충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²⁹

그동안 일제강점기 조선의 식민지배정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측의 통치정책과 그에 대응한 한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은 조선총독부 등 식민지 관료의 역할을 주목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형식(李炯植)은 식민지 관료나 관료제가 어떻게 다양한 변화를 거쳤는가, 그리고 그들

28 朝鮮史研究會 編(1995), 『新版 朝鮮の歴史』, 東京:三省堂, 257쪽.

29 李炯植(2006), 「'文化統治' 初期における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史學雜誌』 제115編 4號, 69쪽.

의 행동이나 의식이 어떻게 변용되고 그것이 식민지통치정책에 어떻게 피드백(feedback)되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소위 '문화통치' 초기 조선총독부 관료의 통치구상을 검토하였다.³⁰

이형식은 '문화통치' 초기에는 관료인사·정책·통치사상이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식민지 통치구상이나 '제국질서' 재편의 언설이 있었는데, 이러한 언설이나 통치구상 분석은 한인 민족운동에 대한 대응이란 시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식민지 통치를 현지에서 담당하였던 식민지 관료들의 시선은 식민지와 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동은 물론, 세계적인 식민지 통치의 동향에도 향해 있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관료가 보면 한국인들의 민족운동은 정책 입안상의 큰 규정요인이었던 것이 틀림없었으나, 그것이 지배정책 결정의 전부를 규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견해는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을 다소 평가절하하는 시각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나름의 '공공성'과 '식민지개혁'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추후 한국학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통치' 초기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1920년 전후에 민족운동이 고양되고 일본 정부의 '내지연장주의'가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식민지 본국의 정치·경제·사회변동에 초연하며 안정적인 식민지배의 유지를 위해 '조선의회' 설치를 구상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불박이' 관료의 대표적 인물인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의 조선의회 설치구상은 1929년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정무총감 취임 이후 총독부안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³² 그러나 결국 조선에서 의회가 설치되지 못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30 李炯植(2006), 위의 논문, 68·86~87쪽.

31 李炯植(2006), 위의 논문, 86~87쪽.

32 李炯植(2006), 위의 논문, 87쪽.

식민지 통치 관료 상당수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녹음기록이나 수기 및 회고록 등을 남겨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가 나름대로 정당했고, '선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식의 서술을 많이 남겼다. 특히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録(1)-終戰前後の朝鮮事情概要』는 1956년 300부가 등사판(謄寫版)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고 한다.³³ 추후 한국학계의 정밀한 검토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로 김운태의 저서가 주목된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박영사, 1998)에서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일제 통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실태, 이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일제 식민지 지배사를 체계화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한국-통치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1992. 12)에 기획주제 '日帝의 식민통치 기구와 조직'이 실려 주목을 끌었다. 이때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³⁴ 대체로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 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3 미야다 세쓰코[宮田節子] 해설·감수, 정재정 역,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2002), 선생과 녹음기록」,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육성증언』, 해안, 41쪽.

34 11편의 논문과 함께 제6회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 대주제 <한국근대사에서 日帝의 침략논리와 실상>으로 다음의 4편이 실렸다. 김운태, 「조선총독부의 수탈조직과 기능」; 崔台鎬, 「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任憲永, 「일제하 식민문화정책」; 申용하, 「일본제국주의 옹호론과 그 비판」.

4. 한국인의 대응과 그 양상

1) 적극적 저항 - 한민족 독립운동(반일민족해방운동)의 경우

(1) 독립운동사의 개념

한국학계에서 독립운동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민족운동사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운동사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의 운동 형태 ① 삼남지역의 민란 이래 동학농민운동까지의 반봉건 민족근대화운동, ② 식민지 해방운동과 종속해방운동(從屬解放運動)을 포함하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民族解放鬪爭), ③ 1945년 8월 해방과 분단 이후의 민족통일운동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독립운동사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 가운데 식민지 해방투쟁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항 이래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이 계속되었고, 1904년경부터는 사실상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종속해방투쟁도 독립운동의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³⁵

(2) 독립운동 연구사 개괄

독립운동사 연구의 고전적 명작으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과 박은식(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사 연구는 1950년대 중반부터 뜻있는 학자와 '애국동지원호회'와 같은 관련단체가 시작하였다. 1960년대는 4·19학생혁명을 거친 후 민족주의를 자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시대정신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졌다. 이 무렵, 대표적 업적으로 『한국독립운

35 조동걸(2007),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참조.

동사』(국사편찬위원회)와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소위 현실문제와 연관된 '민중사학'의 등장, 소장 연구자의 증가와 관련 연구기관의 설립(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 각종 학회의 증가 및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사의 다양한 실상이 대체로 규명되었다.

특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2007~2009년까지 3년 동안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60권을 간행한 것은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종래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를 대체로 무단통치기(헌병경찰통치), 문화정치기(민족분열통치), 병참기지화정책 시기(민족말살통치) 등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³⁶ 벗어나 무단통치, 민족분열통치, 민족분열통치의 강화,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등으로 구분한 점이 주목된다. 수탈론의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³⁷ 이 거질(巨帙)의 발간작업을 통해 독립운동의 구체적 실상이 체계적으로 규명되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농민운동 등 대중운동과 사회운동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올바른 평가 등 미해결의 과제가 남아있다.

(3) 독립운동의 기점과 하한

일반적으로 1895년 9월 충청도 유성(儒城)에서 봉기한 문석봉(文錫鳳) 의병이 독립운동(의병)의 기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근래에는 1894년

36 김운태(1998),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博英社; 金漢宗 외(2010),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50쪽.

37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위 시리즈물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趙東杰), ②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河元鎬), ③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李相燦), ④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徐民教), ⑤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李明花), ⑥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金英姬), ⑦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金承台), ⑧일제의 친일과 육성과 반민족 세력(朴秀賢·李龍昌·許宗).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사건('甲午倭亂')으로 인한 의병의 봉기를 새로운 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하한선은 일반적으로 근대사의 하한으로도 평가하는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광복으로 본다. 그런데 남북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통일을 완수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³⁸ 그럴 경우 독립운동보다는 민족운동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4) 독립운동 주도세력의 존재 형태

한국의 독립운동은 반봉건운동이 성공적으로 완결되지 못한 채 반제투쟁과 동시에 전개되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봉건적 신분질서는 무너졌으나 양반과 평민 등 신분의 구별은 남아있었다. 한국근대사에서 민족운동 주도세력을 시민과 민중으로 구분하는 시각이 있다. 시민은 개화상을 갖고 독립협회운동과 그 이후의 애국계몽운동 등에 참여한 그룹, 민중은 동학농민운동과 의병전쟁에 참여한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 양 세력은 주·객관적 시대상황 등 역사적 조건에 따라 운동주체로서의 존재양태가 달랐다. 이들은 3·1운동 때 일시 합류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전자는 물산장려운동·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 등 온건한 형태의 운동노선을, 후자는 노동운동 등의 강경한 대중적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자가 192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친일적[對日協力的] 태도를 보이며 '개량화·타협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와 탄압 구조에서 민족운동 주체들이 처했던 상황과 사회경제적 모순, 혹은 계급·계층별로 민족모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8 대표적으로 姜萬吉(1978),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를 들 수 있다.

중국·러시아를 무대로 한 해외 독립운동의 경우,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1911)과 러시아혁명(1917) 등 한인들이 거주하던 국가의 정치적 변혁이 현지 한인 독립운동의 객관적 조건과 운동방법론, 지도이념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재외한인의 경우 일본영사관원(日本領事館員)들은 ‘영사재판권’을 내세워 한인문제에 간섭하고 중국 침략의 빌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⁹ 이에 따라, 중국·러시아(소련)에서 활동하는 한인 지도자들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 측의 탄압을 피하기도 하였다.

(5) 독립운동의 이념과 추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운동주체 혹은 지도급 인사들이 지녔던 이념은 운동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계몽주의자들에게 대폭 수용되었다. 그러나 사회진화의 주체를 민족으로 인식했던 사람과 국가로 인식했던 사람이 향후 다른 행로를 보인 것은 추진주체의 이념이 운동방법론을 결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술국치(대한제국 멸망) 직후인 1910년대의 정치적 이념은 ① 전제군주주의(복벽주의), ② 입헌군주주의(保皇主義), ③ 공화주의로 구분된다. 이 중 복벽주의와 보황주의는 3·1운동 이후 정치이념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한다. 기독교·불교·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3·1운동을 계획했는데, 그렇다고 이를 공화주의와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⁴⁰ 다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정체론은 공화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고 평

39 이에 대해서는 荻野富士夫(2005),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東京: 校倉書房의 연구성과를 참조.

40 조동걸(1998), 「8·15직전의 독립운동과 그 시련」,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179~184쪽.

가된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이자 일제의 통치에 대한 총체적 저항운동이었다. 3·1운동은 중국 동북지방 등 해외에서도 전개되었는데, 이후 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을 ‘독립운동의 호수’, ‘민족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1910년대 일제 통치에 대한 한인들의 불복종과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분명히 과시하였고, 종교지도자들은 물론 시민과 학생, 노동자·농민·여성 등 수많은 대중들이 참가하여 적극적 투쟁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⁴¹

3·1운동은 민족의식의 고양, 독립운동 방법론과 이념 다양화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이 수용·확산되고 그에 따른 ‘진보적’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한민족이 처해 있던 사회경제적 조건-소작농의 확산과 토지소유 관계의 모순 심화 등-특히 생활여건의 악화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6) 한국독립운동의 특징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⁴²

첫째, 시간적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완강하게 지속되는 지구성(持久性)을 보였다. 즉,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였다는 점이다. 독립운동은 1894년의 ‘갑오대란(甲午倭亂)’에 분노하여 봉기한 의병항쟁에서 시작되어 1945년 광복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41 독립기념관에서 최근에 발간한 『독립운동의 역사』 60권 중 5권(제18~22권)이 3·1운동 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다(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국내 3·1운동-중부·북부, 국내 3·1운동-남부, 국외 3·1운동,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42 조동걸(1998), 「한국독립운동의 특징과 의의」,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14~25쪽.

는 1919년에 수립되어 27년간 존속한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⁴³

둘째, 독립운동의 공간이 국내외 지역을 망라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되었다. 독립운동은 국내는 물론 중국·노령·연해주·일본·미주 등 한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전개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일제에 충격을 주는 한편, 온 세계에 한인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효과가 적지 않았다.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적 전개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 말 이래 중국(만주)과 노령 연해주, 미주 등지에 일찍이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이들이 거주하는 한인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재외한인들의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당국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강우규(姜宇奎)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폭탄투척 사건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진입활동 등을 인상적인 저항운동으로 기억하고 있었다.⁴⁴ 소위 '문화정치' 초기의 경찰간부진이 가장 경계했던 사건들은 거의 예외없이 재외한인이나 구미열강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총독부 경찰에게 '위협'은 항상 '조선 국외'에서 오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⁴⁵

셋째,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다양했다. 독립운동의 방법론은 무장투쟁론·교육과 산업 우선론·무정부주의론·의열투쟁론·외교론 등 총체적인

것이였다. 이는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이 다양한 이념에 따라 전개된 것을 의미한다.

1931년 '만주사변(9·18사변)' 이후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중국(인)과 연대하여 공동투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동북에서 활동하던 한국독립당(한국독립군)·조선혁명당(조선혁명군)은 중국 국민정부(또는 중국의용군) 계열과 연계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들 다수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동북항일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 침략세력과 투쟁하기도 하였다.⁴⁶ 중국관내 대한민국임시정부(한국광복군) 역시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화북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은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았다. 말하자면 국제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것이다. 일제의 패전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의 조선건국동맹 등이 이들 해외 민족운동 세력과 상호 연계를 도모하며 최후의 독립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넷째, 독립운동 단체들이 분산성과 분열상을 보였으면서도 꾸준히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 사이에 알력을 빚기도 했지만, 국내의 신간회 운동이나 중국에서 시도된 민족유일당운동처럼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독립운동의 주체가 점차 확산되어 남녀노소·직업·신분·종교 등 여러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3·1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이 이처럼 전민족적으로 전개

43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김희곤(2004),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참조.

44 마쓰다 토시히코[松田利彦](2009), 「1920년대 초 총독부 경찰의 독립운동 인식 -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1920年代初における總督府警察の獨立運動認識: 大韓民國臨時政府を中心に)」,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현대사적 성찰』(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기념 동아시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주최, 192쪽.

45 마쓰다 토시히코(2004), 위의 글, 193쪽. 총독부의 독립운동 세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韓知憲,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0 참조.

46 1936·1937년경 중국인과 한국인이 연합한 동북항일연군은 동·남·북만주 등 각지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치열한 집전을 벌였다. 물론 全光·(吳成崙)·金日成·崔庸健·許亨植·金策 등 재만한인(在滿韓人)들도 여기에 대거 참가하여 많은 활약을 했다. 이 무렵 주요 한인간부 현황에 대해서는 신주백(1996), 「만주지역 韓人の 민족운동 연구(1925~1940)」,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392쪽 및 장세운(2005),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참조.

된 것은 세계 피압박민족 해방투쟁사에 있어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당시 세계 인류의 거의 3/4에 달했던 피압박 약소민족의 반제투쟁에 일정하게 영향을 준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3·1운동이 대표적 사례로, 중국의 5·4운동과 인도·필리핀·이집트 등의 민족운동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 것으로 본다.⁴⁷ 또한 독립운동 양상의 격렬성과 민주주도성 등을 들기도 한다.⁴⁸

1940년대 전반 한민족은 일본 정부 당국과 조선총독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민족말살의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한국인들은 일제 지배하에 ‘굴종과 협력’의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치열한 저항’을 줄기차게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민족 전체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위력에 굴복하여 피동적으로 ‘순종’과 ‘협력’만 하였다면 근대 국민국가 수립과 민족의 독립(해방)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다양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은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민족의식과 민주주의, 민족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결과 한국인들은 비록 마지막에 외세의 힘을 빌어서였지만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은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일본 통치 세력의 주입으로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퍼져있던 열등감이나 허무주의,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2) 소극적 저항 – 고결한 영혼의 ‘민족시인’ 尹東柱의 경우

윤동주는 1917년 12월 중국 연변(延邊, 당시 北間島라고 부름)의 화룡현(和

47 이상의 내용은 주로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을 참고한 것이다.

48 조동걸, 위의 책.

龍縣)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명동촌은 외삼촌 김약연(金躍淵)이 일찍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이었으며, 명동학교와 교회 등을 통한 민족교육운동과 기독교운동, 항일독립운동의 요람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래서 1920년 10월 독립군을 ‘토벌’하겠다고 북간도 지방에 침입한 일본군이 명동촌에 들어와 명동학교를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1938년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뒤 그는 꾸준히 시와 동시를 지어 신문과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학년 때인 1938년 9월에 쓴 ‘슬픈 족속’은 당시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한민족 전체를 성공적으로 의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를 보면 운동주가 학생이라는 자기의 신분에 안주하여 우리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었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그는 4학년 때인 1941년 연희전문 문과에서 발행한 ‘문우(文友)’에 ‘자화상’, ‘새로운 길’이란 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인 같은 해 11월 20일 저 유명한 ‘서시(序詩)’를 창작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와했다.[...] ⁴⁹

오늘날 이 시는 1940년대 초라는 암흑기에 한줄기 양심을 굳게 지켜온 지식인의 숨김없는 고백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문인과 지식인들이 조선총독부의 전쟁동원 체제에 협력하는 등 양심을 팔고 일제의 파시즘에 동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

49 송우혜(2004), 『윤동주 평전』, 푸른역사, 179쪽.

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중한 양심의 지표로, 또한 혼탁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행동지침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동주는 1942년 일본 릿교[立教]대학 영문과를 거쳐 그해 10월 도시샤[同志社] 대학 영문과에 편입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첫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교토[京都]대학에 재학중이던 송몽규(宋夢奎)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일본 측 자료를 통해 윤동주는 송몽규와 ‘재교토[在京都]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의 피체 혐의는 명백히 독립운동과 ‘민족문화 수호 모의’였던 것이다. 그는 송몽규 및 고희욱(高熙旭)과 함께 재판관을 받았는데, 1944년 3월 31일 2년형을 언도받고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비록 치열한 무장투쟁이나 극렬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자기응시와 내면의 성찰, 일제에 대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내부의 치열한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안으로 이끌면서 자기극복을 시로 표현한 민족시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쉽게 씌어진 시’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자신을 질책했다.⁵⁰

3) 적극적 친일[附日協力]의 경우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조선인에게도 일부 관리등용의 길을 열어 조선인들을 회유하는 한편,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지도급 인사들을 친일

50 이상 윤동주 관련 내용은 장세운, 「고결한 영혼의 민족시인 윤동주 관련 유적지」, 『월간 독립기념관』 1996년 2월호 수록 내용을 수정한 것임.

세력으로 육성하여 민중을 동원하고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친일세력이 형성되어 사법당국(판사·검사), 군대, 경찰이나 조선총독부의 기구, 언론·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식민지 통치 당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못해 이름만 내건 사람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친일활동에 앞장선 사람도 많았다.⁵¹ 특히 이들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지도급 인사로 활동하여 한국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한국에서는 오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친일인명사전』 1~3권(민족문제연구소 간행)이 발간되었다. 초판이 매진되고 벌써 2쇄에 들어갔다고 한다.⁵² 그만큼 ‘친일파’ 문제는 한국사회의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친일파 99인』 1·2(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1993), 돌베개, 『친일변절자 33인』(김삼웅 외(1995), 가람기획) 등 많은 연구서가 발간되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적극적 친일(부일협력)의 사례로 시인 노천명(盧天命)의 시 ‘싱가폴 함락’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세아의 세기적인 여명은 왔다.

英米의 毒牙에서 일본군은 마침내 신가파(新加坡: 싱가포르 - 필자)를 뺏어 내고야 말았다.

[...]

얼마나 기다렸던 아침이나

東亞民族은 다 같이 고대했던 날이나

오랜 압제 우리들의 쓰라린 추억이 다시 새롭다.

51 金漢宗 외(2010),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64쪽.

52 「베스트셀러 ‘친일인명사전」, 『내일신문』(2010. 2. 19), 1면.

일본의 태양이 한번 밝게 비치니
죄악의 몸뚱이를 어둠의 그늘 속으로
끌고 들어가며 신음하는 저 莠米를 웃어줘라.⁵³

친일문인으로 알려진 노천명의 시를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4) 소극적 부일협력의 경우

- 『윤치호 일기』를 통해 본 식민지 지배의 실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한국인들은 비교적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를 크게 나누면 '저항(抗日, 排日; 적극적 또는 소극적 등)과 굴종(자발적, 비자발적)', 또는 '저항과 순응(적극적 또는 자발적, 소극적 또는 비자발적)'이란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윤해동은 저항과 순응(대일협력)이란 양분법을 거부하고 대다수 식민지 민중들이 '식민지의 회색지대'에서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적극적 부일협력자로 알려진 윤치호(尹致昊)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그의 일기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무라카미 유키즈[村上唯吉] 씨와 오바타 도시로[小畑敏四郎] 씨 모두 총독부가 너무 고자세여서 자기들의 설정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 도쿄[東京] 당국이 조선의 實相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⁵⁴ ……

53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2010), 『친일인명사전』 1, 민족문제연구소, 766~767쪽.

54 金尙泰 編譯(2001), 『尹致昊 日記 : 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

오후 늦게 모리와키 히로시[森脇浩司] 개성경찰서장을 방문했다. 그는 헌병이 '범법자'를 찾는다든 미명하에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폭행을 가해서 가난하고 무지한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⁵⁵

대체 어떤 조선인이 대중 앞에서 뻔뻔하게 총독부를 옹호하거나 찬양해 조선인들의 표적이 되려 하겠는가? 세금이 온갖 명목을 가지고-조선인들의 경제력을 뛰어 넘어-청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반일감정이 더욱 더 확산·심화되고 있다. 조선인이 친일연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것이다.⁵⁶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총독은 - 어느 누구든 - 다 똑같다. 총독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철두철미하게 일본인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⁵⁷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독이 소집한 경제협의회에 참석했다. 초청인사 44명 중 조선인은 겨우 9명에 불과했다. 조선인들의 의견은 좋든 나쁘든 총독부가 이미 확정해놓은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꺾다 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했다.⁵⁸

오전 9시 30분 조선대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이름하여 '자발적인 서울관광'이 그렇지 않아도 가난에 찌들어 있는 전 조선인의 호주머니에서 푼돈을 모조리 우려낼 것이다.⁵⁹

윤치호는 적극적 부일협력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위에서 볼

해 본 식민지 시기, 역사비평사, 1919년 4월 25일(금요일), 106쪽.

55 『윤치호 일기』, 1919년 4월 27일(일요일), 107쪽.

56 위의 책, 1921년 4월 17일(일요일), 222~223쪽.

57 위의 책, 1931년 6월 20일(토요일), 274쪽.

58 위의 책, 1933년 5월 13일(토요일), 311쪽.

59 위의 책, 1940년 9월 1일(일요일), 470쪽.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일기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 지배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숨김없이 기록·비판하고 있어 식민지시대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 단면을 제공하고 있다. 겉으로는 친일체제순응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비판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소극적 부일협력자라 할 수 있다.

5) 소극적 친일 혹은 순응 - 근대문물의 수용과 민중의 일상생활

한국사 연구자들의 연구경향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사회과(역사) 교육과정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뀐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식민지시기 근대문물의 수용과 일상생활의 변화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도 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과(역사) 3학년 과정 2장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교수·학습 내용〉 일부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③ 일제의 침략과정과 식민지배 정책의 내용을 설명한다.

교수·학습은 일제의 침략과정과 식민통치의 특징 및 실상을 단계별로 파악하는 데 유념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가 우리 역사의 전개에 끼친 영향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측면에서 탐구하도록 권장한다.⁶⁰

⑥ 신문물의 수용에 따른 사회와 문화의 변화상을 이해한다.

아울러 일제강점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과 일본 문화가 우리 민

60 앞의 책, 370쪽.

족문화에 끼친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¹

한편 현재 한국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문명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생활상 서술 부분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도 당시 대부분의 식민지 민중 생활의 한 단면을 서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사회의 달라진 것들〉

일제강점기 우리사회는 많은 부분이 변해갔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외국문물이 소개되고 수용되었다. 서울을 비롯하여 도시들의 외형적인 모습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었으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식민지 백성의 슬픔과 억압, 그리고 분노가 스며있었다.⁶²

- 변해가는 서울

개항 이후 한성(漢城)은 달라졌다. …… 1920년대 말에 전기가 보급되자 서울의 밤거리도 달라졌다. 네온사인이 등장하여 거리를 밝히고 사람들을 유혹하였다. 네온으로 치장한 도시의 상점 진열장은 새로운 유행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이런 풍경 뒤에는 일제하 서민들의 고통스런 생활이 숨겨져 있었다.⁶³

근대적 문물의 수용과 식민지 조선사회의 변화상을 서술하면서도 식민

61 앞의 책, 371쪽.

62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224쪽.

63 김한중 외, 위의 책, 224쪽.

지 민중의 고통과 분노를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⁴ 이러한 경향이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일제강점 말기(1940년대 전후) 식민지 조선 민중의 동향을 검토한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 예상과 달리 조선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저항했으며 식민지 통치당국은 이들 동향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한다.⁶⁵

5. 맺음말

일본의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폐멸과 이후 35년 간의 식민지 지배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조선' 지배의 기본 기조는 '침략과 수탈, 전쟁체제로의 동원'이라고 본다. 일부 학자들이 논하는 '침략과 개발'에 따른 부분적 발전과 자기 개발, 어느 정도의 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의미는 1937년 이후 전시동원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 빛을 잃었던 것이다.

윤해동 등이 거론하는 '식민지 공공성'의 존재와 그 의미, 부분적 개발과 발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조선' 지배는 기본적으로 '침략을 위한 동원', 일본인 위주 정책실시와 그에 따른 과실의 독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전시동원을 위한 개발과 그런 개발

64 1970~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철도주변의 주민들이 지나가는 기차에 돌을 던져 승객이 부상을 입고 기차의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철도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철도가 외세(특히 일본)의 침략 통로와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65 이에 대해서는 卞恩眞(1999),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조.

을 위한 '수탈'의 과정이었고,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 동화를 내세운 차별을 드러냈으며, 이른바 '황민화 정책'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단순화하면 체제저항형과 체제순응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더 세분하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치열한 저항(무장투쟁·일부 격렬한 노동농민운동 등 직접 행동을 수반한 독립운동 등), ② 소극적(온건한 형태의) 저항(비무장투쟁 항일운동, 비자발적 혹은 생계형 독립운동 투신), ③ 적극적(자발적) 부일[附日協力, 순응]-일본에 경도(압도)된 자, 일부 명망가, 혹은 지역유지, 저명문인, 신념가 등의 유형이다. ④ 소극적(비자발적) 친일 혹은 소극적 순응-대부분의 식민지 민중, 생계에 전전공공하는 일반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식민지 통치 당국은 한민족을 적절히 '분열통치'하였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인 식민지 경영과 '전쟁동원을 위한 개발'을 위해 또 세수증대를 위해 식민지 조선 민중의 생활수준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일부 경제사학자들은 주로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일시적이며 부수적으로 나타난 '생산성 향상'에 주목하며, 이를 한국인들의 역동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한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발발 이후 극대화된 전쟁동원 체제와 이에 따른 병참기지화정책의 추진, 그 결과 징용·징병·지원병과 근로정신대·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동원된 수백만에 달하는 한국인들의 피해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역사적 진실은 명백하다. 일본인과 한인의 구별과 차별은 분명하였다.

일본의 한국 지배와 '수탈'은 한민족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발전과 세계 및 인류평화에 대한 공헌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한편, 1910년 '망국'의 제1차적 원인은 일본의 침략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인 자신의 책임도

크다. 대한제국 멸망 이후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국인들도 이제 ‘한폴이’식의 대일증오와 같은 막연한 반일감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한일 교류의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매년 약 5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일본인이 양국을 왕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상호이해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엄중하며 아직까지 많은 역사인식의 차이와 문제점이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모두 절실하게 노력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한일 양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고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과

‘만·한 불가분’론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책안을 중심으로

북경대학 교수 쉬용[徐勇]

1. 머리말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근대 일본이 군국주의 체제 확립 이후 추진한 대륙 침략 정책의 결과다. 하지만 일본군의 총체적인 전략 속에서 이 두 지역의 전략적 관계는 어떠한가, 과연 중국 동북지역이 일본군의 종속 목표였는가, ‘만·한’ 두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 계획 및 구체적 실시 과정 등의 문제에 대해, 학계에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다. 특히 일본의 만주 정책 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과 묶어 지속적으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문제 제기와 학계의 논의

일본 학계에서 근대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에 관한 연구는 스즈키 다카시[鈴木隆史]의 저서 『일본 제국주의와 만주[日本帝國主義與滿洲]』가 가장 대표적이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만주 침략 계획은 점진적으

로 추진되었으며 러시아 극동 세력의 견제를 받았다. 일본군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明)는 과거 “북청(北淸)의 난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으니, 만주의 처분은 아직 결론지을 수 없다”, “지금은 남방 경영을 우선하고, 기회를 엿보아 러시아와 교섭하여 북방 경영을 실현해야 한다.”¹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재빨리 만주를 통제하고 조선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협하자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일본 군정당국은 한때 러시아와 타협하려했던 만·한 교환론(交換論)(만주와 한반도 교환 전략-역자주)을 ‘만·한 불가분론’으로 대체하면서, 대외확장 정책의 중대 조정을 완료한 것이다.² 러일전쟁 이후 양측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의 만주에 대한 확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동시에 재빨리 조선을 식민지로 바꾸었다.

러일전쟁 이전 일본 군정당국의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스즈키 다카시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의 ‘이선설(二線說)’이 일본 육군과 외무성의 공동 주장인 동시에 일본 대륙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일본 군정당국의 주요 관심은 ‘조선’에만 머물지 않았다.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외상 등은 모두 만주와 캄차카반도 역시 일본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청일전쟁 등을 통해 이를 행동에 옮겼고, 일본 측이 랴오둥[遼東] 반도를 차지하려던 전략적 의도는 매우 분명하여, “랴오둥 반도를 ‘앞으로 청나라와 러시아 정벌전을 치를 때 중요 기반’으로 삼으려³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즈키 다카시는 중국 동북지역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비교적 총체적으로 드러냈고, 그가 내놓은 ‘만·한 불가분’ 개념은 러일전쟁을 전후한 일본의 ‘만·한’ 정책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스즈키 다카시의 연구는

1 鈴木隆鈴史著, 周启乾译(1998), 『日本帝国主义与满洲』, 金禾出版社, 23쪽.
 2 鈴木隆鈴史著, 周启乾译, 『日本帝国主义与满洲』, (台北)金禾出版社, 民87년, 29쪽.
 3 鈴木隆鈴史著, 周启乾译, 위의 책, 民87년, 6쪽.

여전히 러시아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만주 침략 초기 계획 및 만·한이라는 두 확장 대상 사이 관계 등의 문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시노부 세이자부로(信夫清三郎)는 영향력 있는 학자로, 1889년 야마가타 내각이 만든 대륙 침략 정책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그는 러시아와 일본 모두 8개국 연합군 사건 이후 “적극적인 침략 정책을 채택할 태세”였다고 확신하였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러일 양국이 개전하기 직전에서는 ‘조선문제의 해결은 만주문제와 연결짓지 않는다면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고 일본이 확정했다는 결론이다.⁴ 또 하나의 중요한 저술인 오카다 사다코[緒方貞子]의 『만주사변과 정책의 형성 과정(滿洲事變和政策の形成過程)』은 9·18사변 당시 ‘분쟁의 원인(遠因)’을 살펴보고 중국 만몽(滿蒙)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책 수립 상황을 분석하면서 “러일전쟁 중 만주 점령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육군이 만주 정책 수립에 대한 결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⁵

‘만·한’ 관계 관련 연구를 정리해보면, 비교적 초기 저술로 일본 ‘만사회(滿史會, 만철 개발 40년사 간행회-역자주)’의 『만주 개발 40년사(滿洲開發四十年史)』가 있다. 70여 명의 전문가가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모아 1963년에 출판한 이 책은, 일반적으로 연구 그룹의 대표성이나 자료의 풍부함 때문에 대표적인 중요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동북지역에서 일본이 실행한 경제·문화·교육·건축 등 정책 과정을 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에는 중국 동북지역을 향한 일본의 확장 정책과 전략의 원류를 추적하여 ‘식민지 활동의 형성’과 ‘만주 경영의 이상과 실황’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결론은 “러일전쟁의 결과로 인해, 일본은 남만(南滿)으

4 信夫清三郎(1980), 『日本外交史』上, 商务印书馆, 328~329쪽.
 5 绪方贞子(1966), 『滿洲事變和政策の形成過程』, 原书房, 16쪽.

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였다. 이 책은 러일전쟁의 성격 판단과 러일전쟁 이전 일본의 대륙 확장에 대해 “일본은 독립을 지키려는 강렬한 민족 감정의 지배 아래서 두 차례 국민 전쟁을 진행하여 대륙으로 들어갔으며, 일본 국민은 이러한 국민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만주를 얻었다”⁶ 등과 같이 기술한다. 분명한 것은 ‘만(滿)사회’와 같은 분야사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개발’, 즉 침략을 러일전쟁 이후로 확인하여 러일전쟁 이전 일본이 동북지역에서 진행한 확장의 전략적 구상과 행동을 부인하고 그 활동의 침략적 성격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타 관련 저술 가운데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의 『일본 육군과 대륙 정책[日本陸軍和大陸政策]』은 1978년 출판 이후 6차례 재판을 찍었다는 사실에서 광범위하게 주목받은 전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동북지역의 ‘권익 확립’ 및 ‘만주 경영’ 등의 문제를 포함하며 일본의 대륙정책에 많은 페이지를 따로 할애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실제 권익의 획득과 확충을 중심으로, 그 행동 이전의 계획과 구상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 및 대륙에 대한 침략의 시작으로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보면서, 저자는 서문에서 “대륙 발전 정책의 진정한 시작은 러일전쟁 이후”라고 지적하였다.⁷

일본 학계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매우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요다 요시에[依田熹家]는 “러일전쟁 시작 이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확보한 주요 대상은 조선으로 중국 동북지역 점령은 조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였다.⁸ 이 기술은 분명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목표를 조선 전략의 종속적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6 満史会著, 东北沦陷十四年史辽宁编写组译: 『満洲开发四十年史』 内部交流本, 18쪽.

7 北岡伸一(1985), 『日本陸軍と大陸政策』, 東京大学出版会, 1쪽.

8 依田熹家著, 卞立强译(2004), 『日本帝国主义研究』, 上海远东出版社, 5쪽.

중국 학자로는 천본산[陳本善] 등이 『일본의 중국 동북 침략사[日本侵略中國東北史]』 등의 저서에서 중·일의 사료를 모두 가지고 일본의 동북지역 침략 확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군정당국 초기 전략 구상 및 그 활동의 여러 측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상술한 학계 동정을 종합해 보면, 기존의 연구 성과는 대부분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침략 구상과 그 실시가 러일전쟁 전후 시기였다고 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동북 침략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전반적 전략 속에서 ‘만·한’ 두 지역의 전략적 지위와 상호 관계 및 일본군의 침략 행동 실시 과정 등 여러 측면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대부분 일본의 대륙정책을 1890년 전후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이선설’을 경계로 보고 있지만, 야마가타 아리토모 본인이 동북지역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고 ‘만·한’의 전략적 관계를 다루면서 결국 ‘만·한 불가분론’을 구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상술한 일본의 ‘만·한’ 전략과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야마가타 아리토모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일본의 ‘만·한’ 침략구상 및 그 초기 행동

19세기 이후 만주와 조선은 모두 일본 전략가들이 도모하는 확장 목표가 되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영향력 있는 막말(幕末)의 전략가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는 일찍이 『우내혼동비책(宇内混同秘策)』(1823)에서 일본의 대외 공격 태세에 대해 “중국의 ‘만주’만큼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하고 하며 일본의 국책은 “‘만주’ 취득에만 있지 않고, …… 조선과 중국 도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이 책은 재판을 거듭하여, 이후 일본 근 백년의 대외 확장 전략에서 경전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우내혼동(宇内

混同)’론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전주곡이 되었다.

메이지 정권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대외 구상을 가르치면서 군비 강화를 주장하였다. “기회를 엿보아 캄차카와 오흐츠크를 빼앗고, 류큐[琉球]를 타일러 내지[內地] 제후들과 마찬가지로 출사하여 회동한다. 또한 조선[朝鮮]에 촉구하여 예전처럼 공납[貢納]토록 하고, 북으로는 만주 땅을 할양하고 남으로는 대만과 루손 열도를 수중에 넣어, 점차 진취적 태도를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그 문하생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이 메이지 정부 지도자가 된 뒤 요시다 쇼인의 확장론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강대한 ‘외정형(外征型)’ 군대 건설에 힘쓰는 한편, 조선과 만주 지역에 대한 침략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일찍이 1874년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외정삼책(外征三策)’을 제안하면서, “직예[直隸]로 북상하여 텐진[天津]” 등지를 공략할 “계획이 이미 구체적으로 서 있다”고 하였다.¹¹

만주와 조선 등지로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 메이지 정권은 참모본부 정보관(情報官)의 외부 파견제도와 중국어 및 조선어 학습을 위한 언어 유학생 제도를 만들고 전반적인 대외 정탐 준비공작을 벌였다. 1878년 일본군 참모본부가 탄생했고, 그 아래 정보 조사 기관인 관서국(管西局)과 관동국(管東局)을 두었으며, 그 공작 목표를 “청나라와 조선 연안 지식과 지도를 상세하게 제작하여 유사시 책략 계획을 위한 도략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정탐 범위는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동국은 한반도 정탐 업무를, 관서국은 만주 성경(盛京) 등지의 정탐 업무를 담당하였다.¹²

9 转见水野明(1995), 『日本侵略中国思想的验证』, 载(北京)『抗日战争研究』, 제1기.
10 『大日本思想全集』(1932), 제17책, (东京)大日本思想全集刊行会, 219쪽.
11 大山梓(1966), 『山县有朋意见书』, 原书房, 57쪽.
12 牛越国昭(2009), 『对外军用秘密地图のための潜入盗测』, (东京)同时代社, 89~90쪽.

연구자들에 따르면, 1880년부터 일본군은 여러 차례 ‘만·한’ 현지에 대한 정탐 활동을 벌였다. 4월, 보병 소좌(少佐) 오가와 마타지[小川又次]는 훈령을 받고 평타이(豊臺), 장가(張家) 등 화북 요지를 정탐한 후에 동북지역으로 건너 가 뉴장(牛莊), 진저우(金州), 다롄(大連) 등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¹³ 9월, 이주인[伊集院] 중위(中尉)는 훈령을 받고 잉커우[營口]에서 출발해 평항(鳳凰), 싱징(興京), 푸순(撫順), 봉천(奉天) 등지로 건너가 현지 정찰을 하고 랴오허(遼河)를 따라 다시 잉커우로 돌아왔다.¹⁴

‘만·한’ 두 지역에 대한 정보 활동으로 일본군은 중국 동북지역, 조선의 사회·지리·군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정보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중국 동북 및 조선 등지를 공략할 때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으며, 나중에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치를 때에도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 정보 자료는 현존하는 것들도 적지 않으며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이 상당수 보존하고 있다.¹⁵

당시 관서국 국장을 맡았던 가쓰라 타로[桂太郎]는 조사 정보에 근거하여 다롄을 점령하고 푸저우(福州)를 공격하지는 보고서를 쓴 바 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정보 조사와 군부의 보고서에 따라 1880년 11월 30일 일황(日皇)에게 ‘진린방병비약표[進隣邦兵備略表]’를 제출하여, 가쓰라 타로의 작전 계획을 긍정하고 중국과 조선은 작전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조선사변이 ‘동인(動因)’이 되어, 육군은 메이지 18년(1885) 10년 군비 계획을 제정하였다.¹⁶ 1888년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군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만약 청나라가 ‘유사’를 틈타 텐진[天津] 조약에 따라 조선에 출병한다면,

13 牛越国昭(2009), 위의 책, 99쪽.
14 牛越国昭(2009), 위의 책, 101쪽.
15 牛越国昭(2009), 위의 책, 101, 157쪽.
16 日本防卫厅防卫研修所战史部(1974), 『大本营陆军部』(1), (东京)朝云新闻社, 18쪽.

“우리나라는 이를 묵과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는 경우 지나에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⁷ 1887년 2월 일본 참모본부 오가와 마사지 대좌(大佐) 등은 상술한 정탐 정보에 기반하여, ‘청국정토방략(淸國征討方略)’을 제정했다. 중국을 여러 소방(小邦)으로 분할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만주에서 러시아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휘순(旅順) 등 요지를 “반드시 먼저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 날로 강경해지면서, 양 지역이 갖는 각각의 전략적 의미와 일본의 목표를 분리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1889년 12월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이 출범한 뒤, 이듬해인 1890년 3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외교전략론(外交政略論)’을 제출하였다. 그는 첫째, 국가 강역이 소재한 주권선(主權線)을 수호하고 둘째, 주권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역, 즉 이익선(利益線)을 지켜야 하며 “우리 국토의 이익선의 초점은 실제 조선에 있다”고 천명하였다.¹⁹ 아오키 슈조 외상 역시 5월에 ‘동아시아 열국의 세력 균형(東亞列國之權衡)’을 제출하여, 러시아를 시베리아에서 쫓아내고 조선, 만주, 레나강 동쪽을 일본에 편입시키자고 주장하였다.²⁰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상술한 의견을 종합하여 12월 6일 국회에서 ‘시정방침연설(施政方針演說)’을 발표하고, 주권선과 이익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²¹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아오키 슈조는 모두 조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하였다. 대체로 가깝고 편리한 지리 교통과 물산 요인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러시아가 박차를 가하는 서

17 大山樺(1966), 앞의 책, 179쪽.

18 小川又次(1995), 『淸國征討方略』, 山本四郎整理, 載(北京)『抗日战争研究』 제1기.

19 大山樺(1966), 앞의 책, 196~197쪽.

20 信夫清三郎(1992), 『日本外交史』上册, 商务印书馆, 237쪽.

21 大山樺(1966), 앞의 책, 203쪽.

시베리아 철도 건설이 일단 완료된다면 러시아가 “인마(飲馬) 강과 헤이룽(黑龍) 강”까지 도달해 동북지역을 넘어 조선을 넘보면서 일본 본토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하였다.²²

1893년 4~7월,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참모차장은 청나라 각지와 조선을 대상으로 직접 정보 여행을 하였다. 전쟁 과정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정책상주(朝鮮政策上奏)’(1894. 11. 7) 등을 통해 조선 및 중국 대륙에 대한 한걸음 더 나아간 확장 계획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가 장구한 동양 제패로 열국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부산-의주(義州) 구간, 중국 만주 등지를 넘어 중국을 횡단하여 인도까지 이어지는 큰 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군정당국은 대외확장 계획 초기부터 ‘만·한’ 두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분명하게 ‘만·한 불가분’의 전략적 인식을 표현하였다. 대규모 동북지역 침략을 위한 일본군의 구체적인 활동은 일본 군정당국의 대륙정책 및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침략정책의 지휘하에 추진된 것이다. 일본이 추진한 이 정책의 최대 전과는 청일전쟁 전후에 랴오둥(遼東) 반도 할양으로 신속히 추진한 만·한 두 지역의 식민화였다.

1895년 3월 초닷새(3. 30) 중국과 일본은 정전조약을 체결하고, 3월 이레(4. 1) 강화 조문을 중국 대표 행관(行館)에 보내 4일 안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陸奥 宗光)는 이홍장(李鴻章)에게 ‘가부(可否)’의 ‘명백한 답변’을 독촉하였다.²⁴ 17일 양국 전권대사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모두 ‘신약(新約)’ 11조, ‘의정전조(議定專條)’ 3조, ‘별도 약정’ 3조, ‘정전전기전조(停戰展期專條)’ 2조였다.

22 大山樺(1966), 앞의 책, 197쪽.

23 大山樺(1966), 앞의 책, 197쪽.

24 『寄譯署』, 光緒二十一年三月十二日申刻, 『李文忠公全书·电稿』卷20, 32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국은 조선국을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로 인정한다. 둘째, 중국은 랴오둥 반도, 타이완 및 부속 도서를 일본에 할양한다. 셋째, 중국은 군비 배상액으로 은 2만 냥을 8회에 나누어 일본에 지급하되, 1회분 지급 이후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매년 5%의 이자를 더한다. 넷째, 일본 신민이 중국 통상 항구에서 각종 공예 제조에 손쉽게 종사하도록 하며, 각종 기계를 운송 수입할 때 정해진 수입세만 납부한다. 다섯째, 샹샤[沙市], 충칭[重慶],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를 통상 항구로 개방하고, 일본 선박은 이들 항구에 들어가 승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다.²⁵

일본의 침략 세력이 중국 영토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제정 러시아가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는 두 가지 목표를 포괄하고 있었다. 하나는 동북지역에 파고 들어 이를 안정적인 러시아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랴오둥 반도와 조선 연안에서 부동항(不凍港)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랴오둥 반도를 일본에 빼앗기면, 러시아의 만주 시장은 분할되고 부동항 계획도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러시아는 빠르게 팽창하는 일본에 맞서기로 결정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4월 17일에 독일과 프랑스 양국에 간섭을 제안하였다.

자국의 식민지 이권을 확장하려는 독일, 프랑스 양국은 일본이 지나치게 중국에 진입하지 않게 하면서 러시아의 주의를 동방으로 돌려 유럽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자 하였다. 영국은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바라고 있었으므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간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 중국 주재 공사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6일

25 『馬關新約』, 王鐵崖編(1957), 『中外舊約章匯編』 제1책,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614~617쪽.

째 되던 4월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이 청나라에 요구한 랴오둥 반도 할양은 앞으로 '평화의 장애'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포기하도록 일본에 권고하였다.²⁶ 4월 23일 러시아·독일·프랑스 세 나라 일본 주재 공사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군함을 고베[神戸] 및 옌타이[煙臺]로 이동시켜 전쟁을 불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5월 4일 일본은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였다. 5월 8일 중·일 양국의 전권 대표가 비준서를 교환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이 정식 발효되었다.

'삼국간섭'으로 반환된 랴오둥 반도, 즉 일본이 토해낸 전과는 중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제정 러시아는 약해빠진 청나라 정부를 계속 압박하여 1898년 3월 27일 중·러 '뤼순·다렌 조계지 협정'을 맺어, 강력한 무력으로 동북지역 전체를 전면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독일 정부 역시 이에 따라 중국에 손을 뻗어 청나라 조정에 1898년 3월 6일 '교오조계조약(膠澳租界條約)' 체결을 강요하였으며, 교오(膠澳) 만은 독일의 중요한 극동 해군 기지가 되었다.

조선의 경우 일본의 대청 작전이 승리를 거두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조선에서 중국의 역할은 배제당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전면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삼국간섭으로 실패했다. 러시아 세력은 동북지역을 통제하는 동시에 조선 안으로 적극 침투하여, 10년 후의 러일전쟁 때까지 일본과 조선에서 전면 각축을 벌였다. 한반도에 대한 러일 양국의 쟁탈전은 동북지역의 전략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청일전쟁은 근대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 한국 등에게 벌인 대규모 침략 전쟁이자 근대 동아시아 국가 관계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열강의 침략 대열에 들어가면서 침략 범위를 동북 국경 지역에서

26 工藤章(2008), 田嶋信雄 『日独关系史』, 东京大学出版会, 1월, 155쪽.

중국 본토까지 확장하였다. 당시 아마가타 아리토모는 여러 차례 시정 건의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침략 구상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동북지역에 대한 침략 계획도 구체화하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 아마가타 아리토모의 주요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31년 12월 8일 ‘시정방침연설(施政方針演說)’, 메이지 32년 2월 24일 ‘시정방침연설’, 메이지 32년 10월 11일 ‘대한정책의견서(對韓政策意見書)’ 등이다. 아마가타 아리토모는 이러한 제안에서 “러시아가 다렌 뤼순의 요충지를 점령하면 조선에서 일본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적극적인 대러시아 외교를 펼쳐야 하며, 만약 러시아가 나의 충고를 거절 한다면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제국의 존망과 흥망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⁷

아마가타 아리토모는(메이지 33. 8. 20) ‘북청사변선후책(北淸事變善後策)’에서 ‘남방 경영’과 ‘북방 경영’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후자에서 삼국간섭 때문에 포기했던 다렌·뤼순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전을 불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아마가타 아리토모는 러시아의 만주 경영을 저지하고 일본의 북방 경영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러시아와 개전할 결심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북방 경영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반복하여 강조하였다.²⁸

아마가타 아리토모는(메이지 34. 4. 24) ‘동양동맹론(東洋同盟論)’에서 “청나라를 나누어 갖는 것은 중국에 피하기 어려우니” 일본은 ‘북방 경영’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²⁹ 아마가타 아리토모가(메이지 38. 8) ‘전후 경영의견서(戰後經營意見書)’에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전반적으로 기술

한 ‘만주 경영 개론’은 일본의 만주 확장 정책이 완성되고 전면 실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의견서에는 이와 함께 ‘한국경영개론’도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그의 계획 속에 존재했던 ‘만·한 불가분’의 구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³⁰ 아마가타 아리토모는 만·한 양 지역에 대한 대처를 기반으로 ‘동양 정책’ 계획을 제시하고, 식민 정책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아마가타 아리토모는(메이지 42. 4. 29) ‘제2대청정책(第二對淸政策)’을 꾸며,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육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동(關東) 반도는 영구히 우리 제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¹ 그리고 대대적인 만주 이민과 조선에서 만주에 이르는 철도 건설 등 식민 계획을 제시하였다.

당시 일본의 군정당국은 인사 변동이 잦아 아마가타 아리토모 본인은 직책이 변했지만, 아마가타 아리토모 내각 시절 제정한 확장 정책은 오히려 확고해지면서 후임자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마가타 아리토모 등 일본 군정 고위층이 제정한 대륙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조선은 비록 각자 특수한 지리 및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확장 전략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두 지역은 모두 일본 군정당국의 강력한 야심의 대상이었으며, 각기 다른 형식으로 일본군의 침략과 공격을 받았다.

27 明治 32년 10월 11일 『對韓政策意見書』, 『山县有朋意見書』, 原书房, 昭和 41年版, 255쪽.

28 大山樺(1966), 앞의 책, 262~264쪽.

29 大山樺(1966), 위의 책, 265쪽.

30 大山樺(1966), 위의 책, 277~281쪽.

31 大山樺(1966), 위의 책, 308쪽.

4. '만·한' 선후 함락과 일본의 동아시아 식민지 체제 구축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식민 권력 찬탈은 법적 형식으로만 보면 조선보다 먼저 진행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로 제시한 랴오둥 반도 할양이 한때 좌절당하자, 그 후에 '러일 강화 조약'(즉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모든 군대의 '만주' 철수, 뤼순·다렌 조차지 승인, 창춘(長春)에서 뤼순 구간의 남만(南滿) 철도 이권의 일본 양도 및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의 영유 동의를 러시아에 강요하였다. 이어 일본은 곧바로 뤼순·다렌 조차지를 관동주(關東州)로 개편하고 식민지 군정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류큐와 타이완에 이어 대륙에서 직접 내륙으로 연결되는 주요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제 일본의 대륙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상황이 크게 강화되고 공고해졌다.

일본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요충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병합 정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04년 3월 11일 한국 주둔군을 편성하고, 4월에 경성(京城)을 점령하였다. 1905년 11월 조선을 압박하여 굴욕적인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 1906년 2월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에 취임하였다. 1907년 7월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조선 총리대신인 이완용(李完用)과 '제3차 한일협약'을 맺고 조선 군대를 해산하는 한편, 각지에서 저항하는 의병을 진압하였다. 1909년 7월 6일 일본 내각회의는 적당한 시기를 택해 조선을 합병하는 방안을 정식 통과시켰다. 10월 26일 의병 대장 안중근(安重根)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반년 후인 8월 22일, 테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이 이완용과 '한일병합조약'을 서명하고 조선 국회를 폐지하는 동시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을 일본에 편입시켰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동아시아 식민지 체제구축 과정은 뚜렷

한 시간과 공간의 순차성을 보여준다. 곧 류큐와 타이완 등 도서 식민지에 이어 먼저 동북지역 랴오둥 반도를 차지한 뒤, 정식으로 조선을 일본의 판도에 편입시켜 결국 직접 대륙 깊숙이 파고드는 거대한 식민지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대륙에서 일본의 식민지 구축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청 조정은 청일전쟁의 패배와 경자(庚子) 배상금(신축조약에 따른 서구 11개국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역자주)에 따라 이미 붕괴 직전에 몰렸고, 일본은 이러한 중국을 압박하여 '중·일동삼성조약(中日東三省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불리하게 몰아갔다. 조선은 형식만 남았던 독립조차 빠르게 사라지면서 1910년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다. 일본은 새로운 대확장을 완성하면서 군사 식민 제국이 되었고, 더 나아가 중국과 대륙 기타 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북지역 랴오둥 반도의 땅은 비록 거리상으로는 조선에 비해 더 멀었지만, 오히려 조선보다 먼저 일본군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점 역시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결코 한반도 침략을 위한 것이거나 단순히 그에 종속되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일본군이 대륙 침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한' 양 지역은 모두 주요 침략 대상으로 일본군의 전략 전반에서 '만·한 불가분'의 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공격에 직면하였다.

삼국간섭 이후 한동안 러시아 세력이 동북지역에서 조선으로 밀고 들어와 러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계속되었고, 만·한 두 지역에서 러일 양국의 쟁탈전이 격화되었다. 러일 양국은 당시 교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일본 정책결정 당국은 한때 약간의 양보를 포함한 이권 교환 방안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의 중국 동북 침략 연구가 이 시기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일

본이 한때 제안한 바 있는 만주의 권익을 교환 수단으로 하는 정책을 일본의 동북 정책의 핵심으로 보거나 심지어 동북 정책을 조선 정책의 종속 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

일본 군정당국은 대외 확장 정책 초기부터 ‘만·한’ 두 지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결정 당국의 분명한 ‘만·한 불가분’의 전략적 인식을 표현하였다. ‘만·한 불가분’은 러일전쟁 직전의 정책과 전략 조정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근대 일본의 대외확장과 대륙정책 실시의 전략적 사고 기반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러일전쟁 전후 일본이 견지한 ‘만·한 불가분’론은 전쟁 전야의 전략적인 고려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기본 국책으로 이미 결정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대한 확장 정책의 강경한 표현이었다.

식민지 체제와 <군중>

- 일제시기 대만인 <군중>의 역사 사회학적 고찰

대만성공대학 교수 리청지[李承機]

1. 머리말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이 파리에서 『군중심리(Psychologie des foules)』라는 책을 출판한 시기는 근대사회심리학이 ‘군집(群集)’을 논의하기 시작한 1895년으로, 중일 갑오전쟁 결과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면서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이기도 했다. 르 봉이 ‘군중의 시대’라고 한 18세기 말에서 19세 초까지 식민지 대만에 나타난 <군중>은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 일본이 대만에 수립한 식민지 지배체제는 대만의 <군중>과 어떻게 상호관계를 형성했을까? 이 글은 역사 사회학적 관점에서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접근하려는 것이다.

일찍이 칸트(Kant)가 언급했던 ‘개인이성’과 비교해 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르 봉이 언급한 ‘군중심리’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세인들의 견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군중심리』의 서문 제목이 ‘군중의 시대’이고, 내용 중 ‘군중심리의 지식’이 정치가와 입법가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¹ 일본에서는 1900년에 이미 르 봉

1 귀스타브 르 봉(ギュスターヴ·ル·ボン) 著, 桜井成夫 訳(1993), 『群衆心

의 저서 일부가 번역되어 나왔고, 대일본문명협회(大日本文明協會)는 1910년에 『군중심리』 완역본을 출판했다. 1915년 대일본문명협회는 『민족진화의 심리법칙(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원저 1894년)을 『민족심리와 군중심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판하였고, 르 봉의 저서 두 권은 '세계 명서'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² 동시에 일본은 르 봉이 제시한 <군중>이라는 관점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민족적'인 것과 관계되어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³

르 봉은 '군중의 일원이 된 개인'을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으로 보거나, 심지어 '자신의 의지로 자아를 이끌 능력을 잃은 꼭두각시'로 간주했다.⁴ 그의 이런 견해는 1934년부터 연감학과(年鑑學派) 조르주 르페브르(Georges Lefebvre)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르페브르는 르 봉이 <군중>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으며 '군중의 독자성'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을 동물로 보았다'고 비판했다. 또 르 봉의 유일한 공적은 <군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밖에 없으며, 심지어 르 봉이 '마음의 감염' 등에 관한 논의를 <군중>이라는 개념에 '몰래 도용'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⁵ 다시 말해, <군중>을 '폭민(mob)'으로 간주한 르 봉의 지식론에 르페브르는 새로운 견해와 정의를 제시했다.

理』, 東京 : 講談社, 原著 1895년, 20~21쪽.

2 桜井成夫(1993), 「訳者のあとがき」, 위의 책, 283~284쪽.

3 르 봉의 『군중심리』 관점을 이용하여 대만인이 '민족심리학'을 연구한 저서로는 우선 차이텐렌[柴田廉]의 『대만동화(同化)책론-「대만 도민의 민족심리학 연구」(台灣同化策論-一名「台灣島民の民族心理學的研究」)』, 台北 : 晁文館, 1923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의 부연구원 우웨이런[鳴叡人]의 도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4 귀스타브 르 봉, 『群衆心理』, 34~35쪽.

5 조르주 르페브르 제(1934) · 二宮宏之 역(2007), 『혁명의 군중(革命的群衆)』, 東京 : 岩波書店, 10~11쪽.

르페브르는 더 나아가 프랑스대혁명 시기의 '혁명의 군중'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순수한 의미의 '집합체'였던 이들이 외부의 세력이나 사건에 집단행동능력을 갖는 '집결체'로 변화하였으며, 그렇게 변하는 데는 '집합심성(集合心性)'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르페브르도 '집합심성'이 '인간 고유의 비판적인 특징을 질식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집합심성'을 단지 '순수한 기계장치'로 보는 것에는 반대했다. 따라서 호텔이나 교회의 광장, 농산물 시장, 심지어 계절 노동자의 이동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도 '집합심성'의 형성에 중요하다고 했다.⁶ 좀 더 의미를 확대해보면, '집합심성'은 바로 사람들이 <군중>으로 결집되기 이전에 갖추고 있는 '연대감'으로 르페브르가 말한 '군중의 독자성'의 내적 의미와도 대체로 일맥상통한다.

르페브르가 제시한 탐구방법에 따라 이 글은 일본 식민통치시기 대만에 존재했던 세 가지 <군중>의 구성과 그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군중>을 '집합심성'을 갖춘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집합심성'이 어떻게 한 데 모이고 변화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군중>의 내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 상황에서 조르주 뤼데(George Rudé)가 쓴 『프랑스대혁명 속의 군중』처럼 대량의 문헌자료를 이용해 <군중>의 실질적 구성(예를 들면 지도자, 신분별, 직업별, 지역별 분석 등)을 파악하기는 역부족이다. 다만 뤼데의 '사례' 혹은 '사건' 중에 나타난 <군중>의 '행동'을 이용해 '동기'나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며, 가능하면 초점을 '언어적' 토론보다 '행동상'의 <군중>에 맞추고자 한다.⁷ <군중>의 정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전파학의 1차 분류에 따라 청중(受衆 : audience)을 '공중(公衆 : the public)', '대중(大眾 : the mass)' 그리고 '군중(群衆 : the crowd)'으

6 조르주 르페브르(1934), 위의 책, 22~23, 28~32, 64~65쪽 참고.

7 조르주 뤼데(1967), *The crowd in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c1959.

로 분류하고, <군중>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았다.⁸

따라서 이 글은 역사 사회학적인 탐구 시각, 즉 앞서 명확히 정의 내린 조작상의 개념으로 식민지 대만의 경험적 맥락에 들어가 고찰하고자 한다. 식민지 대만에 존재했던 세 가지 <군중>의 구성은 - 1.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 2. 정치운동론의 <군중>, 3. 도시생활의 <군중> - 으로 이는 역사 현장에서 상용화된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conditions)과 경험 자료들을 바탕으로 토론의 편의를 위해 이념형(ideal type)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 밖에도 르페브르가 호텔·교회 등의 장소가 '집합심성'을 연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 글에서는 전파학의 토론방식을 빌려 미디어(media)와 전파(communication)라는 요소를 적절히 도입시키고자 한다.

상술한 관심사나 문제 의식과 관련하여, 먼저 세 가지 <군중>에 대한 구성 논의를 통해 식민 통치나 제국주의 맥락에서 대만사회의 '집합심성'이 겪은 변화를 유도해내고, 아울러 식민지 사회와 식민주의 간의 상호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

1820년대 대만의 전통노래책이었던 가자책(歌仔冊)은 '구어(口語)'라는 '통속적'인 언어특징 때문에 대만의 민간사회에서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

8 전파학상 '공중(the public)', '대중(the mass)', '군중(the crowd)'의 삼자 구분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중 '개념'을 중시하느냐 혹은 '전파효과'를 중시해야 하느냐에 대해 주로 이견이 많은데, 본고는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기로 한다.

는 <군중>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미디어 역할을 했다. 1895년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로 할양되었지만 도내(島內)에서는 활판인쇄로 가자책을 제작·판매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뿌리에 근원을 둔 여러 내용의 가자책이 대만에서 유통되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1945년 이후에도 제작과 판매는 계속되었다. 두젠팡(杜建坊)은 '상층 문인(文人)들의 전통'인 '문이재도(文以載道 : 글로써 사상을 표현한다-역자)'와 달리, 가자책은 한자로 대만어를 기록했고 적용대상도 이른바 '서민백성'이었기 때문에 글자의 쓰임에서도 "통속적인 글자의 사용을 꺼리지 않았다. …… 마침내 역사상 처음 보는 새로운 문체가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이렇게 표음자를 위주로 하고 표의자를 보조수단으로 한 문체는 반드시 모국어(母國語)로 낭독해야 했고, 입에서 나온 말이 귀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과 뜻을 전하는 데 막힘 없이 순조롭다"라고 덧붙였다. 두젠팡은 "구어로 표현하고 민중의 감정을 얻기 위해" 가자책의 글자 쓰임은 "소리 내어 읽으면 자연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취했고, 표현 정도가 '매우 확대'되어 "가자책과 독자 간에 음과 의미의 연결이 형성되었다"고 했다.⁹

"가자책과 독자 간에 음과 의미의 연결이 형성되었다"는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가자책은 단순히 식자자(識字者) 간의 전파기능뿐만 아니라, 식자자가 식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귀와 입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전파기능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심지어 가자책의 전파효과는 독자가 직접 읽음으로써 얻을 수도 있지만 '구어'로 낭독하는 현장에서도 가능했다. 그래서 '구어'로 낭독하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가자책은 식자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파효과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또 내용면에서 가자책은 여러 이야기나 전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수시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사회·생활·문화

9 杜建坊(2008), 『歌仔冊起鼓 言語, 文學と文化』, 台北 : 台灣書房, 11쪽.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가요’를 위주로 가자책의 구성형식은 ‘서민 백성’의 일상생활과 쉽게 관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가자책을 통해 연결된 〈군중〉은 대체로 ‘가구’, ‘이웃’ 또는 ‘향리’를 기본단위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여기에서 가자책의 내용과 전파효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전파방식으로 가자책이 ‘이웃’ 혹은 ‘향리’ 단위의 〈군중〉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자전적 소설을 많이 남긴 작가 우취류(吳濁流)는 식민지 시기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의 ‘집합심성’을 어떻게 집결시켰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우취류가 1967년 말 탈고한 『무화과(無花果)』의 제1장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항일고사(抗日故事)」 중에는 1895년 대만이 막 일본에 할양된 이후 몇몇 ‘향리’에서 떠돌던 ‘항일고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우취류는 비록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일본군대가 대만을 침략했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무계획적인 저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15년 이전의 무장(武裝) 「항일고사」로 대만인들의 ‘향토애’ 혹은 ‘조국애’를 설명하고자 한 그의 의도는 분명하며, 심지어 이를 근거로 “노인들은 꿈속에서조차 중국 군대(漢軍)가 와서 반드시 대만을 구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대만인들의 마음 속에는 ‘중국[漢]’이라고 하는 아름답고도 위대한 조국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¹⁰

이 글에서는 우취류가 말한 ‘향토애’ 또는 ‘조국애’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식민지 시기 이후에 태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조국애’에 대해 우취류 스스로도 “물론 관념상의 것이지만, 매우 미묘하고 만유인력처럼 나의 마음을 끌어 당긴다”라고 말한 바 있다.¹¹

10 吳濁流(1995), 『無花果』, 台北: 草根出版事業, 3~7쪽.

11 吳濁流(1995), 위의 책, 8쪽.

그러나 식민통치를 받던 대만인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항일고사」에 대한 전파가 ‘무계획적인 저항’을 의미하는 실패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향토애’를 동경하거나 심지어 더욱 추상적인 ‘조국애’에 대한 상상을 이끌어내는 도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1920년대 식민지 대만에 ‘민족적’ 의미를 지닌 근대식 정치운동이 생겨나기 전까지 대만사회에는 「항일고사」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이로 인해 ‘집합심성’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우취류의 또 다른 작품 『대만연교(台灣連翹)』는 뤼푸싱(羅福星)을 위주로 한 「항일고사」가 〈군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항일고사」의 전파가 당시 대만인들의 ‘집합심성’의 발현 혹은 결집과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13년 말에서 이듬해 1월에 발생한 ‘뤼푸싱 사건’으로 대만총독부는 535명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 이 사건에 관한 식민정권의 공식기록을 보면 “혁명운동이 사상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이에 주목한다”는 것이다.¹² 여기서 ‘혁명운동’의 의미는 물론 중국 본토에서 1911년 10월 ‘신해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중화민국 ‘건국운동’을 말한다. 뤼푸싱은 쑨원(孫文)의 혁명단체에 참여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본 식민정권의 각별한 경계심과 주의를 끌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동시에 일간지 『대만일일신보(台灣日新報)』(일반적으로 총독부의 비호를 받는 ‘어용지’로 평가 됨, 이하 『대일(台日)』)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민감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드러냈다. 심지어 신문의 전파기능을 고려하여 1913년 말 사건발생 초기 한문란(漢文欄)에 「우스꽝스러운 음모사건(稽陰謀事件滑)」이라는 기사제목을 달아 이 사건을 희화화시키려고 시도했다.¹³

일본어로 된 관련 기사를 보면 ‘토민봉기(土民一擧)’라는 표현을 사용해

12 井出季和太(1943), 『남진대만사고(南進台灣史考)』, 東京: 誠美書閣, 43쪽

13 「우스꽝스러운 음모사건(稽陰謀事件滑)」, 『대일』(1913. 11. 27) 5면.

이 사건을 일본 에도(江戸)시대 말기 농민 혹은 ‘악당’이 일으킨 ‘소요사건’에 비유했고, 보도 내용 중에 ‘토민(土民)’의 ‘몽매’와 ‘우민(愚民)’, ‘짐작하다(付度)’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알아보는 우월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¹⁴ 같은 해 12월 뤼푸싱은 체포되었고, 1914년 2월 초 재판이 있을 후 『대일』은 또 일련의 ‘음모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 계속해서 ‘우스꽝스러운 혁명’ 등의 수식어로 이 사건을 묘사하고, 뤼푸싱 본인의 답변과 검찰국이 조사한 ‘사건전말’을 보도하는 것 외에도 신문 지면을 일정 할애하여 뤼푸싱의 사생활을 보도했다.¹⁵

『대일』이 뤼푸싱의 사생활을 보도한 특별한 동기에 대해서는 알아낼 길이 없다. 내용을 보아도 뤼푸싱의 사생활을 폄하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독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우취류의 글을 보면 대만사회에서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을 매개로 그것이 어떻게 ‘전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뤼푸싱의 재판내용이 보도된 신문이 우취류에게 배달되자 ‘아편선(鴉片仙)’이라는 사람이 “마당에서 모두에게 들리게 큰 소리로 읽었다. 특히 뤼푸싱이 쓴 혁명시와 부인에게 보내는 시를 그가 한편씩 낭송하자 듣던 이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¹⁶라고 하였다.

‘아편선’이 낭송한 뤼푸싱의 「부인에게 보내는 시」는 『대일』이 일본어 기사란에 실은 「아내에게 바치는 시(贈妻詩)」와 같은 내용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애정시’였다.¹⁷ 그러나 앞서 묘사한 장면을 보면, 당시 우취

14 「최근 우스꽝스러운 토민봉기의 음모(상)(하)(近來の滑稽劇土民一揆の陰謀)」, 『대일』(1913. 11. 26, 27), 7면.
 15 「風流場中の羅福星(上)(下)」 『台日』(1914. 2. 11, 13) 6版, 日文欄 「恋の羅福星(上)(下)」, 『台日』(1914. 2. 10, 11), 7면.
 16 吳濁流(1995), 『台灣連翹』, 台北: 草根出版事業, 28쪽.
 17 「恋の羅福星(下)」, 『台日』(1914. 2. 11), 7면.

류 정원에 모인 〈군중〉은 ‘애정시’의 자구 하나하나를 ‘웅대한 뜻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 실망한 분위기로 해석했고, ‘듣던 이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라는 분위기는 시를 ‘한편씩 낭송’함으로써 모종의 ‘집합심성’이 지속적으로 결집되어 현장에 있던 〈군중〉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우취류는 1900년에 태어나 1975년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인 『대만연교』를 탈고했다. 노년이 되어 13, 14세 청소년 시기를 회고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구성’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이 그의 개인 기억에 자리잡고 있는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마치 ‘한편씩 낭송’하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라는 이런 ‘청각적 감각’이 충만한 묘사는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에게 매우 강한 청각적 자극을 전달하며, 심지어 이런 ‘청각적’ 감동은 경험으로 쉽게 기억된다. 르페브르가 말한 일상생활의 ‘저녁모임(veillée)’에서 담화가 ‘전승의 형성과 지속적인 전파’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귀와 입을 통한 전승은 평준화 작용과 추상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민중의 기억은 정확하거나 상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감성에 각인된 의미를 지닐 수 있다”¹⁸.

이 밖에도 토속신앙 중 종교처럼 숭배되는 ‘상징’ 혹은 ‘절기(節氣)’를 기반으로 한 경축일이나 축제 등의 민간활동도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을 한층 더 연결해 준다. 이런 토속적 신앙 활동은 〈군중〉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참가자들은 함께 모종의 의식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군중〉은 정신적으로 동일한 ‘상징’을 숭배한다. 뿐만 아니라 이때 신체 동작도 실질적인 의식행위에 맞게 행해져야 했기 때문에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 사이에서 발생한 ‘평준화 작용과 추상화 과정’은 반복

18 조르주 르페브르(1934), 앞의 책, 37~38쪽. 르페브르는 프랑스대혁명 이전의 ‘혁명의 집합심성’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민중의 기억’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으로 확인되면서 점차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토속신앙의 참여를 통해 ‘이웃’ 혹은 ‘향리’ 단위의 〈군중〉은 지역적 의미를 갖는 커뮤니티의 상상(想像)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920년대 들어서면서 대만의 지식분자들이 정치·사회 운동에 참여하게 되자 과거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이라는 전파 방식으로 집결된 ‘전설적(傳說的) 집합심성’은 ‘민족적’ 의미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 정치운동론의 〈군중〉

1920년대 들어선 이후, ‘대만 문화의 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만 지식인들이 발기한 대만문화협회(台灣文化協會, 1921년 설립)는 공식적인 정치·사회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협회는 ‘제국의회’ 방식을 호소하며 ‘대만 의회 설치 청원운동’을 통해 식민지배를 받는 대만인들에게 아무런 참정권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민족적’ 의미를 지닌 선전과 동원활동을 위해 ‘대만인 유일의 언론기관’을 표방한 근대식 전파매체인 『대만민보(台灣民報)』(이하 『민보(民報)』)¹⁹를 창간하여 대변기관으로 삼았고, 동시에 각종 ‘문화강연’을 개최해 실질적인 〈군중〉을 동원했다.

1920년대 초 대만인들의 일본어 습득률은 10%에 불과했다. 여기에 한

19 『대만민보』 계통의 대만인 자본 전파매체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월간 『대만청년(台灣青年)』(1920. 7), 월간 『대만(台灣)』(1922. 3), 격주 『대만민보』(1923. 4), 주간 『대만민보』(1925. 7), 주간 『대만신민보(台灣新民報)』(1930. 3)에서 일간 『대만신민보』(1932. 4)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만민보』는 1941년 2월 『흥남신문(興南新聞)』으로 강제 개명된 이후 1944년 4월 총독부의 「전시(戰時)신문통제」 때문에 5중 일간이 『대만신보(臺灣新報)』로 합병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문(漢文)만 사용하는 고유의 지식인 색채를 지닌 ‘전통 문인들’을 더한다면 식자율은 15~20%에 불과했다. 따라서 문화협회와 대만 지식인들이 주도한 각종 정치운동은 ‘강연회’를 선전의 ‘편리한 도구’로 삼아 수시로 ‘섬 전체를 순회’하면서 전파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이렇게 하면 대만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²⁰

그러나 ‘청각매체’를 통해 ‘강연회’를 이해하는 전파수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각이라는 감각기관을 자극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축과 공간축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파의 직접적인 효과는 특정시간, 특정장소에 동원된 〈군중〉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만일 대만사회 전반에 전파하고자 한다면 그 후로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귀와 입을 통해 전파’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 시기 정치운동에 동원된 〈군중〉은 앞서 말한 입과 귀를 통해 전승되는 〈군중〉의 경험이 있고, 동원된 후 정치운동론의 〈군중〉 경험을 다시 구전이라는 경로를 통해 전파한다면 대만사회 전체로 전파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정치운동론의 〈군중〉과 귀와 입을 통해 전승하는 〈군중〉은 분명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민보』에 자주 실린 ‘강연회’의 현장보도는 정치운동론의 〈군중〉을 대량으로 인쇄되는 전파매체로 끌어들이어 더 나은 전파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인들의 정치운동이 고조되던 1925년 2월부터 『민보』는 【각 지역 문화강연 정보】란을 신설하여 지면을 통해 각지의 ‘강연회’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성황리’에 진행된 ‘강연회’의 모습 외에도 참가한 〈군중〉의 수를 상당히 강조했다. ‘약 천여 명’ 혹은 ‘약 이천여 명’ 등의 표

20 문화협회가 주최한 각종 강연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보린웨이[林柏維](1998), 『대만문화협회의 변천[台灣文化協會滄桑]』 참고, 台北：台原出版社.

현이 가장 많았고, ‘삼천 명’에서 ‘육천오백여 명’의 참가자라는 표현도 종종 볼 수 있었다.²¹ 1927년 8월 이후 『민보』의 발행지가 동경에서 대만으로 옮겨오면서 ‘강연회’ 보도에 ‘강연요지’를 추가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부가적으로 <군중>의 모습에 “매우 열렬하다”는 등의 표현을 덧붙여, ‘강연회’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렇게 인쇄매체가 지닌 ‘대량 전파’의 기능을 이용해 정치운동론의 <군중>의 결집경험을 대만사회 전체로 전파할 수 있었다. 정치운동론과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이 서로 중복되는 것도 식민통치하에서 생겨난 이른바 ‘대만인 사회’의 커뮤니티의 상상으로 볼 수 있다.

정치운동론의 <군중>과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이 서로 중복되는 상황에서 ‘집합심성’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평위안(豐原) 지역의 사신(仕紳: 지방 향리에서 사회, 문화적 지위를 갖춘 사람-역자) 장리권(張麗俊)의 개인 경험을 통해 그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장리권은 자신의 일기에 여러 차례 문화협회 ‘강연회’에 참가했던 경험을 기록했다.

1926년 봄, 장리권은 청중이 ‘천여 명’에 달한 ‘강연회’에 참가했다. ‘강연문화 제목’은 「정치이상과 그 실현방법」이었고, 연사는 당시 유명한 정치운동 지도자 장웨이웨이(蔣渭水)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장리권이 자신의 일기에 강연 현장에서 본 장웨이웨이의 풍채에 대해 많은 묘사를 했고, 심지어 현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등의 청각적인 감동을 고스란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국시대에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라는 세사(說士)가 있는데 오늘 장 선생이 혼자 와서 강연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니 소진이나

21 예를 들면, 【도내시사】, 「베이터우 알린[北斗二林] 강연회 성황」, 『민보』 제3권 제14호(1925. 5. 11) 5면; 【도내시사】, 「각지 문화강연 성황」, 『민보』 제3권 제16호(1925. 6. 1) 5면; 【도내시사】, 「신주(新竹) 문화강연회 성황리 개최」, 『민보』 제59호(1925. 7. 1) 5면; 【도내시사】, 「더우난 시뤼[斗南西螺] 지방강연 성황」, 『민보』 제59호(1925. 7. 1) 6면, 「자이[嘉義] 문화강연 성황리 개최」, 『민보』 제90호(1926. 1. 31) 8면 등.

장의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²² 장웨이웨이를 고적(古籍)에 나오는 유명한 ‘세사’에 비유함으로써 과거 문자를 통한 ‘상상’과 당시의 ‘현장’ 감동을 서로 연결시켰다.

고적에 나오는 ‘세사’가 비록 장리권이 사신(仕紳)으로서 갖추고 있는 교양이라 할지라도 이를 미루어 볼때, 장리권 자신은 정치운동론의 <군중>이 집결한 현장에 있지만 모종의 ‘전치적(前置的)’ 인식을 참조계(參照系)로 삼아, <군중> 현장에 있는 감동을 끌어 내거나 현장의 감동과 서로 연결시키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장웨이웨이의 강연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장은 의도적으로 강연주제를 「정치이상과 그 실현방법」으로 삼아 대만인들이 정치 의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참정권도 없는 대만인들을 상대로 정치의제를 선택하여 현장에 있는 <군중>의 ‘민족적 집합심성’을 지속적으로 응집하려 했다.

다시 말해서 장은 장리권이 속한 <군중>의 결집현장에서 일부 대만인들에게 익숙한 ‘전치적’ 인식을 파악하여 정치운동론의 <군중>에게 있는 ‘민족적 집합심성’을 응집하려 한 것이다. 일반 대만인들에게 익숙한 ‘전치적’ 인식은 앞서 말한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이 갖고 있는 ‘전설적 집합심성’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 또 이런 ‘전설적 집합심성’은 어떤 면에서는 식민통치 초기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 사이에서 이미 ‘평준화 작용과 추상화 과정’을 거친 「항일고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장웨이웨이가 언급한 식민통치와 관련된 정치의제는 ‘전설적 집합심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정치운동론의 <군중>이 모인 현장은 그것을 ‘민족적 집합심성’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물며 ‘강연회’라는 이 ‘매체’는 고막의 진동을 직접 자극하는 ‘청각적’

22 「張麗俊の日記」(1925. 1. 2)(許雪姬など編纂(2002), 『水竹に住む人の日記(水竹居主人日記)』(六)1923~1926に収録, 台北: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437쪽).

요소로, 동일한 신체동작을 통해 정치운동론의 <군중>이 모인 현장의 ‘민족적 집합심성’을 더 쉽게 응집하게 했다. 장리권이 자신의 일기에 언급한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는 일치된 신체동작을 통해 정치운동론의 <군중>이 모인 현장의 감동을 더욱 확산시켰고, 그러는 동안 ‘민족적 집합심성’에 대한 응집이 더욱 상승작용을 타 현장의 감동이 더 많은 동원을 가능케 하는 역량이 되었다. 정치운동론의 <군중>이 현장을 떠나 현장의 경험을 전달할 때 당시 현장의 감동은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의 ‘전설적 집합심성’과 일정한 작용을 일으켰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만의 지식인들이 개최한 연극, 영화 순례, 여름학교, 강좌 등의 <군중> 활동도 물론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이렇게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의 ‘전설적 집합심성’이 전환 혹은 중복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하여 정치운동론의 <군중>에게 있는 ‘민족적 집합심성’을 집결하는 것은 대만 지식인들이 식민통치하에서 정치운동을 진행할 때 식민지 체제의 비판과 군중 동원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만인들이 어떻게 정치운동에 군중을 동원하여 식민지 체제와 정치적 내지는 사상적 대응을 이루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식민정권이 정치운동론의 <군중>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식민정권의 <군중>에 대한 지식론

식민지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강연회’ 등의 <군중> 활동은 모두 지방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관할 기관은 경찰을 파견해 ‘배석하여 감시’할 의무가 있었다. 현재 열람이 가능한 사료 중 「타이중[台中] 지방법원 형사사건 관련 문서」²³에는 <군중> 사건에 연루된 법률사안이 있다. 주로 군중동원에 까다로운 좌익운동이 일어난 1927년 이후의 사건들

이다. 기록을 보면 격렬한 항쟁수단을 동원한 좌익운동과 관련된 정치운동론 <군중>의 집결형태뿐만 아니라, 식민정권이 경찰이나 사법체계를 이용하여 어떻게 그들을 억압했는지도 알 수 있다. 판결문에서 인정한 ‘범죄요건’ 혹은 ‘법률사실’은 식민정권이 ‘군집심리’라는 지식론에 기반하여 대만인 <군중>의 집결을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1928년 ‘근로자 기념일’(May Day)에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을 들 수 있다.²⁴ 판결문을 보면 피고 황원두[黃文肚]는 ‘소요사건’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1928년 5월 1일 오후 7시 ‘장화(彰化) 노동조합총연합, 농민조합, 문화협회 회원 등’이 장화군(彰化郡) 장화가(彰化街) 텐공묘(天公廟)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8시가 넘어 “집회를 단속하던 경부보(警部補: 일본 경찰 계급-역자) 쿠도[工藤]가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집회 참석자(聽集) 약 300여 명이 장화가에 있는 중화회관(中華會館)으로 몰려가 느라 장화군 군역소(郡役所) 앞 도로에 가득 모였다[蟻集].” 쿠도 경부보는 “군집(群集)의 기세가 불안하여 주변의 안정을 해칠까 걱정된 나머지 집회를 해산시킨 후 계속해서 거리 단속에 나섰다.” 아울러 “군집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군역소 앞의 도로를 통제했다.” 후에 피고의 ‘지기(知己)’ 양커황(楊克煌: 대만공산당원)이 “이 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경찰관이 단속하자 무리 중에 있던 피고는 경찰관의 행동에 반감을 품었다.

- 23 법무부 사법관훈연구소 도서관에 소장 중인 타이중[台中] 지방법원 형사사건 관련 문서(검찰국 문서 포함)는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필자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대만대학교 법률대학 포닥 과정에 있을 때 왕타이성[王泰升] 교수의 「일제시기 법원문서 정리계획」에 참여하여 문서를 열람할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빌어 계획에 참여했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 24 타이중 지방법원 형사사건 관련문서 「소와 3년 판결 원본 제11권」, 타이중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결」(소와 3년 기록 1789호, 소와 3년 8월 7일), 197~203쪽. 이하 본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모두 출처가 동일함.

8시 30분경 군집과 함께 동역소 앞 도로에 서있던 피고는 쿠도의 해산명령에 분개하여 반항하려 했지만, 억지로 후방으로 밀려났고 이에 반감이 고조되고 격앙한 나머지 쿠도가 등을 보이며 군집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을 때, 약 3m거리에서 직경 3cm정도 되는 돌을 던졌다”고 했다. 이로 인해 쿠도 경부보는 머리에서 피가 흘러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죄가 성립되었다.

인용문 중의 ‘군집(群集)’과 ‘청집(聽集)’의 명사 용법을 보면, 일본어의 ‘중(衆)’과 ‘집(集)’은 발음(しゅう)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당시 식민지 사법체계가 ‘군집(群集)’·‘청집(聽集)’과 ‘군중(群衆)’·‘청중(聽衆)’을 명확하게 구별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득 모이다(蟻集)”라는 동사의 쓰임과 쿠도 경부보가 “군집의 기세가 불안하여 주변의 안정을 해칠까 걱정된 나머지”라는 대목에서 식민지 사법체계와 경찰이 사람들이 집결하는 상태를 매우 위험한 신호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식민당국은 이 사건을 대만의 좌익정치운동과 연루되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증인인 쿠도 경부보는 검찰관의 「예비심문조서」에서 “해산 명령”과 “교통 통제로 사람들이 중화관으로 가는 것을 저지”한 것은 “집결 형태에 관계없이(원지) 현 상황이 불안하다고 판단하여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군집이 군역소 앞에 가득 모인 것을 보니 마치 반항하는 시위운동 같았다”라고 했다.

판결사례를 통해 식민지 상황에서 정치동원의 〈군중〉이 집결한 현장은 긴장감이 팽배하고, 식민정권이 이런 〈군중〉의 집결에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세가 불안’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군중〉의 해산을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식민지 대만은 정치운동의 〈군중〉이 집결하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경찰의 ‘배석과 감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원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중단’되고 말았다. 심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죄동기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반감

이 고조되고 격앙한 나머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공격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된 원인은 〈군중〉이 집결하는 현장에 모였다가 ‘반감’ 또는 ‘반항’ 정서가 고조되면서 ‘격앙한 나머지’ 사건이 일어났으며 ‘군집심리’라는 지식론에 기반하여 〈군중〉을 이해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사건은 1927년 말에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다이쇼[大正] 15년 법률 제60호 위반 사건’²⁵이다. 이 사건에서 식민정권에게 정치운동의 의미를 가진 〈군중〉은 모두 감시 통제의 대상이고, ‘배석하여 감시하던’ 경찰과 현장에 모인 〈군중〉 사이에는 고도의 긴장감과 대립관계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군집심리’라는 지식론과 대만 〈군중〉이 어떻게 ‘민족적 집합심성’을 집결시켰는지, 그 연관관계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피고는 모두 대만 농민조합 다툼[大屯] 지부의 간부인 지부장 리차오송[李橋松], 쟁의부장 첸런파[陳壬發], 선전부장 양묘오치[楊標祺] 3명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1927년 10월 25일 농민조합의 간부들은 리차오송의 자택에서 “40~50명의 농민들과 함께 조합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때 우평[霧峰] 파출소의 순사(巡査) 홍서우즈[洪壽仔]가 ‘배석하여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강연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집회가 ‘좌담회’ 성질의 모임이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돌아갈 것을 요구’했고 이에 쌍방은 한 차례 논쟁을 일으켰다. 피고들은 ‘청중(聽衆)이 보는 앞에서 순사에게 공공연(公

25 타이중 지방법원 형사사건 관련문서 「소와 4년 판결 원본 제4권」, 타이중 지방법원 형사단독부 「판결」(소와 2년 기록 4409호, 소와 3년 1월 27일), 타이중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결」(동일 기록 번호, 소와 3년 7월 17일),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소와 3년 상형(上刑) 제60호, 소와 3년 10월 16일), 제6~9, 11~16, 18~22쪽. 이하 본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모두 출처가 동일함.

公然)하게 욕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홍 순사가 계속해서 기록하자 장시진 [江賜金: 역시 농민조합 간부]은 “완력에 호소하겠다면서 때릴 듯한 기세로 순사에게로 두 세 걸음 다가갔고 피고들도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잡거나 홍 순사를 몰아 붙이며 업신여겼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뜻을 어기고 계속 기록하자 으름장을 놓아 홍 순사를 공포[畏怖]에 몰아넣어 회의장 밖으로 몰아내 더 이상 기록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피고들이 ‘공무집행방해’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시진과 피고들이 홍 순사를 욕하며 ‘좌담회’장 밖으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폭력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판결문은 <군중>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서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시진과 피고들이 홍 순사에게 ‘모욕’이라는 범죄요건을 구성하였다며 판결문은 “청중이 보는 앞에서 순사에게 공공연하게 욕하고 모욕을 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의 ‘때릴 듯한 기세’가 의미하는 범죄요건은 <군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으름장을 놓아 홍 순사를 공포[畏怖]에 몰아넣어 ‘강연 기록’이라는 ‘공무’를 지속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운동에 연루된 <군중> 사건(예를 들어, ‘대만 위경죄 피고사건’, ‘대중 교사(敎唆)선동사건’, ‘사회안녕질서위해사건’ 등)과 비교해 보면 본 사건은 경찰의 ‘배석 및 감시’와 <군중>의 ‘기세’ 사이에 상당히 미묘한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체제에서 정치적 권위를 지닌 경찰이 ‘배석하여 감시’하는 상황이 되면 대만 <군중>의 ‘민족적 집합심성’은 훨씬 더 쉽게 집결되고 긴장감이 도는 대립관계도 수시로 초래됐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정권은 이런 긴장 대립관계의 원인을 <군중>이 집결한 현장의 ‘군집심리’의 작용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대일』이 실은 ‘강연회’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를 보면, 식민지배자들이 정치운동론의 <군중>에 멸시와 폄하의 시선을 보내고 심지어 대만인 <군중>의 ‘민족적 집합심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찰과 <군중> 간의 대립과 충돌을 야기한 원인이다. 1927년

11월 27일 ‘신주(新竹) 군역소 소요사건’의 보도를 보면 『대일』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선동자’를 이용해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로 ‘사상대강연회’의 ‘변사(辯士) 여섯 명을 지목하고 “강연회장은 살기등등했고, 폭동 조짐이 있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보면, ‘배석’한 경찰관은 ‘단호하게 해산을 명령’할 이유가 있었다. 이 사건이 ‘대소요사건’으로 발전한 것은 ‘강연회’가 해산을 명령받은 후 ‘변사’와 <군중>이 신주군[新竹郡] 경찰과로 가 “해산이 부당하다”고 따지는 과정에서 <군중>이 경찰서 유리창에 돌을 던졌기 때문이다. 『대일』은 ‘군중심리’가 폭력적인 공격행위를 낳았다고 보도하며 현장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고향으로 완전 폭동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식민지들로 하여금 ‘대만통치 초기’ 대응해야 했던 무장항일운동을 떠올리게 했다. 『대일』은 “토비(土匪)사건 이후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²⁶

1927년 말 『대일』은 ‘사상문제’를 주제로 실은 「소와 2년의 회고」에서 ‘자칭 사회운동가’를 폄하하고, 그해 자주 발생했던 <군중> 동원 사건의 ‘운동가들은 집회와 아무 관련 없는 소란꾼이나 단속자들이 주로 과시를 일삼는 진지하지 못한 자칭 사회운동가’²⁷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우선 <군중>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동자’로 간주하고 다시 ‘폭민’ 혹은 ‘소란꾼’ 등의 소위 ‘군중심리’로 정치운동론이 동원한 <군중>을 평가하며 이들을 식민통치 초기의 ‘토비’에 비유했다. 이것이 식민자 혹은 식민정권이 대만인 <군중>에 대한 ‘인식론’의 주요골자다.

따라서 르 봉의 『군중심리』 관점에 따르면, 식민정권은 모든 정치운동

26 「新竹郡役所を中心に大騒擾事件勃発 全く暴動化し検束者百二十余名を出す土匪事件以来の恨事」, 『台日』 제9,936호, (1927. 12. 23), 7면.

27 督府担当記者「昭和2年の回顧」(9) 思想問題本當に於るその動き(六), 『台日』 제9,932호, (1927. 12. 19) 2면.

론의 〈군중〉이 집결하는 상황에 항상 경계심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운동론의 〈군중〉이 ‘폭민’ 혹은 ‘혁명의 군중’으로 변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민정권은 대만인들의 ‘민족적 집합심성’을 무시했고, 심지어 대만인 〈군중〉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집합심성’을 부인해야 했다. 정치운동론 〈군중〉의 발생 현장에서 경찰의 ‘배석 및 감시’와 〈군중〉의 ‘기세’ 사이에 팽배해 있는 상호 탐색과 도발, 심지어는 대립이나 도전관계의 소멸이나 증대는 사실 ‘군중심리’ 인식론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

4. 도시생활의 〈군중〉

조르주 뒤테는 그의 저서 『프랑스대혁명 속의 군중』의 마지막 장인 「역사 속 혁명의 군중」에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공장이 생겨났으며, 이로써 〈군중〉의 형태와 구성이 ‘혁명의 군중’과는 다른 변화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²⁸ 1900년대 이후부터 식민정권은 식민지 시장 정비를 위해 대만에 각종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고, 서방식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몰고 온 ‘근대화’ 영향으로 많은 ‘근대화’ 사회현상, 예를 들어 근대교육체계, 우정체계, 근대 전파매체, 공공시설, 근대 도시 등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1세대 대만인 사회학자 천사오신[陳紹馨]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28 George Rudé(1967), *The crowd in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c1959, pp.238~239. 뒤테가 말한 ‘군중’의 양상과 구성은 변화할 수 있다.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사회체계(예를 들어 노동조합, 정부의 노동부처 등)가 출현했고 파업이나 시위를 ‘예사일’로 보았으며, ‘군중’의 구성에 ‘하층’·‘빈민’ 등의 성분과 의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만사회는 내부 ‘유동성(mobility)’ 증가로 ‘폐쇄형’ 혹은 ‘자족성(自足性)’ 사회에서 ‘개방형’ 혹은 ‘유동성’의 근대식 사회로 변모했다고 여겼다.²⁹ 따라서 앞서 말한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과 정치운동론의 〈군중〉 외에도, 근대사회의 각종 체계가 계속 분화하고 연동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형태의 〈군중〉이 생겨났고, 더 나아가 상호 중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공간전략’이 수립되면서 근대 도시의 출현과 관련 계획은 도시 생활의 〈군중〉을 만들어 냈다.

일본식민정권이 대만에서 실시한 가장 구체적인 ‘공간전략’ - 행정구역 - 은 초기 재정상태, 보안경비, 교통기관 정비, 심지어 ‘번계(蕃界) 정비’ 등의 요인들로 자주 변하다가 1919년 취임한 초대 문관총독(文官總督) 덴 겐지로[田健治郎]가 1920년 「대만 총독부 지방관의 관제(官制)」를 개정한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³⁰ 그중 ‘주청제(州廳制)’하의 ‘시정촌제(市町村制)’ 실시는 그 후 대만 도시발전의 지표가 되었다. ‘도도(島都)’라고 불린 타이베이[台北]의 경우, ‘세 개의 시가(市街)’가 하나의 ‘타이베이시’로 불리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때부터 ‘하나의 타이베이시’³¹로 통합되었다.

1920년에는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台南] 세 지역에서만 시제(市制)를 실시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인구증가와 행정구역 변화로 1940년에는 11개 시를 갖추었다. 각 연도별 『대만총독부통계서(台灣總督府統計書)』 인구기록을 보면 1920년부터 5년마다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겪었다.

29 陳紹馨(1979), 『台灣の人口變遷と社會變遷(台灣的人口變遷與社會變遷)』, 台北 : 連經出版事業公司, 121~122쪽.

30 施雅軒(2003), 『台灣の行政區域の變遷(台灣的行政區變遷)』, 台北 : 遠足文化, 90~121쪽.

31 蘇碩斌(2005), 『見えない台北と見える台北(看不見與看得見的台北)』, 台北 : 左岸文化, 145~146쪽. 分離状態にある従来の「三つの市街」は艋舺, 大稻埕, 城内だ.

〈표〉 1920년 이후 대만에서 시제 실시 후의 인구 변화

| 年 | 1920 | 1925 | 1930 | 1935 | 1940 |
|------------|-----------|-----------|-----------|-----------|-----------|
| 타이베이시 | 164,329 | 201,374 | 240,435 | 287,846 | 353,744 |
| 타이중시 | 32,134 | 42,387 | 55,347 | 71,742 | 87,119 |
| 타이난시 | 77,026 | 86,726 | 98,114 | 112,142 | 149,969 |
| 지룽[基隆]시 | -- | 65,327 | 78,214 | 87,400 | 105,084 |
| 가오슝[高雄]시 | -- | 44,035 | 62,633 | 86,848 | 161,418 |
| 신주시 | -- | -- | 45,867 | 53,469 | 62,467 |
| 자이[嘉義]시 | -- | -- | 58,276 | 73,180 | 96,559 |
| 장화시 | -- | -- | -- | 52,633 | 60,171 |
| 핑둥[屏東]시 | -- | -- | -- | 43,997 | 58,637 |
| 이란[宜蘭]시 | -- | -- | -- | -- | 38,157 |
| 화롄강[花蓮港]시 | -- | -- | -- | -- | 34,701 |
| 총시제인구(A) | 273,489 | 439,849 | 638,886 | 869,257 | 1,208,026 |
| 대만 전체인구(B) | 3,757,838 | 4,147,462 | 4,679,066 | 5,315,642 | 6,077,478 |
| (A)/(B) % | 7.3% | 10.6% | 13.7% | 16.4% | 19.9% |

(출처 : 필자)

위 표를 보면, 시제에 속한 인구의 증가속도가 대만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시제에 속한 인구를 도시인구로 본다면 1920년부터 1940년까지 20년 동안 인구 절대수가 4.4배 증가했고, 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3%에서 19.9%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 1940년경 대만 전체 인구 중 1/5에 해당하는 인구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시인구'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청제'하에서 실시하는 '가제(街制)'의 소도시 인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타이베이시는 일찍이 1930년대 초부터 청내이[城內]와 다다오청[大稻埕] 두 개의 주요 시가에 극장, 영화관, 각종 상점 심지어는 백화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신문지상에서 '소비도시'라고 불렸다.³²

도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집회를 경험하고 도시생활의 〈군중〉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집합심성'을 갖고 있는지, 대만 지식인 왕스랑[王詩琅]의 소설에 묘사한 도시생활과 모습을 통해 논의를 보고자 한다.³³ 왕스랑의 첫 소설 '야우(夜雨)'는 좌익 문학잡지인 『제일선(第一線)』(1935년 1월 출간)에 실렸던 것이다. 그중 '도도(島都)' 타이베이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큰 점포들이 양편으로 즐비한 넓은 타이핑정[太平町] 도로에 땅거미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태양을 대신해 세상을 지배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카페—「나리아[娜利耶]」가 교차로 모퉁이에 멋진 모습을 드러냈다.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또랑또랑하면서도 애교섞인 목소리와 붉은 '네온사인'에 비친 신식여성들의 매력적인 모습이 도도의 대만인 거리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주었다.

[...]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 가운을 입은 여공, 노동자, 신사, 자전거, 자동차, 인력거, 화물차…… 근대 도시를 이루는 세포와 모던한 풍경이 그의 침울한 마음 속에는 모두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³⁴

32 「統計から見た内台人種々相(2)」, 『南瀛新報』 제344호(1935. 6. 8) 3版.

33 연구자 장형하오[張恆豪]는 일제시기 왕스랑의 소설이 “주로 시진(市鎮)의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1930년대 대만의 사회운동, 노동자 문제 그리고 도민들의 성격을 관찰했다”고 했다. 장형하오 「불타는 영혼-왕스랑집서(燃燒的靈魂-王詩琅集序)」 참고. 『대만작가전집 왕스랑, 주넨런(朱點人) 합집(合集)』(台灣作家全集 王詩琅, 朱點人合集)(1990), 台北: 前衛出版社, 14쪽.

34 위의 책, 21쪽.

「야우」의 주인공은 일찍이 「타이베이 인쇄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총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실업노동자다.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타락문제와 어쩔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저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먼저 ‘카페’, ‘축음기’, ‘네온사인’ 등 자본주의 상징물을 통해 ‘도도’의 ‘매력적인 모습’과 ‘대만인 거리’의 ‘매력’을 보여주고, 다시 주인공이 거리를 ‘거닐고’ ‘발길 가는 대로 걸으면서’ ‘마이동풍’의 ‘근대도시를 이루는 세포’인 사람들을 통해 주인공의 ‘침울한 마음’을 표출해 냈다. 만일 주인공이 1인칭 관점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자본주의 상징물 속에서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왕스랑은 1927년 ‘흑색청년연맹(黑色靑青年聯盟) 검거사건’ 후 무정부주의와 관련하여 몇 차례 투옥된 적이 있다. 왕스랑의 소설 「야우」 속에 깃든 ‘소설의식’은 ‘부패한 자본문명’ 혹은 ‘제국 강권하의 자본주의와 식민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³⁵ 전쟁 이전의 몇 안 되는 소설작품을 보면 거의 모두가 상점의 진열대, 여기에 진열된 상품, 광고판 등 자본주의의 상징물들로 도시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자본주의의 침식으로 도시문화가 부패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십자로(十字路)」(1936년 12월에 출간된 『대만신문학(台灣新文學)』 1권 10호에 처음 실림)의 도입부분도 도시의 건축물과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진 도시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 도도의 심장인 부유하고 화려한 룡정[榮町]과 징정[京町] 일대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상점과 도로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회색, 흰색, 붉은색, 황갈색의 관청과 회사,

35 張恆豪, 「黑色靑年の悲劇-王詩琅と彼の小説意識(黑色靑年の悲劇-王詩琅及其小説意識)」, 앞의 책, 107, 117~119쪽.

은행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남녀들로 거리가 한층 더 복잡거린다.³⁶

마치 도입부분 ‘도도’의 변화한 모습과 호응이라도 하듯 소설의 결말부분에도 “눈에 닿는 것은 모두가 마천루와 번쩍거리는 불빛, …… 상점의 복잡거림” 등을 묘사해 일반 시가지에 〈군중〉이 모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그러나 뒤이어 세 명의 은행원과 막 출옥한 좌익운동가가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마치 불빛 속을 뚫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³⁷

막 출옥한 좌익운동가가 도시의 사람들 속에 섞여 ‘뚫는’ 듯 한 모습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좌익운동가도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의 부패한 도시 인파 속에 묻히고 말았음을 비유한 것이다. 만일 1920년대 후반 좌익운동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정치운동의 〈군중〉이 더없이 주목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이 도시에 충만해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식민체제하에서 소비만 알고 정치의식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다. 이런 좌익의 시선으로 보면 식민지 대만에서 도시생활의 〈군중〉을 집결하게 한 ‘집합심성’은 자본주의 소비문화 환경에서 상징이 될만한 ‘소비적 집합심성’으로 보기 쉽다.

요시미 순야[吉見俊哉]가 『도시의 극작법(都市的劇作法)』에서 동경 시가지를 연구한 관점을 보면, ‘도시(都市)’라는 공간의 형성과 그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사회사(社會史)가 근대화 자본과 국가의 ‘공간전략’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으며, 특정한 ‘문화부호’가 어떻게 ‘신체’에 각인되는지 알 수 있다. 요시미 순야는 더욱이 “그물처럼 얽힌 도시의 다양한 전략관계를 모든 사회구조와 서로 연결시키면 전략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³⁸ 이유는 좌익의 시선으로 본 ‘도시’는 자본주의 상징과 심볼의 각축장이요 식민지 체제가 수립한 ‘전략관계’가 당연히 드러나기

36 앞의 책, 69~70쪽.

37 앞의 책, 84쪽.

38 吉見俊哉(1987), 『都市のドラマトウルギー』, 弘文堂, 14~17쪽.

때문이다. 그러나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과 정치운동론의 <군중>이 모두 도시생활의 <군중>과 중복되는 것은 '전설적 집합심성'과 '민족적 집합심성'이 이미 식민지 체제가 주도하는 '전략관계'에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적 집합심성'에 잠식되거나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맺음말- 식민지 체제와 <군중>

레닌은 1916년 그의 저서 『제국주의』에서 이미 경제적인 요소에 착안하여 자본수출을 '제국주의식' 현상이나 특징으로 보았다.³⁹ 1945년 '일본 제국'이 붕괴된 이후 정치사와 경제사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신랄한 비판 의식을 가진 '제국사(帝國史)'는 식민지관련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제국-식민지'를 지배와 종속의 각도에서 보면 아마모토 유우조[山本有造]가 Doyle의 「제국」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하여 말한 것처럼 "제국은 두 개의 정치체제가 지배-피지배로 연결되거나 혹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체제(system)를 말한다". 아울러 '국제관계에서 비대칭적인 권력행사'의 형태로 식민모국과 종속국 혹은 식민지 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구분한다.⁴⁰ 이렇게 정치와 경제적인 각도에서 권력이 불균형한 정치체 간의 정경편제(政經編制)를 중시하면 소위 '식민지 체제'는 '종속'과 '착취'의 체계로 보이기 쉽다.

'종속'과 '착취'의 관계 분석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정경편제는 식민지

체제를 토론하는 데 매우 필요하지만, 이런 토론의 틀을 뛰어넘는 가능성이 이미 출현하였다.⁴¹ 또한 사회사 혹은 문화사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사회 혹은 문화체계 간에 발생한 접촉, 상호작용, 변천과정 등은 식민모국과 식민지 관계를 '지배-종속'이라는 두 개의 정치체로 국한시킨다. '식민지 체제'도 단지 '종속'과 '착취'관계를 지탱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양상을 띠는 사회문화 체계이기도 하다. 이 글이 시도한 작업은 대만인 <군중>의 '집합심성'을 논의하여 식민지 체제와 식민주의의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식민지 대만의 세 가지 <군중> 중에서 정치운동론의 <군중>과 도시생활의 <군중>은 각각 1920년대 이후 서서히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식민 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과 상호 중복된다. 정치상황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과 정치운동론의 <군중>을 집결시키는 '집합심성'은 1930년대 이후부터 '소비적 집합심성'에 잠식되거나 대체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대만인을 대표하는 <군중>은 식민지 체제가 수립한 '전략관계'에 빠져 점차 운동에너지를 잃게 되었지만 정작 대만사회는 이런 변화에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다.

리셴장[李獻璋]은 1936년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 「서문」에 "이런 특수한 민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현들이 공감한 정서라고 할 수 있으며, 시(詩)에 대한 그들 상상력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주만물을 소유하는 해법인 동시에 민중의 사상행동을 이끄는 무형의 지배자이다"라고 말했다.⁴² 이 글의 용어로 그의 논리를 해석해 보면 리셴장은 '가

39 레닌著長谷部文雄訳(1929), 『帝國主義』, 岩波書店(一穂社, 2004년復刻版).

40 山本有造(2003), 「帝國とは何か」, 『帝國の研究-原理・類型・關係』, 名古屋大学出版会, 5~6쪽.

41 예를 들면, Barlow, Tani E. ed(1997). *Formations of Colonial Modernity in East Asia*, Duke University Press, 또는 Shin, Gi-Wook, Robinson, M.ed(1999).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 Asia Center.

42 李獻璋(1936), 「序文」, 『台灣民間文學集』, 台北: 台湾文芸協會, 3~4쪽.

요' 등의 '민간문학' 세계에서 대만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의 '전설적 집합심성'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셴장은 『우리무(虞里姆)동화집』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가요'가 대만인 "공동의 보물, 즉 국민들이 시의 세계에서 공상하고 그곳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다시 찬란한 태양 아래로 나오길" 희망했다.⁴³ 일본 본토에 이미 '국체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이 일어났고, 대만에도 '대만식 파시즘' 등의 풍조가 생겨났으며,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의 '황민화(皇民化)' 정책 등을 감안한다면 리셴장이 대만인의 '그림(Grimm)동화'를 만들고자 한 배후에는 기존 대만의 '전설적 집합심성'을 강화하여 「천황제 신화」 등의 '일본화'를 저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식민지 체제가 대만 <군중>에 수립한 '전략 관계'는 귀와 입을 통해 전승되는 <군중>을 '일본화'하려고 했고, 정치운동론의 <군중>을 '국가동원'으로 전환시켰으며, 도시생활의 <군중>을 원래 자본주의 포위망에 갇힌 '소비문명'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 세 가지 <군중>이 서로 복잡하게 중복되면서 식민지 체제가 직면한 과제는 자본주의 자체가 강하게 뿜어내는 '소비적 집합심성'을 통해 어떻게 대만사회의 '전설적 집합심성'과 '민족적 집합심성'을 빠르게 전환하고 대체하느냐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대만인 유일의 언론기관'을 표방한 『민보』가 일간지로 바뀐 후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도내 일간매체와 경

43 李獻璋(1936), 「序文」, 위의 책, 6쪽. 引用文の『虞里姆童話集』は19世紀「ゲルマン民族の情緒」を代表する『グリム童話』だ。1812年に初版された『グリム童話』「序文」には李獻璋の引用文と完全に一致する文は無かった。しかし、意味がかなり近い段落があった。(「序文」, 吉原高志, 吉原素子訳『初版グリム童話集①』, 白泉社, 1997年, 11쪽). 同時期において中国でも『グリム童話』の翻訳本があったことから, 李獻璋が持っていた本は中国で発刊された中国語版である可能性もある.

쟁하게 된 것,⁴⁴ 1935년 중부 지진 발생 후 대만인 '기미가요[君之代] 소년'이 '미담(美談)'이 된 것, 1930년대 중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만어 유행가'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군국색채'로 다시 써진 것, '황민화' 구호 아래 연극 등이 '일본화' 또는 '군국화'되고, 심지어 1940년대까지 인기를 끌었던 정치선전용 영화까지 된 것 등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식민지 대만의 세 가지 <군중>으로 제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식민지 대만에는 각종 <중(眾)>이 출현했었다. 이를테면 항상 '서민'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민중>, '여론'에 인식론 의미를 지닌 <공중>, '대량' 전파의 의미를 지닌 매체와 연결돼 소비와 균질화 의미를 지닌 <대중> 등이다. 더 많은 자료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방법론상의 논의를 위해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탐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⁴⁵

44 『민보』는 1932년 일간지로 바뀐 이후 본연의 '운동성격'을 서서히 잃어갔다. 정세가 갈수록 긴장돼 '민족운동'을 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기존 일간지 시장이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일간지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다른 일간지와 '같은 부류'로 여겨졌다. 『민보』 등의 '신문론' 조정과 '민족운동' 관계에 대해서는 「식민지 대만 '여론전선'의 변천- '여론'이 갖고 있는 이중 의미의 모순과 '대만인 유일의 언론기관'의 딜레마(殖民地臺灣 '輿論戰線'之變遷- '輿論' 兩義性的矛盾與 '臺灣人唯一之言論機關'의困境)」를 참고하기 바란다. 『六然居存 日刊臺灣新民報社說輯錄, 1932~1935』(2009), 台南: 國立臺灣歷史博物館.

45 이 글은 국가과학위원회 프로젝트인 「식민지 대만의 중(眾)의 역사사회학-사회인식의 개념으로서의 <민중> <공중> <군중> <대중>」(프로젝트 일련번호: NSC 98-2410-H-006-062-MY2)의 도움을 받아 쓴 것으로, 이 프로젝트의 부분 성과에 속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3부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적 불법성

식민지주의 범죄화에 관하여-한일강제병합의 교훈
| 무사코지 긴히테[武者小路公秀]

동아시아에서의 역사 청산 | 도츠카 에츠로[戸塚悦郎]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 도시환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병합의 불법성 여부와 '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 이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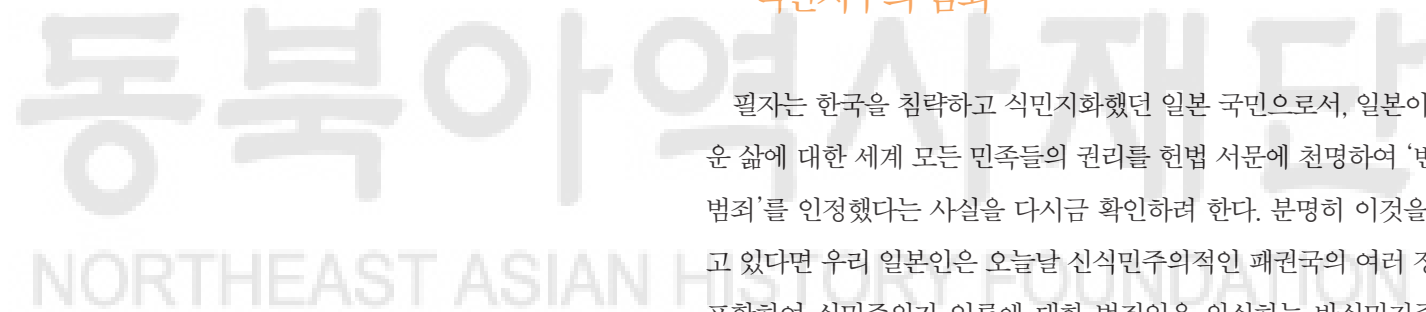
식민지주의 범죄화에 관하여

-한일강제병합의 교훈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무사코지 키히테[武者小路公秀]

1. ‘한일병합’ 위법성의 중대한 원인인 ‘식민지주의 범죄’

필자는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했던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이 평화로운 삶에 대한 세계 모든 민족들의 권리를 헌법 서문에 천명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려 한다.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일본인은 오늘날 신식민주의적인 패권국의 여러 정책들을 포함하여 식민주의가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의식하는 반식민주의적인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일강제병합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은 식민주의 열강이었던 과거를 뉘우치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반식민주의적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일본 국민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한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새로운 동아시아공동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지역적이든 국가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식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민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반식민주의 공동체로서만 성립해



야 한다. 새로운 공동체는 강제병합의 죄를 깨닫고 한국 및 중국과 더불어 반식민지주의가 된 일본이 함께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강요한 것은 불법이다. 역사적·법적 근거에 기반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강제병합이 국제법에서 허용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법성이 더욱 폭넓은 역사적·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함이다. 모든 민족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인류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식민주의 범죄’라는 것을 필자는 이 글에서 확실히 밝히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논지를 바로 여기에 맞추려 한다. ‘병합’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강제병합을 명시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을 야기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반평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극동군사재판에서 조선병합 문제를 제외시켰는데, 그것은 연합군 사령부가 극동군사재판소에서는 ‘반인도적 범죄’는 ‘반평화적 범죄’와 병립될 때만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강제병합은 ‘반평화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tu quoque(원고도 같은 죄인 아닌가)’라고 변호 측이 반박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동군사재판에서는 식민주의를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하려 하며, ‘식민지 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개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한일병합에 관한 논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법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법(*lex lata*)’이 아닌 ‘법적 정의에 따라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식민지 범죄’의 개념은 ‘반평화 범죄’ 및 ‘반인

도적 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국제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국제범죄 규정은 현재 국제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법이 서구 식민주의 세력들이 주창한 것이기 때문에 ‘식민주의 범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식민주의는 한 국가 전체를 계획적으로 식민지화함으로써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식민주의는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평화와 인류에 대한 동시적인 ‘범죄’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일본은 반식민지주의를 국가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도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북한 주민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세계평화관’에 기반하여 일본의 현재와 미래의 입장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일본인들은 ‘식민지 범죄’라는 개념을 인류와 평화에 반하는 복합적인 범죄로 완전히 인식해야 한다.

현행의 ‘반평화적 범죄’란 불법적인 교전 행위로 구성되는 범죄로 정의된다. 선전포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침략 전쟁의 야기 또는 기존의 국제 조약·협약·선언의 위반과 관련된 모든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그러한 군사 충돌의 계획, 준비, 시작 외에도 사전 계획까지 포함한다. ‘반평화적 범죄’에서 ‘평화’란 베스트팔렌 조약의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이 조약은 모든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건하에서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런 국제법의 상식에 반해, 일본 헌법은 세계 최초로 평화는 국가의 불법적인 군사활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기업·민간 단체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개인 또는 민족 집단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인도적 범죄’는 “인류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정의된다. 같은 국가·국적·인종·종교에 속한 집단 또는 그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1) 해당 집단의 일원을 살해하는 행위, 2) 해당 집단의 일원에 물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3) 해당 집단 또는 그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해당 집단 내의 출산을 방해하는 조치를 가하는 행위, 5) 해당 집단에 속한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이 5개 범주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일본 헌법의 '평화롭게 살 권리'라는 개념은 현재 UN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권'과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반인도적 범죄'와 '반평화적 범죄'라는 두 개념을 모두 담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에 의하면 식민지화와 식민주의와 관련된 모든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식민주의는 분명 이 두 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전형적인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거의 모든 경우 식민주의란 평화의 침해, 즉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위반이다. 식민지화에 따른 포고되지 않은 전쟁 촉발도 당연히 포함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조건들 가운데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침략 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독립 국가 또는 민족을 식민지화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강제병합과 식민지화는 이를 입증하는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본인들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시도로,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했던 민족들과의 화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과거 식민지 열강에서 반식민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사회의 주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평화'를 재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평화'에 대한 광의의 재정의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국가주권 원칙을 완전히 수용할 때는 용인되기 어렵다. 주권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발전으로 인해, 각국은 포고하지 않은 전쟁 또는 교전권

행사에 관한 국제적 약속에 위배되는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비합법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반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었다. 이 인도적 개입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주의 범죄화'라는 균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도적' 개입은 자칫하면 인도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식민주의적 개입일 수밖에 없는 통치 방식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다.

인권법 중 많은 규범이 아직 확실하게 정의된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은 '연성법'의 형태이긴 하나, 최근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UN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기타 관련 불관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착취를 동반하는 차별'과 관련된 폭넓은 법적 원칙을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이와 같은 차별에 관한 법 확립 움직임은 2001년에 개최된 더반 인종차별회의에서 결실을 맺었다. 더반 선언의 13·14항은 노예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이며 "식민주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기타 관련 불관용을 야기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더반 선언은 식민주의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식민주의가 인종차별 정책(apartheid), 대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임은 인정하고 있다. 더반 선언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과거와 미래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1960년에 발표된 식민지 국가 및 국민들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내용에 관한 UN 선언을 언급하고, 미래와 관련해서 모든 개인과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함께 더반 회의에서 퇴장했던 미국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반식민주의 움직임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남았다. 미국의 퇴장 후에도 유럽의 열강들은 남아 과거 식민지에서 일어난 인종문제에 대해 사죄를 하는 등 구 식민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양보가 식민주의 지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뜻을 박기도 했다. 이처럼 식민주의를 부정해도 그것을 '범죄'로 확정하지 않는 국제상황을 생각할 때, 일본이 과거에 했던 식민지 통치를 범죄라고 인정한다면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최초가 된다. 헌법 서문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확립하여 식민주의를 부정한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식민주주의 그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세계를 향해 선언함으로써 한국 강제병합을 반성하는 선례를 역사 속에 남길 수 있다.

일본 헌법은 서문에서 "일본 국민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고 엄숙히 선언하고 있다. 이는 보통 평화주의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화주의적 선언은 부차적인 것이며, 그 근본 목적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 식민지화하고 침략한 이웃 국가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평화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식민주주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 일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식민주주의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주의 통치, 침략 등이 구성하는 범죄적인 과거를 공식적으로 반성하는 표현으로 '평화 속에 살 권리'를 확립한 것이다. 식민주의와 침략을 모두 비난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헌법 서문의 뜻이다. 같은 헌법 제9조 2항에서 일본은 군사력을 포기하고 있다. 이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에 규정된 자주국가에 대한 정의와는 차

이가 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에 의존하는 것만 포기하면 되었다.

일본이 군사력을 포기한 것은 동조 1항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된다. 제2항은 서방 국가들이 서로 간의 무력 행사는 포기했지만 '비문명', '비서방' 국가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가 가진 무력성은 베스트팔렌 조약의 법적 논증에서 교묘하게 은폐되었다. 식민주의적 개입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 주요 일원들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직접 자국의 범죄적인 행위를 뉘우치며 앞으로는 또 다른 식민주의적 확장 시도를 위해 무력 행사를 하지 않으며 군대도 갖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국가 간 평화 속에서 개인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반평화적 범죄'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무력 충돌인 '전쟁'과 관련해서만 '반평화적 범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식민주주의 범죄'를 확립하는 것은 특히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사례에서 중요하다. 비록 한일강제병합이 두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일본 군대의 압력과 암살 등의 공공연한 군사적 폭력과 무력을 이용한 '외교적' 협상의 결과였다. 이런 면에서 국제법에서 규정한 '반평화적 범죄' 구성요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일강제병합은 '반평화적 범죄'였다. 또한, 한일병합에서 시작해 중국에 대해 포고하지 않은 채 전쟁을 촉발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점령했던 일본의 식민주의적, 확장주의 정치·군사 활동을 축소하기란 역사적으로 어렵다.

극동군사재판에서 한일병합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 아마도 앞서 말한 것처럼 반박(*tu quoque*)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 하다. 일본을 재판에 세웠던 UN의 많은 회원국들은 식민주의 열강이었

으며, 식민지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분명한 것은,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회원국들이 고문과 처형의 대상이었으며 한국 국민의 삶의 방식은 변화를 강요받았고, 많은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병합은 식민주의가 한국인들의 평화와 안보를 침해한 범죄행위였으며, 이것이 사전 계획된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반평화적 범죄’를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저지른 행위(예를 들어 조선이 식민지화된 이후)로 제한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식민지화된 이후의 조선은 마찬가지로 비평화 상태였지만 이것이 국제법이 규정하는 명시적인 전쟁의 결과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한일병합’의 역사적 교훈

‘식민주의의 범죄’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일본이 쇠국정책을 풀고 대항적 식민주의의 제국으로 변화한 것과 그 조치로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하기로 했다는 사실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한일병합은 식민주의 자체가 반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러한 역사적 결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일본 식민주의 확장의 역사는 동아시아 지역 통합체로서 오늘날 한·중·일이 반식민주의 연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반식민주의 연합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일본 국민들은 식민주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완전히 비생산적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후대의 자손들에게 일본은 과거 식민주의 범죄를 반성했고 한국인과 중국인 등 과거의 희생자들과 함께 반식민주의 연합 형성에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일본의 과거 인식이 우리 자손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줄 수 있다.

거시적 역사의 무대에서 일본은 식민주의 확장을 시도했던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리적으로 언제나 가장 끝에 위치해 있었다. 일본은 실크로드의 종착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유럽에서 시작된 식민주의 확장세력들이 만나는 종착지점이 되었다. 서쪽에서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동쪽에서는 미국,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해왔다.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메이지 시대를 열었을 때, 일본사회가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봉건제도하의 다양한 영주세력들이 일본이 서방의 식민주의 열강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17세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스페인국왕은 로마교황과 만나 만약 일본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다면 카톨릭 교회에 줄 수 있는 특혜에 대해 교황과 비밀 협정을 맺고 있었다. 위협에 대한 당시 일본의 반응은 메이지유신에 대한 반응과 동일했다. 즉, 스스로 식민주의 국가가 되는 대항적 식민주의를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방의 식민주의라는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식민주의의 확장을 통해 또 다른 식민주의 열강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침략을 받은 바 있는 한국은 제국주의하 일본의 대항적 식민주의 확장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다. 일본이 자행한 수많은 잔학행위들, 일본과 그 지도층 및 국민들이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침해하는 수많은 행위를 야기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비문명’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면서도 ‘문명화된 국가’ 사이에서 전쟁과 평화의 법 체제를 수립한

베스트팔렌 조약의 이중적 잣대를 무효화한다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반평화적 범죄'에 해당한다. 일본 헌법은 모든 국가와 민족이 평화롭게 살 권리 침해에 포함된 '반평화적 범죄'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한 첫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주의 범죄'는 '반평화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범죄를 더욱 연계해 더반 회의의 반인종주의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범죄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식민주의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기타 관련 불관용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식민지 범죄'가 두려움과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신식민주의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적 식민주의는 한 국가의 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저개발 국가의 이주민들을 착취하는 것은 국가 간 국경을 초월한 식민주의다.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처우도 식민지주의다. 그리고 그들의 자원을 착취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행위도 식민지주의에 포함된다.

식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항적 식민주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처럼 식민주의 확장이 서방의 식민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해 많은 권위주의적 개도국 국가들은 강제적인 통합 하에서 경제·군사적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국가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수민족을 억압하거나 필요에 따라 차별 또는 착취했다. 국내적 식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경향을 '식민지 범죄' 정의에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도 국경을 넘어 식민주의는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식민주의 원칙들, 즉 1) 서구 문명의 우수성, 2) 서방과 나머지 국가들에 적용된 차별적 기준의 자명한 이중성, 3) 외생적 법적·정치적·경제적 기준의 강제적용 등은 '식민지 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이 국제 범죄를 세계화 시대의 복잡한 통치 방식에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식민지 범죄'라는 개념을 이 시대의 새로운 상황들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면 '한일강제병합'의 사례, 그리고 조선의 국민, 문화적 전통,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이질적인 법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기준을 식민주의 목적을 위해 강제로 적용한 행위를 참고하여 식민주의 국제범죄 정의에 유용한 사례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식민주의를 범죄 또는 국제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교류에서 소수민족 및 약자의 인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범죄 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권한 중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에 법적인 규제를 부여할 수가 있고 비로소 세계 민족의 평화적 생존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 문명의 우수성이라는 신념에 바탕을 둔 인종차별은 조선을 근대화하고 서구화하기 위한 일본의 식민주의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조선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비법률적으로는 조선인을 일본의 이등 시민으로 간주한 이중적 잣대는 현재의 세계화 과정에서도 재현되어 식민주의적 이중성으로 계승되고 있다. 다푸르의 식민주의 폭력은 처벌 대상이 되면서도 유사한 수준의 가자 지구 공격은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열강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중 잣대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과 조선인 대우에서 가장 범죄적 특성이 큰 것은 조선인의 자결권을 거부하고 일본의 가치관과 제도를 강요한 것이다. 이는 대(對)테러라는 목적이 외생적 규제 적용을 정당화하는 신식민주의 대(對)테러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 세계인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라는 일본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침해하면서 조선에서 ‘식민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연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 식민주의 범죄의 정확한 정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이야말로, 식민주의 악몽을 사전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일본의 식민지 범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이러한 악몽이 아직도 재일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필자는 우리 일본인들이 일본은 식민지 범죄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병합’이 가지고 있는 ‘법적 정의에 따라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의 측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과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일본 국민들이 인식한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혔다.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민족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일본의 패전 후 새로운 헌법 서문에 삽입된 것은 일본이 식민지 범죄를 인정한다는 증거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일본 국민들이 조국의 행보를 바꾸기로 했던 원래의 결심을 잊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식민주의 자체가 범죄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 당시 느꼈던 원래의 자각을 다시 한 번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일본인들이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세계 식민주의와 모두 고리를 끊겠다는 패전 후 초기의 결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중국과 형제 자매처럼 같은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식민주의라는 범죄의 희생양으로서 식민주의를 경험한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대항 식민지침략이라는 비극은 우리의 손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과거가 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를 통해 과거 식민주주의의

비극이 새로운 협력의 유대로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필자는 양국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부족함 없이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모든 민족의 권리”를 지지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엄숙히 선언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우리는 한일강제병합을 함께 규탄하면서 범죄로서의 식민주의를 맹렬히 비난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이미 UN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식민주의 진영에 동참하여 결의와 반성의 뜻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1. 일본의 현황과 필자의 문제의식

2010년 8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해 일본은 지금까지의 역사인식을 전환하고 한일 간의 구 조약이 무효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 2010년 현재 일본은 정치개혁 와중에 있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¹ 그러나 구 조약 연구의 100년간 ‘부재’는 두터운 벽이 되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일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로 일본 국내에 사는(필자와 같은) 보통 일본인들은 대체로 국내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도 ‘인류’사회에 대한 관심은 낮다. 그것이 역사인식의 전환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의 매스미디어와 교육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일본 사이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도해 왔다.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1 「韓国併合」100年市民ネットワーク 編(2010), 『今, 「韓国併合」を問う-強制と暴力・植民地支配の原点』, アジェンダプロジェクト刊; 和田春樹(2010), 「韓国併合100年と日本人」, 『思想』 No. 1029, 239~254쪽; “韓国併合は当初から無効日韓知識人が共同で声明”, 共同通信, (2010. 05. 10), 19:11.

일본의 현황 속에서 필자가 어떤 경위로 역사인식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식은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기술해 두고자 한다.

1990년,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였던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참의원 의원을 알기전까지 필자는 식민지 지배 역사에 무지하였다. 그러나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1992년 2월 이 문제를 일본군 성노예문제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같은 해 가을, 런던대학 유학 중 도서관에서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1963년 보고서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유엔이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 정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절대적 무효인 조약사례로 보고하였음을 알고 이 조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2003년부터 류코쿠대학[龍谷大學]에 근무하면서 이 대학 도서관이 엄중히 '보관'하고 있던 안중근 대한의군참모중장이 생전에 남긴 유물을 보고, 2008년부터 유물공개운동을 시작하였다. 안중근 재판의 위법성을 연구²하면서 그 재판의 관할권이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두 번째 계기가 되어, 이 조약 등 구조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를 재개하고 그 성과³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⁴

2 戸塚悦朗(2009), 「安重根裁判の不法性と東洋平和」, 『龍谷法学』 42권 2호, 1~27쪽.

3 이 연구를 지원해준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 연구성과는 戸塚悦朗,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보고서」, 2010년 2월 28일(2010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수정). The research project on "Reexamining the Proces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2010. 2. 28)로 재단에 제출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다.

4 戸塚悦朗(1905), 「最終講義に代えて-「韓国併合」100年の原点を振り返る-「韓国保護条約」は捏造だったのか」, 『龍谷法学』 42권 3호, 311~336쪽; 「韓国併合」100년市民ネットワーク 編(2010), 앞의 책 참고; 戸塚悦朗講演(2010. 3. 26): 京都自由大学特別講演会(同大学・「韓国併合」100년市民ネットワーク共催)「安重根 没 100년(1910년 3월 26일 처형)「韓国併合」100년의原点を振り返る-1905년 「韓国保護条約」は捏造だったのか」, 京都自

2. 식민지 지배전쟁과 매스미디어

1) 아사히신문의 반성과 검증의 한계

2010년 4월 27일자 아사히신문 조간은 「검증·쇼와[昭和] 보도를 마치며-진실을 어디까지 전하였는가」에서 1년간의 연재⁵를 자성(自省)했다. 전쟁을 막지 못했던 보도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그 기사를 읽은 후에도 의문을 남겼다.

2) 두 가지 의문 : 일본사회의 한계

첫째, 왜 식민지 지배전쟁과 관련된 보도의 반성과 검증은 없는가.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왜 식민지 지배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 임의 '합의'로 결정된 '유효'한 '보호국화'(1905)를 기초로 '유효'한 '병합'을 했다는(1910) 신화는 후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오류다.

"미워하려면 폭력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폭력으로서의 전쟁을 미워해야 한다. 전쟁이 나면 이미 때는 늦었다. 저널리즘의 궁극적인 역할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느냐에 있다"라는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주필의 주장은 이웃 나라의 무력점령=국가폭력에 의한 식민지 지배전쟁 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일본에는 국가폭력에 의한 식민지의 무력지배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

由大学.

5 『朝日新聞』 「検証・昭和報道 기획」, 석간(일부지역은 조간 연재 236회, 조간의 특집은 11회).

이 많지 않다. 그것은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관계자들마저도 과거 보도에 대한 검증과 반성을 게을리하고 있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둘째, 패전 후 언제부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었는가.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교수는 “1940년의 ‘황기 2600년’ 기념행사 등 국가에 의한 프로파간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뉴스로 자세하게 보도했었다”며 ‘보도의 자유’가 상실되어가던 역사적 경위를 회고하였다. 언론은 패전 후 신헌법이 제정되어 독립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는 언제 회복되었는가. 구조약의 하자에 관한 언론의 결여로 상징되는 100년 동안의 ‘침묵’은 왜 계속되었는가.

3. 구조약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

1) NHK특집이 상징하는 것

공영방송인 NHK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안중근(安重根)에 대해 다룬 대형 특집프로그램을 2010년 4월에 방영하였다.⁶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주권국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국가의 독립을 강탈하는 조약을 외무대신 서명만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필자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의 경우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서명 및 비준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비준필요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대한

⁶ NHK방송 : 2010년 4월 18일(일) 오후 9시~10시 13분, “NHK스페셜 : 일본과 한반도 제1회 한일병합으로의 길-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제국 황제의 비준 없이 국가가 외교권을 이양하고 독립을 잃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법상 있을 수 있다는 ‘비준불요설’을 주장해왔다.

NHK는 한일 구조약의 ‘합법론’을 주장하는 일본 측의 운노 후쿠유[海野福寿] 교수의 ‘비준불요설’을 방영하며 한국 측 이태진 교수가 주장한 ‘비준필요설’에 기초한 구조약 무효론을 부정하였다.

3) 침묵과 연구의 부재

NHK의 취재가 충분하지 않기도 했으나 일본 측의 연구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 지금부터 한일 구조약의 법적효력 문제에 한정하여 일본의 연구 ‘부재’를 검토하겠다. 지식이 적다는 문제가 아니다. 한일 구조약 체결과정의 구체적 사례에 지식을 적용해서 연구하고 이를 공표하는 국제법학자는 거의 없었다. 100년 동안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이 ‘비준필요설’에 대한 연구를 회피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침묵을 강요당했던 것은 아닐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권력이 학문을 박해하기도 했고, 우익세력이 폭력적으로 반발할 것이라는 각오도 필요했다. 그러한 폭력에 대한 공포 분위기는 신헌법하에서도 계속되었다.

4. 침묵을 강요하는 일본의 분위기

일본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관한 금기를 뿌리째 뒤엎는 연구성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가 확립되지 않았다. 폭력적인 가해행위를 시사하는 분위기와 공포감이 언론과 출판을 저해하고 학문과 연구를 방해해왔다.

1) 구조약 문제 연구의 어려움

(1) 문제 제기의 어려움

전형적인 예로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을 살펴보자. 필자는 '제2차 한일협약'은 일본군과 이토 히로부미가 개인(외무대신을 포함)을 협박하여 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던 무효인 조약이라는 내용의 논문⁷을 2006년 연구지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유엔국제법위원회(ILC) 1963년 총회보고서⁸에 기술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보고서에 그러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14년 전, 1992년 가을쯤에 런던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배경, 식민지 지배의 원점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다 1993년 이후 서서히 문제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즉시 연구지에 발표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보고서를 발견하고 즉시 논문을 써서 일본에 보내 당시 참의원 의원이었던 모토오카 쇼지 사무실에 의견을 구하였더니 논문을 일본어로 출판하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친분이 있던 언론인도 같은 의견이었다. 일본에서는 왜 이 문제가 그토록 금기시되는 것일까. 1963년 ILC보고서는 유엔총회에 제출된 것이었기 때문에 비밀문서 아니었으나 일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 기초한 것이다.⁹ 그러므로 '제2차 한일협약'이 무효라면 1910년 한일병합조약도 사상누각이라 평가할 수 있다.

7 戸塚悦朗(1963), 「統監府設置100年と乙巳保護條約の不法性-国連国際法委員会報告書をめぐって」, 龍谷法学, Vol. 39, No. 1, pp. 15~42.

8 UN Document:-A/CN.4/16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1963, vol. II, p.139.

9 戸塚悦朗(1963), 앞의 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덮여두어야 할 법률문제였던 것이다.

결국, 일본에서 바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유보하기로 하였다.

(2) 정부·보수파의 저항

일본에서 즉시 출판하는 대신, 유엔에 보내는 NGO보고서를 집필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과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의 효력 관계를 고찰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로서 1963년의 ILC보고서의 기술(1905년 '제2차 한일협약' 무효론)을 골자로 하는 영문문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국제화해동우회(IFOR) 제네바 수석대표(레네 워드로)에게 요청하였다. 보고서는 1993년 2월 15일 실제로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어 유엔 NGO 문서¹⁰로 배포되었다. 그 IFOR문서를 일본의 신문(마이니치신문)¹¹이 한국의 영자신문 등에 전제·보도하면서 1963년 ILC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모토오카 쇼지 참의원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을 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이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모른다"며 모토오카 쇼지 참의원 의원 사무실에 눌러 앉아 질문하지 말 것을 사정하였다. 모토오카 쇼지 참의원 의원이 외무성의 강경한 저항을 물리치며 국회에서 질문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문제가 되었다.¹² 일본 정부와 외무성은 1966년의 ILC보고서에는 조약의 효력문제가 기술되지 않았으며 1963년의 ILC보고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임팩트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1963년에 ILC보고서가

10 UN Doc. E/CN.4/1993/NGO/36.

11 "從軍慰安婦問題, スイスの人権組織「日韓保護條約は無効」63年, 国連委が報告書", 『毎日新聞』(1993. 2. 16).

12 1993년 3월 23일, 참의원예산위원회 회의록 제7호, 8~13쪽.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점¹³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토오카 쇼지의 원은 한국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국제인권연구회(회장 모토오카 쇼지)에서 책자¹⁴를 출판하였다.

(3) 침묵

그 여파는 컸다. ‘세계’지상에서 한일 연구자 간에 논쟁이 일어나는 등 국내외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금기가 깨졌다. 한국 측 이태진 교수(근대한일관계사)의 역사연구¹⁵가 동 지상에 발표되었고, 일본 측에서는 운노 후쿠슈 교수¹⁶(근대한일관계사),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 교수¹⁷(국제법) 등이 반론을 제기하여 다른 연구자들도 지상논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공동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운노 후쿠슈 교수는 처음 의견을 교환할 당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해 필자가 주장한 ‘절대적 무효론’에 “이론을 개입할 여지는 없는 듯하다”는 입장이었다.¹⁸ 그러나 후에 “비준서 또한 모든 국제협정에 있다고

- 13 1963년 11월18일 유엔총회는 결의1902(XVIII)를 채택하여 이 1963년 국제법위원회보고서를 검토했다. 특히, 조약법 기초와 관련된 작업에 사의를 표하였다. UN Doc. 1902(XVIII), 18 November 1963.
- 14 국제인권연구회 편(1993),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은 성립되어 있으나』, 필자의 일본어로 된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 15 이태진(1998. 7), 「한일대화 한일병합은 성립되어있지 않다(상)-일본의 대한제국국권 침탈과 조약강제」, 『세계』, 300~310쪽; 이태진(1998. 8), 「대화 한일병합은 성립되어있지 않다(하)-일본의 대한제국국권침탈과 조약강제」, 『세계』, 185~196쪽.
- 16 海野福寿(1999), 「李教授の「韓国併合不成立論」を再検討する」, 『世界』, 261~262쪽.
- 17 坂元茂樹(1998), 「旧条約問題の落とし穴に陥ってはならない」, 『世界』, 193~206쪽.
- 18 운노 후쿠슈는 필자의 주장(1963년 유엔 ILC 보고서 무효론)을 지지하는 논문(海野福寿(1994. 3. 30), 「1950년 「第二次日韓協約」」, 『駿台史學』 91, 1-34; 같은 글 2~8쪽 及び 31쪽 참조)을 공표한 적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무효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¹⁹며 “한일병합은 형식적 적법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국제법상 합법이며 일본의 조선지배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식민지다”²⁰리는 ‘부당합법론’을 주장하였다. 운노 후쿠슈 교수는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하다 귀국한 후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동조하여 학설을 변경, ‘합법론’을 펴게 되었다고 한다.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는 상기의 국제관습법은 인정하였으나 사실관계가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제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¹

일본의 국제법(조약법)학자들이 구조약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해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²² 그 결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도 일본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한일병합조약은 당시 국제관계 등의 역사적 사정 안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데 그쳐 무효론을 주장하는 한국 측과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다.²³

- 19 海野福寿(1995), 『韓国併合』, 岩波新書, 164~165쪽. 운노 후쿠슈는 위의 책, 『駿台史學』에서도 「批准不要説」을 주장하여, 비준의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변화가 없다.
- 20 海野福寿(1995), 위의 책, 244쪽.
- 21 坂元茂樹(1995. 1), 「日韓保護条約の効力-強制による条約の観点から」, 関西大学法学論集 44(4·5), 869~932쪽.
- 22 필자의 전문분야는 국제인권법(실천)이며 조약법은 전문이 아니다; 사사가와 노리가츠[笹川紀勝] 교수의 전문분야는 헌법이며 공동연구(사사가와 노리가츠 저·이태진 원저, 2008), 『국제공동연구 한일병합과 현대-역사와 국제법에서의 재검토』, 아카시쇼텐)에서 1963년 ILC보고서의 기재(국가대표 강제에 의한 조약의 무효론)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의 전문분야는 국제법(조약법)이다; 운노 후쿠슈 교수의 전문분야는 농업경제, 근대한일관계사;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교수는 역사학적 방법에 의한 ‘법실증주의자’ 비판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아라이 신이치, 「일본의 대한외교와 국제법 실천」, 사사가와 노리가츠 저·이태진 원저(2008), 위의 책, 2권, 58~292쪽 참조). 전문분야는 역사학이다.
- 23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총리(1995년 당시)의 참의원본회의 답변. 제134국회 1995년 10월5일 참의원본회의 회의록 4호.

2) 구조약 문제 연구의 부재

(1) 문제의 소재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의 법적 효력 문제에는 세 가지 논점이 존재한다. ① 1963년의 유엔ILC보고서는 정부대표 개인에 대한 강제로 인해 체결된 절대적 무효 사례로 규정하였다.²⁴ ② 한국의 역사학자인 이태진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 조약을 날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날조설').²⁵ ③ 한국의 국제법학자인 고(故) 백충현 교수는 '비준필요설'을 제창하며 비준이 없었던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 등 5개의 구조약은 무효라고 하였다. 아래세 번째 논점에 대해 검토하겠다.

(2) 국제법상 '비준'의 위치

관습국제법을 정리한 조약법에 관한 빈조약(1969) 제2조는(비준이 필요한 경우) '비준' 등 국제적으로 구속되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1905년 당시 관습국제법을 검토하겠다.

(3) 조약체결절차(비준)와 국제법상의 효력

① 국내법상 조약체결절차의 '합법성'과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

'비준불요설'을 주장하는 운노 후쿠츄²⁶는 일본 외무성의 실무기준인

24 戸塚悦朗(1963), 앞의 글.

25 이태진 저·도리우미 유타카 역(2006),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 한국식민지배의 합법성을 묻다』, 아카시쇼텐, 159~219쪽 참조; 사사가와 노리카즈 저·이태진 원저(2008), 앞의 책; Yi, Taijin(2007),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Cornell University.

26 운노 후쿠츄(1995), 「I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운노 후쿠츄 편, 『일한협약

'외무성 조약국 <각국에서 조약 및 국제약속 체결 절차에 관한 제도>(1936)'의 일본 국내 절차기준을 근거로 '비준이 필요로 하지 않은 제2종 형식의 국가 간 협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여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은 고종 황제의 비준 없이도 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외무성이 의거하는 국내법상의 실무처리기준상 '합법'인 절차가 취해졌다면 국제법상에서도 조약은 '유효'한가.

조약의 체결절차는 일본국내법상 헌법 이하의 절차²⁷와 한국 측 국내법상 조약체결절차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체결국 양측은 공히 국제조약의 체결절차와 관련된 국제법상의 제약을 받는다.

국제조약의 국제법상 효력문제는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상의 문제이며 효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 외무성 내의 실무처리기준이 아니라 우선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법해석학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운노 후쿠츄 교수는 비준의 필요 여부에 관한 외무성 기준(국내법 기준)만을 검토하고 국제법해석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법상에도 조약체결절차 규정이 있으며 한국의 당시 국내법

과 한일병합-조선식민지배의 합법성을 묻다』, 아카시쇼텐, 13~17쪽 참조; 외무성 조약국(1936), 『각국에서 조약 및 국제적약속 체결 절차에 관한 제도』, 18쪽 주 5를 들며 "비준의 필요 여부나 절차는 각국의 정제, 제도, 국내법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준형식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 외에 천황의 재가를 얻어 체결하는 국제약속과 재가 없이 정부 또는 관계관청에 한해 체결하는 국제약속이 있으며 다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운노 후쿠츄 교수는 "후세의 연구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한국·북한의 역사학자 등이 주장하고 있는 전권위임장, 비준서의 결여를 법적 결함으로 간주하는 무효론에 대해서는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형식의 국가 간 협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찬성하기는 어렵다"며 '비준불요설'을 주장하고 있다.

27 대일본제국헌법 13조는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화해를 말하고 제반 조약들을 체결한다"며 천황에게 조약체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실시하고 조약을 체결할지, 그 절차에 대한 일본국내법상의 규정이 있었다.

에 서명된 조약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종황제가 조약비준서에 서명하여 옥새를 찍고 승인하여 비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²⁸ 그런데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내절차도 취하지 않았고 고종황제가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옥새를 날인하지도 않았다. '조약' 체결절차는 완료되지 않았고 국내법상으로는 완전히 '비합법'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내법 절차상의 비합법만으로 국제법상에서도 이 '조약'이 '무효'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는 간단치 않다.

조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던 고종황제의 '비준'없이 이 '조약'이 '국제법상' 유효한 것으로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에 관해서 '국제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적 절차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엇갈린 논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② 국내법상 조약체결절차(비준필요설)와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

조약의 '비준'은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법적행위이다. 서울대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던 고 백중현 교수는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 및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포함, '일본이 ... 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강탈한 5개 조약'에 대해 "이 모든 조약의 내용은 국가의 주권제한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며 "조약체결을 위한 전권위임장 및 비준절차의 모든 여건을 당연히 구비해야만 했다"고 '비준필요설'²⁹을 제창하였다.

고 백중현 교수의 학설은 국제법상 표준적인 해석이다. 일본 측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양국의 대립은 해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8 사사가와 노리가츠 저·이태진 원저(2008), 앞의 책, 109쪽에 이태진 교수에 의한 한국 국내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규정한 「의정부관제」 제8조 제4항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사실관계는 같은 책, 125~131쪽.

29 백중현, 「일본의 한일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사사가와 노리가츠 저·이태진 원저(2008), 위의 책, 389쪽.

문제규명을 위해서는 1905년 당시 국제법해석학의 문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노 후쿠유 교수는 일본 국내법상의 '합법성'에 의거할 뿐, 비준의 필요 여부와 관련된 국제법해석학 문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른 국제법학자의 연구도 찾아볼 수가 없다.

(4) 1905년 당시 국제법해석학의 연구

조약체결에는 비준이 필요하였을까. 이 의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1905년 당시 일본의 국제법해석학 연구수준은 높았을까.

① 1905년 당시 국제법해석학 문헌의 연구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대학(오사카대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당시 문헌을 찾아보았다.

㉠ 『호을 씨 국제공법』(1899)

영국의 국제법권위자였던 윌리엄 에드워드 호을은 1899년 일본어로 출판된 『호을 씨 국제공법』에서 조약체결과 관련된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조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최고의 조약체결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 비준될 필요가 있다"라고 '비준필요설'을 설명하였다.³⁰

또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는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명기한 부분

30 윌리엄 호을 저·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역(1899. 7. 10), 『호을 씨 국제공법』(원저 제4판의 번역), 도쿄법학원 발행·유히카쿠쇼보 발매, 433쪽. 또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예외로는 '군주' 또는 기타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결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은 고종황제가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 고종황제와 동등한 조약체결권한을 가진 기관은 없었다.

이 없으나 호올은 그러한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권대표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명시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³¹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권위 있는 연구서의 번역이며 관습국제법의 당시 해석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통설이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서적의 원서³²는 1895년 영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일본어판 출판(1899)에 앞서 1896년에 영어판의 리프린트판이 일본에서 출판되었다.³³ 이 서적이 당시 일본에서 널리 보급되었다는 증거다.

㉞ 기타 당시의 문헌 조사

1905년 당시 국제법에 관한 문헌은 어느 정도 존재하였을까. 국회도서관에서 평시국제공법·국제법에 관한 문헌 중 검토할 만한 전문서적을 조사하였다. 저자가 같은 경우는 더욱 상세한(혹은 새로운) 문헌을 선택하였고 당시 유명법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국제공법 및 국제법의 교과서를 총망라하며 조사하였다.

저서에 따라 자세한 것도 있고 대략적인 것과 더러 기재가 충분치 않은 것도 보였으나, 거의 모든 저서(21점)에서 ‘비준필요설’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비준불요설’을 주장하는 저서는 한 권도 없었다.

이 중 역사적으로 특필할 만한 저서인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鉄吉]의 『국

31 윌리엄 호올 저·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역(1899. 7. 10), 위의 책, 433쪽.

32 Hall, William Edward(1895),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Oxford : Clarendon Press. 문제의 해당부분은 p.345. “Except……. ratification by the supreme treaty-making power of the state is necessary to its validity.”

33 Hall, William Edward(1896),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Tokyo : Sanseido, 상세이도쇼텐.

제공법』(1899)³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라치 데쓰키치는 1910년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라는 최고엘리트 관료였다. 게다가 안중근 대한의군참모총장 재판 시 뒤순에서 그를 ‘극형’에 처하기 위한 획책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역사상 중요인물이었다.³⁵ 구라치 데쓰키치는 그 시대에 국제공법을 강의하던 권위 있는 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하였다. 이 저서는 1905년에 ‘제2차 한일협약’ 강제사건이 있기 전에 출판된 것이다. 구라치는 1910년 ‘한일병합’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으로서 한국의 ‘병합’이라는, 그때까지 사용한 적이 없던 법률용어를 고안한 인물이라고 한다.³⁶

흥미롭게도 구라치 데쓰키치의 저서는 상기 통설과 마찬가지로 ‘비준필요설’을 주장한 것이었다. 또한 운노 후쿠슈 교수는 앞의 책³⁷에서 구라치 데쓰키치의 『국제공법』을 인용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비준필요설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㉟ 현재의 학설과 ‘비준필요설’

㉞ <오픈하임>(제9판)

『Oppenheim’s International Law』는 일본에서도 널리 읽혔던 권위

34 倉知鉄吉 저(1899), 『國際公法』, 東京·日本法律学校出版, 日本法律学校第四期講義録. http://kindai.ndl.go.jp/BIBib_Detail.php. 2010년 1월 8일 열람.

35 戸塚悦朗(2009), 「安重根裁判の不法性と東洋平和」, 『龍谷法学』 42권 2호, 1~27쪽.

36 외무대신 관방문서과(2000), 「구라치 데쓰키치 씨가 말한 한일병합의 경위」, 『근대외교회고록 4』 유마니쇼보, 163~182쪽.

37 海野福寿 편, 『日韓協約と韓国併合』, 10쪽 각주 2 운노 후쿠슈가 인용한 것은 조약서명의 강제와 관련된 197쪽이며, 필자가 ‘비준필요설’ 근거로 삼은 것은 198~199쪽 및 201~202쪽이다.

있는 국제법학의 기본서이다. 제9판³⁸에서 과거 3세기 동안 비준제도의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하였다고 설명하고는 있으나 '비준필요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³⁹

이상에서 1905년 당시 국제법학자들이 모두 '비준필요설'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점, 현재도 그 경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황제의 비준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도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비준이 결여되어 있는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을 포함, 한일 간의 5개 구조약은 국제법상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할 수 있다.

5.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1) 정권교체 후 일본의 상황

일본에서는 2009년 정권이 교체되어 9월 16일 하토야마[鳩山] 정권이 출범하였다. 새 정권은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구조약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북일 간의 대립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미래는 낙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다.

고대 이후 동아시아교류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전을 보여왔다.⁴⁰

38 Jennings, Robert and Watts Arthur ed.(1996),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Ninth Edition Vol. 1 Peace Parts 2 to 4*. Longman, , pp.1226~1230.

39 생략한 부분은 다른 논문 참조 요망.

40 주일본국대한국대사 권철현(2009. 6. 16) 공개강연회 "역사로 본 한일교류의 전개와 앞으로의 과제", <http://www.nikkan100.net/koryu.html>(2010년 5월4일 열람), 「문화이해」 참조.

풀뿌리 '한류'열풍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의 역사인식을 전환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NHK는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있지 않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저서 『언덕 위의 구름』을 드라마로 만들어 전국에 방영하고 있다.⁴¹ 그 밑바닥에는 과거 100년 동안 한일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정서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계속된 확고한 내셔널리즘에 지배된 집단적 의식이 흐르고 있다. 전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마저도 그 영향하에 있다.

일본의 교육법제는 세계인권선언이 요구하는 '인류'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일본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일본인으로서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 내셔널리즘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가 조인되기까지의 경위와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제안⁴² 되었으나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제안의 조사범위는 15년 전쟁의 진상규명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10년이 되어서도 구조약의 무효를 전제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대응에 대한 제안 : 2010년의 과제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구조약 문제의 연구를 진일보시킴으로

41 NHK마쓰야마방송국, "스페셜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 <http://www.nhk.or.jp/matsuyama/sakanoue/>(2010년 5월 4일 열람).

42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http://www.shugiin.go.jp/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6401027.htm(2010년 5월 4일 열람).

써, 정체되어 있는 일본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계기를 만들 수 없을까. 일본의 연구자, 시민, 매스미디어 그리고 정부는 한일 간의 구조약과 관련된 역사적·법적 연구성과를 용기를 갖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의 역사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지평에서 다음 100년의 전망이 보일 것이다.

3) 대응에 대한 제안 : 앞으로 100년의 과제

글로벌한 틀 안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로서 한일관계를 앞으로 100년간 장기적으로 변혁시킬 것을 목표로 역사에 대한 연구·교육을 구축하는 장치를 창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자유로운 역사연구의 장을 찾아서

침묵이 지배해왔던 한일 간 구조약의 효력문제를 정면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학회, 여론, 풀뿌리 사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기까지 앞으로 100년이 걸릴 것이다. 전후 헌법하에서도 내셔널리즘에 의한 언론지배가 계속되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콘포미즘(conformism : 틀에 박힌 사고와 태도)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문·교육을 억제해왔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식민지무력지배와 국제법 위반에 대해 자유로운 연구, 교육 환경이 여전히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열강들이 승인하였다는 등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들면서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령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이 무효한 조약도 유효하게 만드는 정당화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택한다면 국제법은 법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국제법학은 국제정치학의 일부가 될 것이다. 현대에도 “테러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고

문은 허용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지만 필자는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미열강들은 스스로가 약소국들을 식민지 지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법적 판단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구미열강 사람들의 역사관이 바뀌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예를 들어, 북구 핀란드)의 연구기관에 자유로운 역사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연구(가칭)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머잖아 열강의 학자, 정부, 풀뿌리 시민의 역사관을 적어도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개항이 될 것이다.

(2) 내셔널리즘을 초월하는 국제교육에 관한 제안

전시성적피해자문제의 해결을 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용 힘으로 저지하는 인종차별적인 움직임이 일본에 있다.⁴³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풀뿌리사회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국교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아이들의 국적을 빌미로 한 교육차별이며 국제인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황을 극복하는 교육을 창조할 수는 없을까. 일본 국적의 아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나라 아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류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함께 받는 이상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는 없을까? 거기서는 역사교육이 쉽게 국경을 넘고 내셔널리즘에 구속받을 일도 없다. 자유로운 교육을 창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미래형교육은 존재한다. 유엔 창설을 계기로 제네바에

⁴³ 이 비디오의 정경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다(<http://corea-k.net/date/000.wmv>).

설립된 국제학교가 차츰 발전하여 IBD(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를 부여하는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인가한 IS(International School)가 세계 각국에 다수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IBDIS는 극히 소수(15개교)에 불과하다. 2개교를 제외하면 IBDIS(13개교)는 학교교육법 1조의 학교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국적 아이들의 진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IBDIS(비 '1조교')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고,⁴⁴ 학비도 매우 비싸다.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전혀 없으며 빈곤가정 아이들의 통학은 불가능하다.

핀란드는 인구 500여 만 명으로 일본(인구 1억 2천여 만 명)의 24분의 1에 불과하며 영어권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IBD 인가를 얻은 15개교의 IS 창설에 성공하였고, 그중 13개교는 공립학교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국적 아이들의 통학도 허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수요가 있다면 필요한 만큼의 IS를 증설한다는 입장이다. 핀란드 IS에 대한 현지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미래교육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일환이 될 것이다. 공립 IS를 미래 동아시아의 표준적 교육기관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44 사학지원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화 등 법에 의해 2010년 4월부터 IS에 통학하는 외국국적의 아이들도 연간 약 12만 엔(빈곤가정의 아이들은 가산)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시환

1. 머리말

2010년 8월, 우리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E. H. Carr는 그의 역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설파하였다. 역사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현재 우리에게 한일병합 100년이 갖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다.

지난 2005년은 을사늑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년이 되는 해였으며, 한일 양국 간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우정의 원년’으로 설정된 해이기도 했다. 당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 무르익은 한일 양국 간 선린우호의 분위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1995년 종전 5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넘어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1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조약명칭과 관련하여, 조약체결 시에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으로 되어 있으나, 주·객체 구분 및 장황한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용례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명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국제법학회논총』(제55권 제4호, 2010. 12), 13~47쪽에 게재된 논문의 수정본임.

과 사죄 그리고 향후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의 출발을 위한 배상 등의 제시 여부에 기대 섞인 전망이 모아졌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그해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그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100년 전 독도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이를 계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바, 한일 양국이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을사늑약 체결 100년이라는 시점에서 일본이 보인 이러한 행태는 양국 간 역사화해의 전기(轉機)가 향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함에 있어 역사갈등의 본질적 원인 규명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이자 정의의 소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일강제병합 과정에서 한일양국이 맺은 일련의 조약들은 19세기 말 이래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표방하며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제법적 근거의 확보에 진력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² 그러나 그 최종적 완결로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³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국제법상 불법·무효조약으로

- 2 일본에 국제법이 도입되었던 시점은 막말유신기이나, 최초로 직면했던 사안은 중립 등의 전쟁법 관련 문제였다. 이후 청일·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국제법은 전쟁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사이에 특징적으로 막말에 구미제국과 체결했던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국가적 과제였다. 이를 위해, 일본이 ‘문명국’이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으므로 문명국의 법, 즉 만국공법의 준수에서 ‘모범생’이라는 것을 구미국들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荒井信一(2001), 「역사에서 합법론, 불법론을 생각한다」, 『한일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219~220쪽.
- 3 도시환(2010. 2),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 『외법논집』(제34권 제1호), 366쪽; 필자의 인터뷰(2010. 8. 28), 「한일병합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MBC 뉴스데스크.

규명되고 있다.⁴

더욱이 지난 5월 10일 한일 양국 214명의 지식인들은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이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은 “조약의 전문과 본문 모두 거짓이며, 특히 조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반응이 없자, 지난 7월 29일에는 1,139명의 양국 지식인들이 다시 한 번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⁵

이에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부 진일보라는 평가와 달리,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했던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사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일본은 지금까지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대해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병합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것이다.⁶

- 4 See-hwan Doh(2009. 7. 10), 「1910 Annexation Treaty Invalid」, *Korea Times* p.7;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근거로 한 일제 35년간의 한국통치는 불법강점이며, 그러한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지배 아래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강제동원한 행위들은 불법의 연장선상일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가침의 국제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위반인 것이다.
- 5 「한일지식인 1,118명 강제병합 원천무효」, 『동아일보』(2010. 7. 29), A8면.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은 당시 보도와는 달리 최종집계결과, 한국 측 서명자는 599인, 일본 측 서명자는 540인으로, 총 1,139명이 참여하였다. 공동성명 원문과 서명자 명단은 이 책 제5부 참조.
- 6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유효·무효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법철학적 명제로서 국제법상의 적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과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세 가지 견해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1910년 병합

한편,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최근 한일 양국 언론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일 양국민의 의식조사를 보게 되면, 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상당수(한국 66%, 일본 65%)가 필요성에 동의한 반면,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이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에선 양국 국민 간에 현격한 견해차(한국 78.9%, 일본 20%)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는 중차대한 과제라 할 것이다.⁷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공동성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성, 불법성 및 그에 따른 국가책임 가운데 체결절차와 형식상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통해 한일 간 역사화해를 위한 전제로서의 울

당시 일본인의 인식이자 1965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과 현재 자민당 우파가 이어 받고 있는 견해로, 병합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으로 도덕적·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양국 간 자유의지와 평등을 기초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는 ‘합법론’, 둘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일본의 다수 학자·정치가의 견해로, 합법론에서 침략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병합이 국제적 정의와 도덕의 근본원칙상 비난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당시 실정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유효부당론’, 셋째, 2010년 5월 10일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에서와 같이 병합조약 자체가 무력에 의한 강제와 황제의 조약 불승인 등 요건불비에 따른 불법·무효라는 ‘불법론’으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도시환(2010. 2), 앞의 글, 356~357쪽; 그러나 2010년 간 나오토 내각의 시각 역시 도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이래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유효부당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valid,” Korea Times, See-hwan Doh(2010. 8. 12), p.1.

7 See-hwan Doh(2010. 8. 24), 「Japan's history distortion hampers bilateral ties」, p.5; “[경술국치 100년 기획] 중앙일보·니혼게이샤이 공동 한·일 국민 의식 조사”, 『중앙일보』(2010. 8. 23), p.1, 8.

바른 역사정립과 역사갈등의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 체결절차의 불법성

1)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과 불법성 문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이 한일 양국 사이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조약의 함의가 35년에 걸친 일본의 한국 지배의 국제법적 합법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법적인 ‘강점’과 그에 따른 식민지배로 본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 통치에 대한 불법성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논증될 수 있는 것이다.⁸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면,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규율하는 법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서의 ‘강박’을 규율하는 당시의 법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반면,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있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면서

8 박배근(2009. 6. 22),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한일 병합 관련 ‘조약’ 유효효론 평가를 위한 일고」, 『일본의 한일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341~342쪽.

9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조약은 체결의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표에 의하여 교섭을 통해 체결되어야 하며 체결대표에 대한 전권의 위임 여부가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정식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는 것 등에 관해서는 조약의 유효효론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배근(2003. 12), 「韓國併合關聯 ‘條約’ 有無效論의 意義와 限界」, 『법학연구』 제44권 제1호, 377쪽.

도, 체결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로 인해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견해¹⁰를 모두 부정하며 협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견해¹¹가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1998년 이래 일본 『世界』지를 무대로 한 한일 양국 역사가자인 이태진 교수¹²와 운노 후쿠주[海野福壽] 교수 간 논쟁¹³에 더하여, 국제법학자인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 교수와 사사가와 노리가츠[笹川紀勝] 교수 등 법학의 영역을 포괄하는 논전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체결절차 및 형식의 유·무효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중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10 이태진(1998, 7·8), 「韓國併合は成立していない-日本の大韓帝國國權侵奪と條約強制-(上)·(下)」, 『世界』 제650·651호, 300~310쪽, 185~196쪽; 운노 후쿠주(1999, 10), 「韓國併合の歴史認識-李教授『韓國併合不成立論』を再検討する」, 『世界』 제666호, 261~262쪽; 이태진(2000, 5·6), 「略式條約で國權を移讓できるのか-海野教授の批判に應える(上)(下)」, 『世界』 제674·675호, 246~255쪽, 272~273쪽; 이태진(2001), 「한일병합은 성립하지 않았다」, 『약식조약으로 어떻게 국권을 이양하는가?』, 『한일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대학사, 33~62쪽, 180~181쪽 참조.
- 11 운노 후쿠주(1999, 10), 위의 글, 261~262쪽 참조; 운노 후쿠주(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387쪽.
- 12 이태진 교수는 1992년 규장각에서 제2차 한일협약 조인서를 발견하여 보호국화와 병합에 관한 협정조약의 체결 과정을 재검토하여 종래 주장되었던 대표 위협 사실 외에 절차의 생략과 서류의 미비 등 결함투성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和田春樹(2010, 1), 「韓國併合100년と日本人」, 『思想』 제1029호, 東京: 岩波書店, 247쪽.
- 13 한일강제병합과 관련한 전후 40년 이래 논의의 전개를 ① 전진의 10년(1985~1995), ② 병합조약을 둘러싼 국회의 논전, ③ 반동의 공격과 ‘한일병합조약’의 합·불법논쟁, ④ 새로운 세기의 혼돈, ⑤ 병합 100년의 과제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和田春樹(2010, 1), 위의 글, 247~249쪽 참조.

2)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 체결절차의 불법성 논쟁

(1) 이태진 교수의 주장

일본이 한국의 국권 탈취에 착수하여 강요한¹⁴ 5개 외교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04년 2월 23일자의 ‘한일의정서’; 영토사용권 탈취, (2) 1904년 8월 22일자의 ‘제1차 한일협약’; 외교권 탈취, (3) 1905년 11월 17일자의 ‘제2차 한일협약 : 을사늑약’; 대외주권 박탈, (4) 1907년 7월 24일자의 ‘제3차 한일협약 : 정미조약’; 군사·내정권 탈취, (5) 1910년 8월 22일자의 ‘한일병합조약 : 병합늑약’; 병합 순이다.

이태진 교수는 이러한 한일강제병합 관련 5개 조약의 체결절차 및 형식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1)~(4)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약식협정, 처리과정상 기만행위 등의 문제가 있으며, (5)의 경우 정식조약의 형식임에도 비준서에 해당하는 한국황제 칙유문에 황제의 서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한일병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정식조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원수가 대표(전권위원)를 임명하는 위임장, 둘째, 양국 대표가 서명한 조약문, 셋째, 조약문에 대한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다.¹⁶ 그러나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¹⁷을 갖고 있다.

첫째, 1904년 2월 23일자의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 개전과 동시에 일본이 한국 영토에 일본군의 기지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일본의 강요 속에 제3조에 영토와 독립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시

- 14 백충현(2003), 「일본의 한일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일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18~219쪽 참조.
- 15 이태진(2000), 앞의 글, 272~273쪽; 이태진(2001), 앞의 책, 180~181쪽.
- 16 이태진(1998), 앞의 글, 308쪽; 이태진(2001), 앞의 책, 45쪽.
- 17 박배근(2009), 앞의 글, 344~345쪽 참조.

되어 조인되었으나,¹⁸ 약식 조약의 형식을 취하였다.¹⁹

둘째, 1904년 8월 22일의 이른바 '제1차 한일협약'에 관해서는 그것이 당초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협약(agreement)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는 공식성이 약한 협정인 각서를 정식 외교협정으로 위장한 것으로 약점을 감추기 위한 사후행위이다.²⁰

셋째, 1905년 11월 17일의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도 정식조약(Treaty)이 아니라 약식조약인 협약(Agreement)의 형식으로 준비되었는데, 이는 외교권 이양과 같은 중대 사안에 부합하는 형식이 아니다.²¹ 이 협약은 전권위임장이나 황제의 비준서가 없으므로 외교권 이양과 같은 중대한 사실을 다루는 협정으로서의 요건 미비다.²² 1905년 '조약'에는 원래 명칭

이 없었는데, 이는 '조약'의 형식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사후에 붙인 것에 불과하다.²³ 이 '조약'을 미국과 영국 정부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Agreement라는 명칭 대신에 Convention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는 Convention이 Agreement보다 형식적으로 격이 높기 때문이지만, Convention이라는 명칭도 외교권 이양과 같은 중요한 정치 사안을 규율하는 조약에 사용된 예는 거의 없다.²⁴

넷째, 1907년 7월 24일의 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은 내정권(內政權)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정식조약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있다.²⁵

다섯째,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은 정식조약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과 관련해서는 조칙(詔勅)이 비준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조칙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서명의 누락 사유는 한국황제가 '병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한일병합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²⁶

한편, 이태진 교수는 '한일병합' 관련 조약들의 체결 절차 및 형식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외교협정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본 국제법학회의 학회지인 『국제법잡지』의 '공문' 또는 '조약의 난'에 1902년부터 1911년까지 소개된 각국 외교협정들의 위임장 및 비준관계 조항 유무를 조사하여, 총 56건 가운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정식조약이 아닌 협약(agreement)이나 약정(arrangement) 20건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이

한일협약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강제병합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조약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18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프랑스의 국제법학자인 Francis Ray는 제2차 한일협약의 효력 불발생의 근거로 이에 대한 위반을 제시하고 있다. Francis Ray(1906),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ée*, Revue Général de Droit International, tome XIII : 프랑시스 레이·최종고·남효순 역,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 이태진 편(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까치, 308~311쪽. 그러나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는 「신법우선의 원칙」 및 1905년 조약 제4조의 규정상 한일 양국 사이의 현존 조약과 약속은 이 협약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坂元茂樹(1995), 「日韓保護條約の效力-強制による條約の観点から」, 『法學論集』, 關西大學, 제44卷四·伍合併号, 350쪽.

19 이태진(1998), 앞의 글, 306쪽; 이태진(2001), 앞의 책, 36~38쪽.

20 이태진(1998), 위의 글, 307쪽; 이태진(2001), 위의 책, 39쪽. 박배근 교수는 '제1차 한일협약'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한일의정서' 타이틀을 쓰고 있어 정리상의 오류로 보인다. 박배근(2009), 앞의 글, 344쪽.

21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하여 "한국 외부대신과 일본공사가 그 평일의 직권으로써 조인한 이른바, 同文通牒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쌍방으로부터 특히 전권위원을 파견하고, 議定調印한 위에 양국 군주의 비준을 거치는 정식조약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다음, "외국 간 동종의 보호조약은 대개 정식조약의 체제(體裁)를 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리가 나가오(1906), 『保護國論』, 東京 : 早稻田大學出版部, 202쪽; 윤노 후쿠츄(2000), 앞의 책, 245쪽 참조.

22 이태진(1998.7), 앞의 글, 308쪽; 이태진(2001), 앞의 책, 44~45쪽; 제2차

23 이태진, 위의 글, 308~309쪽; 이태진, 위의 책, 45~49쪽.

24 이태진, 위의 글, 309~310쪽; 이태진, 위의 책, 49~50쪽.

25 이태진(1998, 8), 앞의 글, 186쪽; 이태진(2001), 앞의 책, 54쪽.

26 이태진, 위의 글, 187~189쪽; 이태진, 위의 책, 55~62쪽.

체결당사국인 바, “일본이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례를 깨는 행위를 처음 범하거나 조장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⁷

또한 1880년까지의 한일 양국 간 조약에서는 일본이 위임장과 국왕의 이름이 서명된 비준서를 일관되게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지적²⁸하고, 따라서 이러한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이후의 협정들은 ‘불성립’이라고 주장한다.²⁹ 그러므로 1911년까지의 관례로 보면 국권에 관련된 협정에는 비준서 발급뿐 아니라 위임장의 교부가 필수였으며, 이는 국가의 외교업무를 대표하는 직임을 맡은 자의 경우에도 다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³⁰

27 이태진(1999. 3), 「韓國侵略に關連する諸條約だけが破格であった」, 『世界』 제659호, 253~256쪽; 위의 책(2001), 109~110쪽.

28 동북아역사재단(2010. 8. 20), 『한일강제병합 100년 조약자료전』(국회전시회 도록), 7쪽; 이태진(2010. 8. 24), 「근대 일본 초슈(長州) 번벌의 한국 침략-법과 윤리의 실종」, 『한일강제병합 100년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 1910년 한일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85쪽 참조.

29 이태진(1999), 위의 글, 261쪽; 이태진(2001), 위의 책, 116~118쪽.

30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는 ‘제2차 한일협약’이 협약문안에 대표(일본은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겐조[林權助], 한국은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의 기명날인만 있고 위임장이 별도로 발급, 교부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태진 교수의 비판에 대해 “국제법상 외부대신은 내각총리대신과 함께 그 직무의 성질상 조약의 교섭, 조약문의 채택,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국가의 동의를 포함하여 조약체결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구받지 않고, 자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로 인정받는다고 하였다(坂元茂樹(1998. 9), 「日韓は旧條約問題の落とし穴に陥ってはならない」, 『世界』 제652호, 193~206쪽).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의 이러한 해석은 1911년까지의 관례로 볼 때, 국권에 관련되는 협정의 경우 국가의 외교업무를 대표하는 직임도 한결같이 협정문의 전문(前文)에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위임장을 소지한 사실이 표기되었으므로 위임장 교부는 비준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필수조건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태진(1999), 위의 글, 259쪽; 이태진(2001), 위의 책, 114~115쪽.

(2) 운노 후쿠주 교수의 반론

운노 후쿠주 교수는 이태진 교수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의 전제로서 검증하고자 구조약의 무효 원인으로 지적한 조약의 형식, 전권위임장의 결여, ‘제2차 한일협약’의 표제, 고종황제의 비준 등 조약체결 절차상 잘못과 형식상의 하자에 대하여 역사학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³¹

첫째, 조약의 체결 형식은 당사국 사이 합의에 의한 것으로 체결 형식 여하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³² 일본 외무성이 정리한 조약 체결의 형식으로는 비준교환(Ⅰ), 일황재가(Ⅱ), 일황재가 없는 정부 권한에 의거한 체결(Ⅲ) 등이 있다. 한일병합 이전에 한일 양국이 체결한 조약 53건 중 3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약이 정부 간 협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전권위임장 발급과 비준조항을 포함하는 조약 형식이 양국 사이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다.³³

둘째, 전권위임장의 결여와 관련하여, ‘제2차 한일협약’은 일황재가의 형식이었으므로 전권위임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전권위임장이거나 비준서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제2차 한일협약’만은 아니므로 그러한 결여를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³⁴

31 운노 후쿠주(1999. 10), 앞의 글, 260~274쪽; 운노 후쿠주(2000), 앞의 책, 240~246쪽; 이태진(2001), 위의 글, 153~165쪽.

32 운노 후쿠주(1999. 10), 위의 글, 260~274쪽; 이태진(2001), 위의 책, 153~156쪽.

33 한일병합 이전 한일 간 조약 총 53건 중, 비준교환은 <조일수호조규>(1876. 2. 26 조인) 및 그 <속약(續約)>(1882. 8. 30 조인)의 2건, <한일병합조약>을 합하여 3건뿐이며, 다른 것은 모두 일황재가, 일황재가 없는 것은 정부 간 협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물포조약>(1882. 8. 30 조인), <한성조약>(1885. 1. 5 조인) 등의 교섭에서는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었으나 비준조항은 아니었다. 이태진, 위의 책, 155쪽; 운노 후쿠주(1999. 10), 위의 글, 263쪽.

34 운노 후쿠주(1999. 10), 위의 글 263쪽; 이태진(2001), 위의 책, 155~159쪽.

셋째, ‘제2차 한일협약’과 같은 보호조약에도 Treaty 외에 Convention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기도 하므로 중요한 정치 사안에도 Convention이라는 명칭의 조약이 체결된다.³⁵ 의무성 조약국이 정리한 조서(調書)에 의하면 조약의 조인 본서에는 표제를 붙이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런 사례는 ‘제2차 한일협약’ 외에도 있다.³⁶

넷째, 조약은 전권위임장의 부여없이, 또 비준 없이 체결·발효되는 것이 있다. 1907년에 체결된 ‘일러협약’, ‘일불협약’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전권위임장이나 비준서 없이 체결된 사례도 있다.³⁷ ‘제2차 한일협약’은 비준조약이 아니었으므로 외교문서의 비준서가 없으며, 이태진 교수가 주장하는 “비준서가 없다”는 의미³⁸는 국내헌법적 견지에서 황제의 재가를 받지 않은 위헌조약에 해당한다.

35 아리가 나가오는 자신의 저서 『保護國論』 부록에 수록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보호조약 11사례 중 표제를 Treaty로 한 것은 7건, Convention으로 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이태진 교수는 “Convention이 외교권 이양과 같은 정치 사안에 사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아리가 나가오가 말하는 “정식조약” 가운데는 Convention도 포함되고 있었으며, 또 조약체결 절차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조약과 약식 결정과의 효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보니, 실제로는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상에 어떠한 차이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아리가 나가오의 지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有賀長雄(1996), 앞의 책, 202쪽; 운노 후쿠츄(2000), 앞의 책, 245쪽 참조.

36 운노 후쿠츄(1999. 10), 앞의 글, 266쪽; 이태진(2001), 앞의 책, 161쪽.

37 운노 후쿠츄(1999. 10), 위의 글, 262~263쪽; 이태진, 위의 책, 154쪽, 163~164쪽.

38 비준문제와 관련하여, 외교행위로서의 비준(비준서의 교환, 혹은 비준 통고)과, 국내적인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양국 황제의 재가)과의 혼동이다. 물론 양자는 관련이 있으며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이 없으면 외교적 비준도 성립하지 않지만, 그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입론(立論)하면, 황제의 비준이 없었다는 것의 증거로서 외교문서의 비준서의 결여를 지적하는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 운노 후쿠츄(1999. 10), 위의 글, 262~263쪽; 이태진, 위의 책, 163쪽

(3) 이태진 교수의 재반론

운노 후쿠츄 교수의 반론에 대하여 이태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재반론을 제기하고 있다.³⁹

첫째, 한 나라를 피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약이 정식조약이 아닌 형식으로 처리된 사례가 없다. 일본 외무성의 조약체결의 형식인 비준교환(Ⅰ), 일황재가(Ⅱ), 일황제가 없는 정부 권한에 의거한 체결(Ⅲ) 등은 일본이 맺은 협정들에 대한 임의적 유형 분류로 국제적 관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Ⅲ형식인 정부 간 협정은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국제관례상 단순 행정적 사항들에 한정된 것이다.⁴⁰

둘째,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형식과 관련하여, 1905년 10월 27일 일본 각의(日本閣議) 결정(Ⅲ)으로 전권위임장 교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석하면서도, 일황재가(Ⅱ)의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체결의 형식을 혼동하고 있다.⁴¹

셋째, Convention이 우편 ‘협정’ 등의 명칭으로 사용된 예가 많아 Treaty보다는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권위원 위임의 사실을 협정문의 전문(前文)에 밝히고 말미에 비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제약속의 조인본서에 표제를 붙이지 않는 관행”은 일본 외무성의 자의적 행위일 뿐 국제적 관례가 아니다.⁴²

39 이태진(2000. 5·6), 「略式條約で國權を移讓できるのか - 海野教授の批判に應える(上)」, 246~255쪽; 이태진(2000. 5·6), 「略式條約で國權を移讓できるのか - 海野教授の批判に應える(下)」, 272~281쪽.

40 이태진(2000. 5), 위의 글, 250쪽; 이태진, 위의 책, 184~185쪽.

41 이태진(2000. 5), 위의 글, 252쪽; 이태진, 위의 책, 189~190쪽.

42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형식을 일황재가의 형식으로 상정한 것은 한국 정부와 합의한 것이 아니며, 국제관례에 따른 외교협정의 기본요건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 이태진(2000. 5), 위의 글, 254쪽; 이태진(2001), 위의 책, 193쪽.

넷째, 조약체결의 형식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편의적인 처리에 의거한 기준의 하나일 뿐인 정부 간 협정의 국제적 관행성을 인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예시한 1907년 ‘일불협약’이나 ‘일러협약’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을 추인받기 위해 중용한 파격적인 예에 불과하며 정부 간 협정의 국제적 선례가 될 수 없다.⁴³

3.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 규명

1)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절차의 불법성

일본의 한국통치에 대한 불법성은 강제병합 과정의 최종 완결로서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논증될 수 있음은 이전에 언급한 바 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무효 또는 불성립의 근거로 당초부터 무효·불성립이었던 ‘제2차 한일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1910년 ‘한일병합조약’ 역시 조약체결의 절차·형식에서 첫째, ‘한일병합조약’ 서명자의 무자격, 둘째, 황제 ‘칙유’의 훼손이라는 두 가지 ‘결정적 결함’이 논쟁이 되고 있다. 즉, ‘한일병합조약’의 서명자인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은 각자 자국을 대표해서 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즉 무권대리인이므로 이들의 병합조약 조인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황제의 ‘칙유’가 전권위임장사의 사전승인이라는 전제로 비준에 해당하는 황제의 서명이 누락됨으로써 병합조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더하여 ‘조약의 사전승인설’은 조약강제의 반증에 다름아닌 것이다.

43 이태진(2000, 5), 위의 글, 251쪽; 이태진(2001), 위의 책, 187쪽.

(1) 서명자의 조인(調印) 자격

이태진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일본 측 서명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통감부의 통감으로 그는 ‘제2차 한일협약’으로 한국 외교권 행사의 대표, 그리고 1907년 ‘제3차 한일협약’에 의해서는 한국 내정을 독찰하는 지위가 되었으므로 이 조약 체결에서 결코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⁴⁴

이에 대해, 윤노 후쿠슈 교수는 한국의 외교를 감리·지휘하는 것은 도쿄의 외무성으로 통감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외교권 행사는 일본 정부의 감리·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한국 외교권을 대행하는 일본 외무대신과 일본국 대표자인 통감이 서명자로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⁵

윤노 후쿠슈 교수의 이러한 견해는 제2차 한일협약의 무효설을 주장하는 도즈카 에츠로[戸塚悦朗] 교수가 일본의 ‘괴뢰정권’에 불과한 주권자로서의 순종의 조약체결권과 총리로서 이완용에게 조인자격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 실제와 유리된 관념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⁴⁶ 그 스스로 ‘괴뢰정권’의 ‘병합조약’ 체결권능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양국 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병합조약’의 체결상 불법성을 논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통감이라는 직임으로 한국의 국권을 이양하는 조약에서 일본을 대표한다

44 ‘제2차 한일협약’ 제3조는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한 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감이 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는 대표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기밀문서로 분류된 『통감직무심득(統監職務心得)』(일본국립공문서관, 『公文別錄』; 明治 38년 12월 20일 內閣決定) 제4조에도 “통감 및 외무대신은 한국에 대해 중요한 외교사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태진, 위의 책, 200~201쪽.

45 윤노 후쿠슈(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399~400쪽.

46 도즈카 에츠로 교수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 글 각주 99 참조; 윤노 후쿠슈(2000), 위의 책, 399쪽.

는 자체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일본 측이 이 조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위임장 유무를 논급해야 한다.

(2) 황제 ‘칙유’의 훼손

이태진 교수는 ‘조칙날조’ 또는 황제의 ‘칙유’ 서명 거부의 논거로 공포된 ‘칙유’에는 어명의 친서가 누락된 채 ‘칙명지보(勅命之寶)’ 어새가 있을 뿐이므로, 조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본적인 결함으로 보고 있다. 비준서에 해당하는 조칙이 황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공포되었다면 비준서 날조행위로 조약강제의 명백한 증거인 한편, 황제가 서명을 거부한 결과라면 명백한 조약 승인 거부의 증거로 보고 있다.⁴⁷

이에 대해, 윤노 후쿠쥬 교수는 ‘조칙’과 ‘칙유’의 문서 형식을 구별해야 하며, 병합 ‘칙유’를 조약 비준서에 상당하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⁴⁸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이완용 간 ‘각서’상의 ‘조칙’이 공포 시 ‘칙유’가 된 것은 칙유 형식의 불특정성에 관련된 문제이고, 황제 서명의 결여를 문제로 삼는다면 어명 어새가 구비된 1907년 11월 18일 이후 조칙 13건⁴⁹과 병합 ‘칙유’와의 대비가 아닌 같은 시기에 공포된 다른 ‘칙유’ 형식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⁰ 또한 윤노 후쿠쥬 교수는 이태진 교수의 한국황제 공포 칙유가 ‘날조’되었다는 주장⁵¹에 대해, 일본 외교

사료관에 있는 전문의 원본을 통해 관련 전문들(50호·51호)의 발착신(發着信) 시간을 확인하면서 50호 전문보다 먼저 도착한 51호에 “전전(前電)대로 한황조칙문(韓皇詔勅文), 좌(左)와 같이 수정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일본 외무성 또는 수상 측이 수정 회신한 것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바로 이 전문들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일본 측도 본래는 모두 조칙이라고 호칭하다가 최종 공포 시에 칙유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또한 병합 ‘칙유’는 『조칙철』에 묶여 조칙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다른 조칙과 달리, 그 내용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면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시기 칙유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칙유란 명칭의 공문서로는 유일한 것으로, 윤노 후쿠쥬 교수가 요구한 동일한 시기의 다른 칙유와의 비교는 성립되지 않는다.⁵²

(3) 조약의 사전승인설

이태진 교수는 병합 사실을 알리는 1910년 8월 29일자 양국 황제의 조칙 또는 칙유가 비준서를 대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노 후쿠쥬 교수는 양 대표의 각서에 비준을 대신한다는 언급이 전무하며 순종황제의 병합 ‘칙유’가 비준서의 의미를 갖도록 하려면, 어새가 아닌 국새를 사용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칙유’는 병합에 즈음하여 한국 국민에 대한 황제의 유지(諭旨)로서 연출된 의미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순종황제가 8월 22일자로 이완용 전권위원 위임장에 “한국통치를 거(擧)하여 이를 짐이 가장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에게 양여(讓與)함으로 결정했다”고 기록하여 병합 승인을 곁꿨던 것이자 사실상 비준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타케 통감발 전보 제51호에 의해 통보된 것이지만 이곳에는 편의상 수정을 가한 형(形)을 채록한다”라고 하였다. 이태진(2001), 앞의 책, 202쪽.

52 이태진, 위의 책, 203~204쪽.

47 이태진(1995), 「공포 칙유가 날조된 ‘한일병합조약’」,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209쪽.

48 윤노 후쿠쥬(2000), 앞의 책, 401~404쪽.

49 이태진(1995), 위의 책, 205~206쪽.

50 윤노 후쿠쥬(2000), 위의 책, 405쪽.

51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이 가쓰라 타로[桂太郎] 수상과 고무라주타로[小村壽太郎] 외상에게 보낸 8월 27일자 전문(電文)에 “「일한병합(日韓併合)에 관한 한제(韓帝)의 조칙문」은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오늘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병합조약’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외교문서』 43-1(701면). 그리고 별지 끝에 편집자는 “조칙문의 수정은 8월 27일 데라우치

윤노 후쿠슈 교수 주장하는 ‘조약의 사전승인설’의 근거는 한국황제가 서명 날인한 이완용 전권위원 위임장에 한국통치 양여를 결정했다는 구절과, 한일병합조약 제8조에 “양국 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이라는 규정들이다. 그는 사전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약상의 비준조항과 외교행위로서의 비준서 교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견지에서 ‘칙유’상 황제 서명의 누락이 조약의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권위임장은 8월 18일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이 이완용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칙유안’과 마찬가지로 일본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이다. 이 문서에 근거해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황제의 사전 승인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조약 강제 사유가 된다. 또한 8월 22일에 한일병합에 대해 일황 재가와 동시에 한국황제도 전권위임장을 통해 사전승인하여 이 조약에 대한 양국 원수의 비준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황제의 ‘칙유’에 황제의 서명이 없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⁵³ 그러나 8월 29일 함께 공포된 일본천황의 조칙이 서명과 날인 등의 요건을 구비한 반면, 한국황제의 ‘칙유’에 황제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황제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따라서 윤노 후쿠슈 교수가 주장하는 ‘조약의 사전승인설’은 역설적으로 상대 국가원수에 대한 위협 강제의 사유로 국제조약법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53 이태진(2000, 6), 앞의 글, 278~279쪽; 이태진(2001), 위의 책, 205쪽.

54 일황이 한일병합을 재가했다는 것은 내각회의 결정을 재가한 것이지 양국 대표들이 기명 날인한 조약문을 재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조약문을 승인하여 수용의사를 처음 표시한 것이 8월 29일자 조칙으로 이것이 비준서에 해당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태진, 위의 책, 205~206쪽.

2)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절차의 비교

(1) 일본천황의 병합조약 재가 문서와 조서(詔書)

병합을 강제하는 일본 측의 절차는 물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일병합’에 대한 주요 문건으로는 일본천황이 결재하거나 공포한 것으로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천황의 재가(裁可)와 ‘조서’의 발부가 있다. 첫째, 8월 29일 “짐, 추밀고문(樞密顧問)의諮詢을 거친(經) 韓國併合에 관한 조약을 재가(裁可)하고 이에 이를 공포(公布)케 한다”고 기술된 문건에 어새(天皇御璽)가 날인되고 그 위에 명치천황의 이름자가 친서(親署)되었다. 둘째, 8월 29일자 ‘천황어새(天皇御璽)’를 날인하고 그 위에 메이지(明治)의 이름자 목인(睦仁, 무쓰히토)을 친서하였다.

(2) 한국황제의 재가 거부와 ‘칙유’의 급조

8월 27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본국 정부에 ‘한국황제의 조칙문(詔勅文)’을 보내면서 “오늘 재가를 거쳐 29일 병합조약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26일 예정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다.⁵⁵ 29일에 공포된 한국 황제의 문건은 제목이 원래의 ‘조서(詔書)’, ‘조칙(詔勅)’이 아니라, ‘칙유(勅諭)’로 바뀌고 황제의 이름자 친서(親署)가 누락되어 있다. 일본 측의 관련 문건과 비교하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다. 최종 단계에서 순종황제의 거부에 부딪힌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황급히 한국 내각으로 하여금 ‘칙유’로 격을 낮추어 어새(勅命之寶)를 날인하여 공포 조

55 8월 22일에 기명 조인된 ‘병합조약’은 본래 8월 26일에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그 다음날이 곧 현 황제의 즉위일이어서 이를 피하여 29일로 변경하였다(『日本外交文書』 43권 1책, 사항19, 583. 日韓條約公布日延期 要請의 件, 686면, 메이지 43년 8월 22일); 이태진(2003), 「1876~1910년 한일 간 조약 체결에 관한 중요 자료 정리」, 『한일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82쪽.

서에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 어새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통감부가 빼앗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순종황제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다.⁵⁶

3)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관련 역사적 진실

(1) 순종황제의 유조

순종황제가 1926년 4월 26일 붕어 직전에 신하 조정구(趙鼎九)에게 내린 조칙(詔勅)은 6월 6일 장례 후 7월 8일에서야 미국 교민들이 발행하는 『신한민보(新韓民報)』에 보도되었다.⁵⁷ 순종황제의 유조(遺詔)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강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자료다. 순종황제의 유조는 다음과 같다.⁵⁸

一命을 겨우 보존한 朕은 併合 認准의 사건을 破棄하기 위하여 詔勅하노니 지난 날의 併合 認准은 強隣(日本을 가리킴)이 逆臣의 무리(李完用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宣布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幽閉하고 나를 脅制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古至今 어찌 이런 道理가 있으리오. (중략) 지금 나 - 卿에게 委託하노니 卿은 이 詔勅을 中外에 宣布하여 내가 最愛最敬하는 百姓으로 하여금 併合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曉然히 알게 하면 以前의 所謂 併合 認准과 讓國의 詔勅은 스스로 破棄에 돌아가고 말

- 56 칙유에 사용된 어새(勅命之寶)는 「전권위원 위임의 칙서」에 사용된 국새(大韓國璽)와는 다른 일반행정 결재용으로,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사건 이후로 통감부가 관장하고 있어 '병합' 강요 당시는 황제의 소관 밖의 것이었다. 이태진(2003), 위의 책, 185~186쪽.
- 57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인터뷰(2010. 8. 20), 「순종의 애끓는 유언…… 한일 강제병합 증거」, 『동아일보』, A27면 참조.
- 58 이태진(2003), 위의 책, 180~181쪽 참조.

것이리라. 여러분들이여 努力하여 光復하라. 朕의 魂魄이 冥冥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2) 일본의 병합 승인 허위 보도

'한일병합' 조약문이 조인된 다음날,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8월 23일)은 한국황제가 8월 16일 총리 이완용의 보고를 받고 바로 태황제(고종)에게 물으니 태황제가 한마디 의심없이 가납(嘉納)했다고 보도하였다.⁵⁹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사후 기밀 보고서인 『한일병합시말』에는 22일 아침까지 순종황제의 동의 여부에 마음을 놓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⁰ 이 보도는 한일병합을 한국인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허위로 보도한 것 가운데 하나다. 일본인들은 이런 허위보도

- 59 8월 16일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국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관저로 초치하여 '병합'에 대한 사전협조를 요구한 시점이였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에 태황제인 고종이 순종황제의 보고를 받고 '병합'을 가납했다는 것은 일본의 사전 계획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 당시 고종황제는 1907년 6월 24일로 예정된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제2차 한일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 이준·이상설·이위중 등을 특사로 파견하였다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동 협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7월 20일 강제 퇴위당하였다. 이어 7월 24일자로 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이 강제되어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정권까지 장악하여 군대까지 강제해산시켰다. 이태진(2003), 위의 책, 144~169쪽.
- 60 '병합' 실행 과정은 1910년 11월 7일자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본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타로에게 올린 「朝鮮總督報告韓國併合始末」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윤노 후쿠유 編·解説(1998), 『韓國併合始末關係資料』, 不二出版; 이종학 編著(2000. 3), 『韓國強占資料集』, 史芸研究所, 2000년 3월).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은 어전회의 당일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宮內府大臣 閔丙奭과 侍從院卿 尹德榮을 관저로 불러 내각총리대신이 전권위원에 임명되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뜻을 미리 황제에게 아뢰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준비한 「全權委任에 관한 勅書案」을 건네 주었다(이태진(2003), 위의 책, 173~174쪽). 「칙서안」은 당일에 한국황제에게 제시되었고, 황제는 두세 시간을 끌던 끝에 이름자 서명을 해주고 國璽를 날인하였다(이태진(2003), 위의 책, 174~175쪽).

속에 한일병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당시 고종·순종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언론마저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⁶¹

4.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절차 관련 국제법적 재검토

1) 시제법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은, 정의에 반하고 현재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위반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지극히 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간에 체결된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들은 정당하지 못한 무력사용의 결과임이 분명하고, 조약체결 시 유행하였던 법실증주의하에서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규범적 정당성도 무력을 사용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는 실정법(lege lata)으로서의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⁶²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있어야 할 법체계로서의 입법론(lex ferenda)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 당시의 법인 ‘시제법(Intertemporal law)’⁶³으로 판단하여야 하며⁶⁴ ‘소급입법(a retroactive law, an ex post facto

61 “전시로 보는 국권침탈”, KBS뉴스(<http://news.kbs.co.kr/culture/2010/08/23/2148178.html>).

62 백충현(2003), 앞의 글, 240~241쪽.

63 時際法이란 영역취득의 권원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법리로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견해에 의하면, 법은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영토획득의 유효성은 그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김대순(2010), 『국제법

law’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한 입법론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국제인권규범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과 관련하여 먼저 재검토해야 할 문제는 ‘시제법’에 관한 이론이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많은 혼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Ian Brownlie의 저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erald Fitzmaurice는 “다수의 사례에서와 같이 분쟁 당사국들의 권리는 매우 오래 전의 법률행위나 조약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사례에서 문제되는 상황의 평가와 조약의 해석은 오늘날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던 국제법 규칙에 비추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It can now be regarded as an establish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in such cases the situation in question must be appraised, and the treaty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y exist at the time, and not as they exist today)”⁶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마스 섬 사건(1928)에서 단독 중재관이었던 Max Huber는 그러한 원칙을 진술하는 한편, 이 일반원칙을 확대하여 “…… 권리의 존

론』 제15판, 삼영사, 896쪽.

64 이와 관련 과거 식민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제법을 기계적·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거의 식민주의적 세계관과 국제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두 시점의 규범적 가치관을 조화·절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점을 ‘재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transtemporal’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근관(2009. 6. 22), 「일본의 한일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일본의 한일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시아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36쪽.

65 Gerald Fitzmaurice(1953),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0, No. 1, pp.5~8; Ian Brownlie(1990),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 Clarendon Press, p.129.

재, 즉 권리의 계속적 표현은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demands that the existence of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고 언급함으로써, 국가는 당대의 국제법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상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원을 재수립해야 함을 시사⁶⁶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⁶⁷

다음으로 시제법을 강조하는 일본의 태도와 관련하여, 그 당시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내용과 변화를 언급하고자 한다.⁶⁸

66 이러한 시제법 이론의 확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논리적으로 권원이 모든 시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많은 권원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제법 이론의 확장에 의해 제시된 원칙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일 수 있으나, 비판론 역시 그 원칙의 적용에 신중해야 하는 의미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Ian Brownlie(1990), pp.129~130.

67 이와 관련하여 과거 당해 영토를 상실한 국가를 포함하여 경쟁적인 상대방 국가가 항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더 이상의 목인을 거절함으로써 시효에 의한 취득을 저지하는 경우, Huber의 이론은 이미 확립된 많은 권원을 몹시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박배근(2008),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1호, 18~22쪽. 그러나 그러한 권원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이의 복구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론과 현실의 괴리로 보는 견해가 있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한 인도의 고립영토인 Goa지역에 대해 1947년 독립한 인도가 포르투갈의 권원을 승인하였다가 1961년 다시 침략하여 병합한 사건에서 침략이란 ‘불법행위국 대 국제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므로 피해국인 포르투갈의 승인에 의하여 불법이 합법으로 전환되지는 못한다는 현대국제법의 태도에 관한 비판인 것이다. Michal Akehurst(1987),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6th ed., London : Allen & Unwin, pp.153~154; 김대순(2010), 앞의 책, 897쪽 참조.

68 일본이 주장하는 ‘당시의 국제법’, 즉 시제법에 대한 필자의 비판과 관련해 동지의 국제법학자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와의 정합성과 관련해 600만 명을 살해한 나치스나 남경학살과 731부대사건, 군 ‘위안부’ 문제를 일으켰던 전범들이 이구동성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위배이자 행위 당시의 법으로는 합법이라는 주장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는 무

첫째,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할 시기 국제법은 보편적 국제규범보다 국가실행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가 주류였던 19세기의 국제법과 달리, 구미의 국제법에도 법의 규범성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는 전시(戰時) 군대의 행동을 제한하는 「육전에서의 법규와 관례에 관한 의정서」를 성립시켰다. 의정서의 전문을 작성한 러시아의 법학자 Fyodor F. Martens는 국제법의 미성숙에 따른 법규의 미비로 인해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군사령관의 자의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 및 교전자는 의연히 문명국 간 존립하는 관습, 인도의 법칙 및 공공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른 국제법 원칙의 보호 및 지배 아래에 두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⁶⁹

고한 피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뿐 불법한 자들을 면죄시키려는 원칙은 아니다. 둘째, 불평등조약과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1910년 조약의 유효성과 당시 국제법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나야만 국가가 국제규범에 구속받을 수 있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영사재판권 폐지 등 일본 스스로 제거하려고 했던 차별적 요소로서 불평등조약이 당시의 국제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셋째, 동양평화회의의 부합성과 관련하여, 시제법에 의거한 ‘병합조약’이 그 서문에도 규정되어 있는 동양평화의 목적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한 원인이었음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서 시제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를 종합하면, 시제법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궤변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부정의(injustice)를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910년 ‘한일강제 병합조약’의 무효성, 불법성 및 일본의 국가책임”, 「1910년 국치 100 역사 NGOs 학술포럼」(강창일 국회의원 및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주최 국회사학회회, 2010. 6. 9), 2세션 토론.

69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스의 전쟁범죄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종래의 국제인도법 위반인 ‘통상의 전쟁범죄’ 이외에 새로이 ‘평화에 대한 죄’를 규정하자 변호인 측은 법의 불소급주의 입장에서 ‘당시의 국제법’이 아니라 사후법으로 범죄의 범주를 만들어 재판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마르텐스 조항을 인용하여 “그것은 고결한 선언 이상의 것”으로, 전쟁법의 특정한 조항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사례에 적용되어야 할 법적인 판단기

둘째, 유태계 독일인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와 잔학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망명한 뒤, 미국 정치사상가로 활동한 Hannah Arendt(1906~1975)가 갈파한 바와 같이 “제노사이드, 곧 집단학살과 같은 국제범죄가 등장할 때 ‘정의’는 그 자체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에 의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⁷⁰

따라서 1998년 이래 일본 세카이[世界]지를 무대로 한일병합 관련 ‘조약’의 효력에 대해 이태진 교수와 운노 후쿠슈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 간에 이루어진 논쟁과 관련하여, 일본이 주장해온 그 당시의 법으로서의 ‘시제법적 관점’에 입각한 실정국제법 분석이 갖는 함의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시점에서 그 시의성이 긴요해졌다.⁷¹ 그것은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당시 자의적인 조약체결 절차와 형식에 입각한 일본의 시제법적 입장에 대해 실정국제법으로서 국제사회의 관행과 법적 확신의 공통분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준을 만들어낸 일반규정이라고 하여 변호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의 전범재판에 관한 법적 보고서(1949)의 편자 라이트 경도 마르텐스 조항을 “짧은 문장으로 전쟁법과 실제, 모든 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했던 것”이라 평가하여 전쟁법에 그치지 않는 마르텐스 조항의 보편적 의의를 강조했다(Throdor Meron, “The Martens Claus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4, No.1). ‘당시의 국제법’에도 마르텐스 조항과 같이 규범주의적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대전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러한 측면이 발전해 갔다. ‘당시의 국제법’을 보는 관점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실증주의라는 퇴행적인 면이 아니라, 이러한 발전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평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2000. 11), 「歴史における合法論, 不法論を考ふる」, 『世界』 제681호, 270~284쪽, 238~239쪽.

⁷⁰ Hannah Arendt(2006),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Penguin Classic, p.5.

⁷¹ 도시환(2010. 2), 앞의 글, 361쪽.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박배근(2009. 6), 앞의 글, 347~351쪽 참조.

그러한 전제에서 당시 서양의 J. C. Bluntschli,⁷² Theodore D. Wolsey,⁷³ L. Oppenheim,⁷⁴ W. E. Hall⁷⁵ 등과 일본의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助],⁷⁶ 쿠라치 테츠키치[倉知鐵吉],⁷⁷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⁷⁸ 타치 사쿠타로[立作太郎]⁷⁹ 등 동·서양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저서 가운데, 특히 일본에서 발간된 국제법 관련 저술에서도 전권위임장이 없거나 비준이 없는 조약은 무효임을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10년 당시 국제법의 기준에서도 ‘한일병합조약’은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졌다.⁸⁰

한일 역사학자 간의 논쟁을 시제법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무장관이나 외교사절 등의 직책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권위임장 없이 체결한 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법에 비추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에 조약은 비준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비준없이 조약이 발효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였다.

셋째, 당시의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의 구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체결대표에 대한 전권위임장과 발효요건으로서의 비준을 요구하고

⁷² J. C. Bluntschli(1872), *Das mod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ten*, Nördlingen : C. H. Beck'schen Buchhandlung, p.240 참조.

⁷³ Theodore D. Woolsey(1874),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p.184 참조.

⁷⁴ L. Oppenheim(1905),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I Peace*, London, New York and Bombay : Longmans, Green, and Co, pp.528~533 참조.

⁷⁵ William Edward Hall(1890), Pearce Higgins ed.,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3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pp.327~328 참조.

⁷⁶ 秋山雅之助(1893), 『國際公法完』, 東京 : 有斐閣書房, 139~140쪽 참조.

⁷⁷ 倉知鐵吉(1899), 『國際公法完』, 東京 : 日本法律學校, 193~194쪽 참조.

⁷⁸ 有賀長雄(1901), 『國際公法完』, 東京 : 東京專門學校出版部, 419쪽 참조.

⁷⁹ 立作太郎(1913), 『平時國際公法下』, 東京帝國大學講義, 謄寫版, 180쪽 참조.

⁸⁰ 박배근(2009. 6), 앞의 글, 352쪽.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¹

넷째, “국제약속의 조인본서에 표제를 붙이지 않는 관행”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관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당시에 조약의 명칭이나 ‘정식성’ 여부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⁸²

한편, 한일강제병합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역사학자인 이태진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학자인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는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와 국가에 대한 강제를 구별하는 판단기준의 제시를 요구하였다.⁸³ 이에 대해,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국제법을 근거로 한 시제법적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⁸⁴

첫째, 국가와 국가 대표자에 대한 두 가지 강제는 관습국제법에서 승인되고 있고, 각각 정당화의 사유를 달리한다. 국가 대표자에 대한 강제도 개별적인 폭력이나 강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며, 국가에 대한 강제는 무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당사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다. 후자와 관련하여 조약을 강제하는 당사국은 자기의 무력이나 강박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것이나, 이와 관련한 일본의 시도는 전무하다.

81 당시 조약은 사안의 중대성 여하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비준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국권의 이양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걸린 한일병합관련 ‘조약’이 비준 없이 유효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배근, 위의 글, 352쪽.

82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형식적 하자과 관련하여 타치 사쿠타로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荒井信一(2000. 11), 앞의 글, 270~284쪽, 214~217쪽.

83 坂元茂樹(1995), 앞의 글, 345~346쪽; 坂元茂樹(1998. 9), 앞의 글, 『世界』, 198쪽.

84 笹川紀勝(2001), 「일한의 법적 ‘대화’를 목표로하며-‘제2차 한일협약’ 강제 문제를 보는 관점」, 『한일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144~147쪽.

둘째, 두 가지 강제를 관련시키는 발상은 19~20세기에 걸쳐 독일 국법학(國法學)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국제법의 통설적인 교과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위원회에서 널리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⁸⁵

따라서 ‘제2차 한일협약’의 유효성의 문제에 입각하여 볼 때, 그 당시에 두 가지 강제의 구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문제인 것은 아니며, 강제의 각각에 대한 사실의 검증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강박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았다.

2) 국제조약법적 재검토⁸⁶

이상 시제법적 관점에서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은 형식상의 결함 때문에 정식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준서도 없다는 이태진 교수의 주장과 관련하여,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는 비준의 국제법적 의미와 국내법적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 제27조에 의하면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국내법규정을 인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⁸⁷ 또한 윤노 후쿠슈 교수는 동 협약 제16조상 비준서의 교환과 국내적

85 사사카와 노리카즈 교수는 William E. Hall 교수의 저서[William E. Hall(1890), pp.325~326]와 L. Oppenheim의 저서 제1판[L. Oppenheim(1905), p.525]에서부터 8판(1955, p.891)까지 국제법상 강박과 관련한 기술의 변경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86 이 장에서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체결절차와 관련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에의 반영, 제2조의 해석 및 조약의 효력에 대한 양국의 차이 등과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도시환(2010. 2), 앞의 글, 357~363쪽 참조.

87 坂元茂樹(1998), 앞의 글, 200~201쪽; 이태진(2001), 앞의 책, 90~91쪽.

인 조약체결권자의 기준을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⁸⁸ 따라서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효력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에 입각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조약이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효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립요건의 구비는 효력요건의 충족의 전단계로 선결사항인 것이다.⁸⁹ 즉, 조약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조약으로서 불성립한 것이므로 당연히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면 다음 단계로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효력요건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⁹⁰

조약의 성립요건이란,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① 당사자, ②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④ 조약성립절차 완료의 4가지를 들고 있다.⁹¹ 조약의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된 조약이라도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①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의 능력(capacity)을 가질 것, ② 조약당사자에 있어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③ 조

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전권대표) 간에 하자없는 합의(consent)가 성립할 것, ④ 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객체(object)로 할 것 등이 필요하다.⁹²

그러나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한일 간 조약체결들은 그 성립요건의 불비와 효력요건상의 하자라는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⁹³

환언하면, 조약의 성립요건상의 불비와 관련하여, 조약성립절차는 구체적으로 ① 교섭, ② 조약본문의 채택, ③ 조약본문의 인증, ④ 조약에의 비준, ⑤ 비준서 교환 등으로 진행되고, 조약의 비준은 그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意的 의사표시로서 조약체결권자인 한국황제의 비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했다.⁹⁴ 다음으로 조약의 효력요건상의 하자과 관련하여,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 설사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대표를 강박해서 체결한 조약은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⁹⁵

88 윤노 후쿠츄(1999), 앞의 글, 262~263쪽; 이태진, 위의 책, 163쪽.
 89 이와 관련하여 조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사법이론상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포괄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Gerhard von Glahn(1984), *Law among Nations*, 4th ed., New York : Macmillan, pp.498~505.
 90 노영돈(2009. 4. 16),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간도협약 100년의 재조명 회고와 전망』(국회학술정책토론회 자료집), 58~60쪽.
 91 Malcolm N. Shaw(1997),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36~641; Mark E. Viliger(2009),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Leiden · Bost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 pp.125~132; 이병조·이중범 공저(2007), 『국제법신강』 제9개정보완수정판, 일조각, 56쪽.

92 Mark E. Viliger(2009); Malcolm N. Shaw(1997); 이병조·이중범 공저(2007), 위의 책, 66쪽;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499쪽.
 93 백충현(2003), 앞의 글, 231쪽.
 94 조약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 체결의 법적 전제이자 근거로 삼고 있는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이 그러한 성립요건을 결여한 불법·무효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① 1905년 11월 18일 제2차 한일협약이 불법적으로 조인된 직후인 11월 22일 고종황제는 황실고문인 Homer B. Hulbert에게 자신의 날인, 즉 비준이 없는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친서를 주어 특사로 파견한 사실, ② 1907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중 등을 보내어 일본의 강점정책을 폭로 및 규탄하고자 한 사실, ③ 한일 양측에 교환된 비준서 등에도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해 고종황제의 비준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없다. 노영돈, 앞의 글, 58~59쪽.
 95 노영돈, 앞의 글, 60쪽.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관련 조약체결 과정에서의 국제법상 무효사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⁹⁶ 첫째, 무력시위 및 위협하의 강박에 의한 조약의 강제 체결, 둘째, 조약체결권자에 대한 황제의 전권위임장 불비, 셋째, 조약에 대한 비준서의 부존재 등이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은 강박(coercion)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국에 강제되었고,⁹⁷ 조약은 한국황제의 비준을 얻지 못한 채 발효되었다.⁹⁸ 따라서 1905년 조약은 역사적 사실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듯이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무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최종적 완결로서의 1910년 8월 22일 서명된 일본의 '한일병합조약'⁹⁹은 전권위임장 부여 시 사전승인 자체가 조약강제의 반증일 뿐만 아

니라 한국 측으로부터 적절한 비준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¹⁰⁰에서 국제법상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⁰¹

한일 역사학자 간의 논쟁을 1969년 조약법협약에 입각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무장관이나 외교사절 등의 직책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권위임장 없이 체결한 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조약법협약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¹⁰²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약은 비준되는 것이 원칙이며, 비준없이

96 이태진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무효 또는 불성립의 근거로, 당초부터 무효·불성립이었던 '제2차 한일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병합조약' 역시 조약체결의 절차·형식에서 ① '한일병합조약' 서명자의 무자격, ② 황제·칙유의 훼손의 두 가지 '결정적 결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이 글 제3장 참조.

97 1945년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 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양자 구분의 곤란을 이유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자행한 강박으로 인한 무효화 효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강박은 국가자체 및 대표에 대해서 중복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의 국가에 대한 강박을 제외하더라도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백충현(2003), 앞의 글, 233쪽.

98 IFOR(國際友和會)가 1993년 12월에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으로 전 황제 고종은 제2차 한일협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와 그 국가의 주권과 독립은 일본에 의해 불법으로 박탈되어 있었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유효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보면 전 황제의 주권이 합법적으로 실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통감이라 말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朝鮮人強制連行調査團(1995), 『國連決議と植民地支配, 強制連行』, 13쪽; 윤노 후쿠유(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397쪽.

99 제2의 IFOR 문서 작성에 관여했던 도츠카 에츠로 교수는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임하여 서명한 일본 대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통감'이 맡았고, 한국대표는 통감의 지시로 행동하는 괴뢰 '대한제국 이완용 내각 총리대신'이었다. 전자는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법적 자격이 없

는 것이다. …… 1905년의 주권상실이 효력을 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원래의 완전한 주권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잔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의 의사는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시인 1905년 11월 17일 당시 대한제국 황제(고종)와 그 내각(韓 참정대신이 주재)이 행사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일본의 괴뢰 '대한제국' 정권 이완용 총리대신이 체결했다. 이때 고종은 이미 강제로 퇴위당하고, 1907년 이후는 순종의 시대로 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대한제국을 정통으로 대표하는 권한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통대표는 병합조약에 구속되는 뜻의 '합의'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戶塚悅朗(1993. 10), 「1905년 『韓國保護條約』의無效と從軍慰安婦·強制連行問題のゆくえ」, 『法學セミナー』; 윤노 후쿠유, 위의 책, 398~399쪽.

100 '한일병합조약'의 체결과 관련 상대 국가 쪽에 의해 선택된 인사가 전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황제의 통치권을 포기하는 조약교섭을 추진하고, 황제의 재가가 없었음에도 조인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외국과 결탁해 황제를 내쫓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상찬(2009. 8. 22), 「한국황제는 통치권 양여 조약안을 재가하였는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평가』(제3회 역사NGO세계대회 자료집), 31~42쪽.

101 백충현(2003), 앞의 글, 228~235쪽.

10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c); '전권위임장'이라 함은 조약문을 교섭·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관한 기타의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한 명 또는 수 명을 지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조약이 발효하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¹⁰³

셋째, ‘정식조약’은 원칙적으로 모두 체결대표에 대한 전권위임장과 발효요건으로서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¹⁰⁴

넷째, “국제약속의 조인본서에 표제를 붙이지 않는 관행”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관행이 아니다.¹⁰⁵

다섯째, 조약의 명칭이나 ‘정식성’ 여부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¹⁰⁶

5. 맺음말

1998년 이래 『세계(世界)』지에 실린 이태진 교수와 운노 후쿠츄 교수의

10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4조 제1항;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 비준에 의하여 표시된다. 동 제16조;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다음의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한다. (a) 체결국 간의 그 교환, (b) 수락자에의 그 기탁, (c) 합의되는 경우, 체결국 또는 수락자에의 그 통고.

10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2조 제1항;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국가대표에 의한 서명에 의하여 표시된다. (a)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c)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우 또는 교섭 중에 표시된 경우.

105 조약문은 통상적으로 제목(title), 전문(preamble), 본문(main parts)으로 구성되며, 조약본문은 다시 조문(clause), 종결조항(final clauses), 부속서(annex)로 구성된다.

10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논전은 ‘한일병합조약’과 관련된 조약체결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를 논거로 한 양국 역사학자 간의 유무효론의 논쟁이었다. 이태진 교수의 논고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추적하여 ‘한일병합조약’이 체결의 형식과 절차 면에서도 무효라고 하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일본은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 조약 강제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체결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국제법적 합법성을 구비하려 했으나,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⁷

역사학자인 이태진 교수의 ‘한일병합조약’이 체결형식과 절차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가깝게는 논전을 벌인 운노 후쿠츄 교수로 하여금 조약체결권자나 체결대표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는 자인(自認)을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멀게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한일 지식인의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의 맹아이자 근간이 되는 학문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과 관련하여 그 당시 국제법에 입각하여 조약체결이 적법이라는 전제하에 유효부당론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운노 후쿠츄 교수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언급이다. “군 ‘위안부’·강제연행 등 식민지배하에서 일본이 범한 수많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깊은 반성에 근거한 사죄와 배상을 행하는 것이 ‘과거의 청산’이라고 생각한다”¹⁰⁸는 것이다. 그러나 운노 후쿠츄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제2차 한일협약의 경우,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고 보면서도 조약체결 절차 및 형식

107 박배근(2009. 6), 앞의 글, 353쪽.

108 운노 후쿠츄(1999. 10), 앞의 글, 261~262쪽; 이태진(2001), 앞의 책, 152~153쪽.

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하며, 한일병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⁰⁹

다음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평가의 함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이다.¹¹⁰ 그 논거로는 일본의 한국 통치가 부당한 것이라는 점에 일본이 동의하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한국이 굳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러한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 한일 간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를 논증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미 도덕적인 과오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법성을 인정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지난 5월과 7월 이미 한일 양국 지식인들의 ‘역사적 정의’에 대한 공동선언이 화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정의의 의미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의 재발견이라고 할 때,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 국제법의 법리 역시 정의 구현을 향한 소명에 대한 조명과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는 또다시 양국 지식인들의 역사적 추구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여전히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국제법상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당시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

109 和田春樹 교수는 운노 후쿠주 교수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한일병합조약 체결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를 부정하고 법적 유효성을 주장하는 견해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和田春樹, 앞의 글, 249쪽.

110 박배근(2009. 6), 앞의 글, 353쪽.

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불법 강점지배가 정당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일본 지도자의 담화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왜곡한 역사교육의 현실은 일본 국민의 의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이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는 동의하는 반면,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이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한일 지식인의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선언은 그 파급력이 당장은 미미할지 모르나,¹¹¹ 궁극적으로 국제법이 지향하는 평화공동체를 향한 역사대화와 역사교육의 가교로 이어져 일본시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21세기 한일 양국 간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일본 정치 지도자의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는 일본시민사회의 성숙한 역사인식의 토대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의 역사를 맞이한 현재의 시점(時點)은 일본이 자국의 침략전쟁에 귀결되는 모든 책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현재의 과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성찰에 귀기울여야¹¹² 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일본 시민들에게 역사가 던지는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세계에 대한 책임의 방식을 묻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111 보주(補註): 2010년 한일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은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및 위독 피해자의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상의 외교교섭이나 중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과,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을 통해 1910년 원천무효인 강제병합을 통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그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본에게 존재함을 분명히 천명하는 기점이 되었다; 도시환(2012. 9),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3호 참조.

112 高橋哲哉(2005), 『戰爭責任論』, 講談社, 197~198쪽.

것은 무엇보다 침략자로서 그들의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기반으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죄와 배상을 실행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부인이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자 평화에 대한 거부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역사 갈등의 본질적 문제해결에 나섬으로써,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진정한 역사화해와 평화구축을 위한 '역사적 정의 구현'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병합의 불법성 여부와 '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근관

1. 머리말

2010년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지 100년이 된다. 그동안 한일 양국 간에 한일병합의 불법성 여부 및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양국 간에 실질적 협력이 급속히 진전되어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아직까지 심각한 불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대하여, 특히 병합의 불법성 여부와 1965년 체결된 이른바 '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일병합의 불법성 여부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 논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국가 자신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간의 구분에 대한 역사적·비판적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2). 이어 1965년 이후 지금까지 양국 간의 외교현안인 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효력 및 그 범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고찰을 행한 후(3), 한일 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4).

2. 일본에 의한 한일병합의 불법성 여부¹

일본에 의한 한국강제병합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핵심적 문제는 1910년 이전에 양국 간 체결된 조약의 무효 여부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역사학자 및 국제법학자들이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역사적·법적 사실을 발굴하였는데,²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대한 역사적·법적 재평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발굴된 사실들은 특히 1905년 협약 및 1910년의 병합조약 체결상의 근본적인 절차적 하자 1906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종황제가 전개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의 무효화 투쟁 등에 관련된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및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개재된 근본적인 하자로 인하여 이들 조약은 단지 무효가 아니라 아예 부존재하게 된다고 한다.³

- 1 이 절은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이태진 외(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43~286쪽 수록의 관련 부분을 요약·수정한 것이다.
- 2 이러한 사실들은 이태진 편(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까치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이태진, 「조약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을사보호조약”」; 이태진, 「통감부의 대한제국 寶印 탈취와 순종황제 서명 위조」; 이태진, 「공포 칙유가 날조된 “일한병합조약”」; 김기석, 「光武帝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등의 논문이 새롭게 발굴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3 일본의 저명한 월간지 『世界』는 1998년 중반부터 2000년 말까지 ‘日韓對話’라는 고정란을 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제목 및 게재일자는 아래와 같다. 李泰鎮(1998), 「韓國併合は成立していない-日本の大韓帝國國權侵奪と條約強制(上)(下)」, 8월호; 坂元茂樹(1998), 「旧條約問題の落とし穴に陥ってはならない - 本誌・李泰鎮教授論文へのひとつの回答」, 9월호; 李泰鎮(1999), 「韓國侵略に關連する諸條約だけが破格であった - 坂元茂樹(九十八年九月号)に答える」, 3월호; 笹川紀勝(1999), 「日韓における法的な「對話」をめざして-第二次日韓協約強制問題への視點」, 7월호; 윤노 후쿠쥬(1999), 「李教授「韓國併合不成立論」を再検討する」, 10월호; 李泰鎮(2000), 「略式條約でどうやって國權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된 1965년의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가 자주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측의 해석에 따르면 “null and void”라는 표현은 국제법상 무효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며, “already”라는 부사는 관련 조약 및 협정이 명백하게 애초부터 무효(nullity ab initio)임을 단지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⁴

이에 반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에 의하면 1965년, 조약에 언급된 조약 및 협정들은 “자유 의사에 의하여 또한 상호 평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체결 당시 적법·유효하였다.⁵ 그 결과, 이들 조약 및 협정은 한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이탈하였던 1948년 8월 15일부터 무효화되었던 것이다.⁶

아직까지 1965년 조약 제2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 1965년 조약의 체결과정을 분석해 볼 때 이 조약 제2조가 의도적 애매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의 한 예임을 추정할 여지가 적지 않다. 일본의 한 국제법학자 해석에 따르면, “1965년 조약 제2조를 둘러싼 해석상

を移讓できるのか-海野教授の批判に答える」, 6월호; 荒井信一(2000), 「歴史における合法論, 不法論を考える」, 11월호. 이들 논문은 다음 책에 한글로 번역·수록되어 있다. 이태진 편(2001), 『한일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일본 측 문헌으로서는 다음을 참조. 윤노 후쿠쥬(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 4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 관련된 논쟁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Sakamoto Shigeki(1997), “The Validity of the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Kansai University Review of Law and Politics* No. 18, pp.45~49.
- 5 이것은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의 발언이다. *Minute Book No. 8 of the 50th Session of the House of Councilors* (November 19, 1965); Sakamoto Shigeki(1997), p.4에서 재인용.
- 6 Sakamoto Shigeki(1997) 참조.

의 차이는 조약문 작성과정상의 실수나 과오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상호 모순되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문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⁷ 한국의 한 국제법학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껏해서 한일국교설정의 기초적 조건으로 한국민의 대일감정을 완화케 할 목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⁸

만약 1965년 조약 제2조의 애매모호성 또는 불명확성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일본에 의한 한국강제병합의 적법성 여부를 당해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1965년 조약은 양자조약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1910년 이전 시기 양국 간에 체결한조약 및 협정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합의가 자동적으로 대세적(erga omnes)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1910년 이전 시기에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의 적법성 여부의 문제를 1965년 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이 문제를 좀 더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관련 조약 및 협정이 이들이 체결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하였는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⁹ 국가 자체에 대한 강

7 Sakamoto Shigeki(1997), p.48.

8 배재식(1975), 「한일기본조약연구-제2, 3조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제1호, 259쪽.

9 “법률적 사실은 그 사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시점의 법이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원리라 한다. 방금 인용한 시제법의 원리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은 팔마스섬 사건(1928)에서 단독 중재관으로 활동하였던 막스 후버(Max Huber)에 의한 것이다. 2 Repor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p.845. 시제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Paul Tavernier(1970), *Recherches sur l'application dans le temps des actes et des règles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 : problèmes de droit international ou de droit transitoire*, Paris :

박과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까다로운 구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다.

이 구분은 1945년 이후 현대 국제법에서 그 의의를 대부분 상실하였다. 1969년 비엔나 협약이 “국가대표의 강제”(제51조) 및 “힘의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한 국가의 강제”(제52조)라는 구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법적 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강박 또는 협박의 대상이 국가 자체이든지 또는 국가 대표이든지에 관계 없이 이러한 강박의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자동적·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국제법학에서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 및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간의 구분은 그 실익이 별로 없다.¹⁰

그러나 1945년 이전 시기에 있어 양자 간 구분은 관련된 조약의 효력 측면에서 구분의 실익이 다대한 것이었다.¹¹ 양자 간의 구분을 “계보학적”으로 간략히 추적해 보자. 국제조약법과 국내계약법 모두 합의의 자유를

Librairie gn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0 1969년 비엔나 협약 제51조 및 제52조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 다음 문헌을 참조. Ian Sinclair(1984),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176~181.

11 예를 들어, 맥네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최소한 최근까지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어느 국가가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하에서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휘하며 강박이 조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조약체결상의 최종 행위(즉, 기준을 요하지 않는 조약의 경우에 서명 또는 기준을 요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기준)를 행하는 국가대표에 대하여 강박이 행해지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Arnold McNair(1961), *Law of Treaties*, Oxford : Clarendon Press, p.207. 다음의 문헌도 참조하십시오. F. K. Neubecker(1910), 1 *Zwang und Notstand in rechtsvergleichender Darstellung*, Leipzig : A. Deichert, pp.134~163; Georg Grosch(1912), *Der Zwang im Völkerrecht*, Breslau : M. & H. Marcus, pp.76~97; Charles Rousseau(1944),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Paris : Pedone, pp.342~349; Paul Schoen(1937), “Erzwungene Friedensverträge”, 21 *Zeitschrift für Völkerrecht*, pp.277~278.

공통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있었지만, 이 원칙이 평화조약의 경우에 적용이 배제된 것은 강박을 이유로 평화조약을 무효화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실제적’ 또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다.¹² 그리고 이런 예외는 근대 국제법의 초창기, 즉 그로티우스나 바텔의 시절부터 인정되었다.¹³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점은 국제조약법상 강박이 인정되고 있던 예외가 19세기 들어 고도의 이론적 세련성을 성취하였다는 점이다. 19세기에 이르러 국가의 의인화 경향이 심화되고 국가 법인격이 실재한다는 이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누림에 따라, 이 예외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예를 들어 전쟁 또는 군사적 점령의 위협, 해군력 또는 육군 군사력의 시위 등 국가 자체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의 수용을 강제하는 강압적 조치)과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권한 있는 기관의 의사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으로 탈바꿈하였다. 두 가지 강박을 구분하는 이론은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에 확립되어 폭넓은 지지를 얻기에 이르렀다.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을 구분하는 이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양차 대전 사이의 시기(inter-war period, 1918~1939)에 이르러 점차 약화되었다. 먼저 국제연맹규약(1919), 부전조약(1928)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종래에 합법적인 분쟁해결수단이었던 전쟁 자체가 점차 불법화되었고, 국가 자체를 의인화하는 경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효력을 다투었던 몇몇 독일 학자들은 이 조약이 독일 측 동의의 자유가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기망·착오 및 강박(Willensmängel)에 관한 이론이 국제조약법상 가장 약한 고리를 형성

¹² Herbert Weinschel(1930), “Willensmängel bei völkerrechtlichen Verträge”, 15 *Zeitschrift für Völkerrecht*, p.450.

¹³ Charles Rousseau(1944), p.346.

한다고 비판하였다.¹⁴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더해져 전통적 이론이 향유하던 보편적인 지지를 거의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들 요인 가운데 특히, 국제분쟁의 합법적 해결수단으로서 전쟁의 점진적 불법화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을 구분하는 이론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는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을 금지한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4항의 규정에까지 연결되었다.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의 금지가 새로 조직된 국제연합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채택됨에 따라 두 가지 강박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은 점차 논의의 실익을 상실하고 말았다. 1969년 비엔나 협약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8년 이전 시기에 있어 양자 간의 구분은 다대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맥락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및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의 구분에 관한 역사적·계보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일병합에 관련된 조약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일본학자들은 이 구분과 관련하여 빈발하는 개념적 혼동을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에 따르면, “문제의 시기(즉, 1905년 협약의 체결 당시)에 금지되고 있던 유일한 강박은 과거 비행을 폭로한다고 협박하거나 총으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서 국가 대표에게 조약에 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그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을 “국가 원수나 장관 등 국가 기관에 대한 강박”으로 해석하면서 그 이유를 국가는 단체인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 결국, 그는 1918년 이

¹⁴ Herbert Weinschel(1930), p.448.

¹⁵ Sakamoto Shigeki(1997), op. cit., p.193.

전 시기에 통설의 기초를 이루던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필자가 행한 논의에 기초하여 사카모토 시게키를 비롯한 상당수 일본 학자들의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 문제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이라는 대단히 복잡한 그림 짜맞추기 퍼즐(jigsaw puzzle)의 그림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1905년 협약의 무효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한일 관계의 장애물이 되어 왔던 이 문제가 갖는 법적·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합 이후의 사건 및 역사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은 전문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언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조약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의 국제법적 유효성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전문에서 이 조약이 언급된 의미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좁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선택적인 접근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책임에 대한 재론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한일 간 외교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검토

1) 국제법상 일괄타결방식(lump-sum settlement)에 의하여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 의식이 고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UN헌장에 인권 관련 규정이 포함되면서 1945년 이후 '인권혁명(human rights revolution)'이 발생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에 대한 전통적 이해로 특히, 일괄타결방식에 의한 개인청구권 처분 방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개인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을 개인의 소속국이 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실행상 이러한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고, 그 합법성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미권에서 널리 쓰이는 교과서 저자는 특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이후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괄타결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⁶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2002년 보고서

16 "Many disputes over expropriation of foreign property have in fact been resolved directly by the states concerned on the basis of lump-sum settlements, usually after protracted negotiations and invariably at valuation below the current value of the assets concerned. For example, the UK-USSR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Mutual Financial and Property Claims, 1986 dealt with UK government claims of the order of £500 million in respect of Russian war debt and private claims of British nationals amounting to some £400 million. In the event, a sum in the region of £45 million was made available to satisfy these claims".

역시 1975년 이후 일괄타결방식의 국가실행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후, 이 타결방식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는 청구국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고 결론짓고 있다.¹⁷ 2002 ILA 보고서 는 일괄타결방식이 실정국제법상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교적 보호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 권리는 국가 자신의 권리이며 이 권리의 행사 여부 및 방식은 당해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새롭게 등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외교적 보호권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고도의 의제(fiction)에 불과하며 이 권리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석·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할 여유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국제법위원회와 국제법협회의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전통적인 이해에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국제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2000년만 하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은 대단히 국가중심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이 권리의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재량성이 강조되었다.¹⁸ 2004년에 채택된 초안

규정만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었다.¹⁹ 그러나 2006년에 채택된 최종 초안에서는 외교적 보호권의 이해 및 그 행사 방식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과 권리 보호의 관점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먼저 외교적 보호권을 정의하면서 “국가 자신의 권리로서(in its own right)”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²⁰ 또한 “권고적 실행(recommended practice)”이라는 표제하에 제19조를 신설하여 심각한 손해 발생 시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여부와 배상액 결정에 관련해 가능한 한 피해자의 견해를 고려할 것, 가해국으로부터 수령한 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²¹

protection on behalf of a national unlawfully injured by another State. Subject to article 4,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a discretion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19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Diplomatic protection consists of resort to diplomatic action or other means of peaceful settlement by a state adopting in its own right the cause of its national in respect of an injury to that national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 wrongful act of another state.”

20 제1조는 “definition and scope”이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draft articles, diplomatic protection consists of the invocation by a State, through diplomatic action or other means of peaceful settlement, of the responsibility of another State for an injury caus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at State to a natural or legal person that is a national of the former State with a view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sponsibility”. ILC Report of the fifty-eighth session(2006), A/61/10, p.16.

21 “Article 19(Recommended practice) A State entitled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according to the present draft articles, should : (a)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diplomatic protection, especially when a significant injury has occurred; (b) Take into account, wherever feasible, the views of injured persons with regard to resort to diplomatic protection and the reparation to be sought; and (c) Transfer to the injured person any compensation obtained for the injury from the responsible State subject to any reasonable deductions”. 위의 책, 21.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5th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3), pp.749~750.

17 “Consistent with their pre-1975 counterparts, most of the post-1975 Settlement Agreements state expressly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negotiated lump sum falls within the “exclusive”, or occasionally “sole”, jurisdiction of the claimant State; the balance, except in the rare instance that the lump sum is required to be distributed pursuant to mutually agreed upon procedures set forth in ancillary agreements or is the subject of joint determination by the respective State Parties, clearly carry that implication.” David J. Bederman(2002), “Interim Report on ‘Lump Sum Agreements and Diplomatic Protection’”, *ILA Report of the Seventieth Conference*, New Delhi, pp.237~238.

18 “Article 3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the right to exercise diplomatic

ILA의 개인과 재산의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 of Persons and Property)에 관한 위원회의 2006년 최종결의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재량성은 인정하되 이 재량권은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직접 자신의 손해를 구제 받는 방식이 권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²²

다만 주의할 것은 외교적 보호권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법위원회 경우에도 “권고적 실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관련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인권존중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는 데 그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법상 의무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ILA의 관련 결의에서도 발견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제법하에서도 일괄타결방식은 널리 실행되고 있으며 그 국제법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다만,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실행의 등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리에 비추어볼 때, 1965년에 체결된 이른바 청구권협정이 채택한 일괄타

22 “The discretion exercised by a government in refusing to espouse a claim on behalf of the individual should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n the context of due process and the prevention of arbitrariness, subject to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state of nationality”. “Direct access by the individual to international claims settlement arrangement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s to be encouraged as giving expression to the assertion of his own rights”, “When direct access by the individual to international claim procedures is not available, diplomatic protection should be exercised in a residual manner.”

결방식이 당시 또는 오늘날의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한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의 검토

1965년 협정 제2조(특히,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동조 제1항) 및 1965년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2(g)의 규정(“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과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에도 불구하고(최소한 일부의) 개인청구권이 당해 협정 및 의사록의 규율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견해는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즉, 1972년 중일공동성명 등 전후처리조약을 통하여 일본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한 것이지, 일본 국민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관련하여 거론되기도 한다.

1965년 협정에 개인청구권의 문제도 규율하고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조약 해석의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원칙적으로 개인청구권도 그 규율대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최근 중·일 간의 전후처리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 학자의 해석

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견해는 “대일평화조약에 의하여 포기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어서 ① ‘국민의 청구권’ 그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② 남아 있는 ‘국민의 청구권’이라는 것은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구제는 없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형식적인 청구권’(구제없는 권리)에 불과하여, 환언하면 국민이 청구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기 위한 ‘실체적인 청구권’은 소멸하였다(따라서 구제의 거부에 대하여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²³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조약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1965년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개인청구권 문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1965년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는 법이론상 또는 외교실무상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에서 살펴 볼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이른바 “중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위반이 개재된 행위의 경우에 구제의 문제가 국가나 정부 간의 합의만에 의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²⁴

23 淺田正彦(2005), 「日華平和條約と國際法(伍)」, 『法學論叢(京都大)』 제156권 제2호, 23쪽.

24 ILC의 외교적 보호권 특별보고자였던 Dugard는 2000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안하였다. “Article 4 “1. Unless the injured person is able to bring a claim for such injury before a competent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the State of his/her nationality has a legal duty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n behalf of the injured person upon request, if the injury results from a grave breach of a jus cogens norm attributable to another State. “2. The State of nationality is relieved of this obligation if : “(a)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would seriously endanger the overriding interests of the State and/or its people; “(b) Another State exercises diplomatic protection on behalf of the injured person; “(c) The injured person does not have the effective and dominant nationality of the State. “3. States are obliged to provide in their municipal law for the enforcement of this right before a competent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등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지적한 사실(E/CN.4/1996/53/Add.1)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청구권 문제의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방금 논의한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의 ‘정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8월 26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위원회에서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²⁵

다음으로 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 정부

domestic court or other independent national authority.”

25 국무조정실(2005. 8. 26), 보도자료 :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1쪽.

보상의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정리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이 의견을 요약하면, 한일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권협정을 통해 수령한 무상 3억 불에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어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 당시 우리 정부에서 받았던 보상은 강제동원 부상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위원회는 보았다.²⁸ 이어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²⁹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이 정리 의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논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두 명의 공동위원장, 9명의 정부위원,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된 동기, 이 위원회 정리의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둘째, 이 정리 의견은 1965년 청구권협정이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행된(executed)” 조약임을 분명히 하였

26 국무조정실(2005. 8. 26), 위의 자료.

27 국무조정실(2005. 8. 26), 위의 자료, p.2(강조는 원문에 따른 것임).

28 국무조정실(2005. 8. 26), 위의 자료(강조는 원문에 따른 것임).

29 국무조정실(2005. 8. 26), 위의 자료.

다. 셋째, 이 협정이 ‘총액결정방식’, 즉 일괄타결방식에 기초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규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국제법적 유효성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넷째,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 도의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는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적 측면”에서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동안(대외적 관계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 온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들과는(대내적인 관계에서) 일본 정부의 논법과 매우 흡사한 논리와 표현을 구사해 가면서 자신의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도의적·윤리적 차원에서 “은급적(恩給的) 구제”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를 병합의 불법성 여부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효력 및 그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는 한일 관계의 진정한 ‘정상화’ 또는 ‘재구축’이라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일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라는 과제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동시에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래의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한일 양국은 양국 간 관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역지사지(易地思之)’ 또는 (하버마스가 주창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정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국 측의 사죄요구에 피

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이른바 'apology fatigue'). 그러나 진정한 사죄와 반성만이 인간 또는 집단 간의 화해와 공생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은 보편적 진실이며 이는 일본사회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에히메 마루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일본사회는 무엇보다 그린빌(Greenville) 합장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타방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초래하는 상처와 비극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던 에놀라 게이(Enola Gay)의 전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가해자'인 미국의 입장만 강조되어 '피해자'인 일본인들이 느꼈을 상처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을 정당화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는 일본의 일부세력은 에놀라 게이 논란의 교훈을 한일병합에 적용해 봐야 할 것이다. 유사한 문제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국가 목적을 위해 외국인을 다수 납치하는 행위의 불법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행위를 소리 높여 비판하면서도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자행되었던 대량적인 강제동원 및 노동착취 등의 행위에 내재하는 고도의 불법성을 편리하게 잊거나 애써 무시한다면 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유사한 지적이 한국 측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 상황은 상당히 다르지만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해 한국은 매우 애매한, 어찌보면 한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취했던 것과 비슷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한국 내 일련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2005년 8월의 정리의견을 통해 일본 정부와 흡사(酷似)한 논리와 수사를 사용했음은 이미 위에서 보았다.

둘째,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오늘날의 국제법 또는 규범적 관점이나 과거 특정 시점의 국제법 또는 규범적 관점에 준거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사

고에서 벗어나 양국 간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달성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점을 마련하려는 형성적·구축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식민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제법을 기계적·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거의 식민주의적 세계관과 국제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법원의 판결이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은 'intertemporal'이 아니라 'transtemporal'적인 접근방법이다. 아직 적절한 한국어 표현을 찾지 못해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이 용어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과거 식민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그 당시 국제법이나 오늘날의 국제법을 동원하여 평가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895년과 1905년에 조어도와 독도에 대해 자국이 행했던 '무주지선점'을 당시 1895년과 1905년의 국제법에 기초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당시 국제법이 이념적 진공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895년과 1905년은 일본이 각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확보했던 시점이다. 또한 이 시기 국제법이 식민주의적 특성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당시 국제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관련국인 중국과 한국에 대해 '신의칙을 결여한' 또는 '문제해결에 진정성이 결여된 행위'로 비취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 식민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규범적 평가와 관련하여 과거의 법과 오늘의 법 중 하나를 양자택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두 시점의 규범적 가치관을 조화·절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점을 '재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제 사건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없이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제4부 역사인식과 남겨진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재일한국인 | 변영호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미래를 위한 선택 | 차하순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대화공간 | 부핑[歩平]

한일협정과 남겨진 과제 | 이종원
침략행위 : 미국의 하와이 점령 | 에드워드 존 슐츠(Edward J. Shultz)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재일한국인¹

츠루문과대학 교수 변영호

1. 머리말-재일한국인의 발생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 식민지 지배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일본, 중국, 구 소련 등지로 떠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해방 후 남북 분단 등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했다. 구 소련에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약 45만 명, 중국에는 약 190만 명이 살고 있다. 일본에는 약 66만 명(1995)이 한국·조선의 정주외국인으로 살고 있으며, 귀화자는 20여 만 명에 이른다.

재일한국인은 그 사이 일본에 정착하여 지금은 3, 4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0년 6월에 개최된 월드컵에 참가한 북한대표에는 재일조선인이 3명 포함되어 있었다. 브라질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 앞서 정대세가 북한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모습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모양이다. 재일한국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일 간 화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¹ 표제는 주최자인 재단 측에서 정해준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한국인’은 korean의 한국어 번역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문은 일본어로 집필했기 때문에 일본 학회의 통상적인 사용법을 따랐다. 예를 들어, 재일 korean은 문맥에 따라 ‘재일코리안’ ‘재일한국·조선인’ 등으로 구별해 적었다.

2. 재일 한국·조선인의 현재

일본의 외국인등록상의 국적란에는 ‘조선’과 ‘한국’이 있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은 국적이 아니고 ‘조선반도(한반도) 출신자’라는 의미이며, ‘한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그러나 언뜻 단순하게 보이는 이러한 표기에 당사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설명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재일중국인의 경우에는 국적란에 ‘중국’만 있다. 외무성에 문의하면 “그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인지, ‘중화민국’인지는 당신이 정하십시오”라는 말이 돌아 온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상의 국적란에 ‘조선’만 있을 뿐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인 셈이다. 문제는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왜 ‘한국’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도 의식적으로 연구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일본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해방 후 ‘조선’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 어느 시기에 ‘한국’이만 들어졌다. 당시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최대 소수민족 집단이었는데 그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일본 정부는 치안 대책상 고민을 했다. ‘한국’의 창출은 재일조선인을 분단했다. ‘한국’의 창출은 그 선택자를 낳았고 역으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조선’의 실질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은 역시 국적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원칙적으로 ‘조선’ 적자에게 자국의 여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적자는 일본 정부가 발급하는 재입국허가서만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 재입국 허가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보호해 줄 자국 정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애매하게 남는다. 재일조선인의 ‘조선’과 ‘한국’적

을 둘러싼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구 소련, 중국, 또는 해방 후 미국으로 간 이민자가 정주국의 국적을 취득해 한국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 재일한국인은 오랫동안 한국적이거나 조선적의 외국적 정주자로 살아 왔다. 이민 후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소극적인 사례는 세계에서 그 예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 중에서도 “재일한국인은 왜 귀화해서 일본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렇게 재일 한국·조선인은 일본에 귀화하는 일에 소극적일까?

귀화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외견상 유사점을 들 수 있다. 일본문화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재일한국인의 경우, 일본인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① 이름, ② 국적, ③ 혈통 정도이므로 귀화하면 ① 본래의 이름을 잃고 일본적인 이름이 되며 ③의 혈통 이외의 차이가 소실되기 때문에 국적에 부여되는 정체성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거주국의 사람들과 외견상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재중국 조선족도 마찬가지인데(이름도 유사하다), 그들은 귀화하는 것에 그다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재일한국·조선인의 경우, 거주지가 단순히 외국 일반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한 중주국이다. 일본이 현재에도 과거 식민지 지배와 민족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재일 한국·조선인은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지키려고 귀화하지 않고 동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혈통에 집착해 귀화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부당한 취급에 대해 항의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귀화하지 않는다. 직선적인 동화를 하지 않기 위해 저항의 거점을 획득하고, 잃어버린 민족문화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인 것이다.

3. 일본에서 마이너리티로 산다?

일본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1980년 이후 대폭 완화되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후 한국인은 모두 일본국적이 되었기 때문에 국적으로는 차별을 할 수 없었고 호적으로 차별을(내지호적과 외지호적) 했다. 그 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해 GHQ의 점령하에 있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립을 회복하면서부터 불과 한 장의 통달로 제일 한국·조선인으로부터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제일외국인으로 만든 후,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갖가지 차별을 자행했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인권규약(1979)과 난민조약(1982)을 비준한 결과, 이를 위반한 국내법 국적에 의한 차별 조항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때문에 이 시기 이후 청춘을 보낸 제일 한국·조선인은 일본에 대한 감각이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이 같은 차별완화는 많은 인도차이나 난민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구미 선진국이 비난하자, 일본 정부가 톱다운식 결정을 한 결과다. 따라서 일본국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귀화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85년 부모양계혈통주의(일본명 : 남녀양계주의)로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귀화자가 급증한 것이다. 그 수는 1995년 이후 1년 동안 1만 명이 넘었다. 결혼의 경우 1975년에 국적상의 한국·조선인들 간 결혼은 처음 50%를 밑돌았고, 현재는 10%대로 낮아졌다. 이대로 가다간 20년 후, 30년 후에는 제일코리안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그러면 향후 제일 한국·조선인은 조상의 출신지에 대해 망향의 대상으로서만 가끔 생각할 뿐인 존재가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조상의 출신지는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출신지와 거주국인 일본과의 관계에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정권이 재판에 회부될 때 일본 정부나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의 총대를 뿔 것인가?”, “일본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가?”, “참정권은 국민 고유의 권리인데 아무리 지방 차원이 라 해도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면 그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의 총대를 뿔 것인가?”라는 발언에 응축되어 있다. 이 같은 말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바보 같은 소리다.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잖은가?”라는 웃음소리가 나올 경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극히 일부의 별난 사람으로 간주되어 무시당한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도 그렇네. 역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차별을 받지 않는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제일 한국·조선인이 모국어를 알지 못하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커녕 관심조차 없지만, 제일한국·조선인의 생활 실감과는 관계 없이 일본과 한국·북한의 우호관계와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일본 내 차별이 없는 생활은 실현될 수가 없다.

제일한국·조선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제일한국·조선인이 한국적·조선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조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란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게 “조국과 일본 사이에 국익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일본의 국익이 상실된다”는 비난 또한 거듭된 적이 있다(故 아라이 쇼케이[新井將敬] 중의원 의원, 1998년 자살. 타살설도 있다). ‘국적보유자 = 해당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자’라는 도식 속에는 분명 윤리의 비약이 있다. 제일 한국·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아무리 일본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다고 본인

이 말해 봐야, 일본과 한국·북한의 사이에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세상 사정에 어두운 무지한 일본인이나 확신범(確信犯)적인 일본인으로부터도 재일한국·조선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의 총대를 댈 것인가?’라고 추궁당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재일한국·조선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북한·일본의 화해와 항구적인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대립이 극심하면 양쪽으로부터 불신의 눈총을 받는다. 절반 밖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국적·혈통뿐만 아니라 일본과 본국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혼혈아는 아이노코(「間の子」(사이의 아이) = half), 즉 쌍방으로부터 언제까지나 절반씩만 믿음을 얻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두 본국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두 문화를 살아가는 아이노코(「愛の子」(사랑의 아이) = double)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보수 강경파의 태도가 동아시아 전체에 강경한 반일 내셔널리즘을 부추겨 왔다. 한국·북한·중국에서도 반일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당시 정권의 구심력 강화에 이용해 왔다. 결과적으로 보수강경파가 동아시아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상호의존관계, 공범관계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재일한국·조선인을 둘러싼 곤란한 문제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4. 한국의 대일 내셔널리즘

한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은 식민지화 전후부터 생긴 저항의 내셔널리즘을 계승하고 있다.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침

략의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일본보다 개방적이면서 보편성이 높고 혈통에 대한 고착은 적다. 단군신화에 의거하면서도 단군신화가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외래의 보편적인 종교나 사상을 수용하여 높은 보편성으로 내셔널한 자기 주장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변영호(2010), 『조선유교의 특질과 현대 한국 -이퇴계·이율곡에서 박정희까지-』, 크레인, 특히 제5장).

일본어에서 반일이라는 말은 폐쇄적이라는 어감이 강한데, 어떤 일본인 관찰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한국의 반일은 폐쇄적이었던 적이 없다.

“특히 역사인식이라는 점에서 일본인은 타자가 아니고 우리이며, 예를 들어, 교과서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든 그들은 한 손으로는 주먹을 치켜들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이쪽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 해방 후 한국인의 내셔널리즘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이에 대한 저항의 기억으로 지켜져 왔다. 무도한 일본의 통치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 그것이다. 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나 일본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의 역사인식을 공유하지는 것이며, 이는 한국인 내부의 작업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 일본인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교육의 대상이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때로 공격적이었지만 폐쇄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싫으면 상관하지 마!’라고 이쪽이 질릴 정도로 그들이 일본이나 미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에게 늘어 놓았다”(이토 준코[伊東順子](2001), 『병적인 한국 내셔널리즘』, 洋泉社新書, 27~28쪽, 227쪽).

그리고 한국의 ‘반일’ 감정은 김영삼 정권시절 세계화 이후에 변화를 보였고 2002년 월드컵을 경계로 급속히 약화되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인이 일본을 신경쓰지 않게 되어 지내기가 편해졌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과도했던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WBC(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가 끝나자 그(스즈

키 이치로 발언에 관한) 화제는 썰물처럼 흔적을 감췄다. [...] 월드컵 때에는 그 이후로도 반년 이상 계속 흥분상태 였었는데……. [...] 월드컵과 WBC 사이가 4년 동안에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다. ‘요컨대, 월드컵이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지. 그걸로 한국인의 대일 콤플렉스는 해소됐어.’ 한국에 사는 일본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 거의 전국민이 참가한 피날레 축제. 적어도 월드컵을 경계로 재한 외국인에게 한국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기 편한 나라가 되었다”(伊東順子(2007), 『이제 일본을 의식하지 않게 된 한국인』, 洋泉社新書, 42~43쪽).

그리고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한국도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반대의견(‘참정권은 국민 고유의 권리’,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면 나라가 망한다’)에 부딪혔으나, 2005년 6월에 반대를 뿌리치고 법안을 성립시켰다. 한국은 폐쇄적인 국민의식을 극복하고 정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힘이 강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5. 한·북·일의 화해를 저해하는 일본 내 신사상 조류

화해의 기점이 되어야 할 일본의 변화는 부족했다. 하지만 2004년 4월 3일 배용준이 하네다 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약 5,000명이나 되는 팬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 TV에 몇번이고 방영되었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온사마 붓은 한류 붐으로 발전하여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예감케 했다(반면, 맹렬한 북한 때리기도 병존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민주당 주도의 정권이 탄생하면서 한일의 과거 청산에 전향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 내에서 이전보다 세련된 학문형태로 혐한(嫌韓) 조류가

생겨나기도 했는데,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이를 대표하는 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筑波大学)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지역이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많은 불협화음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다. 그 불협화음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개했던 식민지 정책과 중국에 도발했던 침략전쟁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속죄가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협조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지금까지 어떤 윤리성을 띠고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차츰 그런 논리의 미숙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불협화음은 오히려 그들 쪽에서 오는 내셔널리즘의 가락이요, 악보는 몇 세기에 걸쳐 고쳐 쓴 적이 없는 중화사상의 악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에게 끝없는 ‘반일’과 끝까지 싸워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한다(古田博司(2005), 『동아시아 ‘반일’ 트라이앵글』, 文春新書, 44~45쪽. 이하 이 책은 쪽 수만을 표기한다).

후루타 히로시 씨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반일은 ‘중화사상 위에 근대 내셔널리즘이 놓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30쪽).

첫째, 중화사상이다. 후루타 히로시 씨가 말하는 중화사상이란 동아시아의 “한 국가를 독점한 한 민족이 자기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고, 주위의 소수민족이나 여러 나라를 멸시하는 것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자국의 역사관을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생각해 타국에 강요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맹주성을 갖는 것에 굳이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古田博司(2002), ‘중화사상’, 『한국학의 모든 것』, 新書館, 20쪽). 조선과 중국에서 중화사상의 핵심은 유교의 ‘예(禮)’이나, 일본의 경우에 18세기 후반 이후 ‘태평치세가 가져온 경제적 번영의 프라이드’라고 지적한다. 이렇

게 후루타 히로시 씨는 중화사상에서 ‘예’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중국과 경제력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을 대립적으로 그리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에 건주어 일본의 중화사상만은 그 핵심이 예교(禮敎)가 아니라 본래 경제력이기 때문에 도덕으로 상하를 다투는 전술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한국·중국이 ‘위안부’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해 도덕적으로 뒤떨어졌다고 비난하는 등 왜 집요하게 자신을 상위에 두고 싶어 하는지 일본인은 그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른다. 현재 동아시아의 중화쟁탈전은 경제력의 일본 대 도덕전술을 구사하는 한국 및 중국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자문화 중심주의·자국중심주의를 내세워 일본과 문화적으로 싸우고 있는 셈인 것이다”(『중화사상』, 23쪽).

조금 비판적으로 언급해 보자. 한국·중국의 중화사상의 핵심은 예(禮)이며, 일본은 경제라는 도식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다. 일본 중화사상의 핵심이 경제라는 것을 후루타 히로시 씨는 인용문헌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그런 말은 쓰여 있지 않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있던 중국과 조선에 비해, 일본의 경우 역성혁명이 없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일본 중화사상의 핵심은 만세일계의 천황제이며 그 결과로 평화나 경제적인 번영, 혹은 무력이 찬미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태평했던 에도시대(江戸時代) 후기에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번영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에는 진무천황(神武天皇) 이후의 무덕(武德)이 강조되어 천황의 비현실적(미신적)인 무(武)에 대한 신앙으로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했었던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고대 이래 많은 우연 덕분에 천황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므로써 혈연 지배의 시간적 형식은 견고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을 놓고 형제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아 혈연지배의 공간적인 형식은 불안정했는데,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역성혁명만은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외래의 유

교를 수용해 왔다(모리모토 준이치로[守本順一郎](1974), 『일본사상사의 과제와 방법』, 신일본출판, 제1·2장, 2008년 未來社에서 재간행), 시간적 형식의 견고한 신도(神道)와 공간적 형식의 정비된 유교는 이렇게 융합하며 근대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후루타 히로시 씨의 말처럼, 일본 중화주의의 핵심이 경제라는 것은 무리이며, 일본인에게 유교적인 도덕관은 상당히 뿌리내려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국·중국이 ‘위안부’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일본이 도덕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비난하면서 왜 집요하게 자신을 상위에 놓고 싶어하는지 일본인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런 점은 잠시 제쳐두고 후루타 히로시 씨가 왜 이런 억지 도식을 만든 것인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화사상에 대한 후루타 히로시 씨의 처방전을 보면, 그 의도는 점점 분명해진다. 후루타 히로시 씨는 우선 “일본이 중화사상을 버려 동아시아에 대한 모멸감을 없애나가자”라고 하는 점에 대해 일본의 중화사상은 경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의 흥륭(興隆)이 크게 좌절하지 않는 한 자연히 진행될 것이므로 일본이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동아시아 각국이 지닌 중화사상의 열기를 식히도록 하는 쪽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도덕 운운하는 낡은 지향성으로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근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본 실증연구의 수준을 그들에게 전하고 정사(正史) 강요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93쪽).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서 일본의 수준 높은 실증연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후루타 히로시 씨가 들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다.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씨의 논문 「제2차 한일협약 조인과 대한제국황

제 고종』을 소개하면서 “그 사료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연구된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하라다 다마키 교수가 그것을 처음으로 잘 평가해 주셔서 이 협약의 체결에 관해 한국의 고종황제가 일본 측 협약안을 수정하고 조인하는 방향으로, 즉 교섭 타결이라는 일관된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실증했다. 따라서 제2차 한일협약은 한국의 고종황제의 의도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사연구상 매우 큰 성과로서, 앞으로 이 선상에서의 연구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중화사상』, 107쪽)고 평가한다. 그러나 주요 사료로 거론된 『고종실록』은 대한제국기 연구의 기본자료이면서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많아 신중하게 인용해야 하는 자료다.

그런데 『한일병합과 현대』에 수록된 이태진(李泰鎭) 씨와 강성은(康成銀) 씨의 논문을 읽은 후에는 후루타 히로시 씨의 설명이 그저 농담처럼 여겨졌다. 후루타 히로시 씨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아주 최근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태진·강성은 논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 정대균(鄭大均) 교수(슈토타대학)는 “재일·강제연행의 신화”(2004)라는 책에서 재일조선인 1세로서 일본에 온 사람은 1930년대의 이주노동자가 전형적이었고 전시 중의 노무동원으로 일본에 온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 거의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실증했다. 따라서 강제연행은 없었다”면서 ‘강제연행이라는 선전(propaganda)’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조선인 강제연행은 없었는가」(다나카 히로시[田中宏]·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편(2007), 『한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20장』)의 정대균 씨 비평을 읽어보면, 정대균 씨 등의 의도는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하기 위한 선전(propaganda)’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지금까지 정대균 씨 등이 도노무라 마사루 씨에게 반론한 사실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둘째, 근대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반일이다. 이 점에서 최근 기무라 칸

([木村幹], 고베대학) 씨는 한국에서 반일이 영구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유행한다고 했다(이하 인용은 기무라 칸(2004), 제6연습 ‘한일관계는 왜 틀어졌는가’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集英社新書).

과거의 중주국과 식민지 사이에 ‘공통의 역사인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旧중주국과 旧식민지 간에 과거 식민지 지배나 그와 관련된 ‘과거’가 오늘날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 사이에는 한·일이 말하고 있는 의미의 ‘과거’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현재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때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른 중주국과 식민지 사이에 한·일과 같은 과거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일까? ‘대부분의 식민지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민족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승리함으로써 중주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해 왔다. 이 경우 운동의 최종 국면에서는 중주국과 민족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사이에 독립을 향한 교섭이 이루어진다. 독립을 목전에 두고 승리에 의기양양한 식민지 측과 스스로 힘의 한계에 직면해 초취해진 중주국 양자 사이에는 스스로 승리와 패배를 깊이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출현한다’.

기무라 칸 씨는 영국이 인도에서 패배하여 철수하는 장면을 인용하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에는 그 같은 장면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반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일본의 지배를 무찌르고 스스로 독립과 민족의 긍지를 회복할 귀중한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렇게 해서 일본인과 한반도 사람들은 스스로 관계된 식민지 지배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을 빼앗겼다. 양자에게 이 ‘이야기’는 영원히 미완이 되었다. …… 한반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독립’과 ‘해방’이라는 해피엔드로 끝나

는 아름다운 ‘민족독립운동 이야기’일 터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 즉 승리자가 된 그들이 일본인 앞에서 환호하는 장면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민족적 좌절감을 불식시킬 기회가 사라졌고 그 울분은 잃어버린 마지막 장면을 찾아 계속 방황케 한다. 일본과 한국이 끊임없이 ‘과거’ 문제를 놓고 틀어져 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단순하고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그 하나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화해 의식’의 부재 때문에 영원히 역사분쟁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금새 다른 이유가 떠오른다. 예를 들어, 일본제국은 대영제국만큼 제국의 논리를 갖고 있지 않던 미숙한 제국이었던 것이다. 식민지 출신자에게도 제국 내부에 출세의 길이 널리 열려있던 대영제국과 그렇지 않았던 일본을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은 또 식민지들이 독립한 후에도 구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영연방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 오늘날까지 그 상황은 대략 유지되고 있다.

아일랜드인은 대영연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다. 오늘날 영국 내에서 이중 국적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럼에도 영국은 그들에게도 지방참정권은 물론,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 또 한반도에서는 대략 형성되어 있던, 혹은 형성되어 가던 근대적인 민족이 저항내셔널리즘을 전개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 등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은 일본이 한반도를 영구히 병합하기 위해 철저하게 동화정책을 시행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는 한반도가 일본과 문화적으로 동등했거나 혹은 높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모두 무시하고 ‘화해의식 부재의 일원론’으로 한국의 반일을 설명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기무라 칸 씨의 논의는 부당하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한

국의 반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므로 일본의 사죄도 의미가 없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기무라 칸 씨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기형적인 형식으로 식민지배가 종식된 이상,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가 다른 구종주국과 구식민지 여러나라의 관계와 같은 일은 없다. 그것은 이제 일본과 한반도의 이른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무라 칸 씨는 감정을 매우 억제하는 편이어서 사죄는 필요 없다는 식의 명시적인 표현을 하기보다 화해의 노력이 필요함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들은 ‘과거’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과거에 관련된 논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각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과거’를 질질 끌면서도 어떻게든 가능한 한 그들과 함께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를 피해 논의하는 것도 아니요, ‘교류로서 해결’이라는 마술을 믿고 거의 남에게 맡기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와 관련한 합의없이 한·일이 이만큼 긴밀하게 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실적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무라 칸 씨는 감정을 매우 억제하는 편이었으나, 그의 주장이 일단 기무라 칸 씨의 손을 떠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후루타 히로시 씨는 “기무라 칸 교수가 화해 의식을 행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극히 정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러므로 식민지배라는 ‘과거’와 관련된 논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각오로, 한국이나 북한과 그 문제를 놓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간다는 결의를 굳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기무라 칸(2004), 제6연습 ‘한일관계는 왜 틀어졌는가’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集英社新書, 104~105쪽)고

전투적으로 선언했다. 곧이어 일본의 높은 실증연구를 내세워 한국의 도덕에 종속된 '정사(正史)'에 대한 전투적인 필치를 시작하는데, "고종황제가 제2차 한일협약의 타결을 주도한 사실을 하라다 다마키 교수가 실증했다", "정대균 교수가 조선인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증명했다"고 적는다.

기무라 칸 씨는 한일조약 당시를 제외하고 한일 쌍방의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의 문제는 이제 이미 '과거'의 일로 반드시 '현재'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생활과 관계가 없는 이상, 사람들은 쉽게 타협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지켜야 할 것은 스스로의 자긍심과 정체성 뿐이다. 타협과 납득의 여지는 이렇게 상실될 것이다" (기무라 칸(2004), 제6연습 '한일관계는 왜 틀어졌는가'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集英社新書, 138쪽)라면서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화해 의식의 재현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동아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일간 화해의식의 필요성에 찬동하고 있다. 바로 일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경제적 동기, 즉 동북아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동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도 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익을 이유로 한 일이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무라 칸 씨는 이를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6. 맺음말

최근 일본에서는 '품격'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근대화의 역사를 100년 이상 갖고 있는 일본은 과거 역사문제를 제외하면, 아직 한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도 많다. 일본이 과거를 진지하게 사죄하고 품격 있는

국가가 된다면 가장 곤란한 나라는 사실 한국(그리고 중국)일지도 모른다. 일본이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한국은 일본을 비난할 부분이 적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혐한파가 한국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국은 곤란해질 것이다. 이후에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사회다원화와 같은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품격있는 국가인가, 그리고 품격 있는 국민인가.

일본에 사는 일본인과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서로 경쟁하다 지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일한국·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받는 차별에서 해방되고 한국에서도 반일 내셔널리즘의 희생양이 되는 일도 없어서 살기 좋은 공간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처럼 즐거운 꿈을 꾸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이 언젠가는 정몽(正夢)이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미래를 위한 선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차하순

1. 머리말

약소국의 종속을 강요한 제국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으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인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시도나 1912년의 페스(Fez)조약을 계기로 한 프랑스의 모로코인 동화(同化)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실패로 돌아갔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인들이 자주권을 회복했으며, 그 이래 15년 동안 세계인구 1/4 이상인 약 8억에 달하는 40개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주도자와 피해자 간의 과거청산은 실질적으로 완결되지 않았다. 제국주의 가해세력은 지난 날의 역사적 과오에 관해 피해 국민에게 참회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21세기가 시작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100년 전 한국인의 정체성을 박탈한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뉘우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 침략당사국 지도층은 역사의 진실 앞에 진심으로 무릎꿇고 반성해야 하며 자국민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선도(先導)해야 한다. 한일강제병합은 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한국인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제국주의 무대에서 공연된 동아시아의 비극이며 세계사의 비극이었다. 제국주의 침략국이 식민지 지배를 회개(悔改)하지 않는 한, 역사분쟁과 외교적 마찰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적 미래를 위한 화해도 불가능하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도덕적 채무상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바람직한 지도층의 역사인식

정치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거나 이에 죄책감을 표현하는 적극적 대응은 결코 정치가로서 개인적 불명예라거나 자기 나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지도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처칠은 1919년의 암리차르(Armritsar) 학살사건에 대해 참회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인도가 바라는 독립을 외면한 채 인도 국민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전시 긴급조치를 연장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 군중에게 영국군은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처칠은 ‘인도인들을 한군데 몰아놓고 총알 하나로 셋이나 넷을 죽였다’고 현장 묘사를 하면서 “이는 가공할 학살이며 역사상 유례없는 사악한 사건”이라고 크게 뉘우쳤다.

또 다른 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1949년 출범한 서독의 초대수상 아데나워는 나치시대 청산에 착수했으며, 1960년대에는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화해와 보상을 시작하였다. 1970년 말 브란트는 바르샤바 계도 봉기(蜂起)기념물에 조화(弔

花)를 바친 후 놀랍게도 내외귀빈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상하였다. 훗날 그는 수백만의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해 “나는 최근세사(最近世史)의 무게에 눌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일을 실행하였다”고 말했다. 그의 ‘바르샤바에서의 무릎 꿇기(Warschauer Kniefall)’는 독일의 역사청산뿐 아니라 유럽화해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과거사에 대해 특유의 명분(다테마에 : 建前)과 본심(혼네 : 本音)을 오락가락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한편으로 반성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런 이중성은 주변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고 동아시아 화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45년 이래 역대정권 실세는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극우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한때 침략세력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상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지도자들은 분별없는 문제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역사반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고위정치인은 전범으로 극동재판을 받은 바 있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였다. 1957년 그는 일본수상으로서 전쟁 중 잔혹행위를 반성하고, 앞으로 일본은 평화의 길을 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1960년대에는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가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진심으로 유감스럽고 깊이 회개(悔改)한다”고 자성하였다. 이러한 반성은 1970년부터 빈도가 높아져 1990년대에는 더욱 자주 공표되었으며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예컨대, 과거전쟁의 책임을 통감 반성한다(1972 : 田中角榮), 일본 정부 및 국민이 과거에 한국 등에 깊은 고통과 큰 손해를 끼친 것을 자각하고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1982 : 宮澤喜一), 일본의 행위로 조선반도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을 겸허히 반성”, 솔직하게 사죄한다(1992 : 宮澤喜一),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충

심으로 사죄와 반성한다”(1993 : 河野洋平), “세계를 향해 과거 역사의 반성과 새로운 결의를 명확히 하고,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나 식민지배로 고통과 슬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한다”(1993 : 細川護熙)는 등의 발언이 잇달았다. 특히, 1994년 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수상은 일본이 지난 특정 시기에 침략행위나 식민지배 등으로 “아시아 근린제국 등의 국민들에게 건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주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여 “아시아 근린제국과 관계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명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사죄와 반성은 일본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했으며 천황까지 가세하였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무라야마 담화는 지루할 정도로 되풀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1942~]는 일본수상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여 후세에 올바르게 전할 것을 다짐하였다(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사죄와 반성을 한 적이 있는지 사실 여부 필자 확인 필요). 그는 2002년 또다시 과거 식민지배를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고 표명하였다.¹

그렇다면, 과연 일본 지도층은 진심으로 역사를 반성하고 죄책감을 통

1 이상 인물들의 간략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 수상(56, 57대);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 1898~ 1979] : 내각관방장관, 외무성장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1918~1993] : 중의원의원, 수상(64, 65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1919~2007] : 참의원 의원, 경제기획청장관, 외무성장관, 수상(78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1937~] : 중의원의장, 내각관방장관, 자유민주당총재;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1938~] : 참의원의원, 수상(79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1924~] : 중의원의원, 사회당당수, 수상(81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1942~] : 중의원의원, 수상(87, 88, 89대); 구보타 강이치로[久保田貴一郎] 한일회담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 한일회담대표.

감했는가?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공식적 언명과는 달리,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국주의적 과거를 합리화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 일부만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정책은 사회기반시설을 해준 것(1953 : 久保田貫一郎), 서양제국주의의 아시아 진출을 일본이 저지한 것(1963 : 椎名悦三郎), “36년 간의 일본 지배는 착취가 아니라 선의였다”(1965 : 高杉晋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사로 병합조약이 체결되었다(1965 : 佐藤榮作), 일본이 아니면 조선이 러시아의 속국이 되었을 것(1986 : 藤尾正行), 식민지배라는 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쓰여 있지 않다(1995 : 渡辺美智雄), 한일병합의 가장 큰 책임은 도장을 찍은 이완용에게 있다(1996 : 江藤隆美) 등의 발언이다.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뜬 제2차 세계대전 세대에 속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젊은 세대에까지 전승되었다. 예를 들면, 2003년 아소 타로[麻生太郎, 1940~]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조선인들이 원해서 한 것, 2005년 모리오카 마사히로[森岡正宏, 1943~]는 전쟁이 일종의 정치행위이며 일본은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전쟁을 한 만큼 승리한 쪽이 정의이고, 패배한 쪽이 악이라고 할 수 없다며 “A급 전범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7년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1954~]는 라디오 방송에서 국가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2007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는 군 ‘위안부’에 관해 “일본군이나 정부가 납치하는 것처럼(여성들을) 데려가지는 않았고, 위안부 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언이 없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²

2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1901~1975] : 수상(61, 62, 63대), 기시 신스케의 實弟, 노벨평화상수상;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1917~2006] : 중의원의원, 노동성장관; 와다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1923~1995] : 중의원의원, 후생성장관, 외무성장관;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1925~2007] : 중의원의원, 건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지도층의 역사인식은 명백히 이중적이다. 그들은 표면상 전쟁책임을 논하고 식민지 지배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본심은 내셔널리즘적 일본 현대사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을 보면서 우리의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쟁책임을 통감하고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힘들까? 솔직한 회개는 개인의 불명예인가? 역사적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일본이란 나라를 욕되게 하는 일인가? 영국군의 잔학행위를 뉘우친 처칠이나 나치 만행을 사죄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자기 나라 명예를 더럽히고 자국민을 모독했는가? 그들의 언행은 결코 정치가로서의 생명을 손상을 주거나 국가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다. 빌리 브란트의 경우, 바르샤바 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그의 명성은 국제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현재를 주도하고 미래를 관리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은 실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의 역사이해가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문제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³ 법·경제·정치학 등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회지도층이 상대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지 않는 경우,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⁴ 역사문제가 위협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국가적 이익을 증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둘째, 지도층이 형성한 제도권 주류의 역사해석이 국민 여론이나 국민의식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

설성장관, 총무청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郎, 1940~] : 외무성장관, 수상(59대); 모리오카 마사히로[森岡正宏, 1943~] : 중의원의원, 후생노동성정무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1954~] : 중의원의원, 문부과학성정무관.

3 Robert V. Daniels(1972), *Studying History : How and Why*, 2nd ed., Prentice-Hall, p.16.

4 Michael Howard(1991), *The Lessons of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pp.18~19.

다. 역사는 우리 의식 속에 살아 있는 강력한 힘이다.⁵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대중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거대세력으로 역사지식을 대중화하는 원천이며 모든 가정에 연결되는 역사정보의 저수지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치지도층에게는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구된다. 국가정책 수립자나 여론 주도자인 그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역사이해에 영향을 주고 일반대중의 역사인식을 선도하는 역할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들이 평화 및 인권이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정치가라면, 처칠이나 브란트와 같이 모름지기 역사의 진실 앞에 '무릎 꿇기'를 서슴지 말아야 한다.

3. 세계화시대에 맞는 열린 자국사교육

타자(他者)인식에 기초한 '열린' 자국사(national history)교육은 역사적 채무이행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타자인식에 기초한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는 '다각적 관점(multiperspective)'에 따른 이해를 목표로 하는 내셔널리즘으로부터 해방된 역사교육이다. 내셔널리즘에는 신화와 현실, 진실과 오류가 뒤엉켜 있다.⁶ 19세기 유럽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되면

5 John Tosh(1984), *The Pursuit of History*, Longman, p.8.

6 Boyd C. Shafer(1955), *Nationalism : Myth and Reality*(Harvest Book : New York), p.7. 많은 역사가들이 얼마 전까지도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역사가가 되는 것은 '애국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한다. 예컨대, 역사가는 민족적 과거 및 민족문화의 기원을 탐색하고 '민족의식의 수호자'임을 자부하고(Felix Gilbert(1977), *History : Choice and Commitment*, Belknap Press, pp.387~388). "자국사는 애국적 또는 민족주의적 역사와 같은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민족은 내셔널리즘 이념과 동일시되었다"(Gertrude Himmelfarb(1987), *The New History and the Old*, Belknap Press : London, 1987, p.140)라고 설명하였다. Iggers는 19세기 유럽의 역사가들이 "편파적

서 ‘민족’을 개념화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을 주장하는 민족사관이 대두하였다. 민족사관은 민족(또는 국민)을 일종의 유기체 또는 역사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원리로 설정하였다. 자국사는 교육과정에서 우월적 위상을 차지하고 엄격한 국가통제를 받았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에서 국가는 역사연구를 장려하고 자료발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역사교사의 훈련을 책임질 대학교수를 임명하기까지 하였다. 한마디로 역사학과 내셔널리즘 사이에 ‘강력한 동맹관계’가 성립하였다.⁷ 그 결과 근대사학사에서 내셔널리즘은 “가장 흔하고 가장 음흉한 형태의 편견”이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국수주의적 편견의 한 예를 들면, 영국 역사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산호해 전투’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투로 기술했는데, 사실상 영국해군은 거기 있지도 않았다.⁸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내셔널리즘적 역사인식의 한 형태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노출되었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이른바 극동재판 때의 A급 전범이 국가를 위해 죽었음을 기리는 것이며,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책임이 일본에 없음을 선언하는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한 합리화다. 일본 수상 가운데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1986),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1996)가 야스쿠니를 참배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강한 항의에 부딪

인 역사 해석과 직업적 윤리”가 서로 상호 모순된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이 경향이 심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국민으로서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국기(國旗) 아래 뭉쳤다”라고 지적하였다(Georg G. Iggers(2001), “The Uses and Misuses of History : The Responsibility of the Historian, Past and Present,” in *Making Sense of Global History*, ed. by Sølvi Sogner, Universitetsforlaget : Oslo, p.315).

7 John Tosh(1984), p.3.

8 David Thomson(1974), *The Aims of History*(Thames and Hudson : London), p.28.

쳤고,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2001년을 시작으로 재임 중 6차례나 참배하였다. 2006년 8월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감행하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처럼 신사참배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국내문제라고 강변하였다.⁹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의 국내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배경에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쟁책임 면책은 주로 냉전시대를 대비한 미국 정책에 그 태생적인 원인이 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책임을 져야할 일본 고위공직자들은 숙청당하지 않았으며 관료구조는 점령당국에 의해 그대로 존속되었다.¹⁰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안보의 초석임을 인정하고 냉전시대의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1950년대 초에는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소련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수립되었다.¹¹

1945년 9월 27일 일본천황 히로히토는 전쟁책임이 오로지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직접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그를 면대하기를 거부하고 히로히토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비롯한 일본 왕실관계자들의 전쟁범죄를 면책하였다. 더욱이 일본천황의 왕위포기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¹² 이 사실은 두 가지

9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1918~] : 수상;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1937~2006] : 수상(82, 83대).

10 Akira Iriye(1998), “East Asia,” ed. by Michael Howard and William Roger Louis, *The Oxford History of the Twenty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 New York), p.206.

11 Akira Iriye(1998), pp.208~209.

12 “MacArthur aide : U. S. must learn form errors,” an interview with Prof. Patrick Lennox Tierney by Matthew D. LaPlante *The Salt Lake Tribune* published December 7, 2006(http://www.sltrib.com/ci_4794305).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본사회지도층이 그들이 저지른 전쟁에 대해 적절한 보상은 고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 군국주의적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를 제국주의적 세계 대세(大勢)의 부분으로 합리화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사회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사상이 정착하기는 어렵게 되고 내셔널리즘의 뿌리는 사회적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일본 내셔널리즘의 또 다른 표출은 역사교과서 기술에서였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검정제도에 나타난 과거사 인식은 이른바 ‘병적인 내셔널리즘’¹³에 입각한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아베 신조는 일본 우익의 역사서술을 선도하는 한편, 그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수정주의적 요구는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이라고 일축하였다. 그것은 결코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타자의 입장에 선 역사인식이 아니었다.

물론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초에 이웃 나라들을 존중하는 교육원칙을 내놓은 바 있다. 즉, 1982년 교과용 도서검정에서 침략 대신 진출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 문부성이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을 검정기준에 추가하였다. 그것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근현대사 서술에서 국제이해와 협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여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역사인식을 공유할 것을 다짐한 것이었다. 이는 외관상 타자인식에 기초한 역사이해를 의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린조항이 과연 관련 국가들의 ‘입장의 상호교환’을 확보하는 상대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가? 그 후 일본 정부의 검정제도나 교과서에서 근린조항의 기본정신, 즉 국가 간 자유, 권리와 평등에 입각한 역사관은 실제 역사교과서 서술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역사문제로 인한

13 Gertrude Himmelfarb(1987), *The New History and the Old* (Belknap Press : London), p.141.

국제적 갈등은 해소될 수 없었다.

모든 이견(異見)과 갈등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해소될 수 있다. 즉, 나의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과 바꾸어 생각하는 상대화가 필요하다. “허위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관점을 분석하고 남의 시각을 인식하는 것이다.”¹⁴ 유럽에서는 인접한 나라 간에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시도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었다. 1936년 프랑스 교육감이 된 이사크(Jules Isaac : 1877~1963)는 프랑스인과 독일인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고 각별히 역사교과서 수정에 주력하였다. 그의 ‘두 가지 관점’(deux points de vue) 이론에 의거하여 프랑스-독일 교과서 협의활동은 상대방의 교과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다시 이것을 검토케 한 후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를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⁵

초국가적 요인들로 인한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20세기 후반부터는 세계화로 촉발된 문화권 간의 대화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주며, 타자에 대한 무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내셔널리즘이 주는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¹⁶ 국민이나 민족이 더 이상 역사서술이나 교육의 의미 있는 단위가 아니다. 내셔널리즘은 한 때 19세기 및 20세기 전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일 수는 없다.¹⁷ 의식 수준이

14 Georg G. Iggers(2001), “The Uses and Misuses of History : The Responsibility of the Historian, Past and Present”, in *Making Sense of Global History*, ed. by Solvi Sogner(Universitetsforlaget : Osla), p.317.

15 이병련·김승렬·박지현(2002),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사례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5쪽.

16 Montserrat Guibernau(1996), *Nationalisms : The Nation-State and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Polity Press : Cambridge, UK), p.149.

17 E. J. Hobsbawm(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 Programme, Myth, Reality*(Cambridge Paperbacks : Cambridge, UK), p.181.

높은 선진사회에서는 “자신의 사회와 다른 사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자신의 문화가 넓은 문명이나 모든 문명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이해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¹⁸ 더욱이 참다운 의미의 역사는 자국사의 올바른 이해를 추구할 뿐 아니라 남의 나라, 다른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공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자신의 가설(假說)에서 빠져 나와 상이한 국가전통을 이어받은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 들어설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국제관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¹⁹

새로운 시대는 국민국가 또는 단일국가의 틀, 특히 ‘민족주의(ethnocentrism)’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셔널리즘 정치를 빼놓은 세계화시대의 역사”다.²⁰ 이는 역사 과목이 민주시민의 자유 정신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는 인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과목이며 역사는 “인간연구의 초석”으로서 “인간의 개별적·특수적 이해만이 아니라 보편적·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화 시대의 열린 자국사 교육이다. 강조하거니와 동아시아 공동체적 유대와 화해를 향한 새로운 역사인식은 내셔널리즘의 아집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범인류적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4.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이 100년째 되는 해에 무엇보다 일본 정치지도층이 반성(反省)과 미화(美化)의 이중성을 버리고 역사적 진실 앞에 무릎 꿇

18 Arthur Marwick(1970), *The Nature of History*, Macmillan, p.13.

19 John Tosh(1984), p.17.

20 Gertruide Himmelfarb(1987), p.15.

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점은 그들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있다. 1993년 8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은 “일본국민과 근린 제국민이 손을 맞잡고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상호의 고통을 극복하고 구축되는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라는 부동의 토대가 불가결하다”고 천명하면서, 덧붙여 일본으로서는 “모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관계 여러 나라들과의 상호이해를 한층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의 사실들은 그 위에 미래를 쌓는 주춧돌이다. 미래 없는 과거는 있지만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 즉, 과거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 속에서 미래를 찾고자 함이다. 과거 그 자체는 바꿀 수 없으나 과거를 인식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역사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문명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며 동시에 앞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한 역사가의 책무가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가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적 껍질 바깥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가를 가르쳐야 한다.²¹ 인류사회가 공통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는 시대에서는 문화적·학문적 국제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역사가들은 국민의식의 고취나 이념적 선전에 휘말리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하면 국제공조가 가능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역사문제는 국내정치의 쟁점일 뿐만 아니라 흔히 국가 간 외교적 갈등 요인이 된다. 역사의 문제가 지역적 이해관계, 관련국가의 국내정치 또는

21 Michael Howard(1991), p.18.

국제정치적 역학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만큼 역사해석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가 되기 쉽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활용하는 것이 근대까지 지속된 전통이었다.²² 중국 사학사의 전환점을 이룬 당(唐)에서도 역사는 ‘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고 역사서술의 권한은 정부 수중에 있었으며 역사는 당연히 지배자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²³

최근 예루살렘 동쪽 서안(西岸)지대의 Silwan(또는 Kfar Shiloah) 발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사이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Silwan은 예루살렘에 인접한 옛 도시로 대부분 아랍인의 주거지였다. 이스라엘 정착민 조직(Elad)은 ‘이스라엘 고적위원회(IAA)’의 지원을 받아 팔레스티나 쪽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역사를 증명하려는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발굴을 계속하였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그리스를 거쳐, 중세의 십자군·오스만 터키·영국·요르단까지 포함하여 120차례나 역사적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와 전통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역사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거나 그 소유를 주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3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의 역사가 중복·중첩되는 경우에 어느 한 국가가 그 지역 역사의 ‘소속’, ‘소유’ 또는 ‘독점’에 대한 주장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경이나 영토는 변천하기 때문이다. 중첩된 지역의 역사는 관련국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국경이나 영토경계가 수시로 변화한 유럽의 전체 역사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역사분쟁을 피하는 최우선 과제는 ‘정치 없는 역사(history without

22 Ku Weiyig(2001), “Baobian and Jingshi, on the Role of the Traditional Chinese Historian,” in *Making Sense of Global History*, ed. by Sølvi Sogner, Universitet sforlaget : Oslo, pp.338~339, p.341.

23 Ku Weiyig(2001), p.345.

politics)’, 즉 ‘역사의 탈정치화(脫政治化)’다. ‘탈정치화’란, “역사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사회적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함을 뜻한다.²⁴ 역사문제는 정치나 외교의 장에서 벗어나 본래의 영역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역사는 정치라는 제단 위에 놓인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는 편파성을 버리고 역사적 진실에 최우선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그 목표를 향해 노력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한다. 편파성이란, “순수한 객관성과 가치중립적 지식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를 연구자의 이념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종속시키는 것을 말한다.²⁵ 특히, 역사의 진실을 가로막는 신화는 위험하다. “신화는 잘못된 태도와 대응을 유도하며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양심적인 역사가의 진정한 목표는 일반인의 역사지식을 단순화하거나 왜곡하는 신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역할 때문에 역사가는 백내장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안과의사에 비유할 수 있다.²⁶ 진정한 의미의 역사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 자신의 사회에 관한 신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의식을 형성하는 신화를 교정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갈등·충돌·긴장을 택하는 대신 공존·상생·평화를 택하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에 관해 믿는 모든 것은 과거에 관해 무엇을 믿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²⁷ 역사가들은 역사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의 결속, 개혁능력, 미래 적응도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비단 정치지도자들이나 여론 형성층뿐 아니라 각별히 일반대중의

24 Peter Novick(1989), *That Noble Dre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

25 Eric Hobsbawm(1997), *On History*, The New Press, p.124.

26 John Tosh(1984), pp.16~17.

27 Michael Howard(1991), p.13.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중의 잘못된 인식이 우리와 상관 없다거나 순전히 학문적 대상이라고 제쳐놓을 수 없다. 역사가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²⁸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대중에게 불신·경멸·증오와 같은 부정적 가치 대신에 이해·평화·공존과 같은 긍정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화’다. 대화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지는 않지만, 여러 다른 각도에 따라 규명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는 있다.²⁹ 그것은 ‘여러 각도에 따라 진행되는 대화’이며 ‘역사가와 역사 소비자(독자, 청중)의 대화’이기도 하다.³⁰ 과거에 대한 지식은 정치적·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역사’ 그 자체는 판단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닌 개별적인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훈련받은 역사가들이다. ‘역사의 대화(Historical Dialogue)’는 결국 ‘역사가들의 대화(Historian’s Dialogue)’이다. 그것은 ‘국제적 차원의 대화’이며 세계사적 범위에 따라 행해지는 ‘열린 대화’다.

이러한 역사가들 대화의 한 예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서유럽에서는 반세기 이상의 인내심 있는 절충과 협의를 거쳐 자국사 중심교육에서 유럽통합의 역사교육 실천을 지향하였다. 1950년대에 유럽의 경제적 유대를 위한 석탄과 철강공동체가 발족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역사교육의 공통기반을 조성하려는 시도도 병행하였다. 정치적 통합에 앞서 거의 동시에 역사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계속하여 역사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유럽 통합이 실현됨에 따라 역사인식의 수정도 뒤따랐으며, 관련 국가들은 균형 있는 역사기술 및 역사교육을 위해 상당기

28 Michael Howard(1991), pp.16~18.

29 Georg G. Iggers(2001), pp.316~317.

30 Arthur Marwick(1970), pp.21~22.

간 공동노력을 기울였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³¹

1975년 유네스코 제청으로 ‘게오르크 에케르트 국제교과서 연구소’(GEI)를 구성하였다. 그 목적은 역사·지리·사회과 교과서 및 기타 교육매체를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국제교류중심이 되려는 것이었다. 연구소는 범세계적 관점에서 역사해석과 주체성의 패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아(自我)의 이미지 및 타자(他者)의 이미지를 비교·검토하고, 그것이 교육제도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고 제도적으로 획득되며 그로 인해, 어떻게 정당성을 갖게 되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소의 시도는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적을 달리하는 역사가들의 ‘국제적 대화’의 선도적 모델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동아시아의 통합적 공동체 형성, 나아가 동양평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상호 경제적 협력이나 정치적 유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정치적 통합을 향한 그 모든 시도에 앞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역사인식의 공유가 그것이다. 유럽통합과정에서 경제적·정치적 통합이 역사인식의 공유 시도와 병행해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에게 본보기다. 역사인식의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어떠한 지역적 유대나 공동체 구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역사가들은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인류 평화를 위해 실천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다. 우리가 다 함께 설정하는 동아시아의 비전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들의 대화’가 시급하다. 그것은 국적에 얽매이지 않는 직업적 양심에 입각한 역사가들의 대화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31 박지현(2005), 「민족교육에서 유럽 통합교육으로?—프랑스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프랑스연구』 13, 프랑스사학회, 94~95쪽.

지역공동체라는 궁극적 목표에 앞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역사인식 공유의 확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가공동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대화공간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부핑[步平]

1. 머리말

동아시아 역사문제¹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최근 역사문제를 둘러싼 중일, 한일 양국 간 민간, 학자, 정부가 대화를 전개한 결과, 이미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들은 동아시아 역사 문제가 주로 정치 판단 및 민중 정서, 학술 연구라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긴밀한 세 가지 층위에 투영되어 그 발현 형태도 다르고 파급 범위도 달라 한 가지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세 층위의 문제들은 항상 교차하고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명확한 사유와 인식이 필요하다.

1 여기서 동아시아 역사 문제란,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근대 역사인식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폐기된 화학무기 처리, 닌슈위다오[釣魚島], 독도, 동중국해 가스전 등 영토·자원 문제처럼, 역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양국 관계 속의 현실적 문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한중 간 고대 역사인식 관련 논쟁 역시 이 논문의 연구 범위 밖이다.

1. ‘침략전쟁’인가 ‘해방전쟁’인가 -정치층위 판단의 원칙

2007년 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군대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징용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1993년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 정신을 저버리고, 세계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면서 소위 ‘광의’와 ‘협의’의 강제성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중국 등 아시아 민중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미국 하원은 7월 30일 마이크 혼다[本田] 등 6명의 하원의원이 연명 발의한 새로운 결의안(H.Res.121)을 통과시켜 일본 정부에 ‘위안부’ 관련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캐나다·네덜란드 및 유럽 의회, 심지어 일본 국내의 일부 지역에서도 단호한 비난을 내놓았다.² 이로 인한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일본 항공자위대 총참모장이 2008년 11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글을 통해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중국 대륙에서 얻어낸 권익은 국제법의 보장을 받는 것이며,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35년 동안 조선 인구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사실은 조선에 평화 발전의 기회를 주었다는 증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일

2 아베 신조 총리는 2007년 1월 미국 하원 외교사무위원회 ‘위안부’ 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강제 연행 관련 증언이나 증거가 없고”, “관현이 민간에 침입해 강제로 연행하는 협의의 강제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미국 국회 연설에서도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일본은 다시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4월 방미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다시 자세를 낮추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지만, 미국 언론이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미국 하원(2007. 7. 30), 네덜란드 하원(2007. 11. 8), 캐나다 하원(2007. 11. 28), 유럽 의회(2007. 12. 13) 및 일본의 다카라즈카시[寶塚市], 키요세시[清瀬市] 및 삿포로시[札幌市] 등 의회에서 강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식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의 중국 침략과 조선 식민통치를 부정하는 발언은 그동안 잠시 침묵했던 일본사회에 다시금 ‘역사인식 파동’을 일으켰다.³ 비록 일본 정부가 재빨리 문제 관료를 해임했지만, 늘 ‘자유주의 역사관’을 주장했던 보수파 논객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해임된 자위대 수장을 편드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를 ‘역사 영웅’으로 추켜세웠다.⁴ 이러한 전개 과정은 전쟁 성격에 대한 정치 판단이 지금까지 여전히 일본사회에서 상당히 큰 논쟁거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총리는 1995년 전후 50주년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침략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와 성찰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동안, 국책에 잘못이 있어 전쟁의 도상에 올라 국민의 생존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식민통치와 침략은 수많은 국가, 특히 동아시아 각국의 인민들에게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주었다. 앞으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 역사 사실을 겸허하게 직면하면서, 이에 대해 다시금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한다. 또한 그 역사 속에서 재난을 입은 모든 국내의 인사들에게 침통한 애도를 표한다.”

“오늘 일본은 평화부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가 쉽지 않으며 소중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우리는 전쟁의 잔혹성을 후손들에게 알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 각국의 인민들과 손을 잡고 아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와 깊은 이해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정신에 입각하여 근대사에서 일본과 근린

3 田母神俊雄, 『日本は侵略国家であったのか』.

4 『産経新聞』(2008. 11).

아시아 각국 관계 연구 전개와 이 지역과의 교류 확대라는 두 측면의 평화 우호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⁵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는 전후 역대 일본 총리의 발언 가운데 가장 분명한 태도였으며, 그 이후 후임 역대 총리는 이를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 대표의 공식적 역사인식으로 삼았다. 그 전에도 물론 일본 총리 가운데 어느 정도 반성의 태도를 보인 이가 있었다. 한 예로, 1985년 10월 29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하원예산위원회에서 “나는 대동아전쟁이라고도 하는 소위 태평양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전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중국을 침략한 사실이 있다고도 발언하였다. 이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1993년 당시 갓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전쟁은 ‘침략전쟁’이고 ‘잘못된 전쟁’이라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전쟁 종식 50주년이 되면 일본의 전쟁 책임 관련 사죄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⁶ 비슷한 사과 회수를 세어보니, 이미 20회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었다.⁷

이상과 같은 전쟁책임 관련 일본 정치가의 태도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쟁 성격에 관한 논쟁은 일본에서 진정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1955년 ‘55체제’ 확립 이후 복고주의적 암류가 일본사회에서 터져나오면서 침략 전쟁 당시 ‘황국사관’이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는 ‘대동아전쟁 긍정론’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19세기 중반 개국 이후 모든 전쟁, 즉 막말의 ‘사쓰에이 전쟁(薩英戰爭, 사쓰마·영국 전쟁-역자주)’, ‘시모노세키 전쟁[下關戰爭]’, 메이지 시대 영국 및 프랑스와의 ‘모략전’, 정한론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병합, 1031년에 시작해 1937년 확대된 대중국 전쟁, 1941년의 태평양전쟁 등은 모두 일본이 ‘아

5 竹内実(2005), 21世紀中国総研, 『日中國交文獻集』, 蒼蒼社刊, 440~441쪽.

6 『朝日新聞』(1993. 8. 20).

7 杉本信行(2006), 『大地の咆哮』, 眞H眞研究所, 328~329쪽.

시아를 이끌고 구미 열강에 저항’한 것으로 아시아 제국이 영미에 대항할 능력이 거의 없어 식민지가 될 상황에서 일본 혼자 구미에 저항하지는 기치를 들고 진행한 ‘동아시아 100년 전쟁’이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일본의 아시아 ‘진출’의 목적은 아시아에 대한 정치 지배와 경제 수탈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해방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해방 전쟁’”이라고 하였다.⁸ ‘대동아전쟁 긍정론’은 일본 근대사를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화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역사 경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전쟁 당시 자신의 이익을 극히 협소하게 강조했던 일본의 인식이 민중을 속이고 동원할 목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전후 이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고취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냉전 상황에서 ‘대동아전쟁 긍정론’으로 전후 한때 침묵했지만 결코 근본적으로 침략전쟁을 반성한 적이 없었던 정치세력이 사상적 에너지를 보급받으면서 국수주의 입장에 기반한 일본 정치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1980년대 중반, 즉 전후 40년 즈음 대동아전쟁 긍정론이 전후 40년에 진행된 ‘정치총결산’으로 전형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특히, 도쿄재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소위 ‘도쿄재판 사관’이었다.⁹

도쿄재판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분명 모순으로 가득한 난제였다. 실증과 법률의 각도에서 도쿄재판은 많은

8 林房雄, 『大東亞戰爭肯定論』, 1963~1965년 『中央公論』에 연재했다가 나중에 番町書房에서 출판.

9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도쿄재판은) 동맹국의 법률에 따라 일본을 피고로 하여 문명, 평화, 인도주의의 명의로 진행된 재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 재판의 결과가 일본근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본인 모두를 ‘惡’으로 판단하는 ‘자학 사상’의 영향을 돌파하고 도쿄재판의 원칙과 판결을 재평가하자고 호소하였다. 『아사히주간[朝日周刊]』(1985. 12. 27).

미해결의 난제를 남겼지만 도쿄재판이 없었더라면 전후 일본은 국제사회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지금처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받는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일본을 전후 평화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도쿄재판이 분명 소중한 정신적 무기라고 생각한다.¹⁰

그러나 일본 경제가 1980년대에 고도 성장을 실현하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이후, 일부 정치가를 포함한 일각에서 도쿄재판이 전후 일본사회에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던지고 도쿄재판의 문제점만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자랑스러운 국제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일본인의 자신감과 긍지”를 키우기 위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동아전쟁’의 명분을 세우자는 글을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을 부인하고 일본인들이 아시아 각국 민중을 멸시하도록 조장하면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에 도전하였다. 이 배경 속에서 역사교과서의 ‘침략’ 개념 대체 문제가 불거지고, 총리가 내각대신들을 이끌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쟁 피해국 민중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정치 층위의 역사인식 문제는 국제화되었다.¹¹ 당

10 大沼保昭(2007), 『東京審判・戦争責任・戦後責任』, 東信堂, 53~54쪽.

11 1982년 6월 26일, 일본 여러 주요 언론에서 그 전날 끝난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일본의 스즈키젠코[鈴木善幸] 내각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을 통해 ‘근린 제국 조항’으로 통칭되는 담화를 발표하여 정부가 교과서를 심의할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근린 아시아 각국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 소위 언론의 ‘오보’와 외국의 내정간섭 문제를 들고 나온 이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스즈키[鈴木勳] 문부성 초중등교육국 국장은 1982년 7월 27일 『아사히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교과서 문제 발생에는 이유가 있으며, 최소한 ‘침략’ 관련 기술 가운데 두 군데는 문부성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개선 의견’에 따라 수정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82. 7. 27, 『鈴木初中局長に聞く』). 소위 ‘오보’ 강조는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시 망언을 발표한 일부 정치가 가운데 일부는 사임했고,¹² 일본 정부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 앞으로 교과서를 심사할 때 근린 국가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겠다는 ‘근린 제국 조항’을 제시하였다.¹³ 또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¹⁴ 전쟁의 침략적 성격에 대한 입장은 점차 일본 정치가를 시험하는 문제가 되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수상은 취임 초기 ‘침략 전쟁’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일본 우익 및 보수세력 특히 자민당 일부 의원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연설 다음날, 자민당 ‘야스쿠니관계 삼협의회’는 긴급회의를 공동 소집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발언에 대한 ‘항의’ 결의안

시도임을 보여준다.

12 1986년 면직된 당시,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성 대신은 “사람들은 모두 난징학살이 일본 침략에서 가장 악랄한 행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전쟁중의 일이고 국제법에 따르면 살인이 아니다. 게다가 피살된 이들이 수만 명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했다. 1988년 5월에 사임한 오키노 세이스케[奥野誠亮] 국토청 장관은 1988년에 “대동아전쟁 당시 일본은 침략 의도가 없었고”, “일본에 의해 중일전쟁(사변)으로 불린 것은 우연이었다”고 하였다.

13 日本の外務省ホームページ,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miyazawa.html>, 『朝日新聞』(1982. 8. 27).

14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총리 재임 시절 다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1986년 8월 15일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전후 40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전몰자 유족회와 각측의 비통한 심정을 고려해, 총리로서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정식 참배하였다. 하지만 목적은 전쟁과 군국주의를 긍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존중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일반 전몰자에 대한 애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회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이미 40년이 지났지만, 불행한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아시아 근린 각국 인민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침략 전쟁에 책임이 있는 특정 지도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정식 참배는 귀국을 위시한 아시아 각국 국민감정을 손상시켰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올해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지 않는 고도의 정치 결단을 내렸다”고 하였다. 中曾根康弘(1997. 9), 『후야오방 총서기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致胡耀邦總書記私人信件)』, 『中曾根内閣史資料篇(속)』 수록, 世界和平研究所 편집 발행, 248쪽.

을 제출하였으며, 각지 의회의 반대 결의안 통과를 부추기는 등 일본사회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얼마 후, 이 파란이 1995년 국회를 통과한 ‘부전결의’ 및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상술한 발언의 에너지와 결합하면서 일본사회가 전후 50주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이러한 사회 대토론의 가운데 105명의 자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자민당역사검토위원회가 크게 활약하였다. 그들은 먼저 성명을 통해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에 대해 비판하면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침략전쟁 관련 발언과 전쟁 책임 관련 사죄는 전쟁 반성이라는 명목으로 ‘자학사관’을 고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역사 사실을 기반으로 일본인 스스로 역사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소위 ‘일본인 스스로의 역사관’이란, 곧 이 위원회에서 일군의 학자들에게 요청하여 펴낸 『대동아전쟁의 총괄』이었다. 이 책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일본이 아시아를 구미 통치에서 ‘해방’시키려 했던 전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방’이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일본 군대의 침략 책임과 아시아 각국 인민들의 고통과 재난이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난징대학살은 ‘허구’이며 일본군 ‘위안부’는 상업적인 성격이라는 것이었다.

일부 이들 국회의원은 국회의 ‘부전결의’ 통과 저지를 위해 ‘전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을 다시 결성하여, “우리나라에 죄가 있다고 여기는 자학적 역사인식을 바로잡아, 공정한 역사 사실에 기반한 역사 해석으로 일본과 일본인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연맹은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를 회장으로 하고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¹⁶의

15 歴史検討委員会(1995), 『大東亜戦争の総括』, 展転社.

16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일본 육군대장, 관동군 참모장, 중국과련군 총참모장, 싱가포르 주재 제7방면군 사령관 등 역임하였고, 도쿄재판에서 A급전범으로

아들인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를 사무국장으로 하여 57명으로 시작해 1995년에는 160명으로 늘어났다.¹⁷

보수와 의원과 그들이 발간한 『대동아전쟁의 총괄』은 일본사회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보수조직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이에 고무되어 일본을 종(縱)으로 연결하는 ‘대연합’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를 방영하거나 전시회를 열면서 5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대동아전쟁의 진실’을 알리고, 국회의 ‘부전결의’ 통과를 저지하였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의장인 마유즈미 토시로[黛敏郎]는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홍보 책자에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나전쟁’의 발단인 ‘루거우차오[蘆溝橋] 사변’은 그저 ‘중국 공산당이 지휘한 학생이 반일 정서를 자극하려고 만들어낸 사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도 성명을 발표하여 “전후 50주년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나라 전쟁 책임을 물으려는 활동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잘못된 역사관을 기반으로 세워진 반성과 사죄에 대한 국회 결의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사죄 반대 청원서를 만들어 일본 유가족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¹⁹

일부 일본 정치가는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침략 전쟁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인하였다. 법무대신을 지냈던 나가노 시게토[永野茂門]는 지금까지 침략 전쟁에 관한 정의는 오류라고 여기고,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은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소위 난징사건은 날조한 것이다.

교수형에 처해졌다.

17 日本を守る国民会議(1995), 『終戦50周年をむかえて-アジアと日本の大東亜戦争』.

18 戦後50年市民の不戦宣言運動(1995), 『戦後50年あらためて不戦でいこう』, 社会評論社, 231쪽.

19 戦後50年市民の不戦宣言運動(1995), 위의 책, 232~233쪽.

…… 일본은 그 곳을 일본의 영토로 삼지 않았으며, 그 곳을 점령하지도 않았다”²⁰고 하였다.

국토청 장관을 지낸 오키노 세이스케는 일본 언론이 중국과 한국의 관점에 영합한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일본인으로서 대동아전쟁을 긍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인종 평등을 목표로 백인 우월 상태를 바꾸었고, 만주에서는 오족협화(伍族協和)까지 실현하였다. 비록 일본이 불행히 실패했지만, 아시아는 독립하였고 아프리카까지 보급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배들을 죄인으로 다루는 결의안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¹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에서 총무청 장관을 지낸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역시 기자에게 “만약 한일병방조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국제 간 협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 일본은 (한국에서) 좋은 일도 했다. 시정촌(市町村)에 학교를 세우고, 5,000킬로미터의 철도를 놓고 10,000킬로미터의 도로를 닦았으며, 항만 정비, 개간, 수리 시설, 식목 등(을 했다) …… 오늘날 일본 경제, 예술, 야구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은 아마 한일병합조약의 기본 효과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본인으로서 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역시 (한국이)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한국의 강력한 항의 속에서 에토 다카미는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²²

이러한 정치가의 발언이 증명하는바,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전쟁 당시의 역사관을 고수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발언은 전쟁 당시 괴뢰만주국에서 요직을 맡았고 전후 한때, A급 전범 혐의자로 체포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일본 총리가 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상기시킨다. 기시 노부스케는 수감 당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20 『毎日新聞』(1994. 5. 3).

21 戦後50年市民の不戦宣言運動(1995), 앞의 책, 257쪽.

22 『朝日新聞』(1995. 10. 11).

일본의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당시 그는 ‘패전’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침략’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책임에 대해 반성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²³

하지만 선거를 위해 국회에서 야당이 ‘전쟁 책임’을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반성’을 입에 올렸다. 총리로 취임한 지 5일 만에, 대리총리를 맡으면서 그는 “대동아전쟁에 관해 말해보고 싶다. 나는 당시 내각 구성원이었다. 본인은 이후 10여 년 동안 스가모(巢鴨) 감옥에서 그리고 공직 해임 처분이 철회된 후 늘 충분한 반성을 했다. …… 앞으로 우리나라가 걸어갈 길은 의문의 여지 없이, 민주주의를 견지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평화 회구와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 조국 진흥에 뜻을 세우고, 세계 각 민족의 번영에 힘쓰는 것을 정치 목표로 하여, 내가 국회 의석을 추구하는 것도 스스로의 이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위해서이다. 나는 앞으로 상술한 반성과 신념을 이후 외교 및 더욱 넓은 정치에 관철할 것이다”²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언뜻 성실해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기록을 뒤져보면 ‘만주국’ 시절의 일에 관한 그의 발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사임 5년 후인 1965년에 그가 주도해 펴낸 『아, 만주』에서 오히려 ‘만주국’은 “민족협화, 왕도낙토”의 이상으로 빛나는 “과학과 양심으로 과감하게 실천”한 “동아시아의 희망”이라고 극찬하였다.²⁵

일본의 정치가들이 전쟁 역사인식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누군가의 지적에서처럼, 유럽과 달리 일본은 당시 전쟁 책임이 있는 이들을 철저히 일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는 정계에 들어갔고 심지어 일본의 새로운 주류계층으로 탈바꿈했다. 이들은 자신이

23 原彬久(1995), 『岸信介権勢の政治家』, 岩波新書, 121~122쪽.

24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하원 외교위원회 답변(1957. 2. 20).

25 山室信一(1993), 『キメラ-満州国の肖像』, 中公新書, 10쪽.

참여한 침략 전쟁에 분명한 반성 의식이 없으며, 기회만 있으면 여전히 군국주의 전쟁관 고취에 힘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 국내의 평화 역량은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우익과 보수 세력이 시종 침략전쟁 책임을 부인하면서, 전쟁과 관련한 언행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 전임 총리는 “비록 일본 총리가 누차 깊은 사과를 했지만, 아시아 각국의 일본에 대한 소위 ‘오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 우익 정치가들의 언행에 있다”²⁶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 곧 소위 ‘제로섬 게임’ 현상이다.

하지만 바로 ‘제로섬 게임’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사실은 “보수 우파 정치가들의 발언으로 일본 전후의 사고와 반성을 완전히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전쟁 책임을 반성하는 정치 판단의 과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인민들의 앞으로 과제는 일본사회의 평화 역량과 함께 전쟁 책임 관련 보수 우파 정치가들의 잘못된 정치 판단에 함께 맞서는 것이다. 이는 정치 층위에서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가 당면한 과제다.

3. ‘피해’와 ‘가해’-민중 층위의 전쟁체험 차이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 층위의 역사 문제 역시 대화가 필요하다. 이 층위의 대화 주제는 전쟁 ‘피해’와 ‘가해’를 둘러싼 논의다. 역사인식 측면에서

26 若宮啓文 著(2007), 吳壽南 訳, 『和解とナショナリズム』, 上海譯文出版社, 63쪽.

민중의 이견은 서로 다른 전쟁 체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 층위 이견의 영향으로 민중 층위의 인식이 감정적 요인을 동반하기 쉽다. 감정적 요인이 스며든 민중 층위의 역사인식 격차를 해결하려면, 원칙을 건치하는 정치 판단 층위의 투쟁 방식과는 달리 민중 간의 상호 이해 촉진이 그 주요방식이 되어야 한다.

중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서 국민 층위의 전쟁 기억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 피해다. 한 예로 중국에서 침략 전쟁 관련 키워드가 ‘난징대학살’, ‘731세균부대’, ‘삼광작전(三光作戰)’이라면,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지배’, ‘창씨개명’,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도쿄 대공습’, ‘오키나와 작전’이다. 이는 각국 민중의 전쟁 체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민중에게 ‘유일한 원자탄 피해자’ 인식은 이미 전쟁 관련 집단 기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반핵’은 전후 일본 평화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서 사용된 원자탄이 일본 민중에게 가져온 재난은 물론 상당히 심각했다. 비록, 미국 점령군이 1945년 9월 피폭과 관련된 모든 작품의 발표를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원자탄의 위력과 피해에 관한 소문은 재빨리 퍼져 심지어 ‘피폭된 폐허에서는 70년 동안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있었다.²⁷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언론이 원자탄의 막대한 피해를 대거 보도하기 시작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해자들의 상황을 세계 각국의 민중들이 알게 되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매년 8월이 되면 ‘원폭’ 관련 보도가 일본의 모든 언론에 넘쳐나게 되었으며 관련 사진, 연재, 백서, 보고서, 영화 및 비디오가 더욱 늘어났다.²⁸

27 中国新聞社(1995), 『年表ヒロシマ核時代50年の記録』, 中国新聞社, 14쪽.

28 宇吹曉(1933), 『核兵器撤廃に向かう新世紀』, 『年表ヒロシマ核時代50年の記録』에서 재인용.

전후 일본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통해 핵무기의 위력을 인식함과 동시에, 핵무기로 대표되는 대규모 살상무기 금지의 중요성도 인식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수소탄 사용 반대' 운동을 출발점으로 한 일본의 평화운동 역시 이로부터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²⁹ 전후 일본의 민중은 50년대의 반핵운동, 60~70년대의 베트남전 반대와 오키나와 반환 요구, 80년대의 핵무기 폐기와 비핵지대 구축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무력과 군사 행동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노력은 일본 민중이 전후에 끊임없이 추구해 온 평화주의의 방향성을 체현한 것이었다.³⁰

평화와 인도의 관점에서 구축된 '원폭' 기술 논리는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로써 형성된 전후 일본전쟁 문학 스타일은 역사학자 및 일반인의 전쟁 체험에 대한 사고를 "전쟁은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며 일본은 비참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고정시켰다.³¹ 일본인의 전쟁 피해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반핵에서 시작된 일본 평화운동의 합리성마저 도전을 받거나 심지어 의심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 전후 50주년 당시, 히로시마 원폭 피해 전시와 평화 호소를 주제로 한 전시 계획이 미국의 제지로 받고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 군인들은 전쟁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온 일본인의 고발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³² 전쟁에서 심각한 상처

를 입은 중국 및 아시아 일부 국가의 민중 역시 일본인의 전쟁 피해를 정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일본인이 원폭 피해를 강조할 때, 외부로부터 '전반적으로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불만과 비난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³³ 이러한 현실은 일본 민중과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의 민중을 갈라놓는 깊은 협곡에 다리를 놓기에는 아직도 장애물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에서 원폭 상황을 살펴본다면, 또 다른 역사 기억을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난징대학살', '731세균부대', '삼광작전' 등으로 대표되는 침략 전쟁을 겪은 중국 민중들은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새로 발명된 원자폭탄"의 투하가 "일본의 작전 능력을 완전히 꺾어버려, 항복하지 않으면 몰살될 처지"를 만들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⁴ 당시 중국 『중앙일보(中央日報)』 논설은 원자탄 사용으로 대일 작전을 조속히 끝낼 수 있었으며,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³⁵ 물론 『중앙일보』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과학의 진보가 무기의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침략자는 전쟁의 형태를 바꿀 것이므로 '무기가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겠지만, 동시에 '그 파괴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⁶ 또한 전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국제 협력 속에 자리매김하여 세계 평화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³⁷

일본인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이견이 생겨 결국 무산되었다. 당시 미일 양국 내부에서 여러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29 松江澄(1984), 『広島から始まった反核運動』, 青弓社, 16쪽.

30 斎育郎·池尾靖志(2007), 『日本から発信する平和学』, 法律文化社, 48~52쪽.

31 '미안마의 하프', '24개의 눈동자'와 같은 전후 일본의 지명한 전쟁 문학 작품이나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전쟁 기록 소설인 『보리와 병사』, 『꽃과 병사』 등 전쟁 상흔 3부작은 모두 전쟁 피해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手塚千鶴子, 『일본에 대한 상호 이해의 길 모색(對日中相互理解道路の探索)-對日本人關於原子彈爆炸心理的分析』, 法政大學 國際日本學研究所, 『關於相互理解的日本日本研究』 재인용, 2007년 3월 참고.

32 1993년 4월 미국 스미소니언학회 소속 항공우주박물관은 히로시마원폭자료관에 특별 전시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히로시마원폭자료관이

33 井信一(1995), 『戦争責任論』, 岩波書店, 218~219쪽.

34 「新しく發明された原子爆弾, 日本で初めて使用」, 『中央日報』(1945. 8. 7).

35 논설 「原子爆弾の威力」, 『中央日報』(1945. 8. 9).

36 「日本に早急に投降の警告」, 『中央日報』(1945. 8. 9).

37 논설 「自制と共助」, 『中央日報』(1945. 8. 7).

당시 『신화시보(新華時報)』 보도 역시 원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기본 입장을 반영하였다. 우선, 일본 침략자가 ‘인류역사상 공전’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지닌 원자탄 공격을 당한 것은 “파시스트 침략자에게는 당연한 대가”라며 일본 군벌에게는 아무런 연민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속았을 뿐 죄가 없는 일본 인민은 별도로 생각해 인류 복지를 위해 원자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무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⁸

미소 두 강대국의 영향으로 원폭에 대한 국민당과 공산당의 태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피폭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연결짓는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일본의 피폭은 ‘인과응보’로 보고 있으며, 이는 또한 당시 대다수 중국 국민의 느낌이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일본 군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체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 민중의 피폭 체험과는 다르다.

다시 전쟁 당시 공습으로 인한 무차별 피해라는 역사 기억을 살펴보면, 상술한 피폭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제1차 세계대전 전야인 1899년과 1907년에 헤이그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이미 공습 제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이 원칙은 전쟁에서 일반인 보호라는 인도적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공군은 일본을 공습하였고, 군사 목표 외에 도쿄를 포함한 67개 도시를 폭격하였다. 일본 내무성 방공 본부가 패전 후, 1945년 8월 23일에 전시 미군 비행기 공습으로 인한 일반인 피해 상황을 사망 26만 명, 부상 42만 명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³⁹ 이 숫자는 나중에 끊임없이 보완되어 1995년 8월 ‘도쿄신문[東京新聞]’ 특집에서는 일본 전역 47개 지역(都, 道,

府, 縣) 400개 시·구청촌에서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95만 명이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오키나와 작전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⁴⁰

전후 일본 각지에서는 ‘대공습’의 역사를 기억하는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쿄 지역 공습 사망자 유족이 1995년에 모여 ‘도쿄 공습 사망자 성명 기록 요구’ 운동을 만들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공습과 전쟁 사실을 파악하면서 자료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정부에 피해 인정을 요구하였다. 이 운동은 도쿄 각지(區, 町)로 점차 확대되어 1999년에 도쿄도 정부 사업이 되었다. 2005년 말에 이미 77,762명의 공습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공습 상황에 대한 수많은 기억 자료까지 모았다.⁴¹

통계에 따르면, 공습 역사 기억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이다. 이들은 최근 이라크 등지에서 일어난 전쟁과 공습, 특히 일본의 이라크 자위대 파견, 헌법 수정, 국민보호법 구체화 등에 자극을 받아 ‘전쟁과 공습 재발은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 종식 60여 년 후에야 이들은 공습 역사 기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의식했던 것이다.

물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역사 기억 활동은 나름의 합리적인 존재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같은 전쟁에서 일본 군대의 공습을 받은 중국 민중은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중국 민중 역시 공습 관련 역사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 군대가 중국에서 벌인 무차별 비행기 폭격이었다. 1938년 9월 30일, 유엔총회는 독일 게르니카 공습과 일본의 중국 공습에 대해 ‘전시 주민이 공습을 받지

38 시평, 「原子爆彈が想起させるもの」, 『新華日報』(1945. 8. 9).

39 荒井信一(2008), 『空襲の歴史』, 岩波新書, 138~139쪽.

40 荒井信一(2006), 『空襲の世紀の法理と日本』, 계간 『戦争責任研究』 53호, 3쪽, 재인용.

41 野ひろし(2006), 『東京空襲遺族会の集團の訴訟』, 계간 『戦争責任研究』 53호, 21쪽, 재인용.

않도록 보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 주민에 대한 고의적 공격은 위법이다. 공중 폭격의 목표는 합법적 군사 목표여야만 하고 공중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정당한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주위의 평화로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화학 및 세균 무기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다"⁴²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후 진행된 중국 국민의 전쟁 중 공습 피해 사상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336,000명, 부상자 426,000명이었다.⁴³ 이 밖에 1944년 국민정부 항공위원회 항공총감부에서 통계 조사 방법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중일전쟁 당시 국민당이 지배하던 서남, 서북 지역-역자주) 각 도시의 사망자가 94,522명, 부상자가 114,505명이었다(전투 지역과 그 주변 피해 제외). 이러한 공습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1938년 2월부터 1943년 8월까지 충칭(重慶)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본 비행기의 대공습일 것이다. 여기서 1941년 6월 1일의 공습에서만 수천 명(정확한 수치는 아직 더 많은 연구 필요)이 사망하여 '6·5 터널 대참사'로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충칭 시민들은 공습 피해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공습에 대한 중국 민중의 역사 기억은 일본 군대의 가해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본인은 공습의 피해를 받은 동시에 전쟁 가해자의 역할을 했으며, 전쟁 피해와 전쟁 가해의 중첩적인 인식이야말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의 기반인 것이다. 가해자 의식의 결여로 중국 국민의 역사 감정을 무시한다면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의식의 결여로 여겨질 수밖에 없으며, 함께 피해를 겪은 전쟁 역사 기억을 형성할 수 없다.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도쿄대학 교수는 똑같이 평화라는 목표를 추

42 荒井信一(2006), 『空襲の世紀の法理と日本』, 계간 『戦争責任研究』 53호, 3쪽, 6쪽.

43 韓啓桐(1946), 『中国対日戦事の損失の推計(戦時損失之估計)』, 中華書局.

구하는 동아시아 각국 민중이 전쟁 체험의 상이함으로 인한 역사인식의 차이 때문에 전쟁 역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을 성찰하고, "전쟁 피해에서 출발한 일본인의 평화 관련 사고는 비록 다른 민족에 대한 전쟁 책임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닐 지라도, '본국 내부의 협소한 시야'에 머무르면서,⁴⁴ 같은 역사 과정에서 전쟁 피해 국민으로서의 체험은 어떠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다른 민족의 이해를 얻을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장에서 상술했듯이, 의식적으로 침략 전쟁 책임을 부인한 정치가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일본 민중 층위의 전쟁 가해 의식 결여로 자신의 전쟁 체험에 기반하였다는 원인 외에도, '시야의 협소함', 즉 전전 언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교묘한 이용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전전 일본 정부의 언론 통제는 매우 엄격했으며, 언론 이용 역시 매우 고심한 결과물이었다. 1923년 도쿄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 수천 명 및 중국 노동자 700여 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바로 전형적 예다. 지진 발생 당시, 중국 신문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지진 피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일본 민중을 돕기 위해 중국 민중의 성금을 모았다. 그때 중국 정부와 시민은 모두 이웃 국가에 선의를 보였다. 중국 노동자가 일본에서 도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중국 신문은 "일본 문명의 영예를 위해, 중국 국민의 감정을 위해, 인도와 법규를 위해, 여론으로 도쿄 당국을 채찍질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공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원혼을 위로하고 정의를 바로잡자고 일본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하였다."⁴⁵

그러나 일본 신문은 10월 17일, 중국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뛰어다니던 왕시텐(王希天)은 당시 교일공제회(僑日共濟會) 회장의 실종 소식만을

44 大沼保昭(2007), 『東京審判・戦争責任・戦後責任』, 東信堂, 144쪽.

45 仁木ふみ子(1993), 『震災下の中国人虐殺-中国人労働者と王希天はなぜ殺されたか』, 青木書店, 88쪽.

보도했을 뿐이다. 이후 상황은 정부에 의해 재난 관련 보도가 전면 금지됐다는 이유로 완전히 외면당했다. 또한 11월 7일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이 ‘중국인 피살 사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준비했지만, 심의 후 일본 정부가 게재를 불허하자 2판과 5판 신문에 해당 부분을 공백으로 남기고 발행하였다. 삭제된 기록은 현재 일본의 외교사료관에 보존되어 있다.⁴⁶ 이렇게 일본의 가해 책임을 감추는 방식이 전통이 되었고, 전시에 더 극심해졌다.

‘9·18사변’ 이전 대다수 일본 신문은 군축을 주장할 수 있었고 심지어 군부에 대한 비판도 가능했다. 그러나 사태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시작되면서, 주요 신문이 전쟁터에 보낸 수많은 특파원들은 전세를 보도하는 동시에 군대의 행동을 미화하는 데 힘썼다.⁴⁷ 1937년 루거우차오 사변 발생 이후 일본 정부는 내각정보부를 만들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언론 관리를 강화하였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반포하면서 모든 언론은 사실상 정부와 군부의 하부 조직이 되었다. 국내에 파시스트적 대정익찬(大政翼贊) 체제가 구축되면서 1940년 조직된 정보국은 일본 전역의 보도 선전에 대해 일원화된 뉴스 통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언론은 전쟁을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해야만 했다.

저명한 반전사상가 기류 유유(桐生悠悠)의 편집 간행물 『他山之石』이 1941년 9월 금지된 이후, 일본 언론계에서 군부와 ‘고군분전’ 및 ‘악전고투’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졌다.⁴⁸ 어떤 학자의 기술처럼, 그 이후 “국민은 매일 ‘이겼다’, ‘이겼다’라는 보도밖에 볼 수 없었으며 사실의 진상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진상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비참하게 참패한 뒤

46 日本外交資料館, 『帝国議會關係雜纂・議會關係參考資料』, 大正12년 12월.
47 読売新聞 戦争責任検証委員会(2006), 『検証 戦争責任』, 中央公論新社, 170~171쪽.
48 田雅夫編(1980), 『桐生悠悠々反軍論集』, 新泉社, 466쪽.

였다.”⁴⁹ 침략 전쟁에 참가한 일부 일본 군인 역시, 일본이 중국에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 해군이 신문 검열을 강화하였고 언론에 대한 헌병의 검열과 단속도 강화되었다고 증명하였다. 정부는 내각정보부를 만들고 국민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였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보도에 중국 민중의 전쟁 피해는 당연히 허용될 수조차 없었다.

민중이 전쟁 과정에 대한 진상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 민중의 피해와 일본 군대의 가해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음은 가히 상상이 된다. 이러한 기반에서 시작된 전후 일본의 반전 평화 운동은 당연히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전후 철저히 못한 재판 및 처리 역시 이러한 상황과 매우 관계가 깊다. “대다수 일본국민은 동맹국이 주도한 도쿄재판 및 기타 전범 재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종의 방관적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에 회부된 소수만 범죄에 책임지도록 했으므로 자신이 15년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⁵¹

대다수 일본 민중이 국외자로서 도쿄재판을 겪은 후에 점차 일종의 착각을 만들어냈다. 즉, 자신은 군부의 사기 선전의 희생물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참여한 전쟁에 대한 성찰을 희석시켰다. 군부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판한 다음, 많은 이들은 자신의 양심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피해자로서 전쟁을 인식하였다. 전후 이러한 전쟁 피해자의식이 일본에 보편적으로 존재했으며, 상당히 큰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 예로 전후 결성된 유명한 반전조직으로 일본 전사 학생 추모 조직 ‘가이신카이’는 일본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출판된 일본 전사 학생의 통신집 『들어라, 해신의 소리(听, 海神之聲)』는 심지어 나중에 일본의 한국전쟁과 재군비에 반대하는 반전 선언이 되었다. 그러나

49 松下芳男(1960), 『三代反戦運動史』, 黒潮出版, 351~352쪽.
50 友俊太郎(1999), 『洗脳の人生』, 風濤社, 41쪽.
51 高橋彦博(1989), 『民衆の側の戦争責任』, 青木書店, 106쪽.

‘가이신카이’ 구성원 역시 『들어라, 해신의 소리』 자체가 군국주의자가 즐겨 인용하는 소환 명언이었고(출처 : 8세기 『萬葉集』), 전쟁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겪으면서 강렬한 전쟁 혐오 정서가 있었지만 전쟁에 대한 속죄의식은 없었기 때문에, 간절한 반전 및 군국주의 반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결코 과거의 역사를 진정으로 탈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⁵²

가해 의식의 결여는 일본국민의 전쟁 책임이 둔감해진 사회적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정서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⁵³ 물론, 전후 일본의 평화운동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었다.

전쟁 가해책임에 대한 일본 평화 운동의 자각은 60년대 후반,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규모 반대 운동 당시에 시작되었다. 평화 역량은 반전 운동을 조직하면서 원자탄의 피해자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민중, 심지어 포로가 된 미국 병사까지 있었으며 원자탄 공격을 초래한 원인은 일본의 전쟁 책임에 있다는 것을 차차 인식하기에 이르렀다.⁵⁴ 이때부터 전쟁을 겪었고, 각성한 일부 일본인들은 자신의 전쟁 피해만을 기억하던 단순한 의식에서 벗어나 일국 평화주의의 협소한 시야를 극복하고 아시아 이웃 나라의 민중과 함께 전쟁 책임과 평화 문제를 사고하기 시작하였다.⁵⁵ 이는 전쟁 책임 인식에 대한 일본 민중의 중요한 도약으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은 일본군이 전쟁에서 저지른 가해 사실을 일본인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52 靖三(1994), 『戦争はいやなものだ』, 昭和出版, 192쪽.

53 姜克實(2007), 「日本人歴史認識問題的症結点」, 『抗日戦争研究』.

54 吉川勇一(1991), 『市民運動の宿題-ベトナム反戦から未来へ』, 思想の科学社, 206쪽.

55 石田雄(2002), 「反戦・平和思想 運動」における歴史認識, 高橋哲哉, 『歴史認識論争』, 作品社, 29쪽.

1971년 8~12월까지, 일본 『아사히신문』의 혼다 카츠이치[本多勝一] 기자는 중국 방문 이후, 곧 그 결과를 아사히신문 계열의 신문과 잡지에 연재하였고, 후에 이를 묶어 『중국여행』을 펴내고 이미 20여 차례 재판을 찍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일본인의 관점에서 난징과 랴오닝[遼寧]의 다스차오[大石橋], 평정산[平頂山] 학살, 731세군부대 및 삼광작전 등 일본 병사의 만행을 기술하여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⁵⁶ 중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혼다 카츠이치 기자는 중국 측에 제출한 취재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첫째, 일반적인 일본인이 보기에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허구처럼 느껴지고, 최대한으로 보아도 추상적인 인식에 불과하며 전혀 감성적인 지식이 없어 결국 일본 국내 침략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활동이 범람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과 도쿄대공습 피해를 기록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시아 각국 인민의 피해 기록은 결여되었다. 셋째, 중국 민중에게 ‘일본 군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하고 집이 불타는 구체적인 역사 기억이다. 그러나 일본인이 중국인의 구체적인 역사 기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⁵⁷

한국 민중의 전쟁 체험에 대한 일본 민중의 이해 역시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제 고속 발전을 배경으로 일부 조급한 일본인은 돈의 위력에 기대어 아시아 일부 국가로 가서 ‘성’적 서비스를 추구하였고, 70년대 50만 일본 남성이 소위 한국 ‘기생관광’을 소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깨어 있는 한국인은 일본의 이러

56 Joshua A. Fogel ed., (2000), *The Nanjing Massacre in History and Histori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7 本多勝一(1981), 『中国の旅』, 朝日文庫, 10~12쪽.

한 행위를 “일본 남성이 전쟁에서 총검으로 위협해 한국 여성을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를 의미-역주)로 삼아 자신들에게 서비스하도록 만들더니 전후 반성은커녕, 지금은 다시 돈의 힘으로 ‘기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서비스하도록 한다”고 비난하였다.⁵⁸ 특히, 근대 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역사상 일본 군대가 여성을 박해한 ‘위안부’ 문제 규명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전쟁에서 일본군의 군홧발에 짓밟힌 우리 여성 동포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명예와 역사의 진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화여대 윤정옥(尹貞玉) 교수를 비롯한 일군의 한국 여성 학자들은 1988년부터 일본 각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글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파문했던 ‘위안부’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⁵⁹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국 여성 단체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0년 10월 한국의 37개 사회단체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조직하고 한일 양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의 조사와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위안부’의 역사교과서 서술을 요구하였다. 1990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여성 인권 대회에서 한국 대표는 전쟁 ‘위안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아시아 각국 여성들이 함께 관심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다.⁶⁰ 이듬해 8월, 과거에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던 한국의 김학순(金學順) 할머니가 처음으로 높은 사회적 벽을 깨고 용감하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여 아시아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⁶¹ 아시아 각국의 피해 여성들도 행동하기 시작하여 일본군의 전쟁 범죄 고발에 나서면서, ‘위

58 池田恵理子 他(1997), 『‘慰安婦’問題 Q&A』, 明石書店.

59 尹貞玉ほか(1992), 『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 明日をともに創るために』, 三一書房.

60 池田恵理子 他(1997), 앞의 책.

61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1993), 『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明石書店.

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운동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⁶²

과거 히로시마 시장을 지낸 히라오카 다카시[平岡敬] 씨 역시 피폭 전 사회가 미국의 제지로 무산된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원폭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피해의 잔혹성을 이야기할 때, 가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듣게 된다. ‘당신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본인을 피해자로 만들어 전쟁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수많은 잔혹한 범죄를 회피하고 덮으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히로시마’ 이야기를 꺼내면 미국인은 즉각 ‘진주만’으로 응수한다. 특히, 아시아인들 역시 모두 ‘일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왜인가? 일본이 하나의 국가로서 전쟁책임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구나 히로시마 역시 전쟁의 와중에 피폭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해야 하고, 일본군의 식민지 통치와 일본군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⁶³ 1990년대 이후에 냉전이 끝나고 일본 국내에서 시민 운동이 고조되면서 침략 전쟁의 책임을 묻는 활동 역시 상당히 활발해졌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전쟁 책임 기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고 일본의 가해 책임을 적극 사고하는 사회단체도 점차 많아졌으며, 전쟁 피해국 민중의 체험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들의 보상 소송 요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정치 층위에서 나타났던 역사수정주의를 고취하는 보수세력은 사실 이상과 같은 민중의 역사인식의 각성에 대한 긴장이자 대응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62 池内靖子(1998), 「日本軍「慰安婦」歴史館の開館」, 『季刊戦争責任研究』 제 22호.

63 平岡敬(1996), 『希望のヒロシマ』, 岩波新書, 67~68쪽.

4. 필연성과 우연성

- 학술 층위의 사유 논리와 연구 방법

정치 판단 층위와 민중 정서 층위의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학술 연구 층위의 문제이다. 전술한 두 층위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이후에야 학술 층위의 문제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학술 층위에서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주로 사유 논리, 연구 방법 등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먼저 학술 연구 영역에서 동아시아에서 전쟁 발생 원인에 관한 사유 논리 문제를 분석해 보자.

만약, 동아시아 근대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시각으로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을 분석·관찰한다면, 1889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이 제1차 제국회의에서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 개념을 제시하고⁶⁴ 1893년에 ‘군비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일본은 이미 한반도와 ‘만몽지구(滿蒙地區)’를 자신의 이익선 범위에 넣는 정책 기반을 확립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일반적으로 20세기 초에 일어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 통치를 ‘한일병합’이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것은 일본 군인이 왕궁에서 무력 위협하는 상황에서 천황의 특사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황제와 각료를 위협하여 체결한 ‘제2차 한일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에 강제로 진행했던 병합으로, 그 ‘병합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병합’이라고 쓰지 않고 ‘강점’이라고 한다.⁶⁵

64 山縣有朋 내각 총리 대신의 일본제국회의 제1차 통상회의의 시정방침 연설은 東京大學 ‘日本議會演說資料庫’ 참고.

65 韓國中京高校歴史探究サークル(2006), 『韓國高校生の歴史レポート』, 明石書店, 10쪽.

1927년 대중국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방회의’에서 ‘만몽(滿蒙)’을 일본 국방과 경제의 생명선으로 삼는 사고가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이 회의를 주도한 모리 가쿠[森恪] 외무차관은 “…… 만주의 주권은 지나에 속하지만, 지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일본 역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만주는 국방의 최전선이므로 일본도 보위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⁶ 이 당시, ‘만몽’을 일본의 생명선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널리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으로 1928년의 황구툰[皇姑屯] 사건, 1931년의 ‘완바오산[萬寶山] 사건’ 그리고 ‘9·18사변’을 들 수 있다. 모두 이러한 지도 방침의 구체적인 체현이었다. 1931년 ‘9·18사변’을 통해 중국 동북 지역 점령을 실현한 일본은 장성(長城)을 넘어 ‘화북분리(華北分離)’ 조치를 확대 실시하였다. 나아가 1937년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 이후 전쟁의 불길이 중국 대부분 지역에 미치면서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확장의 발걸음은 분명 한걸음 한걸음 강화되었다. 이렇게 점차 심해지는 침략 과정은 한때 ‘동북(東北)…… 화북지구(華北地區)…… 중국…… 세계’라는 일본의 적극적 확장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이 정책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문서…… ‘다나카 상주문[田中奏折]’의 존재 여부에 대해 학술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의견이 상반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의 실제 존재 자체는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역사의 산 증인이자 일본 외무대신을 역임했던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는 ‘다나카 상주문’의 존재를 명백히 부인하면서도 “다나카 상주문은 좌우 양극 단론자가 협력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 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사태 및 이에 동반하여 일본이 취한 행동은 공교롭게도 다나카 상주문을 교과서로 삼아 추진된 것처럼 보여 다나카 상주문의 존재에 대한 외국의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66 読売新聞戦争責任検証委員会(2006), 『検証 戦争責任2』, 中央公論新社, 8쪽.

없었다.⁶⁷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 학술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역시 여러 사건 발생의 객관적 원인과 우연적 요인만을 강조할 뿐,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이 된 이후 민족주의(국가주의-초국가주의)의 팽창, 경제 위기의 압력, 군부의 정치 간섭 등의 요인 분석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일본의 대외 확장이 갖는 내재적 추세의 존재를 알게 모르게 소홀히 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일련의 사건 속에 드러나는 역사 발전의 필연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일부 일본 학자는 저술에서 '만주사변'(9·18사변)의 배경에 관해 기술하면서 모두 '완바오산 사건'(1931. 7)과 '나카무라[中村] 대위 사건'(1931. 6) 등을 포함시키지만, 이를 장제스[蔣介石]의 북벌전쟁과 장쉐량[張學良]의 동북 통일 활동이 일본의 만철(滿鐵) 이권에 준 위협과 연결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왜 '만주'가 일본의 생명선이 되었는지 그 원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⁶⁸ 많은 자료를 통해, 루거우차오 사건 전후 중일 양국 군대의 활동과 양국 정부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그 목적을 루거우차오 사건의 돌발성 증명에 두고 있다. 소위 '누가 먼저 쏘았다'는 규명에 집중하면서 이 사건 배후에 존재하는 중대한 정치·경제·군사 요인을 '우연'적 실수로 귀결하여 중일전쟁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왜 일본 수비군이 평타이[豊臺]까지 주둔하면서 중국 군대 눈앞에서 군사 연습을 진행했는가? '9·18사변' 이후 장성 이남에서 연달아 발생한 산하이관[山海關] 사건, 러허[熱河] 작전, 화북 분리 움직임, 지둥[冀東] 방공 정부 육성, 평타이 사건 등과 루거우차오 사건 간의 필연적 관계

67 重光葵(1952), 『昭和の動乱 上』, 中公文庫, 33쪽.

68 秦郁彦(1996), 『盧溝橋事件の研究』 제4장, 東京大学出版会. 그는 중국의 군대가 먼저 총을 쏘았다고 보았다.

는 이들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일부 태평양전쟁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그 이전 미국이 일본에 대해 실시한 '고철 금수'를 포함한 경제 봉쇄 정책을 설명하면서, 1941년 12월에 미국이 '헐(Hull) 비망록'을 통해 보여준 국교 단절 협상의 최후 통첩을 부각시켰다. 미일개전을 피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여러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진주만 습격이 전쟁의 확대를 초래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역사 발전의 필연적 추세를 도외시하고 역사 과정을 아무 관련성 없는 역사의 편린으로 과편화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일본이 소위 'ABCD 포위권'⁶⁹에 갇혀 도저히 인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동적으로 시작한 전쟁일 뿐이라는,⁷⁰ 전진 군국주의 정부가 주장한 이유를 긍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학술 연구 층위에서 어떻게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어떻게 연구 결과를 처리하는가 등의 방법론 분석이다. 이 역시 학술계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대화할 내용이다.

역사학 연구는 인식 층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증적 연구와 추상적(이론적) 연구, 그리고 가치적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 역사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본래 역사학에서 필수적이면서도 기초에 속하는 작업으로 이론과 가치 판단의 근간이다. 소위 '사료에서 출발해 사료로 귀결되는[論從史出]' 역사학 연구의 기본 원칙은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어느 역사학자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실증 연구를 소홀히 다루어 이를 수동적 이론이나 가치 판단에 종속적인 지위로 격하시킬 때, 연구 결론은 뿌리없는 나무처럼 유심주의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실증 연구가 총체적 역사 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가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후자는 이론

69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 일본정부와 미디어가 부추긴 「米国, イギリス, 中国, オランダの対日包围網」 이론.

70 朝日新聞社에서 출판한 『太平洋戦争への道』, 1963년판을 참고.

및 사상사 연구 범주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역사 연구에 필수불가결하다. 역사학의 과학성은 곧 이러한 층위의 연구 성과로 체현되는 것이다. 실증적 연구와 추상적(이론적) 연구, 그리고 가치적 연구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 않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많은 학술 연구에서 보이는 ‘징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1939년 7월 8일 공표한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이후 국민에 대한 동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국에서 ‘징용’이라는 개념의 함의는 더욱 광범위하여 일본 식민지로서 한국 민중은 더 일찍부터 일본 통치 당국에 의해 갖가지 방식으로 ‘징용’되었다. 다시 말해, ‘국민징용령’이 나오기 전에 진행된 전시 동원의 실질이 ‘국민징용령’ 반포 이후의 동원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인 것이었다. 이 때문에 1961년 4월 28일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일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일본 측이 “소위 피징용자는 징용령에 따라 모집된 사람을 가리키는가?”라고 묻자, 한국 측은 “실질적으로 징용과 마찬가지로 징용된 이들을 포함한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이 밖에 동아시아 역사문제를 연구할 때 표면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개념 문제에 부딪힌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경제 연행’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인에게 이 개념은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민족 차별’이라는 삼중 의미를 포괄한다.⁷¹ 상대방의 전쟁 체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난징대학살 와중의 중국 피해자 숫자 문제, ‘다나카 상주문’의 역

71 韓国外務部政治局(2006), 『第5次韓日會談予備會議會議錄』, 韓國中京高校歴史探究サークル, 『韓國高校生の歴史レポート』, 明石書店.

사 문서로서의 진위 문제가 학술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논쟁은 역사 자료 가운데 공유하는 숫자의 정확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루고 역사 사료의 정확성을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다룰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상과 같은 사유 논리와 연구 방법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역사학의 기능과 역사 이론에서 필연성과 우연성의 관계 문제와 연결된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역사의 필연성은 역사 발전의 전망과 기본 방향을 결정짓고, 역사의 우연성은 역사 발전을 가속화하거나 늦추는 역할을 한다. 역사 발전의 필연성을 밝히는 것은 역사학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역사의 필연성은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연적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므로 우연성은 필연성을 체현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식이다. 또한, 역사의 필연성을 반영하는 내재적 주요 모순은 사건의 우연성을 벌여 펼쳐지고, 갖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 빚어지는 각 방향의 역량이 역사의 필연성으로 모아진다. 역사 발전의 필연성이나 규칙을 부인한다면, 역사를 혼란 일색의 무규칙한 우연적 사건의 집합체로 보게 된다. 물론, 역사의 필연성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사회 현상을 필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역사 필연성 이론이 예정설은 아니며, 모든 현존을 필연의 산물로 보는 것은 기계적 결정론의 시각이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 연구 가운데 각 사건의 비연속성, 우발성, 외인 등을 강조하면서 메이지유신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을 특정 역사적 조건 속에서 생겨난 일련의 인과관계가 있는 필연적 행동이라고 보지 않고, 심지어 그 가운데 일부(청일전쟁, 러일전쟁 등)를 미화하면서 실증 연구로 가치 판단을 대체하려는 것은 일종의 ‘비구조적’인 역사인식론이다. 이러한 역사인식론은 거대한 정치 위기를 잠복시키게 된다.

5. 역사인식 문제의 세 층위 간 상호 작용 및 복잡성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생긴 역사인식의 차이와 논쟁의 세 층위는 결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세 층위의 문제는 서로 관여하고 영향을 미친다.

정치 층위의 이견은 마치 전쟁 성격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며, 전쟁 합리론을 공개적으로 고취하는 사람은 확실히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 국내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와 중국에 대한 침략 인식을 가진 일본인은 68.1%라는 높은 숫자를 보였지만⁷²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역사 체험의 차이로 인한 인식의 차이는 보수적 정치 역량이 이용당해 정치 층위로 끌어올려지기도 한다.

전후에 철저히 못한 재판과 미흡한 처리가 초래한 가해 의식의 결여로 수많은 일본인은 자신이 군부의 사기 선전의 희생물이라고만 생각할 뿐 일본군 '위안부', 난징대학살, 세균전, 독가스전 등 일본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전쟁 책임감도 무딘 편이다. 그리하여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언행을 드러내는 국수주의가 활개를 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역사 체험이 본래 비대칭적인 양국 민중의 감정을 선동하여 국수주의 정서를 일으켜 감정 문제가 정치 문제화된다. 마찬가지로 일부 '실증 연구' 측면의 문제는 본래 학술 연구 층위에 속하지만⁷³ 연구 과정에서 한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면, '사실 고증'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료를 제공해 당시 역사 단면에서 일어난 부분적 사실의 진상을 실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력에 의해 정치 층위에서 필연적

72 読売新聞戦争責任検証委員会(2006), 『検証 戦争責任』世論調査結果, 中央公論新社.

73 '다나카 상 주문'의 문서로서 존재 여부 문제, 난징대학살의 중국인 피해자의 구체적 숫자 문제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으로 이용당하게 되고, 여기에 민중 간 비대칭적인 역사 체험이라는 배경까지 더해진다면, '실증 연구'의 결과는 민중 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중 간 대립만 격화시킬 것이다.

일본 역사학자가 지적했듯이,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소위 역사 사실의 인식 차이(피해자 숫자 문제 등)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역사인식 문제로 책임 문제를 대체하고 정치 책임을 회피한다. 우선 정치 목적을 숨긴 채 역사 사실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인식 문제 논쟁을 부추긴다. 또한, 역사관이나 역사인식 문제로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를 대체하면서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면 늘 민중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왜 일본에게만 책임이라고 하는가" 등과 같은 발언으로 전쟁 책임을 회피한다.⁷⁴

일례로 태평양전쟁 관련 연구의 경우, 일부 일본학자는 진주만 기습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미국의 고철 금수, 일본 경제에 대한 봉쇄 등과 같은 전쟁 발발의 객관적인 이유만을 찾고자 하며 전전 군국주의 정부가 고취했던 소위 'ABCD 포위권' 이론⁷⁵까지 견지한다. 또한 미일 개전을 회피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1941년 12월의 '혈 비망록'이 미국이 협상을 거절한 최후 통첩이며 개전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표면적으로는 학술 층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나머지 일으킨 것"⁷⁶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민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며 심지어 국가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사회에서 최근 '복합형 전쟁관'이 전쟁관에 반영되면서 득세하고

74 溝口雄三(2004), 『中国の衝撃』, 東京大学出版会.

75 태평양전쟁 개전 이전, 정부와 국내 언론이 외쳤던 '미국·영국·중국·네덜란드의 대일 포위권' 이론이다. 이 이론은 선전에 불과하며 사실 아무런 증거가 없다(Eguchi Kaichi[江口圭一, 1995]), 『日本の侵略と日本人の戦争観』, 岩波ブックレット, p.26 참고).

76 『太平洋戦争への道』(7)(朝日新聞社, 1963)은 이러한 해석의 대표적 저술이다.

있다. 일부 정치가는 국회 답변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침략 행위가 있었고”, “한반도에 대해 식민 통치가 있었지만” 미국·영국·네덜란드에 대한 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있다”⁷⁷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 당시 일본군이 고취했던, 미국·프랑스·네덜란드에 대한 전쟁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자위 전쟁’, 즉 ‘대동아 전쟁’ 인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나아가 1945년 8월 소련이 중립조약을 위배하고 ‘불법적으로’ ‘만주’를 침범했다는 인식으로 발전한다.⁷⁸ 1990년대 중반은 일본 신·구 정치체제 전환 및 신·구 정치가의 교체기로, 일본의 언론과 정계의 논조에 확실히 큰 변화가 생긴 시기다. ‘신세대 정치가’는 “당시 전쟁은 우리가 태어나기 십여 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어, 과거 전쟁에 대한 부채 의식이나 속죄 의식에서 벗어나 정치가와 이미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후는 끝났다”는 생각과 역사수정주의 언론이 활개를 치게 되었으며, “이미 끝난 전후”를 고취하면서 태평양전쟁 등에 대한 “역사의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보였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평화헌법, 민주주의 교육 등 일본 전후에 나타난 일련의 새로운 현상에 칼끝을 겨누면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언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⁷⁹ ‘전후’를 다시 쓸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며 헌법9조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감정 증위와 학술 증위의 문제가 정치의 낙인을 뒤집어쓰지 않기로 매우 어렵다.

정치 증위의 문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국 구조적 변화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21세기

77 『朝日新聞』(1994. 10. 25).

78 中村正則(2005), 『戦後史』, 岩波新書.

79 荒井信一(2006), 『歴史和解は可能か—東アジアでの対話を求めて』, 岩波書店, 282쪽.

전반기가 중국·일본·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였다면,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각국에 발전의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종의 도전으로서 내부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모리 카즈코[毛利和子] 교수는 이 현상을 “중일관계는 1995~1996년을 전후해 구조적 변동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된 일부 일본인들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였다. …… 이는 또한 일본의 ‘중국위협론’을 불러 일으켰다”⁸⁰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문제의 위험성과 논쟁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중일 양국 간에 이러한 관계와 우선순위를 관리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정치 판단, 민중 감정 및 학술 연구라는 세 층위에서 각각 반영되지만, 동시에 서로 연관되어 있어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대화는 한층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역사인식 차이와 논쟁을 일으키는 각 측면을 분리하고, 각 측면마다 대화의 담론체계를 구축하여 역사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화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각국 역사 학자들이 당면한 중요 과제일 것이다.

80 毛利和子(2006), 『日中関係—戦後から新時代へ』, 岩波新書, 130쪽.

한일협정과 남겨진 과제

와세다대학 교수 이종원

1. 머리말-‘냉전’과 ‘경제’로 인한 ‘역사’의 실종

한일강제병합으로부터 100년,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도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회 경제적인 면에 있어 한일 간 교류는 거의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고, “하루에 만 명이 왕래하는 시대”의 도래가 선포된 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과거 역사문제가 여전히 한일관계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이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다.¹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에서는 “좋다”가 57%, “좋지 않다”가 29%였음에 반해, 한국에서는 “좋다”가 24%, “좋지 않다”가 73%라는 정반대 회답을 하였다. 상대방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가 45%,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의 41%보다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가 80%에 달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에 관해서도 일본에서는 “좋아질 것”이 37%로 “나빠질 것” 4%를 크게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20%

1 『讀売新聞』(2010. 4. 17).

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관해 일본에서는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 44%가 “병합하지 말아야 했다” 21% 보다 많았다. 한국에서는 “병합하지 말아야 했다”가 54%였지만, “불가피했다”도 28%에 달했다.

현재 한일관계는 외교적으로 큰 쟁점도 없고, 비교적 평온한 상태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과 일본 민주당 정권이 서로 한일관계 중시를 내걸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양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위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현실이 위의 숫자에 나타나고 있다. 한일관계의 긴밀화라는 지표 밑에 역사문제를 둘러싼 깊은 골이 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 역사문제가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현상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과거 청산을 애매하게 처리하고 많은 과제를 뒤로 떠넘긴 사실에도 원인이 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본래 식민지배라는 과거 역사를 총괄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한일국교정상화는 ‘역사의 결락(缺落)’ ‘역사의 봉인(封印)’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1개의 조약, 4개의 협정, 2개의 의정서, 5개의 합의의사록, 9개의 교환공문, 2개의 왕복서한, 2개의 토의기록”²으로 구성된 방대한 문서였다. 그러나 그 안에 일본의 식민지배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한일협정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관계조약 전문(前文)의 서두에 있는 “양국민 간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 및 주권의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상호의 희망을 고려해서”라는 부분이 ‘역

2 유병용(2005), 「한일협정과 한일관계의 개선방향」,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사’에 언급한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결락’이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역사’를 철저히 배제하려고 한 일본의 강한 자세와 ‘역사’에 대한 평가를 관철하지 못한 한국의 약함을 귀결한 것은 새삼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되는 바와 같이, 이 같은 한일국교정상화의 본원적 한계는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 의해 ‘역사의 논리’가 봉인되고 배제된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³ 냉전 상황하의 분단국가인 한국에 한일국교정상화는 반공체제의 국가(또는 정권)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역사의 논리’를 제기하면서도 더욱 많은 경제원조 획득이 우선시되었다. 일본 또한 일본의 안전보장 차원의 문제에서 같은 ‘자유진영’인 한국의 반공정권을 지원한다는 냉전전략상의 요청과 더불어, 과거 청산에 따르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한일 회담에는 미국도 깊게 관여했다. 특히, 1960년대 들어 베트남 전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케네디와 존슨 정권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한일회담의 정치적 타결을 촉구하고, 고위급의 ‘외교적 압력’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한일 간 가로놓인 ‘역사’에 대한 시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⁴

3 和田春樹(1992), 「歴史の反省と経済の論理-中国・ソ連・朝鮮との国交交渉から」,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編, 『現代日本社会・제7권・国際化』, 東京大学出版会, 279~325쪽.

4 케네디 및 존슨 정권기에 미국이 청구권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의 정치결착을 촉구한 과정에 관해서 李鍾元(2009),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會談とアメリカー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1), 『立教法學』 제76호, 1-33; 李鍾元(2009),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會談とアメリカー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2), 『立教法學』 제77호, 109~140쪽; 李鍾元(2010),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會談とアメリカー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3), 『立教法學』 제78호, 155~205쪽; 李鍾元(2010),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會談とアメリカー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4), 『立教法學』 제80호

이 글에서는 최근 잇달아 공개된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와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일협정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배제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개략적인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협정의 역사적 평가

한일협정을 어떻게 보는가는 여전히 국내에서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며, 한일 간 외교문제를 좌우한다. 이는 한일협정의 여러 문제들이 아직도 지속되는 ‘현재적 과제’라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더하여, 한일회담의 경과를 해명할 수 있는 일차자료의 부재가 그 평가를 정치적 또는 감정적 차원에 머무르게 한 큰 요인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일 양국 정부의 회담관련 외교문서 공개는 한일회담의 진상과 과제에 관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진전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공개된 경위는 그 자체가 한일협정의 의미와 그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일 양국 모두 외교문서에 관해서 ‘30년 원칙’에 입각해 공개되어 왔다. 그러나 한일회담 관련문서에 한해서는 교섭 종료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일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의 반대로 한일 양국 모두 문서공개를 미루어왔다.⁵ 그러나 근년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한일 양국의 정보공개와

근간을 참조.

5 한국 정부는 이미 김영삼 정권기인 1993년과 1997년에 한일회담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검토한 바 있지만, 일본 외무성이 “비록 부분 공개라도 북일교섭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우려한다”고 사실상의 ‘비공개요청’을 한 것을 받아 공개를 보류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2004. 1. 11); 『朝日新聞』(1997. 2. 20).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고조되면서, 시민단체의 자료공개 청구를 계기로 외교문서의 전면적 공개가 실현된 것이다.

먼저 자료공개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⁶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가 그 계기였다. 법원에서 공개를 명하자 외교통상부는 일단 공소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05년 1월 5건(약 1,000매)의 문서공개(제1차)를 단행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은 ‘역사청산사업’의 일환으로 한일회담관련문서를 ‘전면공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⁷ 2005년 8월 156건 약 36,000매를 제2차로 공개했다.⁸

한편, 일본 측 외교문서 공개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촉발된 시민단체의 공개청구에 의해 실현되었다.⁹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와 오다 오사무[太田修] 등 학자와 전후보상문제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성(2005. 12)된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2006년 4월 정보공개법에 의해 한일회담 문서의 공개청구를 의무성에 제기한 이후, 부분공개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의무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6 한국 외교문서를 공개하게 된 경위와 문서 개요에 관해서는 김창록(2005), 「한일청구권협정’ 관련문서 공개의 의미」, 『역사비평』, 통권 70호, 22~38쪽 참조.

7 2005년의 문서공개 결정과정에서 한국 정부 내에도 의견 대립이 있어,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의 반대와 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문서공개에 소극적이었지만, 청와대 주도로 포괄적인 ‘역사청산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관련문서의 전면공개를 결정했다. 堀山明子(2007), 「韓日協定の文書公開と盧武鉉政權の被害補償政策」, 『日本空間』, 제2호, 192~220쪽.

8 공개된 한국 외교문서는 외교사료관에서 일반공개하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의 HP에도 문서전체가 게재되어 있다.

9 일본 측 외교문서 공개에 이른 경위와 내용 소개에 관해서는, 吉澤文壽(2008. 11. 17), 「일본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상황에 대하여-재산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문서의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주최 국제심포지엄; 『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會ニュース』 11호(2008. 5. 23)를 참조.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HP에는 문서 공개의 경위 및 내용 소개와 더불어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공개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고 있다.

한 결과, 일본 외무성은 2006년 8월~2008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369건, 약 6만 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공개심사 대상인 한일 회담 관련문서 1,916건 가운데 공개 1,369건, 비공개 23건, 부분공개(목적에 의한 삭제) 524건으로 공개대상 문서 중 28.5%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했다고 한다. 외무성은 이로써 한일회담 관련문서는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된 한일 외교문서는 모두 자료상의 공백이 많아 ‘전면공개’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 공개 요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식 외교문서의 공개를 계기로 한일회담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종래에도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공식기록이나 외교문서를 이용한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관계자의 회고록 등을 통한 간접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섭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둘러싸고도 오해와 혼란이 많았고, 양국 정부의 교섭전략과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분석도 추측의 영역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로 본래 의미에서 실증적 연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공개 외교문서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방대한 문서의 요점을 정리한 『한일 회담 외교문서 해제집』¹⁰을 간행하는 등 한일회담 연구의 거점으로 공헌하고 있으며, 이에 촉발된 실증적 연구와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문부과학성 관할의 과학연구비 지원으로 국제공동연구가 조직되어 최초의 성과가 간행될 예정이다.¹¹

10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2008), 『한일회담외교문서해제집』 전5권, 동북아시아역사재단.

11 李鍾元·淺野豊美·木宮正史 編,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전2권, 法政大學出版部.

이 같은 실증적 연구의 진전에 따라, 1965년의 한일협정이 지닌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논점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외교교섭이라는 관점에서 한일회담은 많은 좌절과 타협을 강요당한 ‘패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측 외교문서가 공개되었을 당시 한국 국내에서는 ‘굴욕외교’라는 종래의 이미지와는 달리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교섭 자세를 평가하는 견해와 논조가 적지 않았다.¹² 물론 각 위원회 등 외교교섭 ‘현장’의 기록에서는 각기 쟁점을 둘러싸고 한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는 한국 측 대표단의 모습이 생생히 전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위급의 정책결정자에게 눈을 돌리면 외교적 미숙에 더하여 조기의 정치적 타결을 서두른 나머지 ‘역사’(과거 청산이라는 명분)의 면뿐만 아니라, ‘경제’(청구권 금액이라는 실리) 면에서도 스스로 양보와 타협을 거듭하고 후퇴해 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현장’의 노력이 ‘정치’의 논리와 계산에 의해 억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¹³ 특히, 일본 외교문서에서는 이 같은 한국 측 외교전략과 태세의 취약함이 일본 측에 의해 이용되고 농락당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⁴

12 「‘굴욕회담’ 재평가될까」, 『동아일보』(2005. 8. 27); 사실, 「한일협정, 굴욕 아닌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 『문화일보』(2005. 8. 27).

13 장박진은 한국 측 외교문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연구에서 정치결착을 서두른 박정희 정권기에 들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짐을 상세히 해명하고 있다. 장박진(2009),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391~510쪽.

14 그 한 예로, 박정희 의장의 방일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과의 회담 등, 박정희 정권 초기 대일교섭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李鍾元(2010), 앞의 글을 참조.

둘째, 이와 관련된 논점이지만, 대일교섭에 임하는 자세와 목표라는 측면에서는 이승만에서 박정희까지 한국 역대정권 사이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이 특별히 ‘굴욕외교’를 전개한 것도 아니며, 현실적인 대일외교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장면, 박정희 집권기의 교섭내용은 모두 이승만 집권기에 확립된 협상구조 내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¹⁵ 대로 ‘역사’의 한계라는 면과 ‘경제’의 성과라는 면에 있어, 역대 정권 사이에는 ‘단절성’보다 ‘연속성’이 강했음을 공개 외교문서는 보여주고 있다.¹⁶

셋째, 한편 일본에게 한일협정은 외교교섭으로서는 큰 ‘성공’이었다. ‘힘의 우위’와 외교교섭상의 다양한 수단을 구사해 자국의 ‘역사의 논리’를 관철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려되었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도 성공했다. 필리핀 등과의 배상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철저한 법률론과 증거논쟁을 구사한 교섭의 장기화 전술이 일본의 교섭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배상 보상의 실시 시기를 1960년대 일본경제 고도성장기까지 늦춤으로써 일본의 상대적인 부담감을 더욱 줄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전화되었다는 역설의 구도도 존재한다. 주한대사와 외무차관을 역임한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는 “이제까지 일련의 전후처리를 볼 때, 일본의 경제력이 정말로 부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부담

15 장박진(2009), 『식민지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한일회담이라는 역설』, 353쪽.

16 예컨대, 청구권 총액 면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자금 1억 달러 이상”이라는 「김 오오히라 메모」에 의한 합의의 원형(“3억 달러” 또는 “5억 달러”)이 이미 장면 정권기에 형성되어, 이세키 유지로[伊關佑二郎] 아시아국장을 중심으로 한일 및 미국 정부 사이에 일정한 타진이 행해진 경위에 대해서는 李鍾元(2009), 「日韓の新公開外交文書に見る日韓會談とアメリカ-朴正熙軍事政權の成立から大平金メモまで」, 20-30; 李鍾元, 「日韓會談の政治決着とアメリカ」,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참조.

을 ‘꺾는’ 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약적 법적으로는 확실히 끝났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고 불만이 남는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본의 품격 또는 ‘국덕(國德)’이라고 해야 할 것이 기대되면서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¹⁷ 한일협정의 ‘결락’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가 일본외교의 과제라는 사실을 전직 외교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솔직한 언어로 인정한 발언이라 하겠다.

3. 역사관의 상극-기본관계

한국 정부가 공식해설에서 강조한 대로 기본관계조약은 “양국 간의 불행하였던 과거관계를 여하히 청산”하고, “앞으로 새로운 국교관계를 여하한 기초 위에 세우느냐”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한일협정 전체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¹⁸ 그 기본관계조약 중에서도 중심적인 쟁점이 된 것이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을 비롯한 ‘구조약 무효확인조항’(제2조)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조를 둘러싸고 한일 간 주장이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그어, 최종적으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 한다”는 타협적인 표현으로 낙착되었다. 즉, 이들 조약이 무효가 된 시점을 “이미”(already)라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한국 측은 “당초부터 무효”, 일본 측은 “1948년 8월 한국 정부 성립 시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각기 다른 해석하는 것이 양해되었다. 식민지배의 역사를 어떻게

17 『外交フォーラム』(1992, 2).

18 대한민국정부(1965. 5. 15), 『한일회담 합의사항-가조인내용해설』.

평가할 것인가의 과제는 뒤로 미루고, 근본적인 대답을 남긴 채 편의적인 타협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이미 무효”라는 타협에 이른 경위에 관해서는 종래 한국 측 제안설 등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한일 외교문서를 사용한 최근 연구들¹⁹에 의해 그 전모가 거의 밝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보자.

첫째, 당초 한국 측 제안인 “무효”(null and void)라는 문구 자체가 무효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애매함을 내포한 타협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장박진과 오타 오사무[太田]는 각기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52년의 제1차 한일회담에서 “(모든 구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한국 측 초안에 대해 일본 측은 무효의 시점이 애매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 유진오는 1910년 이전의 조약은 한국의 의사에 반해서 체결된 것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법 이론을 관철하면 실제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효의 시점은 의도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어쨌든 무효”라는 점만을 확인하고 싶다고 답변했다.²⁰

장박진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한국 측은 ‘null and void’의 규정을 통해서 병합조약의 체결 당시부터의 무효를 일본 측과 확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어 온 ‘already’ 삽입 여부와 상관 없이 병합조약의 무효시점 논란의 여지를 당초부터 남긴 점”을 비판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²¹ 즉, 종래 통설처럼 박정희 정권이 ‘already’의 삽입을 용인한 결과 병합조약의 무효 시점이 애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 초기 교섭 때부터 한국 측은 병합조약의 무효에 관해서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 이유로 장박진과 오타 오사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참가를 거부당한 한국 측 법적·정치적 교섭기반의 취약성,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와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 보상 요구의 논리적 모순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시점의 애매성 등 당초부터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역시 ‘구조약 무효확인조항’을 둘러싼 논쟁은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인식의 대립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측이 애매함을 내포하면서도 ‘null and void’의 규정을 강조한 이유에 관해 장박진과 오타 오사무는 유진오와 박동진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민족감정에 근거해서 병합조약과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어떤 형태로든 명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 같은 한정적인 문구라 해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의미하는 조항의 설정에는 강경히 반대했다. 오타 오사무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배경에는 식민지 통치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막대한 배상과 보상 요구에 대한 부담의 경계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본 측에 식민지 지배가 부당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1953년의 ‘구보타[久保田] 망언’이 고립된 예외가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와 사회의 일반적인 역사인식이었으며, 그것이 한일협정의 경위와 결과를 규정한 기본적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장박진 논문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듯이, 제1차 한일회담 이후 한국 측도 구조약 무효조항을 포함한 기본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

19 특히, 다음의 세 연구는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장박진(2008),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기본관계조약 형성과정의 분석」, 『국제 지역연구』 제 17권 2호; 太田修(2011), 「二つの講和條約と初期日韓國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植民地主義」,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吉澤文壽(2011),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基本關係條約」,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

20 太田修(2011), 「二つの講和條約と初期日韓國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植民地主義」.

21 장박진(2008), 앞의 글.

기를 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으며, 이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기본관계조약이 다시 의제에 오르게 되는 것은 회담타결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1964년 말 제7차 회담에서다. 그때 한국 측 교섭안은 무효조항의 시점으로 ‘당초부터’(ab initio)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대일교섭용이라 생각되며, 최종적으로는 이전의 원안대로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명시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65년 2월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 방한 시의 가조인 직전 최종 교섭에서 일본 측이 ‘already’의 추가를 제안하자, 한국 측은 제3조 ‘유일합법정부 확인조항’의 “the only such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is specified ……”에서 ‘such’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장박진이 비판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교환은 한국이 유일합법정부라는 ‘냉전의 논리’를 우선시해서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역사의 논리’를 다시금 희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lready’를 추가한 교섭 경위에 대해서 당시 교섭에 관여했던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郎] 아시아 국장은, 회담 막판에 “already라는 단어를 null and void 앞에 삽입할 것을 가볍게 시사”하자, 한국 측이 즉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우시로쿠 도라오는 “설마 한국 측이 이 단어에 물려들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빨랐다고 술회했다. 한국이 교섭 결렬을 피하고 합의를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²²

이상과 같이, 한일협정은 그 토대라 할 수 있는 식민지주의에 대한 역사 인식의 면에서 공통기반과 이해를 결여한 채, 서로 대립하는 역사관 위에 성립된 것이었다. 한일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결락’이면서 역사문제가 거

22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總說11」, 日本外務省公開日韓會談文書, 문서번호1127, 143~144쪽. 이 자료는 외무성 내부용 역사기록으로 1971년에 편찬된 것이다.

듭 분출되어 한일 양국 사회에 분쟁을 초래해 온 구조이기도 하다. 한일관계가 안정적인 근린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깊은 골을 메우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수상은 “일본이 과거 한 시기에 한국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를 통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문서에서 ‘사죄’를 표명한 최초의 예이며, 한일협정의 ‘결락’을 메우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8월 말에 예정된 간 나오토[菅真人] 수상의 병합 100년관련 담화가 주목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일병합조약에 관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의 ‘불법부당론’과 일본의 ‘합법정당론’이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의 ‘무리아마[村山]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각국에 “손해와 고통”을 준 것을 “국책의 오류”라 명기하고, “통절한 반성의 념”과 “사죄”를 표명한 것은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합법정당론’에서 ‘합법부당론’으로 수정되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한일 학계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서도 ‘합법부당론’과 ‘무효론’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다.²³ 한일 간 역사인식의 공통기반을 모색하는 작업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3 堀山明子(2010), 「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와 전후보상문제의 변화」, 이창훈 외 편, 『한국 근현대정치와 일본』 제2권, 선인, 260쪽; 노영돈,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일본의 과거사 책임」, 『同書』, 249~250쪽.

4. 봉인된 과거 청산-청구권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은 그 명칭부터 기묘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청구권’과 ‘경제협력’이 같은 협정안에 열거되어 있으나 그 상호 관련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1조에서는 일본 정부가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 합계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제2조에서는 한일 쌍방의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두 조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규정도 없다. 5억 달러의 성격에 관해서도 한국 측은 ‘청구권’, 일본 측은 ‘경제협력’으로 각기 다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같은 기묘한 타협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책임과 피해보상이라는 틀을 극력 회피하려 한 일본 측 논리와 주장의 산물이었다. 일본도 회담 초기에 ‘영토의 분리’라는 맥락에서 청구권 문제를 검토했으며, 교섭에서도 개인청구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측 청구권 주장과 총액을 억제하고, ‘상호 포기’나 ‘상쇄방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다. 일본이 ‘청구권’에서 ‘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장면 민주당 정권기인 1961년 이후지만, 오타 오사무는 공개 외교문서를 토대로 이 같은 발상이 1950년대의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일본 정부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²⁴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의 조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일본 측은 아무 이유와 명목을 밝히지 않은 채 ‘경제협력’을 행하는 한편, 그와 직접 관계

24 太田修(2011), 앞의 글.

없이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구도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 과정에서 두 조치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회담 막바지 단계였던 1965년 5월의 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5억 달러의 자금이 “청구권의 대가”나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순수한 경제협력”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일본 정부가 ‘청구권’이라는 틀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배경에는 일본국민으로부터 보상 요구가 분출될 것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었음을 공개된 외교문서가 보여주고 있다. 청구권의 상호포기나 상쇄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한국 일본인 재산에 대한 보상 요구가 일본 정부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1962년 7월 18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가 신임 외상 주재로 열린 한일회담 대책 외무성 간부회의에서 이세키 유지로[伊關佑二郎] 아시아 국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²⁶

이세키
유지로

‘청구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측 요구를 재한 일본재산에 의해 쥐았다는 ‘미국 해석’과 관련해 국내 보상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오히라
마사요시
대신

일본인의 대일본 정부 청구가 나오게 되는 해결은 곤란하다. 이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 둘 필요가 있다. 자는 아이를 깨우면 큰 일 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및 한국인으로부터의 청구권 요구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재산권 보상요구를 두려워해서 그를 봉쇄할 목적으로 ‘경제협력’과

25 김창록(2005), 앞의 글, 33쪽.

26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9」, 日本外務省公開日韓会谈文書, 문서번호1882, 7~8쪽.

‘청구권의 자발적 포기’의 결합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 방식의 ‘해결’을 피한 것이었다.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일협정의 조문이 현재까지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구체적인 피해의 구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왔다. 그 책임의 일부는 한국 정부에도 있다. 청구권의 존재를 애매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청구권 자금’의 대부분(89.4%)을 경제건설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한 것은 9.7%에 불과했다.²⁷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회담 관련문서 공개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법」(2007)을 제정해 늦게나마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은 한일협정의 ‘결락’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개인청구권의 관점에서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를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개 외교문서의 상세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2005년 8월 회담 관련문서 공개에 즈음해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의 범위”에 관해서 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을 포함한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점, ②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견해로 밝혔다.²⁸ 적어도 이들 문제(일본군 ‘위안부’, 재한피폭자, 사할린잔류한인)는 청구권협정의 명백한 ‘결락’으로서 우선적 과제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도 1990년대 이후 세 문제 등에 관해서 재한피폭자 치료, 사할린잔류한인의 귀국지원, 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의한 보상금지급 등의 사업을 통해 ‘인도적 조치’나 ‘반관반민’

27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등 대책기획단(2007. 11),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등 대책기획단 활동백서』, 20쪽.

28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05. 8. 26); 『연합뉴스』(2007. 11).

방식으로 실시해 왔다.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분적·한정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다.

이것이 아시아여성국민기금의 경우처럼 새로운 불신과 대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05년 이후, 한국 정부가 구제조치를 위한 자료로서 요청해온 전시징용자명부에 관해서도 그간 “작업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방치해 오다가, 작년 9월 민주당 정권 성립을 계기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해 금년 3월에 17만 5천명 분의 명부를 제공하였다.²⁹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기 시작한 한국 정부와 연계하면서 일본 정부도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5. 맺음말-한일협정의 ‘결락’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과거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일협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봉인’이나 ‘뒤로 미루기’였다. 한일회담 관련문서 공개로 실증적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 문제성은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한일협정에서 무엇이 누락되고, 또 무엇이 봉인되었는가. 우선은 그 ‘결락’의 실태를 규명한 위에 이를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후의 과제일 것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병합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한일 간 역사인식 골을 좁히고 공통이해의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각기 사회의 역사인식은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한일협정’을 낳은 낡은 역사인식과 역사관의 괴리를 밝히고, 그것이 이후의 한일관계에 끼친 영향을 직시하는 것

29 『朝日新聞』(2010. 1. 7, 2010. 3. 26).

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한일 양국의 정책담당자와 국민들이 함께 '미래를 의식한 역사적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일본 외교문서를 보면, 해방 후 10여 년이 흐른 1960년대 초까지 “서울”을 “경성(京城)”으로, “한국”을 “남선(南鮮)”으로 부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내부 논의를 기록한 자료들에 빈번히 나타난다. 지금 같아서는 공표되면 일대 스캔들이 될 수도 있을 발언들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행했고, 공식문서에 기록했다. 당시 일본 정치가와 정책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낮은 역사관의 발로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래의 한일관계를 시야에 두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역사와 전략의 시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한일협정’이라는 ‘과거’를 어떻게 ‘직시’하고 ‘청산’해 갈 것인가가 요청되고 있다.

둘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한일협정에서 배제되고 봉인된 문제의 해결이며 피해의 구제이다. 개인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 이에 더하여 문화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일본 황실을 담당하는 궁내청신능부(宮内廳書陵部, 도서관에 해당)에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등 조선왕실과 관계된 귀중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반환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부터 일반적 관심이 적어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한 쟁점의 하나가 문화재 반환이었다. 공개 외교문서를 토대로 한 최근 연구들의 의해 조금씩 그 실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한국 문화재 유출이 주로 당시 일본의 지배층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이 높은 장벽의 한 원인이었다.³⁰ 그 장벽은 지금도 높다. 공개대상이 된 한일회담관련 일본 외교문

30 유미나(2009),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 간 문화재 반환교섭」, 『일본 역사연구』 제30집; 박훈(2010),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 『의제로 본 한일회담-외교문서와 한

서 1,916건 중 문서 전체가 비공개로 지정된 것이 22건인데, 그중 약 1/3에 해당되는 8건이 문화재 관계다. 문서 제목을 보면, 「한국관계 중요문화재일람」 등 일본 각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 목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일회담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일본 국내에 있는 한국 문화재 목록이 일본의 국익에 관계되는 ‘국가기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65년의 「문화재 문화협력협정」에 의해 약 1,300점의 문화재가 한국에 “인도”되어 “법적인 문제는 결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당시 반환 교섭 대상이 된 일본 국유 소장 문화재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것이 반환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확인된 것만으로도 6만여 점에 이르며, 개인 소장품을 포함하면 30만 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³¹ 문화재는 역사의 집적물이며,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 반환은 국제적인 쟁점이 되어 있으며, 일본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주목되고 있다.

셋째, 북일국교정상화다. 한일회담에서는 한국의 강경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관계조약 제2조(유일합법정부확인조항)에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범위를 한국에 한정하였다.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 여지를 남겨 두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으로서도 한반도 전체와 관계설정을 새롭게 하는 데 절반의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56년에 소련과 국교를 회복하고, 1972년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북일교섭은 미소냉전의 종결을 기다려야 했다. 1991년에 개시된 북일교섭은 1992년까지 8차회담을 열고 집중적인 협의를 했지만, 핵

일회담의 재조명』, 제2권.

31 『朝日新聞』(2010. 7. 28).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가 장애가 되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긴 정체를 맞았다. 그 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방북과 북일평양선언 등을 계기로 간헐적으로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2004년 제12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공식교섭은 중단상태에 있다. 교섭개시로부터 이미 19년이 경과하여, 한일회담 14년을 능가하는 장기 교섭이 되었다.

문제는 회담의 장기화만이 아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북일국교정상화의 내용이 한일협정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그 ‘결락’을 메울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일교섭 과정에서도 한일회담과 거의 같은 교섭전략과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한일협정방식’의 전례를 들어 북한 측의 요구를 억제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북한은 이전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³² 북일교섭이 이국 간의 국교교섭에 한정되지 않고, 핵개발문제로 집약되는 지역안전보장문제의 맥락과 연계됨으로써 ‘과거 청산’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서 “청구권의 상호포기”와 “경제협력”이 합의된 것은 ‘한일협정방식’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평양선언에 “과거 식민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1998년 한일파트너십 선언과 거의 같은 표현으로 한일협정의 ‘결락’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크게 변화했으며 특히 ‘과거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북일

교섭이 한일협정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에 대해, 냉전대결적 사고로 인한 비판이나 반발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협정의 ‘결락’을 보완하는 진행과정 속에서 북일국교정상화를 위치지우는 역사적 시각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2 한일회담과 비교하면서 북일교섭을 분석한 연구로 장박진(2010), 「식민지 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 분석-한일회담의 경험에 입각하면서」, 『국제 지역연구』 19권 2호, 135~174쪽.

침략행위¹ : 미국의 하와이 점령

하와이대학교 교수 에드워드 존 숄츠(Edward J. Shultz)

침략행위

“호놀룰루 땅 위에서 이러한 군사행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침략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미국 대통령, 1893년 12월 18일.

“의회는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1893년 1월 17일 하와이 왕국의 전복(顛覆)을 사과한다. 미국의 연방요원, 시민들과 함께 하와이 원주민들의 자치권 박탈에 대하여 사과한다.” 윌리엄 J. 클린턴(William J. Clinton), 1993년 11월 23일.

위의 두 가지 성명은 거의 1세기 미국역사를 가로지르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 미국이 1893년 하와이 왕정을 무너뜨린 것이나, 이후 1898년 하와이를 병합(併合)한 것 모두 불법이란 것이다. 더욱이 이는 하와이 주민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난폭한 공격이었다.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체제전복과 병합은, 좁게 보면 1893년 1월 한 주간에 벌어진 사건의

¹ This title is borrowed from a speech made by President Grover Cleveland. See below. It is also the title to a video tape produced by the Center for Hawaii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1993.

결과였고 좀 더 크게 보면 하와이 섬에 대해 1세기 동안 벌어진 서구 침탈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 글은 미국의 하와이 점령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관련된 역사를 다룰 것이다. 하와이 왕정의 종말은 1778년 영국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하와이의 종교, 문화 그리고 정치는 강한 서구의 영향하에 점차 쇠퇴하였다. 하와이 왕국의 멸망이 대체적으로 서구 침략에 의한 것이라면, 하와이 왕정을 무너뜨린 결정적 요인은 1890년대 미국인들의 공격적이며 제국주의적 행태에 기인한다.

1778년 제임스 쿡 선장이 도착하기 전 하와이 왕국은 바깥세계와 고립되어 있었다. 원시적이고 때묻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와이 주민들은 풍요롭고 자급적인 사회를 일궈냈다. 부지런한 원예농업과 주변 바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와이 사회의 규모는 인구 400,000~800,0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사회적 규범은 엄격했고 종교기관들도 활기가 넘쳤으며 경제시스템도 자급이 가능했다.

제임스 쿡 선장의 예기치 못한 등장은 하와이 사회에 첫 번째 심각한 도전이 되었고, 뒤이은 상인들의 도착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였다. 십년에 걸친 제임스 쿡 선장의 '발견' 이후 서구인들은 그 섬에 정착하게 되었다. 처음 서구인들은 하와이를 높은 바다의 수고로부터 쉴 수 있는 천국이자 피난처이며 물자 공급을 할 수 있는 휴양지로 간주했다. 그러나 하와이 사회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자급적 사회는 갑작스레 서구의 상업시스템으로 전락했고 하와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무단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서구 상인들은 중국인들이 하와이 백단향을 높은 가격에 사려한다는 걸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30년 이내에 하와이 섬에서 백단향이 자취를 감췄다. 탐욕스러운 하와이 족장들은 서구 물품을 사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소비를 과시하는 사이 하와이 농민들은 굶어갔다.

하와이 주민들은 곧 그들의 가치체계와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자신들의 도구가 조악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하는 서구의 기술을 매일 접하면서 하와이 사람들은 그들 문화의 생존력에 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서구 상인들이 섬으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물건들뿐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도 들여오게 되었다. 서구 전염병에 면역이 없는 하와이 주민들에게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많은 하와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족과 믿음이 이제 종말을 맞는 것 같이 보였다. 1819년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카메하멜라의 죽음 직후, 새로운 왕은 하와이 전통 카푸 또는 타부 시스템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하와이인들의 전통적 믿음에 대한 혼란과 불만을 생생히 드러낸다.

하와이인들이 그들의 폐기된 카푸스를 대체할 시스템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1820년에 첫 번째 서구 선교사들이 하와이 해안에 도착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교리와 가치체계를 소개하였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온 시기가 신의 섭리라 믿었고 재빠르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종교적 신념을 전파했으나 복음은 하와이의 문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와이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하와이 문화가 이미 파산했으며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하와이인들에게 더 강력한 서구의 신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그들의 전통적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강요했다.

일부 하와이인들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했으나 일부는 그러질 못했다. 1830년 중반 하와이 원주민들은 서구의 침략에 밀려 이들의 문화는 점점 더 소멸해 갔다. 인구통계 숫자를 보면, 서구의 등장으로 인한 파괴가 얼마나 심한지 생생히 알 수 있다. 1778년 400,000을 초과하던 하와이 원주민의 숫자는 1825년 120,000으로 줄었다. 인구는 19세기를 지나며 더욱 줄게 된다.

하와이 주민들이 약해지는 사이 서구 국가들은 더욱 공격적이 되었다.

1839년 프랑스는 호놀룰루를 차지했고 총부리를 하와이 왕정에 겨누었다. 1843년, 영국인들은 그들의 실수를 깨닫기까지 6개월간 하와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서구의 하와이에 대한 전략이 점차 분명해 졌다.

1848년은 하와이 문화가 무너진 결정적인 해였다. 그해 선교사들의 자손인 서구 자문관들은 하와이 법원에게 전통적 토지 시스템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와이엔 서구와 같은 안전한 토지 시스템이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은 하와이 왕조가 토지 시스템을 개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작위를 주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1848년을 기점으로 하와이인들은 작위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등록해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결과는 매우 급진적으로 나타났다. 첫 10년 동안 족장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했으나 19세기 말경, 64%의 사유지가 백인 기업가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카푸 시스템의 종말과 선교사들의 등장, 하와이의 영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 같이, 토지 시스템의 붕괴는 하와이인들의 토지와 대대로 이어지던 가치체계의 단절로 나타났다.

1850년 이후부터 하와이 역사는 점차 미국 역사의 일부가 되어 갔다. 점차 많은 토지가 서구인들의 소유가 되면서 설탕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설탕재배와 더불어 경제논리가 하와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와이에 왕이 아직 존재했음에도 설탕과 관련된 귀족은 새로운 지배층이었는데, 이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설탕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더 필요해진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와이 정부는 아시아 일꾼들을 모집했고, 중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되었다. 1890년이 되자, 하와이인들은 자기네 땅에서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 세기 전 하와이에는 어떤 외국인도 없었음에 반해 1900년에 이르러 인구의 75%가 비(非)하와이인이었고 하와이 주민은 40,000명에도 못 미쳤다.

1890년이 되자 미국의 정치 또한 바뀌었다. 미국 대륙에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은 바다 건너 다른 영토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북미 대륙에 바다의 경계를 넘어 정주하게끔 되어있다는 신념에 따라 미국인들은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인 태평양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890년까지 미국은 아직 젊은 국가였으나, 자신들이 가는 길이 세계를 위한 최선의 것이라는 신념에 찬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다.

1890년 하와이에서 미국인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 집단이었다. 그들은 왕국 인구의 20%에 불과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거의 통치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하와이에서 본 것들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와이의 미국인들에 있어 하와이인들은 죽어가는 종족이었다.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인구는 단지 하와이인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일부는 확실히 이런 현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느끼는 듯 했다.

많은 미국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하와이의 전통적 가치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하와이인들의 난교(亂交)와 '음탕한' 홀라 춤을 비난했다. 그들은 백인들이었고 19세기 백인들에 있어 갈색 인종은 통치하기에 맞지 않았다. 하와이인과 같이 억압된 민족을 키우고 계몽시키는 것이 백인들에 부과된 짐이었다. 하와이 미국인들에 있어 하와이인들은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1874~1891년까지 하와이를 통치한 칼라카우아 왕은 그들 눈에 부패와 무분별한 행위의 지질한 자로 보였다. 1891년 칼라카우아왕의 누이인 릴리우오칼라니가 그의 뒤를 이어 하와이를 통치했다. 미국인들은 그녀가 그들의 지시를 따르길 바랐으나 새로운 여왕은 독자적 사고의 소유자였고 미국 경제 엘리트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사건은 1893년 1월 12~17일, 5일 사이에 빠르게 전개되었다. 이 사건들은 한 세기에 걸쳐 일어날 일이었으나, 일주일도 안 걸리고 종료되었다. 여왕은 왕조에게서 빼앗긴 권위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고 하와이인들은 대체로 여왕의 움직임에 동조했다. 그러자 지난 세기 왕권을 강탈하는 데 성공한 미국 기업인들은 분노를 나타냈다. 그 작은 나라는 헌법적 위기에 휩싸였고, 정부 기능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1893년 1월 12~16일 사이, 여왕의 지지자들과 반대세력 간 상호 의도를 파악하려는 감시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주하와이 미국 공사인 존 스티븐스가 150명의 무장군인을 USS Boston이라는 전함에 싣고 하와이 만에 도착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열렬한 합병론자인 존 스티븐스는 호놀룰루의 동료 미국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군대를 전략적 요충지에 주둔시켰다. 1893년 1월 17일 그들은 정부를 점령했다.

사태의 진전에 놀란 하와이인들은 그저 방관했다. 미국인들은 주모자 중 하나인 조지 샌포드 돌(Sanford Ballard Dole)이 그의 지휘하에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발표에 환호했다. 시기에 관해, 그는 “미합중국과의 연합에 관한 조건에 관해 협상에 동의 할 때까지”라고 밝혔다. 릴리우오칼라니 여왕은 국민들의 생명이 그로 인해 위협받지 않길 바랐고, 미국이 관대한 정책을 펼거라 믿어 미합중국의 강력한 힘에 굴복했다.

시기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가 주어진 사실대로 그 대표의 권한을 없애고 하와이 섬들의 헌법적 주권으로 주장하는 나의 권위를 회복시킬 때까지”로 희망했다.

하와이 거주 미국인들이 그들 행동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미국인들은 그 계획을 승인하려 하지 않았다. 1893년 당시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이 병합에 대한 거대담론이 미의회와 언론을 뒤덮었다. 넓은 의미에서 공화당원들은 공격적이고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하와이 병합을 찬성하고 미국의 힘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을 쥔 민주당원들은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하와이 왕정 전복과 임시정부의 병합 요

청을 조사하기 위해 특사를 하와이에 파견했다. 하와이 섬에서 수개월을 보낸 후 미국공사 존 스티븐스와 미국군대의 합작이 아니었으면 왕정 전복은 성공하지 못 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대부분의 하와이인들이 왕정 복구를 원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하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93년 가을 또 다른 특사를 보내 여왕을 복귀시키고자 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하와이 거주 미국인들이 그의 결정을 따라 주길 바랐으나 그들이 새로 획득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자, 그 문제를 의회에 회부했다. 민주주의 이상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의 망령이 권위를 지키려는 군주와 부당히자 미의회는 하와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의 5년 동안 하와이 거주 미국인들은 본국 정부의 마음이 돌아서길 기대했다. 이들 모험가들에게 첫 번째 희망의 징표가 나타난 것은 공화당의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가 대통령에 당선되고부터였다. 윌리엄 매킨리는 애초부터 병합주의자로 미국이 힘으로 태평양 문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세계 곳곳에 석탄 항구를 가진 대한 미국 해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알프레도 마한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다. 윌리엄 매킨리와 병합주의자들의 믿음은 스페인과 미국 간 전쟁으로 증명되었다. 미국은 팽창해야 했다. 1898년 스페인의 패전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고 아시아에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게 되었다. 갑작스레 하와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하와이 섬 점령에 대한 반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1898년 여름 1주일 사이에 병합 관련법안은 의회를 통과했고 하와이는 미국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과정에 하와이인들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 릴리우오칼라니 여왕과 자문관들은 그들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인들은 스페인전 승리로 우쭐한 데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려는 서구 열강에 참여하려는 열망에 넘쳐 하와이인들의 미미한 저항을 무시했다. 전직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섬들을 병합하려는 것은 국가적 사명의 남용이라 믿는다. 우리나라의 사명은 섬들은 병합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서 더욱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 내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이상한 질병이다. 1893년 하와이 거주 미국인들은 하와이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고귀한 성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그들은 민주와 정의의 이름을 주창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또한 미국의 방식이 모든 인류 최선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미국의 아젠다에 동조하는 하와이인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생겨났지만 1890년대 대부분의 하와이인들은 미국의 병합을 반대했다.

사건 이후 1세기가 지난 지금, 하와이는 완전히 미국화되었다. 하와이의 인구는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 전체 인구의 12퍼센트에 달한다. 하와이인들은 과거사 문제를 조심스레 다루고 부당한 왕국 파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대부분의 하와이 후손들은 미국 방식을 따르고 미국의 일부로 남아 있으나, 그들 또한 미국이 그들의 슬픈 역사를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의회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과에 과거사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다. 하와이인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일정한 주권을 얻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또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들은 멸망한 국가를 다시 세워 미국 내 또는 변방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하와이의 경우 작은 섬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에 의해 정복당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서 흔한 일이기도 하다. 침략자의 주장은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관대한 본능에 호소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선언들의 부정직함은 정복당한 민족의 역사에서 읽을 수 있다.

제5부 역사적 정의와 화해의 인식

‘한국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한국 측 서명자 명단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일본 측 서명자 명단

‘한국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이 지상에서 말살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그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한국병합 조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일본 양국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는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 역사문제의 핵심이며, 서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그간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침략정책, 일본군의 거듭된 점령 행위, 명성왕후 살해와 국왕과 정부요인에 의한 협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거를 짓누르면서 실현시킨 결과란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근대 일본 국가는 1875년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 포대를 공격,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듬해 일본 측은 특사를 파견,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개항시켰다. 1894년 조선에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일어나 청국군이 출병하자 일본은 대군을 파견하여 서울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왕궁을 점령해 국왕과 왕후를 가두고 이어 청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한편으로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청국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승전의 대가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되돌려 놓게 되었다. 이런 결과에 부딪혀, 일본은 그간 한국에서 확보한 지위마저 잃게 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을 우려하여 국왕에게 공포감을 주고자 왕비 민씨를 살해하였다.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보호를 구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의화단(義和團)사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게 된 후, 1903년 일본은 그대신 한국 전토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전쟁을 결심하고 1904년 전시(戰時)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진입시켜 서울을 점령하였다. 그 점령군의 압력 하에 2월 23일 한국 보호국화의 제1보가 된 '의정서' 조인을 강요하였다. 러일전쟁은 일본의 우세승으로 결말이 나고, 일본은 포츠머스강화조약에서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게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곧바로 친황의 특사로 서울로 와서 일본군의 힘을 배경으로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 1905년 11월 18일에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의병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이 협약은 강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친서를 각국 원수(元首)들에게 보냈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낸 일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대한 고종황제의 책임을 물어 그의 퇴위를 강요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동시에 7월 24일에 '제3차 한일협정'을 강요하여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감독권도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났지만, 일본은 군대·헌병·경찰의 힘으로 탄압하다가 1910년에 '한국병합'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

일본국가의 '한국병합' 선언은 1910년 8월 22일의 병합조약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 조약의 전문(前文)에는 일본과 한국의 황제가 두 나

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상호 행복과 동양 평화의 영구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병합이 최선이라고 확신하고, 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1조에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고 기술하고, 제2조에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에 서술되어 있는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적으로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일을 승낙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은,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고 일본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어 숨기고 있다.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

일본 제국이 침략전쟁 끝에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해방된 한반도 남쪽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때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으로 약칭)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서로 달랐다.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 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다"는 것으로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유효였지만, 1948년의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었던 불의부당한 조약은 당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병합의 역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하여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도 완만하나마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은 전진해왔다. 새로운 인식은 1990년대에 들어서 고노[河野] 관방장관 담화(1993), 무라야마[村山] 총리 담화(1995), 한일공동선언(1998), 조일[朝日] 평화선언(200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총리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막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속으로부터 사과'를 표명하였다.

또한 무라야마 총리는 1995년 10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병합조약'에 관해 "쌍방의 입장이 평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노사카[野坂]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병합조약은 [……] 극히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하였다. 무라야마 총리는 11월 14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병합조약과 이에 앞선 한일 간의 협약들에 대하여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은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마련된 토대가 그 후, 여러 가지 시련과 검증을 거치면서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병합과 병합조약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회도 하와이 병합의 전제가 된 한 하와이 왕국 전복 행위를 100년째에 해당하는 1993년에 '불법한(illegal) 행위'였다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근년에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와 '식민지 범죄'에 관하여 국제법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제 일본에서도 새로운 정의감의 바람을 받아들여 침략과 병합,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시

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진다. 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역사에서 유래하는 많은 문제들을 바꾸어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화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한층 더 자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역사인식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 100년 이상에 걸친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자료는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 시기에 기록문서 작성을 독점한 일본 정부 당국은 역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죄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되고, 용서는 베풀어져야 한다. 고통은 치유되어야 하고, 손해는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관동대지진 중에 일어난 한국인 주민의 대량 학살을 비롯한 모든 무도한 행위는 거듭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 및 군속에 대한 위로와 의료지원 조치에,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대립하는 문제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응시하면서 뒤로 미루지 말고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이 병합 100년이라는 해에 진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우호에 기초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취지를 한국, 일본 양국 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엄숙히 받아들여주기를 호소한다.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한국 측 서명자 명단

총 599인

〈문학계-시인, 소설가, 평론가〉

| | |
|------|-------------------------|
| 고은* | 시인 |
| 구중서 | 수원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
| 김광규 | 한양대 명예교수, 시인 |
| 김지하* | 시인 |
| 김형영 | 시인 |
| 김훈 | 소설가 |
| 리명환 | 소설가,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의장 |
| 박범신 | 소설가, 명지대 교수 |
| 송기숙 | 소설가, 전 전남대 교수 |
| 신경림 | 시인 |
| 신봉승 | 대한민국예술원, 작가 |
| 신상응 | 중앙대 명예교수, 작가 |
| 오세영 | 시인, 서울대 명예교수 |
| 이문열 | 소설가 |
| 이어령 | 이화여대 석좌교수, 전 문화부 장관 |
| 임진택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
| 임현영 |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문학평론 |
| 정중규 | 시인,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 |
| 한수산 | 소설가 |
| 현길언 | 한양대 명예교수, 소설가 |
| 황석영 | 소설가 |

〈학계-역사가〉

김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전 상지대 총장, 한국사
강중훈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
계승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고정휴 포항공대 교수, 한국사
고동환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구만옥 경희대 교수, 한국사
권내현 고려대 교수, 한국사
권영국 숭실대 사학과 교수
권오영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권태익 서울대 교수, 한국사
김갑동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김건태 서울대 국사학과 조교수
김기승 순천향대 교수, 한국사
김도형 연세대 교수, 한국사
김병인 전남대 교수, 한국사
김성보 연세대 교수, 한국사
김성우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사
김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김용섭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한국사
김우철 한중대 교수, 한국사
김윤정 숙명여대 교수, 한국사
김인호 동의대 교수, 한국사
김정숙 영남대 교수, 한국사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 한국사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 일본사
김희곤 안동대 교수 한국사
남지대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노경채 수원대 교수, 한국사
노명호 서울대 교수, 한국사
노태돈 서울대 교수, 한국사
도면희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진순 창원대 교수, 한국사
도현철 연세대 사학과 부교수
박만규 5·18연구소장, 한국사
박선희 상명대, 한국사
박임하 성균관대 교수, 한국사
박진태 대전대 사학과 부교수
박종기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박종진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한국사
박진훈 명지대 사학과 조교수
박찬승 한양대 교수, 한국사
박평식 청주교대 교수, 한국사
반병률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사
배항섭 고려대 교수, 한국사
백승철 연세대 교수, 한국사
백영서 연세대 교수, 동양사
변주승 전주대 교수, 한국사
서영대 인하대 교수, 한국사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 한국사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한국사
성대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한국사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과학사
송양섭 충남대 교수, 한국사
송찬섭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사
신순철 원광대 교수, 한국사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 역사학
안병우 한신대 교수 한국사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한국사
안태정 대전대 교수, 한국사
양상현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양재영 유한대 교수, 경영학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부교수
염정섭 한림대 사학과 교수
왕현중 연세대 교수, 한국사
윤경로 한성대 전 총장,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윤내현 단국대 명예교수, 한국사
윤대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한국사
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 한국사
윤상원 고려대 교수, 한국사
윤용출 부산대 역사교육과
윤혜영 한성대 교수, 중국사
이경식 서울대 교수, 국사학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국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한국사
이상찬 서울대 교수, 한국사
이석규 한양대 교수, 한국사
이세영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이애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사
이영학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이완재 한양대 명예교수, 한국사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한국사
이윤상 창원대 사학과 교수
이용조 충북대 명예교수, 고고학
이인재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종범 조선대 교수, 한국사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사
이철성 건양대 교수, 한국사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부교수
임병훈 경북대 교수, 한국사
임송자 성균관대 교수, 한국사
임종명 전남대 교수, 한국사
전명혁 성균관대 교수, 한국사
정연태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정요근 덕성여대 사학과 부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창렬* 한양대 명예교수, 한국사
정태현 고려대 교수, 한국사
조광 고려대 교수, 한국사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 한국사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중국사
조윤선 청주대 교수, 한국사
조항래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국사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지수걸 공주대 교수, 한국사
차미희 이화여대 교수, 한국사
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 서양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채상식 부산대 교수, 한국사
채웅석 가톨릭대 교수, 한국사
최덕수 고려대 교수, 한국사
최원규 부산대 교수, 한국사
최윤오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하우봉 전북대 교수, 한국사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
하정식 숭실대 교수, 사학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한철호 동국대 교수, 한국사
허동현 경희대 교수, 한국사
허은 고려대 교수, 한국사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홍순권 동아대 교수, 한국사

〈학계-인문·사회과학, 기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강인선 성공회대 교수, 일본학
강태경 계명대 명예교수, 전 경영대학원장



권기홍 전 단국대 총장
권순철 경북대 명예교수, 전 경북대학교 교수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룡 한국교원대 교수, 문학평론가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김경애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김기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문환 서울대 명예교수, 미학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언론학
김백철 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김성국 부산대 교수, 사회학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 김대중도서관장,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수업 전 대구대 총장, 국문학
김승옥 고려대 명예교수
김양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작 국민대 명예교수, 정치학
김영준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김영호* 유한대 총장, 경제학
김용구 한림대 한림과학원 원장, 정치학
김윤수 전남대 총장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경제학,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김인혜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김정기 서원대 총장
김종대 고려대 명예교수
김찬란 서울여대 교양교육부 교수
김창록* 경북대 교수, 국제법
김치수 이화여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김하림 조선대 교수, 중문학
김호기 연세대 교수, 사회학
김화경 영남대 교수, 한국문학

나간채 전남대 교수, 사회학
나종일 우석대 총장, 전 주일대사
남기영 경희대 명예교수, 철학
노정혜 서울대 자연대 생물학부 교수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영문학
류한호 광주대 교수, 언론학
민병로 전남대 교수, 법학
민현식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회학, 전 인권대사
박명규 서울대 교수, 사회학
박성태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박우희 세종대 총장,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과 교수
박해광 전남대 교수, 사회학
박해선 건국대 경제학 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영문학
서광선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문호 아주대 교수, 전 아주대 총장
서우석 서울대 명예교수, 음악학
서정일 한양대 경영대학 조교수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소병욱 대구 가톨릭대 총장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한문학
송정민 전남대 교수, 언론방송학
송호근 서울대 교수, 사회학
신국주 전 동국대 총장
신철호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경제학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회학
심상천 경원대 경영과 교수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어학
심정수 전 숙명여대 교수, 조각가
안철수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양권석 성공회대 총장
엄창욱 경북대 교수 경제학, 국채보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염무웅 영남대 명예교수 문학평론
염유경 이화여대 박사
오명도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교수
오문석 성결대 경영학부 교수
오생근 서울대 인문대 교수, 문학평론가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
오영석 고려대 명예교수
오태석 연세대 명예교수, 연극인
우용제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위상복 전남대 교수, 철학
유재천 상지대 총장, 언론학
유진룡 을지대 교수, 문화행정학
윤미경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윤석철 건양대 Global 경영학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언론광고학
이근관 서울대 교수, 국제법
이기상 한국외국어대 교수, 철학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지리학
이동환 고려대 명예교수, 한문학
이명식 대구대 명예교수, 전 대구대학교 교수
이문원 중앙대 명예교수, 교육학
이민환 부산대 경제학과
이상엽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생명화학공학
이성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국사학
이성우 국민대 총장
이승률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법학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시활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이원덕 국민대 교수, 국제정치학
이은주 경북대 문학치료학과
이은형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이인복 숙명여대 명예교수, 사회사업학
이인성 전 서울대 교수, 소설가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장희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법,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성 계명대 교양과정부 교수
이재하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대통령정책실장
이종호 건축가, 한국예술종합대 교수
이준섭 고려대 명예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양교학부 교수
이지형 성균관대 명예교수, 한문학
이필상 고려대 교수, 경영학, 전 고려대 총장
이해두 대구대 명예교수, 전 대구대학교 대학원장
이호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사회학
임경희 계명대 비정규직 강사, 사회학
임상규 순천대 총장, 전 농림부 장관
임재해 안동대 민속학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사회학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한국한문학
장인성 서울대 교수, 외교학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장희익 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
전기호 경희대 명예교수, 경제학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
정기숙 계명대 명예교수, 회계학

정기용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대화 부산대 명예교수
정문길 고려대 명예교수, 행정학
정민 한양대 교수, 한문학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정진석 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
정현종 연세대 명예교수, 시인
정호지 수이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남신 한국외국어대 Global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조동성 서울대 교수, 경영학
조동일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문학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시민사회신문 논설고문
지명관 원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진태하 명지대 명예교수
최원식* 인하대 교수, 한국문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치학
한경구 서울대 교수, 인류학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중국 청화대 교수, 사회학
조성용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
주보돈 경북대 교수
진태하 명지대 대학원장
채수일 한신대 총장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천혜정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부교수
최기영 서강대 교수
최민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병택 공주교육대 사회과교육 교수
최봉영 항공대 교수, 철학
최석호 수이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용호 경북대 명예교수, 전 경북대학교 교수
최정기 전남대 교수, 사회학

한시준 단국대 교수
허수열 충남대 교수, 농업경제학
허원배 목원대 이사장
하인봉 경북대 교수, 경제학
허정애 경북대 영문학과 교수
홍덕기 전남대 교수, 경영학
홍순민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부교수
홍정신 인하대 인문대 교수, 문학평론가
홍태희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시인
황현산 고려대 교수, 문학평론가

〈경제·과학기술계〉

권문식 (주)케피코 대표이사,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장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김병규 코스닥협회 회장
김순무 (주)한국야쿠르트 부회장, 윤리경영위원장
김영대 대성산업(주) 회장, 국제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중웅 현대증권(주) 고문, 금융위원장
김택수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상희 원 한국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승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박원훈 과학기술한림원 부위원장, 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주) 회장
손욱 전 농심 회장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용한 국제기독실업인협회 회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심갑보 삼익THK(주) 부회장, 노사인력위원장
여성구 (주)범한판토스 대표이사, 물류위원장
여종기 공학한림원 부회장, 전 LG화학 사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윤봉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기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형도 전 삼성전기 부회장
이희상 운산그룹 회장, 중견기업위원장
전수산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 서울경제위원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최일학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황철주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법조계〉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
박용일 변호사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백승현 민변 회장
한승현 전 감사원장, 변호사

〈시민사회계〉

금영철 MODEL UN 교육원 원장, 대구대 명예교수
김경민 대구 YMCA 사무총장
김규재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전 안동시장 역임
김병렬 독립지사 김광제기념사업회 이사, 전 보영제약(주) 대표이사
김우식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전 대구 남구청 총무국장
김재욱 소비자시민연대 대표
김필주 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 운동협회 회장
김한포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김희로 부산 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전 민족문화작가회 회원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국제 ROTARY 3700지구 총재
문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부회장, 전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영숙 대안과연대 대표
박원범 대구광복회 대표, 전 4·19민주혁명회 대구·경북 지부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윤경 경북광유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대구상공회의소 이사
박정희 전국NGO연대 상임대표
배중수 전 SAE HAN건설 대표이사, 국제보상운동100주년기념관 건립 상임위원
손종익 지구환경보존운동본부 명예총재, 전 상생정치연구원 원장
신동학 woman medical park hospital superintensive professional, 전 한국가정의학회 회장
신필균 사단법인녹색교통 이사장
유상중 경운대학교 명예교수, 전 육군 70 사단장
이봉호 금석문연구회 회장, 서예가
이정호 경북대학교 교수, 전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최경집 한국수자원공사 홍보대사, 청지출판사 대표
최상희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영진전문대 초빙교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정식 UNI-한국협의회 사무처장

최형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서양사

<언론계>

- 강천석* 조선일보 주필
- 김병익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 문학평론
- 김수영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철학박사
- 김진현* 전 한국경제신문 회장, 전 서울시립대 총장
- 고광현* 한겨레신문 사장
-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전 문화일보 사장
- 박경석 전 동아일보 동경 특파원
- 박용규 영남일보 논설고문, 전 영남일보 주필
- 박인규 프레스이안 (Pressian) 사장
-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 서상호 대구일보 주필, 전 대구매일신문 주필
- 송영승 경향신문 사장
- 이원섭 원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경원대 교수, 신문방송학
- 이종석 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 임수현 MBN 영남 지사장, 전 대구신문 대표이사
- 정일성 언론인, 한일관계사

<출판계>

- 고세현 창비사 대표
- 김경희* 지식산업사 사장
- 김언호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 김종수 출판인, 한울 대표
- 박맹호 민음사 회장, 전 대한출판협회 회장
- 오연호 오마이뉴스(Ohmynews) 사장
- 윤청광 출판인, 맑고 향기롭게
- 윤희두 범우사 사장, 한국출판진흥원 이사장
- 이기웅 열화당 사장,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
- 조상호 나남 대표, 문학박사

한철희 출판인, 돌베개 대표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사회문화단체, 기타>

-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
- 강정환 주식회사 통통 사장
-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
-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 김도현 전 문화관광부 차관
-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 김상근 6·15남북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 김상기 충남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한국문학
-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일 광복회 회장
- 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 김종규 한국문화재트러스트협회 회장
- 김종길 경북 안동 학봉중대
- 김종심 전 정부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 김종재 평화아카데미 이사장, 경영학
- 김중태 원효사상연구회 회장
- 김호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사
- 남평오 비전한반도포럼 대표
- 박병일 한국외국어대 Global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 박병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법제사
- 박석무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 박용옥 국사학, 삼일여성동지회장
- 박유철 안중근의사백주년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 박형규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 백만기 김&장 변리사
- 서상문 한국전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
 성진기 전 한국철학회 회장, 철학
 승효상 건축가, 이로재 대표
 양민호 동북아평화센터 운영위원장
 양춘성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오재식 아세아 평화교육원 원장, 재단법인WORLD VISION 전 회장
 유명하 경북 안동 충효당
 위계룡 순천교육희망연대 대표
 윤규홍 Art Gallery <분도> Art Director
 윤수경 평화여성회 대표
 윤한택 경기문화재단 연구원, 한국사
 이성원 경북 안동 농암종택
 이종수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언론학
 이현배 전 한국유희유공업협회 부회장
 이흥길 전 5·18재단 이사장, 중국사
 임옥상 화가
 임진철 청미래재단 대표
 장만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정성현 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
 장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광표 한국구세군 사령관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불교계>

각운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 재정국장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사서실장
 계성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광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남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덕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 호법부 상임감찰

덕문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만당 대한불교조계종 불감사 주지
 묘청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국장
 무관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 호법국장
 보문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영월암 주지
 상운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법귀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 감사국장
 법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부장
 법진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
 법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사서국장
 선웅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
 선혜 대한불교조계종 사서실 사서
 수경 불교환경운동연합 대표
 영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우봉 대한불교조계종 사서실 사서국장
 원담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원철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재경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재안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사무국장
 종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국장
 종윤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 조사과장
 행관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현응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혜경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헤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혜총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효탄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가톨릭계>

강정근 신부, 수원교구



고근석 신부, 광주교구
고정배 신부, 원주교구
권혁시 신부, 대구교구
김병상 신부, 인천교구
김성환 신부, 예수회
김영식 신부, 안동교구
김인국 신부, 청주교구
김인한 신부, 부산교구
김일희 신부, 인천교구
김정대 신부, 예수회
김종성 신부, 인천교구
김준한 신부, 부산교구
김진화 신부, 전주교구
김태균 신부, 부산교구
김택암 신부, 서울교구
김홍진 신부, 서울교구
나승구 신부, 서울교구
맹제영 신부, 의정부교구
문규현 신부, 전주교구
문정현 신부, 전주교구
변찬석 신부, 광주교구
송기인 신부, 부산교구
송년홍 신부, 전주교구
송흥철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신부
신종호 신부, 대구교구
신현봉 신부, 원주교구
심용섭 신부, 서울교구
안승길 신부, 원주교구
안충석 신부, 서울교구
양홍 신부, 서울교구
양요섭 신부, 광주교구
유이규 신부, 작은형제회

이강서 신부, 서울교구
이상원 신부, 마산교구
이영선 신부, 광주교구
이영우 신부, 서울교구
이우석 대구교구 신동성당 총회장, 대경신협 이사장
임문철 신부, 제주교구
장동훈 신부, 인천교구
전대희 신부, 인천교구
전종훈 신부, 서울교구
정석현 신부, 의정부교구
정성중 신부, 광주교구
정진호 신부, 서울교구
진우섭 신부, 광주교구
차인현 신부, 서울교구
최민석 신부, 장흥성당
최인섭 신부, 청주교구
하춘수 신부, 마산교구
함세웅 신부, 서울교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성훈 신부, 제주교구
황상근 신부, 인천교구
김종필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원장
김종혁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순심중학교 교장
이성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수련장
서강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비서
고진석 신부, 성 베네딕도회
김광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
박경조 대한성공회 전 주교
마백락 천주교 영남교회사연구소 부소장, 국채보상운동 상임이사

〈기독교계〉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권호경 사랑밭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전 총무
 김기택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성천교회 목사
 김영태 대한야소교장로회 전 총회장
 김용도 대한침례교회 전 총회장
 나핵집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공동체 대표
 박종렬 목사, 인천생명선교협회장
 박성배 기독교대한 ASSEMBLIES OF GOD 총회장
 박종화 대한기독교서회 이사장 경동교회 목사
 박춘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
 성해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신경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유경재 원로목사
 유춘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개발원장
 유한귀 잠실교회 목사
 우창준 연희제일성결교회 목사
 윤길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무
 이근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훈련원장
 장차남 대한야소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병금 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회장, 강남교회 목사
 전병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정지강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정진우 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장, 한성제일교회 목사
 조성기 대한야소교장로회 사무총장
 조화순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목사

* : 발기인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일본 측 서명자 명단

총 540인

〈作家·芸術家·映画監督〉

赤川次郎 作家
 石川逸子 詩人
 井出孫六 作家
 大江健三郎 作家
 鎌田 慧 ルポルタージュ作家
 金石範 作家
 高史明 作家
 佐高 信 評論家
 沢地久枝 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
 鶴見俊輔 哲学者
 中野利子 エッセイスト
 朴慶南 作家
 針生一郎 美術評論家
 宮田稔栄 文筆家
 森崎和江 詩人·作家
 梁石日 作家
 李恢成 作家
 阿伊染徳美 画家
 喜納昌吉 音楽家·前参議院議員
 沢 知恵 シンガーソングライター
 高橋悠治 音楽家

崔善愛 피아니스트
 富山妙子 画家
 玄 順恵 水墨画家
 池田博穂 映画監督
 井筒和幸 映画監督
 伊藤孝司 フォトジャーナリスト
 鄭義信 脚本・演出家
 前田憲二 映画監督・NPO法人ハヌルハウス代表理事

〈歴史家〉

荒井信一* 茨城大学名誉教授・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共同代表
 井口和起* 京都府立大学名誉教授・日本史
 石山久男 歴史教育者協議会会員
 李成市* 早稲田大学教授・朝鮮史
 板垣雄三 東京大学名誉教授・イスラム学
 井上勝生* 北海道大学名誉教授・日本史
 上田正昭 京都大学名誉教授・日本史
 内海愛子* 早稲田大学大学院客員教授・日本—アジア関係史
 太田 修* 同志社大学教授・朝鮮史
 糟谷憲一* 一橋大学教授・朝鮮史
 鹿野政直* 早稲田大学名誉教授・日本史
 加納実紀代 敬和学園大学教授・女性史
 姜徳相 滋賀県立大学名誉教授・朝鮮史
 木畑洋一 成城大学教授・国際関係史
 君島和彦 ソウル大学教授・日本史
 金文子 歴史家
 小谷汪之 首都大学・東京教授・インド史
 小林知子 福岡教育大学准教授・在日朝鮮人史
 高崎宗司* 津田塾大学教授・日本史
 趙景達* 千葉大学教授・朝鮮史
 外村 大 東京大学准教授・朝鮮史
 中塚 明* 奈良女子大名誉教授・日朝関係史

中野 聡 一橋大学教授・歴史学研究会事務局長
 中村政則* 一橋大学名誉教授・日本史
 成田龍一 日本女子大学教授・日本史
 林 雄介 明星大学教授・朝鮮史
 樋口雄一 高麗博物館館長
 藤沢房俊 東京経済大学教授・イタリア近代史
 藤永 壮 大阪産業大学教授・朝鮮史
 松尾尊允* 京都大学名誉教授・日本史
 水野直樹*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教授・朝鮮史
 三谷太一郎 政治学者
 南塚信吾 法政大学教授・世界史研究所所長
 宮嶋博史* 成均館大学教授・朝鮮史
 宮地正人 東京大学名誉教授・日本史
 宮田節子* 歴史学者・元朝鮮史研究会会長
 百瀬 宏 津田塾大学名誉教授・国際関係学
 山口啓二 歴史研究者・元日朝協会会長
 山崎朋子 女性史研究家
 山田昭次* 立教大学名誉教授・日本史
 油井大三郎 東京女子大学教授・アメリカ史
 吉沢文寿 新潟国際情報大学准教授・朝鮮史
 吉野 誠 東海大学教授・朝鮮史
 吉見義明 中央大学教授・日本史
 李進熙 和光大学名誉教授・朝鮮史
 和田春樹* 東京大学名誉教授
 伊集院 立 法政大学教授・ドイツ史
 寺田光雄 埼玉大学名誉教授・社会思想史
 木村茂光 東京学芸大学教授・日本史
 塚田 勲 歴史学研究会会員
 米谷匡史 東京外国語大学教員・思想史
 深谷克己 早稲田大学名誉教授・日本史
 須田 努 明治大学准教授・日本史
 山本直美 歴史教育者協議会会員

石田 憲 千葉大学教授・ヨーロッパ政治史
 高橋昌明 神戸大学名誉教授・日本史
 邊英浩 都留文化大学教授・朝鮮史
 新田康二 歴史教育者協議会会員
 三ツ井崇 東京大学准教授・朝鮮史
 田中正敬 専修大学教授・朝鮮史
 康成銀 朝鮮大学校教授・朝鮮近代史
 辻 弘範 北海学園大学准教授・朝鮮史
 広瀬貞三 福岡大学教授・朝鮮史
 鈴木靖民 国學院大学教授・日本史
 姜在彦 花園大学元客員教授・朝鮮近代史
 岡百合子 歴史家
 原 朗 東京大学名誉教授・日本経済史
 比屋根照夫 琉球大学名誉教授・日本近代政治思想史
 飯田泰三 島根県立大学教授・日本政治思想史
 宮田光雄 東北大学名誉教授・政治思想史
 小島晋治 東京大学名誉教授・中国史
 芝原拓自 大阪大学名誉教授・日本近代史
 青野正明 桃山学院大学教授・朝鮮史
 原田敬一 仏教大学教授・日本近代史
 色川大吉 東京経済大学名誉教授・日本近代史
 松永育男 歴史教育者協議会会員
 石川亮太 佐賀大学准教授・朝鮮史
 中村平治 東京外語大学名誉教授・インド史
 笠原十九司 都留文科大学名誉教授・東アジア近現代史
 洪宗郁 同志社大学准教授・朝鮮史
 衣斐義之 郷土史家
 庵途由香 立命館大学准教授・朝鮮史
 大橋幸泰 早稲田大学准教授・日本近世史
 高木博義 敬心学園職員
 今井清一 横浜市立大学名誉教授・日本政治史
 坂本 昇 歴史教育者協議会副委員長

木村 誠 首都大学東京教授・朝鮮史
 柳沢 治 東京都立大学名誉教授・ヨーロッパ経済史
 瀧澤秀樹 大阪商業大学教授・日本経済史/現代韓国論
 池内敏 名古屋大学教授・日本史
 李景珉 札幌大学教授・朝鮮史/朝鮮政治論
 荻野富士夫 小樽商科大学教授・日本史
 伊地知紀子 愛媛大学・朝鮮地域研究
 駒込武 京都大学教員・教育史
 長 志珠絵 神戸市外国語大学准教授・日本近代史
 宇野田尚哉 神戸大学准教授・日本思想史
 坂本悠一 九州国際大学教授・日本経済史
 林 博史 関東学院大学教授・日本現代史 齊
 藤一晴 明治学院大学講師・日本史
 本庄十喜 関東学院大学講師・日本現代史
 古川宣子 大東文化大学准教授・朝鮮史
 酒井裕美 大阪大学講師・朝鮮史
 近江吉明 専修大学教授・フランス史
 坂元ひろ子 一橋大学教授・中国近現代思想文化史
 鶴岡 裕 金沢大学教授・朝鮮史
 廣岡浄進 大阪観光大学講師・朝鮮史/日本史
 池 亨 一橋大学教授・日本史/歴史学研究会委員長
 貫井正之 名古屋外国語大学講師・朝鮮史
 小林英夫 早稲田大学教授・東アジア史/満鉄史
 権純哲 埼玉大学教授・朝鮮史
 吉田裕 一橋大学教授・日本現代史
 矢沢康祐 専修大学名誉教授・朝鮮史
 源川真希 首都大学東京准教授・日本史
 古畑 徹 金沢大学教授・東洋史
 若尾政希 一橋大学教授・日本史
 堀口詩織 歴史科学協議会事務書記
 竹内光浩 専修大学非常勤講師・日本中世史
 藤田明良 天理大学教授・日本史

谷ヶ城秀吉 立教大学経済学部助教・日本アジア経済史
 佐々木隆爾 東京都立大学名誉教授・日本現代史
 青柳周一 滋賀大学経済学部准教授
 大平聡 宮城学院女子大学教員・日本古代史
 米田佐代子 女性史研究者
 永原陽子 東京外国語大学教授・世界史
 近藤成一 東京大学教授・日本中世史
 鎌倉佐保 東京大学史料編纂所特任研究員・日本史
 大門正克 横浜国立大学教授・日本史
 永岑三千輝 横浜市立大学教授・ドイツ史
 光成準治 鈴峯女子短期大学
 川岡 勉 愛媛大学教授・日本史
 新藤通弘 城西大学非常勤講師・ラテンアメリカ現代史
 長島 弘 長崎県立大学特任教授・国際関係史
 大塚英二 愛知県立大学教授・日本史
 川合 康 日本大学教授・日本史
 藪部寿樹 山形県立米沢女子短期大学教授・日本中世史
 浅井良夫 成城大学教授・現代日本経済史
 服藤早苗 埼玉学園大学
 藤岡寛己 福岡国際大学教員・イタリア現代史
 河西英通 広島大学教授・日本近代史
 林 幸司 一橋大学経済研究所・COE研究員・中国現代史
 清水透 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ラテンアメリカ社会史
 三宅明正 千葉大学教授・日本現代史
 堀 新 共立女子大学教授・日本近世史
 外岡慎一郎 敦賀短期大学教授・日本中世史
 趙 寛子 中部大学准教授・思想史
 上杉 忍 北海学園大学教授・アメリカ史
 中小路 純 前文教大学講師・日本近世史
 佐々木洋子 帯広畜産大学教員・西洋史
 野村育世 歴史教育者協議会・日本中世史/女性史/歴史教育
 斉藤利男 弘前大学教授・日本史

猪飼隆明 大阪大学名誉教授・日本近代史
 加瀬和俊 東京大学教授・日本経済史
 伊藤正子 京都大学アジア・アフリカ地域研究研究科
 町田 哲 鳴門教育大学准教授・日本近世史
 橋本 雄 北海道大学准教授・日本史
 井上久士 駿河台大学教授・中国現代史
 金子文夫 横浜市立大学教授・日本経済史
 西 秀成 愛知県史編さん委員会特別調査委員
 梅村 喬 大阪大学名誉教授・日本古代史
 山領健二 神田外語大学名誉教授・歴史学
 松本通孝 青山学院大学, 立正大学非常勤講師・世界史教育
 伊藤敏雄 大阪教育大学・中国古代史
 平子友長 一橋大学教授・西洋社会思想史
 森村敏己 一橋大学教授・フランス社会思想史
 内田知行 大東文化大学教員・中国現代史
 秋山晋吾 一橋大学准教授・西洋史
 仁木 宏 大阪市立大学教授・日本史
 松尾 寿 島根大学名誉教授・日本近世史
 臼杵 陽 日本女子大学文学部教授・中東現代史
 山口公一 追手門学院大学准教授・朝鮮近代史
 深澤安博 茨城大学教授・スペイン現代史
 井本三夫 元茨城大学理学部教授, 歴史科学協議会会員・日本近代史
 浅井義弘 大阪歴史教育者協議会事務局長
 広瀬玲子 北海道情報大学教授・日本史
 鈴木織恵 歴史科学協議会会員・日本古代史
 藤田昌士 元立教大学教授
 小林瑞乃 青山学院女子短大講師・日本近代史
 松尾章一 法政大学名誉教授・日本近代史
 古庄 正 駒沢大学名誉教授・日本史
 貴堂嘉之 一橋大学教授・アメリカ史
 木村 元 一橋大学教授・日本教育史
 北島万次 元共立女子大学教授・日本史

藤間生大 元熊本学園大学教授・日本史
 遠藤基郎 東京大学史料編纂所准教授・日本史
 井上直樹 京都府立大学教授・朝鮮古代史
 小南浩一 北陸大学教授・歴史学
 長沼宗昭 日本大学教授・ドイツ近代史
 七海雅人 東北学院大学准教授・日本史
 井上和枝 鹿児島国際大学教授・朝鮮女性史
 浅田進史 首都大学東京助教・歴史学
 山田涉 宮崎大学講師・日本史
 西村汎子 白梅学園短期大学名誉教授・日本女性史
 村上史郎 元慶応大学非常勤講師・日本古代史
 渡辺 司 東京農工大学准教授・マグレブ地域研究
 小山田紀子 新潟国際情報大学教授・アルジェリア史
 馬淵貞利 東京学芸大学教授・朝鮮史
 竹永三男 島根大学教員
 朴宗根 歴史家・朝鮮史 堀田慎一郎 名古屋大学助教
 北原スマ子 歴史家
 佐藤伸雄 元歴史教育者協議会委員長
 古谷 博 歴史教育者協議会会員
 浅川 保 山梨歴史教育者協議会会長
 中内輝彦 徳島県歴史教育者協議会会長
 三橋広夫 日本福祉大学教授・日韓歴史教育
 白鳥晃司 歴史教育者協議会副委員長
 桜井千恵美 歴史教育者協議会常任委員
 大野一夫 歴史教育者協議会事務局長
 李熒娘 中央大学教授・日本近代史
 堀和生 京都大学教授・朝鮮経済史
 酒井 芳司 福岡県立アジア文化交流センター研究員
 吉田光男 放送大学教授・朝鮮史
 広瀬健夫 元信州大学教授・ロシア史
 劉孝鐘 和光大学教授・ロシア朝鮮史
 藤本和貴夫 大阪経済法科大学教授・ロシア史

宋連玉 青山学院大学教授・朝鮮史
 北原 敦 北海道大学名誉教授・イタリア史
 三宅 立 元明治大学教授・ドイツ近現代史
 金成浩 琉球大学教授・国際関係史
 大沼久夫 共愛学園前橋国際大学教授・朝鮮現代史
 高野清弘 甲南大学教授・政治思想史
 片野真佐子 大阪経済大学教授・日本近代史
 石田勇治 東京大学教授・ドイツ現代史
 松沢 哲成 日本寄せ場学会運営委員・日本近現代史研究
 阪東 宏 明治大学名誉教授・ポーランド史
 李省展 恵泉女学園大学教授・東アジア近代史
 小沢弘明 千葉大学教授・オーストリア史
 高嶋伸欣 琉球大学名誉教授・歴史教育
 新井勝紘 専修大学教授・近代日本史
 黒瀬郁二 鹿児島国際大学教授・日本史
 宇野俊一 千葉大学名誉教授・日本近代史

〈學者・研究者〉

荒井 献 東京大学名誉教授・聖書学
 石坂浩一* 立教大学准教授・韓国社会論
 石田 雄 東京大学名誉教授・政治学
 李順愛 早稲田大学講師・女性学
 出水 薫 九州大学教授・韓国政治
 李鍾元* 立教大学教授・国際政治
 伊藤成彦 中央大学名誉教授・社会思想
 上杉 聡 大阪市立大学教授
 沖浦和光 桃山学院大学名誉教授
 川村湊 文芸評論家・法政大学教授
 姜尚中 東京大学教授・政治学
 小森陽一* 東京大学教授・日本文学
 坂本義和* 東京大学名誉教授・国際政治
 笹川紀勝 明治大学教授・国際法

進藤栄一 筑波大学名誉教授・東アジア共同体学会会長
 鈴木道彦 独協大学名誉教授・フランス文学
 徐京植 作家・東京経済大学教授
 高橋哲哉 東京大学教授・哲学
 田中宏 一橋大学名誉教授・戦後補償問題
 仲尾宏 京都造形芸術大学客員教授
 中山弘正 明治学院大学名誉教授・経済学
 朴一 大阪市立大学教授・経済学
 平川均 名古屋大学教授・経済学
 布袋敏博 早稲田大学教授・朝鮮文学
 宮崎勇 経済学者・元経済企画庁長官
 文京洙 立命館大学教授・政治学
 姜英之 東アジア総合研究所理事長
 渡邊一民 立教大学名誉教授・フランス文学
 鶴飼哲 一橋大学教授・フランス文学
 毛利和子 早稲田大学名誉教授・東アジア国際関係
 裴敬隆 滋賀県立大学講師・国際関係論
 菱木一美 広島修道大学名誉教授・国際政治
 宮本憲一 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財政学
 暉峻淑子 埼玉大学名誉教授・経済学
 田中克彦 一橋大学名誉教授・言語学
 新崎盛暉 沖縄大学名誉教授・沖縄問題
 浅井基文 広島平和研究所所長
 永野慎一郎 大東文化大学名誉教授・国際政治
 樋口陽一 憲法専攻者
 森義宣 佐賀大学准教授・国際政治
 最上敏樹 国際基督教大学教授・国際政治
 板倉聖宣 国立教育研究所名誉所員・板倉研究室代表
 二谷貞夫 上越教育大学名誉教授・世界史教育
 加藤節 成蹊大学教授・政治学
 四方田犬彦 明治学院大学教授・映画研究/比較文化
 塩沢美代子 女子労働問題研究家

石黒圭 一橋大学准教授・日本語学
 村井吉敬 早稲田大学教授・国際経済
 西川潤 早稲田大学名誉教授・国際経済
 李愛利娥 東京大学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特任教授
 海老坂武 フランス文学者
 北沢洋子 国際問題評論家
 野崎充彦 大阪市立大学教授・朝鮮古典文学
 西尾達雄 北海道大学教授・体育学
 徐龍達 桃山学院大学名誉教授
 康宗憲 韓国問題研究所代表
 間宮陽介 京都大学教授・経済学
 古川美佳 韓国美術・文化研究
 山口定 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政治学
 尹健次 神奈川大学教授・思想史
 坂井俊樹 東京学芸大学教授・社会科教育/現代韓国教育
 荒川謙 鹿児島大学名誉教授・ドイツ社会文化
 磯崎典世 学習院大学教授・政治学
 河合和男 奈良産業大学教授・経済学
 杉原達 大阪大学教授・日本学
 鈴木文子 仏教大学教授・文化人類学
 李泳采 恵泉女学園大学講師・国際関係
 桜井国俊 沖縄大学教授・環境学
 波田野節子 新潟県立大学教授・朝鮮文学
 山本義彦 静岡大学名誉教授・経済学
 水野邦彦 北海学園大学教授・韓国社会経済論
 小瑤史朗 弘前大学講師・教育学
 杉田聡 帯広畜産大学教授・哲学
 林大樹 一橋大学大学教授・コミュニティ政策論/社会組織論
 内藤光博 専修大学教員・憲法学
 清水竹人 桜美林大学教員・平和研究
 平山令二 中央大学教授・ドイツ文学
 関本英太郎 東北大学教授・メディア文化論

岩崎 稔 東京外国語大学教授・哲学
 梁 官洙 大阪経済法科大学教授
 金榮鎬 広島市立大学准教授・政治学
 李静和 成蹊大学教授・政治思想
 中田 康彦 一橋大学准教授・教育学
 千葉 眞 国際基督教大学教授・政治思想
 武者小路公秀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所長
 古関彰一 独協大学教授・憲法
 李素玲 日本大学講師・国際関係
 戸塚秀夫 東京大学名誉教授・労働問題
 尾花 清 大東文化大学教授・教育学
 栗原 彬 立教大学名誉教授・社会学
 安宇植 桜美林大学名誉教授・韓国朝鮮文学
 西田 勝 植民地文化学会代表・文芸評論家
 井上輝子 和光大学教授・女性学
 岩間暁子 立教大学教授・社会学
 松枝 到 和光大学教授・文化史
 挽地康彦 和光大学講師・社会学
 鄭暎恵 大妻女子大学教授・社会学
 竹中恵美子 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労働経済学
 遠藤誠治 成蹊大学教授・国際政治学
 戸塚悦朗 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特別研究員・国際人権法
 田中利幸 広島平和研究所教授・平和学
 三橋 修 和光大学名誉教授・社会学
 金聖哲 広島平和研究所教授・国際政治
 李鋼哲 北陸大学未来創造学部教授・朝鮮人ネットワーク研究
 上村英明 恵泉女学園大学教授/同平和文化研究所所長・国際人権法
 堀芳枝 恵泉女学園大学教授・東南アジア地域研究・国際関係論
 山下英愛 立命館大学非常勤講師・女性学
 阿部浩己 神奈川大学教授・国際法
 西原廉太 立教大学副学長
 高柳 俊男 法政大学国際文化学部教授・在日コリアン研究

小牧輝夫 国士舘大学教授・現代韓国朝鮮論
 西村 誠 長野県短期大学教授・哲学
 西村裕美 立教大学教授・キリスト教思想
 佐野通夫 こども教育宝仙大学教授・教育学
 近藤邦康 東京大学名誉教授・中国思想
 金泰明 大阪経済法科大学教授
 寺園喜基 九州大学名誉教授
 小川圭治 筑波大学名誉教授・哲学
 山本俊正 関西学院大学教授・キリスト教平和学

〈辯護士他〉

高木健一 弁護士
 李 宇海 弁護士
 内田雅敏 弁護士
 金 優 医学博士
 黒岩哲雄 弁護士
 床井 茂 弁護士
 松田生朗 弁護士
 南 典男 弁護士
 梁英子 弁護士

〈ジャーナリスト・出版人〉

青木 理 ジャーナリスト
 石井昭男 明石書店社長
 今津 弘 元朝日新聞論説副主幹
 岩垂 弘 ジャーナリスト
 魏良福 青丘文化社・編集者
 大石 進 日本評論社前代表
 岡本 厚 雑誌『世界』編集長
 小田川興* 元朝日新聞編集委員
 斉藤貴男 ジャーナリスト
 長沼節夫 ジャーナリスト

中村輝子 ジャーナリスト
 波佐場清 元朝日新聞編集委員
 羽田ゆみ子 梨の木舎社長
 原 寿雄 ジャーナリスト
 前田哲男 ジャーナリスト
 松本昌次 影書房・編集者
 山室英男 元解説委員長

〈社會活動家〉

重藤 都 東京日朝女性の集い世話人
 清水澄子 日朝国交正常化連絡会代表委員・元参議院議員
 末本雛子 日朝友好促進京都婦人会議代表
 依 義文 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事務局長
 永久睦子 I 女性会議・大阪会員
 飛田雄一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館長
 福山真劫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代表
 古田 武 高麗野遊会実行委員会代表
 吉岡達也 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江原護 朝鮮学校を支える会・京滋
 大槻和子 東京日朝女性の集い
 曾我昭子 東京日朝女性の集い
 佐藤 久 翻訳者
 内田純音 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事務局次長
 小林久公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監事
 北川広和 関東学院大学講師・日韓分析
 川口重雄 丸山真男手帖の会代表
 宋 富子 文化センターアリラン副理事長
 谷内真理子 元核軍縮を求める22人委員会事務局長
 裊重度 青丘社理事長
 吉田博徳 日朝協会顧問
 都相太 NPO法人三千里鉄道理事長
 青柳純一 翻訳家・仙台アムネスティ代表

青柳優子 翻訳家・コリア文庫代表
 吉池俊子 アジア・フォーラム横浜事務局長
 高橋武智 翻訳家
 梅林宏道 ピースデポ特別顧問
 加茂千恵 朝鮮女性と連帯する函館の会副代表
 渡辺 貢 日朝協会会長
 山崎キヌ子 朝鮮女性と連帯する宮崎県女性の会代表
 高橋広子 I 女性会議共同代表/仙台市
 加根村和子 I 女性会議沖縄県本部事務局長
 西平幸代 朝鮮女性と連帯する会岡山事務局長
 河明生 日本跆拳道協会会長
 布施哲也 清瀬市市議員
 布施由女 三多摩日朝女性のつどい
 河合秀二郎 日朝国交正常化全国連絡会顧問
 篠原日出子 朝鮮女性と連帯する神奈川女性の会準備委員
 小川ルミ子 東京日朝女性と連帯する会
 森正孝 ハルビン市社会科学院客員研究員/韓国強制「併合」100年静岡
 共同行動代表
 建部玲子 青森県朝鮮女性と連帯する会代表
 三嶋静夫 平和だいすき市川市民の会事務局長
 河正雄 光州市立美術館名誉館長
 梁東準 ヌッポム統一フォーラム理事長
 林季成 ヌッポム統一フォーラム事務局長
 渡辺美奈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事務
 局長
 佐藤信行 在日大韓基督教会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所長
 李実根 在日本朝鮮人被爆者連絡協議会会長
 李一満 東京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事務局長
 平岡 敬 前広島市長
 塚本勲 ハングル塾つるはし代表
 東海林路得子 「女たちの戦争と平和人権基金」理事長
 山田貞夫 高麗博物館理事長

伊藤 茂 元運輸大臣
 吉川春子 元参議院議員
 四谷信子 元東京都議会副議長
 丸浜江里子 歴史教育アジアネットワーク・ジャパン運営委員
 岩本正光 日朝協会代表理事
 道原海子 ピースデポ
 本山央子 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事務局長
 川村一之 元新宿区議会議員
 崔碩義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会員
 呉日煥 民団中野支部団長
 李康浩 民団大田支部議長
 朴英鎬 民団大田支部副議長
 高昌樹 スップム統一フォーラム理事
 尹昌基 スップム統一フォーラム理事
 新藤 允 元日朝国民会議事務次長
 渡辺哲郎 元東京地評政治部長
 鄭 甲寿 ワンコリアフェスティバル実行委員長
 温井 寛 元環日本海総合研究機構理事・事務局長
 三原 誠介 日本と南北朝鮮との友好を進める会代表・岡山県議会議員
 鳴海治一郎 日朝連帯道民会議事務局長
 鈴木逸郎 日朝友好三重県民会議会長
 佐々木伸彦 「公平な放送を！」サイト管理人
 水野精之 在日外国人の公務員採用を実現する東京連絡会
 伊藤晃二 日朝長野県民会議会長代行
 本尾 良 市民運動家
 朴鐘碩 日立就職差別裁判原告
 鄭香均 都庁国籍任用差別裁判原告
 崔勝久 「新しい川崎をつくる市民の会」事務局長
 平良 修 日本基督教団牧師・NPO法人沖繩恨之碑の会理事
 西尾 市郎 日本基督教団牧師・米軍基地に反対する運動をとおして沖繩と韓国の民衆連帯をめざす会会員
 高里 鈴代 基地・軍隊を許さない行動する女たちの会(沖繩)共同代表

星野 勉 日本基督教団牧師・下地島空港の軍事利用に反対する宮古郡民の会代表
 川浦 弥生 宮古島の日本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会員
 島田 善次 日本キリスト教会牧師・普天間米軍基地から爆音をなくす訴訟団団長
 小納谷幸一郎 北海道日朝連帯道民会議会長
 金淳次 民団東京韓国商工会議所副会長
 朴憲哲 民団大田支部顧問
 東定喜美子 I 女性会議共同代表 福岡市
 酒井夕起子 I 女性会議東京都本部事務局長
 鴻巣美知子 I 女性会議事務局次長
 添田包子 朝鮮女性と連帯する栃木婦人の会代表)

〈宗教者〉

木田 献一 山梨英和学院大学院長・キリスト教学
 東海林勤* 日本基督教団牧師
 鈴木 伶子 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代表
 関田寛雄 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日本キリスト教団牧師
 深水正勝 日本カトリック教会司祭
 吉松 繁 王子北教会牧師
 大塩清之助 日本基督教団牧師
 松村重雄 日本基督教団弘前教会牧師
 飯島 信 日本キリスト教団牧師
 井田 泉 日本聖公会司祭
 高橋喜久江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
 大嶋香織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教育部総主事
 前島宗甫 日本基督教団牧師
 大津健一 アジア農村指導者養成専門学校校長
 李清一 在日大韓基督教教会館長
 呉寿恵 在日大韓基督教教会教育主事・在日朝鮮教会女性史
 金永泰 在日大韓基督教教会牧師
 香山洋人 日本聖公会司祭

| | |
|--------|-------------------------------------|
| 李民洙 | 日本聖公会東京教区司祭 |
| 阿蘇敏文 | 日本基督教団牧師 |
| 崔 栄信 | 牧師・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長 |
| 洪 性完 | 牧師・在日大韓基督教会総幹事 |
| 朱 文洪 | 牧師・在日大韓基督教会社会委員会委員長 |
| 李 相勁 | 牧師・在日大韓基督教会 |
| 香山洋人 | 日本聖公会司祭/立教大学チャプレン |
| 麻生和子 |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委員長 |
| 野村 潔 | 日本聖公会司祭名古屋学生青年センター総幹事 |
| 岡田 仁 |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総主事 |
| 片山寛 | 西南学院大学神学部長 |
| 田口昭典 | 日本バプテスト連盟理事長・金沢教会牧師 |
| 加藤誠 | 日本バプテスト連盟常務理事・浦和教会協力牧師 |
| 秋葉正二 | 日本基督教団牧師・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事務局長 |
| 鏡辺名 長秀 | 沖縄バプテスト連盟牧師・沖縄キリスト教協議会議長 |
| 川越 弘 | 日本キリスト教会牧師・反ヤスクニ沖縄キリスト者連絡会運営委員 |
| 渡辺信夫 | 日本キリスト教会東京告白教会牧師 |
| 古賀清敬 | 日本キリスト教会牧師・北星学園大学教員 |
| 小野寺ほさな | 日本キリスト教会日本軍「慰安婦」問題と取り組む会代表 |
| 渡部静子 | 日本キリスト教会牧師 |
| 小池創造 | 日本キリスト教会南浦和教会牧師 |
| 梶原 壽 | 日本基督教団牧師・名古屋学院大学講師 |
| 坂内宗男 | キリスト教伝道者・無教会 |
| 新海雅典 | 司祭・札幌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委員会 |

*: 発起人

부 록

- 부록 1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부록 2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22일)
- 부록 3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 부록 4 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 (1907년 7월 24일)
- 부록 5 한일강제병합조약 (1910년 8월 22일)
- 부록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 부록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부록 2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 22일)

제1조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제2조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제3조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광무 8년 8월 22일

메이지 37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부록 3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는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록 4 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 (1907년 7월 24일)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한국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

제2조 대한제국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주요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사전에 한국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제3조 대한제국은 사법 사무와 행정 사무를 구분하여 처리할 것.

제4조 한국 정부의 고관대작 임명할 시, 한국통감의 동의를 선결 조건임.

제5조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제국의 신민을 한국의 각료로 중용할 것.

제6조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의 동의없이 함부로 외국인을 관료로 임용하지 말 것.

제7조 광무 8년(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 외국인 고문용병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즉시 효력 정지할 것.

한국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제1조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부록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Treaty on Basic Rel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채택 : 1965. 6. 22.

발효 : 1965. 12. 18.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 주권 상호존중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복지와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 | |
|-----------------|--------------------|
| 대한민국 | 일본국 |
|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
|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 다카스기 싱이찌 |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계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 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계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요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카스기 싱이찌

부록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채택 : 1965. 6. 22.

발표 : 1965. 12. 18.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

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 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

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 통상의 접촉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과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 어느 편인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

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찾아보기

㉠

- 가쓰라 타로[桂太郎] 32, 116
- 가쓰라-태프트 밀약 33
-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217
- 가이신카이[海神會] 407
- 가자책(歌仔冊) 228
-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농상공부 고문 103
-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일본공사 52
- 각서(memorandum) 298
- 간 나오토[菅直人] 293
- 갑오개혁기 58
- 갑오왜란(甲午倭亂) 195
- 강박(coercion) 322
- 강우규(姜宇奎) 196
- 강제동원 노동자 459
- 강제병합 179
- 강제징용 293
- 강화도조약 46
- 개인이성 225
- 개인청구권 337
- 게오르크 에케르트 국제교과서 연구소(GEI) 385
- 경복궁 침범사건[甲午倭亂] 193
- 경부철도부설권 56
- 경성제국대학 175

- 경술국치 179
- 경운궁(慶運宮) 50
- 경인철도부설권 56
- 고교철재(高橋哲哉) 327
- 고노(河野) 관방장관 담화 458
-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37, 63
- 고무라[小村] 외교사 70
- 고민스런 장소 84
- 고빙계약 51
- 고종황제(高宗皇帝) 456
- 공공의 양심 315
- 공화주의 194
- 과거사 화해 452
- 관동대지진 459
- 관습국제법 284
- 괴뢰정권 305
- 교오조계조약(膠澳租界條約) 219
- 교육 칙어 176
- 교일공제회(僑日共濟會) 405
-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鉄吉] 284
-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 42
- 구마모토 시게키치[隅本繁吉] 187
- 구보타[久保田] 망언 433
-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 172
- 구조약 무효론 275
- 구조약 무효확인조항 433
- 국가 자신에 대한 강박 329
-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438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292, 329
- 국가동원 252
- 국가주권 원칙 260

국가책임 294
 국가총동원법 186
 국민 서사 166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416
 국민징용법 186
 국외 선언 147
 국제강행규범(jus cogens) 293
 국제공법(1899) 284
 국제법에 의한 보호관계(le protectorat du droit des gens) 127
 국제법의 기본법률 83
 국제법잡지 116
 국제법해석학 283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337
 국제연맹규약(1919) 334
 국제인권규약(1979) 354
 국제인권법상 289
 국제형사재판소(ICC) 267
 국제화해동우회(IFOR) 277
 국제명징운동(國體明徵運動) 252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28
 군국주의 체제 209
 군비의견서 412
 군율 개정문제 94
 군율강화 문제 113
 군인 및 군속 459
 군중심리(Psychologie des foules) 225, 226
 군집(群集) 225
 굴욕외교 430
 권고적 실행(recommended practice)

339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 225
 극동군사재판 258
 극동태수제(極東太守制) 73
 근대사회심리학 225
 근대성 181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 378, 393
 기류 유유(桐生悠悠) 406
 기무라 칸(木村幹) 362
 기밀일러전사(機密日露戰史) 70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144, 212
 김약연(金躍淵) 199
 김옥균 60
 김학순(金學順) 410

L

나가노 시게토(永野茂門) 395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 96
 난민조약(1982) 354
 난징대학살 399
 내선일체(內鮮一體) 155, 207
 내셔널리즘 152
 내재적 발전론 181
 내정개혁 13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 188
 내지일체 155
 냉전의 논리 161
 냉전체제 143
 냉전체제의 강화 425
 노농운동(勞農運動) 193
 노무동원계획 186

노즈 시즈타케(野津鎮武) 105
 노천명(盧天命) 201
 null and void 331
 뉘른베르크 재판 315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172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180

C

다각적 관점(multiperspective) 375
 다구치 스케이치(田口弼一) 169
 다나카 상주문(田中奏折) 413
 다나카 신이치(田中慎一) 116
 다니 히사오(谷寿夫) 70
 다렌·뤼순 문제 220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388
 다케시마의 날 292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26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 122
 대동아공영권 152
 대동아전쟁 397
 대동합방론 57
 대만민간문학집(台灣民間文學集) 251
 대만민보(台灣民報) 234
 대만식 파시즘 252
 대만연교(台灣連翹) 231
 대만일일신보(台灣日日新報) 231
 대만총독부통계서(台灣總督府統計書) 245
 대서양현장 156
 대세적(erga omnes) 효력 332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 122

대일본문명협회(大日本文明協會) 226
 대조선국대일본양국맹약(大朝鮮國大日本兩國盟約) 28
 대한국새(大韓國圖) 36
 대한국외부(大韓國外部) 33
 대한민국임시정부 197
 대한의군(大韓義軍) 참모중장 안중근 37
 대한임시정부 154
 대한정책의견서(對韓政策意見書) 220
 대한제국 298
 대한지전정 57
 대한해협 52
 대한화사전 115
 대항적 식민지주의 265
 더반 인종차별회의 261
 덕수궁(德壽宮)의 이태왕(李太王-고종황제) 41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7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362
 도덕적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369
 도시사(同志社) 대학 200
 도시의 극작법(都市的劇作法) 249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4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51
 도츠카 에츠로(戸塚悦朗) 305
 도쿄신문(東京新聞) 402
 도쿠가와와 私 15
 독립선언 146
 독립신문 49
 독립협회 46
 동방정책 370

동북항일연합군 197
 동아동문회 62
 동아시아 대란 148
 동아시아 민족해방 153
 동아시아 열국의 세력 균형 [東亞列國之權衡] 216
 동아시아공동체 143, 286
 동양동맹론(東洋同盟論) 220
 동양평화 134
 두 가지 관점(deux points de vue) 379
 두젠팡(杜建坊) 229
 들어라, 해신의 소리[听, 海神之聲] 407

ㄹ

람스도르프 외상 84
 러시아혁명 194
 로바노프-야마가타[山縣有朋] 의정서 48
 로젠-니시[西] 협정 55
 루거우차오[蘆溝橋] 395
 루즈벨트 대통령 80
 릴리우오칼라니 여왕 451

ㄴ

마르텐스 조항 316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184
 마이너리티 355
 마이크 혼다[本田] 388
 마크 피터 153
 만·한 교환론(交換論) 210

만국공법(萬國公法) 60, 292
 만국공법여관 121
 만국평화회의 315
 만몽문제사건(滿蒙問題私見) 149
 만몽지구(滿蒙地區) 412
 만민공동회 58
 만주 개발 40년사(滿洲開發四十年史) 211
 만주사변 149
 만주사변과 정책의 형성 과정[滿洲事變和政策的形成過程] 211
 만철(滿鐵) 이권 414
 만한국환론(滿韓交換論) 71
 Max Huber 313
 메이저유신 13
 명성황후 시해 19
 모리 카즈코[毛里和子] 421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272
 무관총독론 113
 무관통감설 100
 무권대리인 304
 무단통치(武斷統治) 185
 무리아마 담화 291, 435
 무리아마 도미이치[村山富一] 145, 389
 무사사회의 전통 44
 무주지선점 347
 무화과(無花果) 230
 문명국 간 존립하는 관습 315
 문석봉(文錫鳳) 192
 문이재도(文以載道) 229
 문화재 문화협력협정 441
 문화정치 185

물산장려운동 193
 미야모토 고이치로[宮本小一郎] 115, 119
 미야모토 다케타로[宮本竹太郎] 22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9
 미조부치 다카오[滿洲孝雄] 134
 민관공동위원회 344
 민족독립운동 364
 민족문화연구회 174
 민족심리와 군중심리 226
 민족운동사 191
 민족자결주의 41
 민족적 집합심성 238, 250
 민족주의(ethnocentrism) 181, 380
 민족진화의 심리법칙(Lois psychologiques de l'évolution des peuples) 226
 민족해방론 154

ㄷ

바르샤바에서의 무릎 꿇기(Warschauer Kniefall) 371
 박영효(朴泳孝) 58
 박우용 105
 박은식(朴殷植) 191
 박제순(朴齊純) 300
 반독립국 119
 반박(tu quoque) 263
 반봉건운동(反封建運動) 193
 반식민지주의 257
 반인도적 범죄 257

반인도적 불법행위 327
 반주권국(Etat misouverain) 128
 반주지국(半主之國) 122
 반평화적 범죄 263
 방국자치자주지권(邦國自治自主之權) 122
 방어영조물(防禦營造物) 96
 베르사유강화회의 147
 베스트팔렌 조약 259
 베트남전 반대 400
 병합주의자 451
 보위적 보호국(護衛的保護國) 127
 보호관계의 권리의 선점(occupation à titre de protectorat) 129
 보호국론(保護國論) 118, 302
 보호국의 유형론 116
 보호중립론 65
 봉안전 172
 봉인된 과거 청산 436
 부모양계혈통주의 354
 부산 절영도(絕影島) 53
 부전조약(1928) 334
 북일 교섭 426
 북일국교정상화 441
 북일평양선언 442
 북청사변선후책(北淸事變善後策) 220
 분견소 91
 불법강점 293
 불법론 294
 불법적인 강점 295
 불법적인 식민지배 327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 456

불평등조약 292, 455
 비준 317
 비준불요설 275
 비준필요설 274
 비판적 식민지근대성론 183
 비핵지대 구축 운동 400

人

사사가와 노리가즈[笹川紀勝] 296
 사쓰에이 전쟁[薩英戰爭] 390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38
 사이토[齋藤實] 196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 296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144, 294
 사할린잔류한인 438
 사회기반시설 373
 삼광작전(三光作戰) 399
 삼국간섭(三國干涉) 20, 46, 455
 삼국인 160
 삼사등강(三四等降) 119
 3·1운동 14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4
 샌프란시스코 체제 37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336
 서명자의 調印 자격 305
 선전(宣傳)의 조직(詔勅) 31
 세계 피압박민족 해방투쟁사 198
 세계인권선언 287
 세계자본주의의 60
 소급입법(a retroactive law) 312
 소장의 변(蘇耜張의 弁) 119

송병준 105
 스가모[巢鴨] 감옥 397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 430
 스키 다카시[鈴木隆史] 209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152
 시모노세키 전쟁[下關戰爭] 390
 시모노세키[下關] 조약 20, 46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69
 시제법(Intertemporal law) 312
 시제법적 312
 식민적 보호국 130
 식민주의 181
 식민지 범죄 458
 식민지 이중사회론 183
 식민지 책임 327
 식민지근대화론 183
 식민지수탈론 183
 식민지적 보호관계(le protectorat colonial) 130
 식민주주의 154, 157
 식민지 지배 149
 식민지침략 268
 신법우선의 원칙 298
 신사 참배 강요 163
 신탁통치 157
 신한민보(新韓民報) 36, 310
 신화시보(新華時報) 402
 실정법(lege lata) 312
 실체적인 청구권 342
 십자로(十字路) 248
 싱가포르 함락 201
 쌍무적 관계 46

쑤원[孫文] 231

○

아관파천(俄館番遷) 47
 아라이 쇼케이 355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317
 아베 신조[安倍晉三] 388
 아시아 여성 인권 대회 410
 아시아여성국민기금 438
 아시아태평양전쟁 149
 아이노코[間の子] 356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助] 317
 안다만제도 154
 안중근 133
 안중근 대한의군참모총장 272
 안중근의 평화론 146
 암리차르(Armritsar) 학살사건 370
 애국애민(愛國愛民)의 정신 145
 아마가타 아리도모[山縣有朋] 19
 야스쿠니 신사참배 377
 야스쿠니관계 삼협의회 393
 약식조약 317
 알타회담 156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 69
 an ex post facto law 312
 에도[江戸] 15
 ABCD 포위권 415
 NGO보고서 277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22
 역사가들의 대화(Historian's Dialogue) 384

역사갈등 295
 역사교과서 문제 361
 역사교육 327
 역사대화 327
 역사란 무엇인가? 291
 역사의 결락(缺落) 424
 역사의 대화(Historical Dialogue) 384
 역사의 봉인(封印) 424
 역사의 탈정치화(脫政治化) 383
 역사인식 292
 역사적 과제 292
 역사적 정의 328
 역사정립 295
 역사화해 292
 연감학과(年鑑學派) 226
 열린 자국사(national history) 375
 영세(永世) 중립국화 65
 영친왕-마사코 결혼 43
 영토 불확대의 원칙 156
 오누마 야스아키[大沼譽昭] 404
 5·4운동 147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73
 오족협화(五族協和) 396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143
 오카다 사다코[緒方貞子] 211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 394
 오쿠마 시게노부[大隅重信] 38
 오키나와 반환 요구 400
 오타니 기쿠조 소장(1855~1923년) 92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29
 와타나베 우오니[渡辺魚二] 112
 완바오산(萬寶山) 사건 413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337
 외교정략론(外交政略論) 216
 요동반도 455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60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249
 우내혼동비책(宇內混同秘策) 213
 우드로 윌슨 40
 우사가와 가즈마사[宇佐川一正] 104
 운노 후쿠주[海野福壽] 296
 원로각원회의(元老閣員會議) 100
 웨이하이웨이[威海衛] 52
 위안부 피해자 293
 유엔국제법위원회(ILC) 272
 UN회의 159
 유일합법정부확인조항 441
 유자와 타키오[湯澤多喜男] 155
 유효부당론 294
 육군 특별지원병령 186
 6·5 터널 대참사 404
 육전에서 법규와 관례에 관한 의정서 315
 윤동주(尹東柱) 198
 윤정옥(尹貞玉) 교수 410
 윤치호일기 202
 은급적(恩給的) 구제 345
 을사늑약 291
 을종진정보호국 116
 의도적 애매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 331
 의사소통적 합리성 345
 의화단(義和團) 456

의화단(義和團) 사건 30, 61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26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274
 이선설(二線說) 210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148
 E. H. Carr 291
 이익선 216
 이즈볼스키 외상 84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 395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394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7, 47
 이홍장(李鴻章) 217
 인간연구의 초석 380
 인간의 존엄성 316
 인권혁명(human rights revolution) 337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 458
 인도의 법칙 315
 인류 구성원으로서의 교육 287
 인륜 문제 44
 인륜에 반하는 행위 44
 인류의 보편적 정의 328
 인류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범죄 259
 일괄타결방식 337
 일본 육군과 대륙정책[日本陸軍和大陸政策] 212
 일본 제국주의와 만주[日本帝國主義與滿洲] 209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 190
 일본군 위안부 186, 328
 일본에 통고하는 서(書) 147
 일본의 조선 침략 69

일본의 중국 동북 침략사[日本侵略中國東北史] 213
 일본인 납치 사건 346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법 438
 일진회 105
 일한대화(日韓對話) 330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427
 임오군란 24
 입법론(lex ferenda) 312
 입장의 상호교환 378
 입헌군주주의 194
 자국중심주의 360
 자문화 중심주의 360
 자유무역협정(FTA) 294
 자유인도입시정부 154
 자작(子爵)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305
 자존자위(自尊自慰) 152
 잠정합동조관(잠정합동조관) 29
 장웅진(張膺震) 167
 재일조선인 160
 재한국일본공사관(在韓國日本公使館) 33
 재한피폭자 438
 장웨이웨이[蔣渭水] 236
 적법성(legality) 293
 전권위원 297

전권위원 위임장 35
 전권위임장 317, 324
 전선 중견 청년 대회 164
 전설적 집합심성 250
 전시(戰時) 중립국화 65
 전시성적피해자문제 289
 전연(全然)한 자주(自主) 123
 전연자주(全然自主) 123
 전쟁범죄 315
 전쟁법 292
 전쟁의 점진적 불법화 335
 전체군주주의 194
 전후경영의견서(戰後經營意見書) 220
 정군관계(政軍關係) 99
 정당성(legitimacy) 293
 정동구락부 세력 48
 정식조약(Treaty) 298, 317
 정의의 소명 292
 정주의국인 351
 정치 없는 역사(history without politics) 382
 정치운동론 250
 정치이상과 그 실현방법 237
 정한론(征韓論) 14
 제국 및 한국의 법규 96
 제국요새지대법(帝國要塞地帶法) 96
 제국의 방위와 경제활동 74
 제국주의 250
 제국주의 침략 292
 제국주의 행위 452
 제국주의적 행태 446
 제물포조약 24, 301

제3종 보호국 130
 제1차 한일협약 297
 제2대청정책(第二對淸政策) 221
 제2차 영일동맹 33
 제2차 한일협약 : 을사늑약 297
 조르주 뤼데(George Rudé) 227
 조르주 르페브르(Georges Lefebvre) 226
 조선 문명 낙후설 13
 조선건국동맹 197
 조선론 115
 조선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 73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 193
 조선반도(한반도) 출신자 352
 조선부역론(朝鮮扶掖論) 63
 조선식민지화 과정 91
 조선신궁에 황국신민의 서사탑 봉헌에
 관한 건 170
 조선왕은 좌식의 객 120
 조선의회(朝鮮議會) 189
 조선인 강제연행은 없었는가 362
 조선정책상주(朝鮮政策上奏) 217
 조선총독 187
 조선총독부중정의기록[朝鮮總督府終政の
 記録] 190
 조선특수사정론 188
 조약법에 관한 빈조약(1969) 280
 조약성립절차 321
 조약의 무효원인 295
 조약의 사전승인설 307
 조약의 성립요건 320
 조일(朝日) 평화선언 458
 조일수호조규 13, 24, 301

죄형법정주의 314
 주권선 216
 주병승낙서(駐兵承諾書) 21
 주병의뢰(駐兵依賴) 21
 주차군(駐箭軍) 31
 중·일동삼성조약(中日東三省條約) 223
 중국 전국국민외교대회 147
 중국위협론 421
 중립 292
 중립 외교 55
 중일공동성명 144
 중일평화우호조약 144
 중화사상 359
 지나전쟁 395
 지방참정권 364
 진린방병비약표[進隣邦兵備略表] 215
 진무천황[神武天皇] 360
 진정한 화해와 우호 459
 집합심성(集合心性) 227
 징병령 186

㉠

창씨개명 163
 1965년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2(g)
 의 규정 341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 319
 천황어새(天皇御璽) 309
 철도폭파 사건 149
 청구권 경제협력협정 436
 청구권의 상호포기 442
 청국정토방략(淸國征討方略) 216

청일전쟁 455
 초슈(長州)번 15
 총독부 166
 최익현 145
 칙명지보(勅命之寶) 36
 친일파 99인 201
 731세균부대 399
 침략주의의 소산 457

ㅋ

카이로선언 156
 카이로선언에 반하는 알타비밀협정
 159
 칸트의 평화론 146
 콘포미즘(conformism) 288
 쿠라치 테즈키치[倉知鐵吉] 317
 클리블랜드 대통령 450
 키케로의 의무론 131

ㅅ

타산지석(他山之石) 406
 타이중[台中] 지방법원 형사사건 관련
 문서 238
 타자(他者)인식 375
 타치 사쿠타로[立作太郎] 317
 탈(脫)식민지화 155
 탈근대주의적식민지근대성론 183
 탈아입구(脫亞入歐) 292
 토민봉기[土民一擧] 231
 통치권 양여에 관한 조칙 안 35

ㅌ

팔마스 섬 사건(1928) 313
 페리 제독 15
 페스(Fez)조약 369
 평화 속에서 살아갈 권리 262
 평화공동체 327
 포츠머스강화 79
 포츠머스강화조약 78, 456
 Fyodor F. Martens 315
 풀뿌리 한류열풍 287
 프란손 영사 84
 Francis Ray 298
 프랑스대혁명 속의 군중 227, 244
 피폭 전시회 411

ㅎ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25
 하라다 다마키 362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99
 하야시 겐조[林權助] 300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95
 하야시 다다스[林董] 외상 85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150
 하와이 왕국 446
 하와이 왕국 전복 458
 하와이 정부 448
 하토야마[鳩山]정권 286
 학병·근로정신대 186
 한·일 기본관계조약 336
 한국주차군 79

한국관계 중요문화재일람 441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2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
 史) 191
 한국병합 합법설 13
 한국병합시말 88
 한국병합조약 : 병합늑약 297
 한국의 독립 134
 한국주치군 91
 한국중립국 구상 84
 한국통감무관론 94
 한만교환론 55
 한성조약 27, 301
 한일 파트너십 선언 435
 한일강제병합 257, 423
 한일공동선 458
 한일관계사료집 191
 한일국교정상화 423, 425
 한일병합조약 291
 한일수호조규속약 26
 한일우정의 원년 291
 한일의정서 297
 한일협정 440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428
 한일회담관련문서 427
 한황조칙문(韓皇詔勅文) 307
 합방청원서 105
 합법론 294
 합중연방 120

항일고사 231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 156
 행정상 보호국 130
 행정적 보호관계(protectorat admini-
 stratif) 129, 130
 혈 비망록 415
 Hannah Arendt(1906~1975) 316
 헤이그 평화회의 86
 협상지시설 110
 협약(agreement) 298
 형식적 적법성 279
 형식적인 청구권 342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390
 홍종우(洪鐘宇) 60
 화북분리(華北分離) 조치 413
 화북조선독립동맹 197
 화중협동(和衷協同=화협) 88
 화해 의식 364
 화해 의식 부재의 일원론 364
 황국신민 서사 163
 황국신민 서사의 기둥[皇國臣民誓詞之柱]
 164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207, 369
 황민화 정책 163
 황제의 위배 133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47
 흑색청년연맹(黑色青年聯盟) 검거사건
 248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

초판 1쇄 인쇄 2013년 8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8월 15일

지은이 도시환 외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04-8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